

취약보육 대안 마련을 위한  
저소득가정 영유아보육 실태조사 보고

2007. 10. 31

한국여성노동자회  
육아정책개발센터

# 취약보육 대안 마련을 위한 저소득가정 영유아보육 실태조사 보고

연구책임자: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공동연구자: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소연 (연세대 생활연구소)

권영인 (연세대 생활연구소)

2007. 8

## 한국여성노동자회

# 제 출 문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취약보육 대안 마련을 위한 저소득가정 영유아보육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10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9
1. 필요성과 목적 .....	19
2. 연구내용 .....	20
3. 연구방법 .....	21
4. 가정내보육 지원 사업 현황 .....	24
5. 선행연구 .....	31
II. 소득계층별 육아지원 이용 및 비용 격차 .....	37
1.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	37
2.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	46
3. 육아지원 유형별 이용 및 비용 .....	51
4. 정책시사점 .....	63
III.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실태 .....	65
1. 저소득 가정 특성 .....	65
2. 자녀 양육방식 .....	76
3.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90
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 행태 .....	100
5.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119
6. 일과 가정 양립 .....	128
7. 취약보육 필요성 및 대처 .....	132
8. 보육 관련 의견 .....	146
9. 정책시사점 .....	160
IV. 보육도우미 사업 현황과 성과 .....	162
1. 보육도우미 사업 개요 .....	162

2. 보육도우미 활동 .....	165
3. 보육도우미 이용행태 .....	179
4. 보육도우미가 미치는 영향 및 만족도 .....	186
5. 정책시사점 .....	203
V. 보육도우미 이용 사례 .....	205
1. 심층면접 방법 .....	205
2. 심층면접 결과 .....	207
3. 수혜자들의 경험을 통해 본 보육지원 효과 증진을 위한 방안 .....	215
4. 토론 및 정책적 제언 .....	219
5. 효과적인 보육지원 서비스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모델 .....	221
VI. 외국의 가정내 보육서비스 .....	223
1. 프랑스 .....	223
2. 미국 .....	234
3. 일본 .....	245
VII. 정책 제언 .....	255
1. 정책의 기본방향 .....	255
2. 주요 정책 방향 .....	255
3. 결론 .....	261
참고문헌 .....	262
부록 .....	267

## 표 목 차

〈표 I-3- 1〉 국공립보육시설 조사 설문 내용 .....	22
〈표 I-3- 2〉 설문조사 완료 수 .....	23
〈표 I-3- 3〉 보육도우미조사 설문 내용 .....	23
〈표 I-4- 1〉 아이 돌보미 교육내용 .....	26
〈표 I-4- 2〉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	27
〈표 I-4- 3〉 보육도우미 이용 비용 .....	30
〈표 II-1- 1〉 전체 및 취업모 영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	38
〈표 II-1- 2〉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	39
〈표 II-1- 3〉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40	
〈표 II-1- 4〉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지불아동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비율 .....	42
〈표 II-1- 5〉 취업모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비율 .....	43
〈표 II-1- 6〉 영유아 육아지원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	44
〈표 II-1- 7〉 육아지원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회귀분석 최종모형 .....	45
〈표 II-1- 8〉 육아지원비용의 가구지출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회귀분석 최종모형 .....	45
〈표 II-2- 1〉 영유아 수 및 모취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	46
〈표 II-2- 2〉 영유아 수 및 소득계층별 가구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47	
〈표 II-2- 3〉 모취업 가구 영유아수 및 소득계층별 서비스 이용 비용 및 비율 .....	48
〈표 II-2- 4〉 영유아 가구 육아지원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 회귀분석 최종모형 .....	49
〈표 II-2- 5〉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육아지원비용 비율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	50
〈표 II-2- 6〉 영유아 가구 육아지원비용의 지출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	50
〈표 II-3- 1〉 영유아 소득 10분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2004 .....	52

〈표 II-3- 2〉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기관 이용률 .....	53
〈표 II-3- 3〉	소득 10분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및 비율 .....	54
〈표 II-3- 4〉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다분류 로지스틱 회귀분석 .....	56
〈표 II-3- 5〉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에 대한 다분류 회귀분석 .....	57
〈표 II-3- 6〉	소득계층별 특기/보습학원 이용비용 및 비율 .....	59
〈표 II-3- 7〉	소득계층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	60
〈표 II-3- 8〉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용 및 비율 .....	62
〈표 III-1- 1〉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수 및 자녀수 .....	65
〈표 III-1- 2〉	가족유형 .....	66
〈표 III-1- 3〉	현재 주택 소유형태 .....	67
〈표 III-1- 4〉	주택 유형 .....	67
〈표 III-1- 5〉	응답 가구 부모 평균 연령 .....	68
〈표 III-1- 6〉	응답 가구 부모의 학력 .....	69
〈표 III-1- 7〉	부모 고용형태 .....	70
〈표 III-1- 8〉	최소아동연령별 부인 고용형태 .....	71
〈표 III-1- 9〉	1주일 평균 근로시간 .....	71
〈표 III-1-10〉	가구 월 평균 소득 .....	72
〈표 III-1-1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	73
〈표 III-1-12〉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	73
〈표 III-1-13〉	응답가구 부모의 건강상태 .....	74
〈표 III-1-14〉	아동특성 .....	75
〈표 III-2- 1〉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76
〈표 III-2- 2〉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자녀존중 .....	78
〈표 III-2- 3〉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다정함 .....	79
〈표 III-2- 4〉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규칙준수 .....	80
〈표 III-2- 5〉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정성 .....	81
〈표 III-2- 6〉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자녀의 요구 .....	82
〈표 III-2- 7〉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자녀 칭찬 .....	83
〈표 III-2- 8〉	지난 6개월간 문화레저 공간 자녀 동반 외출 경험 .....	84
〈표 III-2- 9〉	지난 6개월간 자녀와 서점에 간 경험 여부 .....	85
〈표 III-2-10〉	지난 6개월간 자녀 체벌 여부 .....	87
〈표 III-2-11〉	자녀의 친구 이름 인지 여부 .....	88
〈표 III-2-12〉	취학전 아이들만 두고 일하러 가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 .....	89

〈표 III-3- 1〉 영유아의 연령별 이용 기관 .....	90
〈표 III-3- 2〉 미취학아동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91
〈표 III-3- 3〉 낮 시간에 주로 돌보는 사람: 영유아 .....	92
〈표 III-3- 4〉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시간 이용 .....	93
〈표 III-3- 5〉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시간 이용 .....	94
〈표 III-3- 6〉 초등학생 자녀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 .....	95
〈표 III-3- 7〉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지내는 경우 하루 평균 시간 .....	95
〈표 III-3- 8〉 지난 4월 자녀보육에 들어간 비용 .....	96
〈표 III-3- 9〉 월 소득 중 자녀 보육비 비율 .....	97
〈표 III-3-10〉 지난 4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보육비용 .....	99
〈표 III-4- 1〉 현재 아이가 다니는 기관 .....	100
〈표 III-4- 2〉 현재 아이가 다니는 기관 .....	101
〈표 III-4- 3〉 현재 이용하는 기관 이용 빈도 .....	102
〈표 III-4- 4〉 영유아 등원시각 .....	103
〈표 III-4- 5〉 영유아 하원시각 .....	104
〈표 III-4- 6〉 기관별 이용 시간 .....	104
〈표 III-4- 7〉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이용시간 .....	105
〈표 III-4- 8〉 기관의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 여부 .....	106
〈표 III-4- 9〉 이용시간 불만족 이유 .....	108
〈표 III-4-10〉 기관 이용 시 일정하게 납입하는 월 보육료나 교육비 .....	109
〈표 III-4-11〉 생활수준에 비추어 보육·교육기관 비용의 적절성 여부 .....	111
〈표 III-4-12〉 보육료 지원 여부 및 보육료 감면 및 면제 이유 .....	112
〈표 III-4-13〉 보육시설에 의뢰 가능 여부 .....	113
〈표 III-4-14〉 보육시설에 예방접종 의뢰 가능 여부 .....	114
〈표 III-4-15〉 보육시설에 병원 데려가기 의뢰 가능 여부 .....	115
〈표 III-4-16〉 보육시설에 투약 등 병간호 의뢰 가능 여부 .....	116
〈표 III-4-17〉 보육시설에 야간 연장보육 의뢰 가능 여부 .....	117
〈표 III-4-18〉 보육시설에 가장 바라는 점 .....	118
〈표 III-5- 1〉 부모가 돌보지 못할 때 양육자 .....	119
〈표 III-5- 2〉 주된 양육 장소 .....	120
〈표 III-5- 3〉 대리 양육자의 일주일 평균 양육일수 .....	121
〈표 III-5- 4〉 평일 중 주로 돌보는 시간 .....	121
〈표 III-5- 5〉 조부모·비혈연 보육서비스를 받는 이유 .....	122

〈표 III-5- 6〉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유 .....	123
〈표 III-5- 7〉	아이를 돌보는 비용 지급 여부 .....	124
〈표 III-5- 8〉	월평균 지급 액수 .....	125
〈표 III-5- 9〉	비혈연이 돌보는 경우 결혼 상태 및 자녀양육경험 .....	126
〈표 III-5-10〉	비혈연이 돌보는 경우 자격 .....	126
〈표 III-5-11〉	비혈연이 돌보는 경우 소개 경로 .....	127
〈표 III-5-12〉	비혈연이 돌보는 경우 애로사항 .....	127
〈표 III-6- 1〉	막내자녀 출산 시 취업 여부와 이후 복직 여부 .....	128
〈표 III-6- 2〉	막내자녀 출산 전후 일을 그만 둔 이유 .....	129
〈표 III-6- 3〉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하지 않은 이유 .....	129
〈표 III-6- 4〉	현재 직업 종사하면서 자녀 양육시 어려움 .....	130
〈표 III-6- 5〉	(최소아동별) 현재 직업 종사하면서 자녀 양육시 어려움 .....	131
〈표 III-6- 6〉	현재 취업하지 않는 이유 .....	131
〈표 III-6- 7〉	(최소아동별) 현재 취업하지 않는 이유 .....	132
〈표 III-7- 1〉	취약보육의 필요성 .....	133
〈표 III-7- 2〉	취약보육의 대처방안 .....	133
〈표 III-7- 3〉	일시 시간제보육의 필요성 .....	135
〈표 III-7- 4〉	일시 시간제보육의 대처방안 .....	136
〈표 III-7- 5〉	야간보육의 필요성 .....	137
〈표 III-7- 6〉	야간보육의 대처방안 .....	138
〈표 III-7- 7〉	아픈 자녀 보육의 필요성 .....	140
〈표 III-7- 8〉	아픈 자녀 보육의 대처 방안 .....	141
〈표 III-7- 9〉	24시간 보육의 필요성 .....	142
〈표 III-7-10〉	24시간 보육의 대처방안 .....	143
〈표 III-7-11〉	휴일보육의 필요성 .....	144
〈표 III-7-12〉	휴일보육의 대처방안 .....	146
〈표 III-8- 1〉	영아 연령별 바람직한 대리양육 방법에 대한 의견 .....	147
〈표 III-8- 2〉	영아 연령별·지역별 바람직한 대리양육 방법에 대한 의견 .....	148
〈표 III-8- 3〉	부모 취업시 만3세이상 미취학 아동 양육 방법에 대한 의견 .....	149
〈표 III-8- 4〉	보육시설 관련 정책 확대 실시의 필요성 .....	150
〈표 III-8- 5〉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	151
〈표 III-8- 6〉	보육시설 시간제보육 확대 실시 필요성 .....	152
〈표 III-8- 7〉	과건보육 확대 및 제도화 필요성 .....	154

〈표 III-8- 8〉	보육도우미 이용 가능성 여부 .....	155
〈표 III-8- 9〉	보육도우미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 .....	155
〈표 III-8-10〉	정부 육아 정보와 상담 제공 기능 확대 필요성 .....	156
〈표 III-8-11〉	직장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필요성 .....	157
〈표 III-8-12〉	직장 탄력근무제도 정착 필요성 .....	158
〈표 III-8-13〉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필요성 .....	160
〈표 IV-1- 1〉	보육도우미 교육내용 및 시간 .....	163
〈표 IV-1- 2〉	영아보육도우미 .....	164
〈표 IV-1- 3〉	야간보육도우미 .....	164
〈표 IV-2- 1〉	도우미 연령 .....	166
〈표 IV-2- 2〉	도우미 최종학력 .....	167
〈표 IV-2- 3〉	도우미 결혼상태 및 자녀양육경험 .....	167
〈표 IV-2- 4〉	도우미 자격 .....	168
〈표 IV-2- 5〉	도우미 월 평균 가구 소득 .....	169
〈표 IV-2- 6〉	144시간 교육시간의 충분성 여부 .....	170
〈표 IV-2- 7〉	기존 활동 보육도우미 재교육의 충분성 여부 .....	170
〈표 IV-2- 8〉	보육도우미로 활동한 기간 .....	171
〈표 IV-2- 9〉	돌보는 아동의 수 .....	172
〈표 IV-2-10〉	보육 도우미 보수 수준의 적절성 여부 .....	173
〈표 IV-2-11〉	보육도우미 활동 만족 여부 .....	174
〈표 IV-2-12〉	보육도우미 활동 이후 변화 .....	174
〈표 IV-2-13〉	보육도우미 활동 이후 변화 - 자부심 .....	175
〈표 IV-2-14〉	보육도우미 활동 이후 변화 - 일의 즐거움 .....	176
〈표 IV-2-15〉	보육도우미 활동 이후 변화 - 행복감 증대 .....	177
〈표 IV-2-16〉	보육도우미 활동 이후 변화 - 가정 화목 .....	178
〈표 IV-2-17〉	보육도우미 활동의 어려움 .....	179
〈표 IV-3- 1〉	보육도우미 유형 .....	179
〈표 IV-3- 2〉	보육도우미가 파견된 기간 .....	180
〈표 IV-3- 3〉	돌보는 아동 수 .....	181
〈표 IV-3- 4〉	돌보는 아동 수 - 장애아 .....	181
〈표 IV-3- 5〉	한국여성노동자회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인지 경로 .....	182
〈표 IV-3- 6〉	보육도우미 파견 이전 양육자 .....	183
〈표 IV-3- 7〉	보육도우미 이용 이유 .....	184

〈표 IV-3- 8〉	보육 도우미 비용 부모 차등 부담 .....	185
〈표 IV-4- 1〉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 변화 총괄 .....	186
〈표 IV-4- 2〉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 - 잘 먹게 됨 .....	188
〈표 IV-4- 3〉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 - 건강해짐 .....	189
〈표 IV-4- 4〉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 - 성격 밝아짐 .....	190
〈표 IV-4- 5〉	(장애)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 - 지속적 치료 가능 ·	191
〈표 IV-4- 6〉	(초등)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 - 성적 향상 .....	192
〈표 IV-4- 7〉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총괄 .....	192
〈표 IV-4- 8〉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모(母)의 취업 .....	193
〈표 IV-4- 9〉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모(母)의 근무시간 증가 .....	194
〈표 IV-4-10〉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업무능력향상 .....	195
〈표 IV-4-11〉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교육·직업훈련 .....	196
〈표 IV-4-12〉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행복감 증진 .....	196
〈표 IV-4-13〉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아이와 엄마의 친밀감향 상 .....	197
〈표 IV-4-14〉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부부간 갈등완화 .....	198
〈표 IV-4-15〉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가구 소득 증가 ·	199
〈표 IV-4-16〉	보육 도우미 만족 여부 .....	199
〈표 IV-4-17〉	보육 도우미 이용시간 만족 여부 .....	200
〈표 IV-4-18〉	보육 도우미 양육방식 만족 여부 .....	201
〈표 IV-4-19〉	보육 도우미 전문성 만족 여부 .....	202
〈표 V-1- 1〉	면접 참여 어머니들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	205
〈표 VI-1- 1〉	공보육시설내 자릿수: 3세미만 아동의 경우 .....	224
〈표 VI-1- 2〉	프랑스의 보육현황 .....	225
〈표 VI-1- 3〉	프랑스의 가정 내 보육 지원 .....	227
〈표 VI-1- 4〉	보육사와 AFEAMA 수급자수의 변화(1991-2002) .....	229
〈표 VI-1- 5〉	개별보육형태에 대한 공공지출(불변 유로화 기준) .....	231
〈표 VI-1- 6〉	AFEAMA , AGED 수급자와 지출 .....	231
〈표 VI-1- 7〉	보육비용 비교(1세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우) .....	233
〈표 VI-2- 1〉	미국의 보육시설 유형 및 특징 .....	235
〈표 VI-2- 2〉	가정내 보육서비스 .....	238

〈표 VI-2- 3〉 5세미만 유아의 보육형태 .....	239
〈표 VI-2- 4〉 취업모 아동의 보육형태 (5세 미만, 2002) .....	240
〈표 VI-2- 5〉 가정보육모 면허취득에 필요한 기본규정 예시 .....	242
〈표 VI-3- 1〉 일본의 보육시설 및 아동규모 .....	246
〈표 VI-3- 2〉 주요 자녀양육지원사업 .....	250

## 그림 목차

[그림 II-1- 1] 영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	39
[그림 II-1- 2]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	41
[그림 II-1- 3] 비용 지불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	42
[그림 II-1- 4] 취업모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	43
[그림 II-2- 1] 영유아 수 및 모취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	46
[그림 II-3- 1]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	53
[그림 II-3- 2]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기관 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 .....	55
[그림 II-3- 3] 소득계층별 사교육 이용률과 사교육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 .....	59
[그림 II-3- 4] 전체 및 비용지불 아동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	61
[그림 II-3- 5] 개인양육지원 비용지불 영아와 유아 비용 및 비율 .....	61
[그림 III-2- 1]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77
[그림 III-4- 1] 보육시설에 의뢰 가능 여부 .....	113
[그림 III-7- 1] 취약보육의 필요성 .....	133
[그림 III-7- 2] 취약보육의 대처방안 .....	134
[그림 III-8- 1] 보육시설 관련 정책 확대의 필요성 .....	150
[그림 IV-2- 1] 보육도우미 활동 이후 변화 .....	175

[그림 IV-4- 1]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 변화 총괄 .....	187
[그림 IV-4- 2]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총괄 .....	193
[그림 IV-4- 3]	보육도우미 만족 여부 .....	200
[그림 V-5- 1]	저소득층 보육지원을 생태학적 모델 .....	222
[그림 VI-2- 1]	비공식 보육사용율(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아동연령별) ·	241

## 부표 목차

<부표 III-3- 1>	지역별 영유아의 연령별 이용기관 .....	269
<부표 III-3- 2>	미취학아동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71
<부표 III-3- 3>	낮시간에 주로 돌보는 사람: 영유아 .....	273
<부표 III-4- 1>	보육시설에 예방접종 의뢰 가능 여부 .....	275
<부표 III-4- 2>	보육시설에 병원 데려가기 의뢰 가능 여부 .....	275
<부표 III-4- 3>	보육시설에 투약 등 병간호 의뢰 가능 여부 .....	276
<부표 III-4- 4>	보육시설에 야간 연장보육 의뢰 가능 여부 .....	276
<부표 IV-3- 1>	돌보는 아동 수 -영아 .....	277
<부표 IV-3- 2>	돌보는 아동 수 -유아 .....	277
<부표 IV-3- 3>	돌보는 아동 수 -초등학생 .....	277
<부표 IV-4- 1>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건강해짐 .....	278
<부표 IV-4- 2>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잘 먹게 됨 .....	278
<부표 IV-4- 3>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성격 밝아짐 .....	279
<부표 IV-4- 4>	(장애)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지속적 치료 가능 ·	279
<부표 IV-4- 5>	(초등) 야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성적 향상 .....	280
<부표 IV-4- 6>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모(母)의 취업 .....	280
<부표 IV-4- 7>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모(母)의 근무시간증가 .....	281
<부표 IV-4- 8>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업무능력향상 .....	281

〈부표 IV-4-9〉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교육·직업훈련 가능	282
〈부표 IV-4-10〉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모(母)의 행복감 증진	282
〈부표 IV-4-11〉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아이와 엄마의 친밀감 향상	283
〈부표 IV-4-12〉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부부간 갈등완화	283
〈부표 IV-4-13〉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가구 소득 증가	284
〈부표 IV-4-14〉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모(母)의 취업	284
〈부표 IV-4-15〉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모(母)의 근무시간 증가	285
〈부표 IV-4-16〉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업무능률향상	285
〈부표 IV-4-17〉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교육·직업훈련 가능	286
〈부표 IV-4-18〉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모(母)의 행복감 증진	286
〈부표 IV-4-19〉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아이와 엄마의 친밀감향상	287
〈부표 IV-4-20〉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부부간 갈등완화	287
〈부표 IV-4-21〉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가구 소득 증가	288

# 요약

## 1. 서론

### 1. 필요성과 목적

-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보육실태를 파악하고 취약보육의 대안보육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실제 저소득 가정이 겪고 있는 영유아 보육의 실태, 문제점,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재가 가정보육 인력 파견사업의 제도화 필요성 및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 2.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와 민간에서 실시하는 가정내 보육 관련 사업을 검토한다.
  -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한 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와 요구를 파악한다.
  -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보육도우미 이용 및 보육도우미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다.
  - 프랑스, 미국, 일본 3개 국가의 가정내 보육 관련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 가정내 보육 등 대안보육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 3. 연구방법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020개 가구에 대한 조사표가 수거되었다. 조사된 가구 중 132가구는 보육도우미 이용 가구이다.
  - 보육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주 6개 지역 사업 대상자와 자활 및 산모바우처 사업 대상자 등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220만원이다.

- 조사는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된 항목은 일반특성, 자녀 양육 특성, 기타 총괄 및 의견의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 6개 지역 132 보육도우미 이용 가정과 128명의 보육도우미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보육도우미 이용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 조사는 여성노동자회 각 지부 보육도우미 사업 담당자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 II. 주요 조사결과

### 1. 조사 대상 저소득 가정 특성

#### 가. 가구 및 부모 특성

- 조사된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3.7명이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는 1.6명이다. 서울지역 조사 가구 규모가 다소 작다.
-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유형이 67.6%이고, 여성 한 부모 가정 21.2%, (한)조부모, (한)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확대가족 유형은 7.2%, 남성 한 부모 가족 유형은 1.3%이다. 서울은 여성 한 부모 가족이 45.3%이다.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전세가 33.8%, 자가 주택이 27.3%, 전세나 보증부 월세가 21.2% 순으로 나타났다. 무상이나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기타의 비율은 각각 7.9%, 5.4%, 4.3%이다
- 부모 특성
  - 아버지 평균 연령은 38.3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6.0세이다
  - 응답 가구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미만이 6.6%, 고졸 44.8%이다. 어머니의 학력도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남편의 학력과 비슷하다.
  - 어머니의 고용형태는 무직이 30.6%이고 69.4%가 취업 중인데, 직업이 없는 경우가 서울은 14.8%로 타 지역에 비하여 낮다. 일반 영유아 가정 모의 취업률이 40% 미만인 점과 비교하여 취업률이 높다.
  - 근로하는 경우 부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51.4시간, 모는 41.9시간이다.

- 임금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각종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소득액은 149만원이다. 최대는 부산 170만 2천원, 최소는 서울 123만원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정이 전체 19.9%이다. 서울과 광주가 각각 28.3%, 27.1%, 대구가 21.7%로 비교적 높다.
- 아버지의 월 평균 임금은 143만 6천이고 표준편차가 54만 6천원이다. 어머니의 월평균 소득은 남편의 2/3 수준인 79만 3천원이다.
- 아버지 중 질병이 있는 경우가 6.2%이고, 장애가 있는 경우는 2.9%이다.

## 나. 아동 특성

- 조사된 1,021가구의 초등학교 이하 아동은 모두 1,591명이다.
  - 조사 아동은 남자 49.2%, 여자 50.8%이며, 미취학 아동이 57.8%, 취학 아동이 42.2%로 근소한 차이가 있다.
  - 조사 아동의 연령은 0세부터 14세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중 7, 8세가 10%이상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 건강상태는 건강한 아동이 93.9%로 대부분이나 일반 가구조사 결과보다는 다소 낮다.

## 2. 자녀 양육방식

### 가. 일반적 양육 태도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는 자녀존중, 자녀에 대한 다정함, 규칙준수 지도, 자녀에 대한 정성, 자녀 요구 수용, 칭찬의 6개 항목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긍정적 응답이 바람직한 문항 중에서 아니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자녀에게 정성을 다 하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16%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 자녀존중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닌 편이라는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높고, 다정함, 칭찬에서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닌 편이라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

## 나. 자녀 관련 행동

- 지난 6개월 간 자녀와 함께 극장, 공연장, 야외, 놀이공원 등 문화·레저 공간에 간 횟수는 1~2번이 35.4%, 3~4번이 21.1%, 없다가 19.4%, 7번 이상이 15.0%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없다는 비율이 높고,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외출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 지난 6개월간 자녀와 서점에 간 경험이 없음이 34.3%이고 있다가 65.7%인데, 횟수로는 1~2번이 39.5%, 3~4번이 14.8% 순이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높다.
- 지난 6개월 간 자녀를 체벌한 경험과 그 횟수를 보면 없음이 27.3%이고, 35.9%가 1~2번, 3~4번이 19.1%, 7번 이상이 11.5% 순이다. 체벌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다른 집단보다 낮고, 취업모가 낮다.
- 자녀의 친구들의 이름은 대략 90%이상의 부모가 1명 이상의 자녀 친구 이름을 인지하고 있다. 11.3%가 하나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취학전 아이들만 두고 일하러 가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9.2%로 가장 높았고, 가끔 있다는 비율이 19.9%, 자주 있다는 10.9%이다. 취업모가 12.6%로 그 이외 가정에 비하여 비교적 높다.

## 3.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가. 이용기관

#### 1) 영유아

- 조사 시점인 2007년 6월을 기준으로 0세아와 만1세 아동의 기관 이용 비율이 3.8%, 8.5%이고 만2세가 29.6%로 높아진다. 만3세는 50.4%, 만4세가 74.9%이고, 그 이상 연령 아동은 거의 대부분이 기관에 다니고 있다.
-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37.8%가 집에 양육자가 있기 때문이고 23.0%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장애, 질병 때문이라는 응

답도 5.4%이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비용 부담 때문에 기관에 안 보낸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 낮에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은 파견도우미가 19.1%로 가장 높고 조부모가 6.9%이다. 아무도 없다는 비율도 11.2%가 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가 돌본다는 비율이 낮아지며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높아진다.

## 2) 초등학생

-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후 시간을 주로 보내는 방법으로 기관의 공부방 또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6.3%이고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35.9%, 그 외 그냥 집에서 보낸다는 응답은 22.0%, 과외를 받는 경우는 1.0% 순이다.
  -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원 이용이 높고 공공 프로그램 이용 비율과 집에 있다는 비율이 낮아진다.
-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나 학원이 끝난 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 53.0%가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비율은 47.0%이다.
  -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는 경우, 하루 평균 2.7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나. 비용

- 조사된 가구가 2007년 4월, 1개월 동안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개인 서비스 이용 등 자녀의 보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158,700원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이용이 가구 평균 135,900원이고 개인 보육서비스 비용이 가구 당 월 평균 24,500원이다.
  -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기관 이용 및 개인서비스 이용 비용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은 월 지출액이 109,600원이지만 가구소득 201만원 이상인 가족은 246,000원이다
- 가구 월 총 보육비용은 월 소득의 평균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전국조사 결과인 평균 8% 수준과 비교된다.
  - 소득수준별 차이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16.3%로 다소 높으나 유의한 차

이는 아니다.

-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은 가구당 평균 175,600원이다. 기관 이용 비용만은 평균 114,300원이다. 기관 이용 비용은 지역별로는 광주와 부산이 지원 금액이 가장 적고, 인천이 가장 많다.

#### 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 행태

##### 가. 이용기관

- 기관 이용률은 보육시설이 49.9%로 가장 높고, 유치원이 40.0%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 복지관, 공부방은 각각 2.1%, 1.7%, 1.2%, 0.7%이다.
  - 아동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육시설 이용은 감소하고 유치원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150만원 이상부터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육시설 이용률은 낮아지고 유치원 이용률은 높아지는 경향이다.

##### 나. 이용 행태

-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빈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간다는 응답이 83.9%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간다는 응답이 14.5%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경우는 서울의 29.3%로 전체 평균의 2배가량 되게 높다. 이는 가장 낮은 인천의 9.0%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 이용기관별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 비율이 보육시설 17.7%, 유치원이 10.6%, 기타 기관 27.3%로 유치원이 타 기관에 비하여 가장 낮다.

##### 다. 이용시간 및 만족도

- 기관 이용시간은 취업모 아동이 7시간 51분으로 미취업 모 아동의 이용시간 6시간 37분보다 1시간 이상이 길다.
  - 취업모의 0세아는 이용시간이 10시간 15분이고, 1, 2세아는 9시간 10분 정도이고, 3, 4세가 8시간대, 5, 6세가 7시간대이다.

-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70.4%, 매우 만족이 17.0%로 기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이용시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 이용기관별로는 선교원, 공부방, 복지관과 같은 공공기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만족도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고,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하여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다.
- 기관 이용시간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67.1%로 가장 높고, 시작시간이 너무 늦고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응답비율이 27.1%, 시작시간이 너무 늦다는 의견은 전체 5.7%이다.
  - 보육시설 이용자가 특히 개원시간이 늦다는 응답비율이 많았다. 이는 보육시설 이용자가 취업모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 라. 비용

- 기관을 이용하면서 일정하게 정해진 월 보육료나 교육비는 평균 11만 5천원으로 최대는 전주 16만 9천원, 최소는 서울 5만 8천원이다. 이는 응답자의 소득수준별 보육료·교육비 지원금의 차이 때문이다.
- 지난 3~5개월 간 특별활동, 견학 등으로 추가로 비용을 낸 경우, 월 평균 3만 9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는 부산의 4만 8천원, 최소는 인천이 3만 1천원이다.
-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51.9%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부담 13.8%로 전체적으로 64.7%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은 6.4%이다.
  - 학원 등 이용자가 비용부담을 많이 느끼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다.
- 조사 대상 아동의 83.0%가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17.0%는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원 대상 중 가장 많은 36.8%가 기타 저소득층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9%, 차상위계층 14.9% 순이다.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대상자, 모·부자가정 자녀와 장애아동 무상보육 대상자인 경우는 각각 7.2%, 5.3%, 1.6%로 조사되었다.

## 마. 서비스

-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유치원 등 기관에 예방접종, 병원 데려가기, 아픈 아동 병간호, 야간연장보육을 마음 놓고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의뢰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병간호가 65.9%로 가장 높고, 병원 데려가기 41.5%, 예방접종 36.3%, 야간 연장보육 30.6%로 조사되었다.
  - 육아지원기관에는 건강 서비스보다 야간 보육을 기대하기가 더 어렵다.
  - 이용기관별로는 예방접종은 유치원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보육시설이 의뢰가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 바.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

-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가장 바라는 바는 25.9%가 가족이나 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뒤이어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가 25.7%, 저녁시간, 휴일 등 상황에 따른 이용시간의 다양함 23.4% 순이다.
  - 보육시설 이용자가 이용시간 다양화를 지적한 비율이 30.7%로 가장 높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28.6%이다. 유치원 이용 부모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31.9%로 가장 많다.
  -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취업모가 이용시간 다양화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 5.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가. 주 양육자

- 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으로 보육(파견)도우미가 36.5%로 가장 높고, 친조 부모가 18.3%, 외조부모가 17.8%, 친인척이 12.3% 순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족 및 친인척이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총 48.4%로 보육(파견)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율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 파견 도우미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보육도우미 이용가정 대다수가 조사 대상자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 나. 장소

- 개인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주로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아이의 집이 71.8%, 돌보는 사람 집이 28.2%로 대부분 아이의 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돌보는 일수 및 시간

- 일주일에 조부모나 비혈연인과 같은 대리 양육자가 아동을 돌보는 일수는 4.4일이고, 평일 평균 아동을 돌보는 시간은 7.5시간이다.
- 평일 중 대리 양육자가 아동을 주로 돌보는 시간은 방과후가 38.5%, 아침에서 저녁까지가 27.3%, 오전이나 오후 만나절이 11.9%순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돌보는 경우는 7.7%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 라. 이용 및 미이용 이유

- 조부모나 비혈연 보육서비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시설 등 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그 비율은 30.6%이다. 그 외에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 이용의 전후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전체 27.6%이고, 초등학생을 방과후에 보살피기 위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21.7% 순으로 나타났다. 집안일 돕기는 2.2%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관 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다. 취업모는 기관 이용 전후에 필요해서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다.
-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그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이 78.1%로 가장 높고, 비용부담 42.9%, 보육시설이 없어서 18.1% 순이다.

## 마. 비용

- 대리 양육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6%, 지불하는 경우가 총 28.4%이다. 지불하는 경우에 그 방법은 정기적인 지불이 17.3%로 가장 높고, 부정기적 지불이 6.4%, 현물 지불이 2.8%, 숙식만 제공하는 경우가

1.9% 순이다.

- 아이 대리 양육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 월평균 지급 액수는 20만 4천원이다.
  - 대리양육자별로는 친조부모가 265,500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친인척 및 보육도우미가 225,000원 수준이고, 외조부모가 159,100원으로 가장 낮다.

#### 바. 서비스 제공자 특성

- 비혈연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 대리 양육자는 기혼이며 양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93.8%로 대부분이다. 전주는 100.0%가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기혼자이다. 미혼은 전체적으로 4.5%이며,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12.5%이고 서울과 전주는 미혼이 없다.
- 비혈연 대리 양육자의 자격은 별다른 자격이 없는 경우가 36.2%로 가장 높았고, 보육교사가 30.3%이고 유치원교사가 3.3%로 조사되었다.
- 아동을 돌봐 주는 비혈연을 소개 받은 경로는 주변 소개가 38.5%, 지역신문 등 광고가 27.5%, 인력전문기관의 소개가 12.6% 순이다. 주변 소개는 인천이 54.9%인 반면 서울은 22.6%로 낮은 편이고, 광고를 통한 소개는 대구와 광주가 40.0%로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 사. 애로사항

- 개인 양육자를 이용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별로 없다는 응답이 57.4%이고, 있다가 42.6%이다.
  - 애로 사항으로는 비혈연인이 갑자기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나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각각 11.8%씩이고, 비용부담이나 잦은 교체, 신뢰 부족은 각각 5.3%, 4.1%, 2.4%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지역별로는 애로사항이 별로 없다는 경우는 75.0%로 광주가 가장 높고, 서울이 41.2%로 가장 낮다. 애로사항이 가장 많다는 서울의 경우는 갑자기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21.6%, 양육방식 23.5%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았다.

## 6. 일과 가정 양립

### 가. 막내자녀 출산 전후 취업

- 막내 자녀 임신·출산 당시 취업자는 총 61.3%이고, 출산 후 원직으로 복귀했다는 비율은 12.0%이며 휴직은 3.8%이다. 출산 직전 퇴직이 20.6%, 출산 후 퇴직 6.0%로 26.6%가 출산을 전후로 퇴직하였다.
- 출산 전 퇴직하거나 출산 후 직장을 그만 둔 경우 그 이유는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항목이 40.8%로 가장 높고,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31.8%로 비교적 높다.
- 막내 자녀 출산 시 취업 중이었던 경우,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육아휴직이 해당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24.6%로 가장 높고, 회사 분위기 때문이 23.1%이다.

### 나. 취업모의 자녀양육 애로사항

- 모가 현재 취업 중인 경우 현재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과중한 육체적·심리적 부담이 28.5%, 비용의 부담이 24.5%,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이 19.9%,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이 17.4%로 나타났다.
- 미취업 이유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 30.1%,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29.8%,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 21.9% 순으로 조사되었다.
  - － 서울의 경우,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고, 주위의 반대가 있었다는 응답이 10.0%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

## 7. 취약보육 필요성 및 대처

- 취약보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시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시간제보육이 54.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야간보육으로 28.5%이고 아픈 자녀 보육이 16.9%이며, 그 외 24시간 및 휴일보육이 상시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11% 정도이다.
  - － 야간보육, 아픈 자녀 보육,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상시로 필요로 한다는 비율이 높다.

- 다음으로 대처방안은 시간제보육은 보육시설 이용이 29.7%로 가장 높고, 그 이외는 모두 부모가 해결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존한다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20~29%로 조사되었다.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친인척에 의존한다는 비율이 높고 낮은 계층이 비혈연에 의존한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보육도우미 이용가구가 조사에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 8. 보육 관련 의견

### 가. 대리 보육자

- 영아는 부모가 자녀를 보살필 수 없을 때 가장 좋은 대리양육 방법으로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조부모 비율은 감소하고, 보육시설 비율은 증가한다.
  - 만1세 미만아는 조부모 59.4%, 비혈연 12.9%, 친인척 12.1%, 보육시설 9.2%이다. 만1세아는 역시 조부모가 44.5%로 가장 높고, 비혈연 17.1%, 친인척 16.0%순이다. 만2세아는 조부모가 28.2%로 가장 높으나, 어린이집도 24.9%로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 유아는 오후 2~3시까지 기관을 이용한 후 부모 퇴근시까지 집에서 다른 성인 보살피는 경우를 보기로 준 결과 44.5%가 이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했고, 기관 종일 이용 34.7%, 집에서 성인이 보살피는 경우가 10.2%이다.
  - 이는 유아의 경우에도 개별 서비스 욕구가 있음을 나타낸다.

### 나. 정책별 실시 필요성 의견

- 시간제보육, 보육도우미, 육아정보·상담 제공, 직장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의 6가지 육아지원 정책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기관 미이용 아동수당으로 73.4%이고, 가장 낮은 것은 탄력근무 제도로 57.3%이다.
- 6가지 문항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은 가장 많은 31.4%의 응답자가 과건보육의 확대 및 제도화를 선택했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정책을 25.4%, 시간제 보육 확대를 22.2%로, 이 세 가지

가 주요 정책과제임을 나타냈다.

- 보육도우미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비용이 적절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8.6%, 무조건 이용 23.8%로 총 70.4%가 이용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 보육도우미 이용의 주된 이유로 기관 이용 후에 늦게까지 보살피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56.5%로 가장 높다. 시설에 보내기 싫어서 부모대신 보육한다는 응답이 21.9%, 아이의 질병 및 장애로 인해 보육시설에 보내기 부적절한 경우가 7.9%로 나타났다.
  - 보육도우미가 보육시설과 대체 및 보완 기능이 있음을 나타낸다.

## 9. 정책시사점

- 저소득계층 아동은 단순 보육 이외에 가정 환경에서 오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저소득 가정의 모 취업률이 높고, 문화공간, 서점 등으로의 자녀 동반 외출 등이 제한적이고, 10% 정도는 자주 아이들만 두고 일하러 가거나 외출한다. 또한 초등학생도 25%는 방과후 시간을 그냥 집에서 보낸다고 응답하였고, 53%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저소득가정 보육비 지출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월 가구소득 중 15%를 보육비로 사용하고, 기관 이용자의 64.7%가 기관 이용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기관 미이용자 중 23.0%가 미이용 이유로 비용 부담을 들었다. 이는 정부의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느끼는 비용 부담은 큼을 나타낸다.
- 보육시설의 기능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
  - 미취업 이유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의견이 30.1%이다.
  - 보육시설 이용자의 13% 정도는 이용시간에 불만족하고, 이들의 30.7%가 이용시간의 다양성을 희망하였다.
  - 보육시설에서 부모의 취약보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부모들의 취약보육은 필요성은 높으나 대부분 부모가 해결하거나 조부모 친인척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다.

-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유치원 등 기관에 예방접종, 병원 데려가기, 아픈 아동 병간호, 야간연장보육 중 병간호가 65.9%로 가장 높고, 다음이 병원 데려가기로 41.5%이며, 예방접종이 36.3%, 야간 연장보육이 30.6%로 조사되었다. 즉, 육아지원기관에는 건강 서비스보다 야간 보육을 기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 개인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있다.

- 대리보육자로 0, 1세는 조부모, 유아는 오후 2~3시까지 기관 이용 후 집에서 성인에 의한 보호를 가장 선호하였다.
- 시설 미이용 이유는 기관과의 대체관계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그 비율은 30.6%이다. 장애, 질병 때문에 기관을 안 보낸다는 응답도 5.4%이다. 기관과 보완 기능으로 시설 이용의 전후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전체 27.6%이고, 초등학생을 방과후에 보살피기 위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 21.7% 순이다.
- 주요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으로 31.4%의 응답자가 파견보육의 확대 및 제도화를 선택했다.

### III. 보육도우미 사업의 성과

#### 1. 보육도우미 사업의 개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저소득층 135가정에 보육도우미를 파견하여 아동을 돌보게 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도우미는 종일제 영아도우미와 방과후 야간도우미로 구분하였다.
  - 보육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상담, 수해가구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이다.
- 보육도우미에게는 일정한 급여, 상해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특히 종일제 보육도우미는 의무적으로 3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 초기교육, 보수교육, 월례모임 등으로 보육도우미 교육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 2. 보육도우미 사업의 성과

### 가. 보육도우미 이용 및 성과

- 저소득층도 가정내보육 수요가 있고, 보육시설이 부모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였다.
  - 영아보육도우미 이용 이유는 인근에 보육시설이 있으나 퇴근이 늦을 때가 많아서 이용하기 부적절하다가 22.0%, 시설은 마음이 안 놓여서라는 응답이 18.6%이다.
  - 야간보육도우미 이용 이유로는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근에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고, 야간에 시설에 두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라는 비율이 각각 20.0% 순이다.
- 보육도우미 활동은 기본적인 보육지원, 양육 및 교육 환경의 개선, 가족 미시체계에 미치는 효과 등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 보육도우미가 파견된 이후 아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크다.
  - 도우미와 부모는 모두 아동의 식습관, 건강, 성격 밝아짐에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장애아동 치료 및 초등학생 성적 개선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다소 있다.
- 모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업무능률 향상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다음 취업, 근로시간 증가이며 직업 훈련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 부모와 가정에 미친 영향은 행복감 증대, 자녀와의 친밀감 증대, 소득 증대의 순으로 그렇다는 비율이 높고 부부갈등 완화가 가장 그렇다는 비율이 낮다.

### 나. 보육도우미에게 미친 성과

- 보육도우미 활동이 도우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도우미 활동 이후 전문 가정보육사로서의 자부심, 일의 즐거움, 행복감 증

대, 가정 화목 증대의 4가지 요인이 변화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가정보육사로 자부심이 생겼다는 데에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53.9%가 된다.

- 그러나 보육도우미 보수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92.2%로 높았다.

## IV. 향후 정책방향

### 1. 기본 방향

- 육아지원정책의 관점을 시설서비스 중심의 보육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 부모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가족형태와 취업양상의 변화에 따라 보육서비스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회를 마련한다.

### 2. 주요 정책

#### 가. 보육시설 기능 강화

- 보육시설에서 취약보육 기능이 약하므로 취약보육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한다.
  - 휴일보육과 시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은 취업모가 많은 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고, 시간제(일시)보육은 미취업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효과적이다.
  - 휴일보육과 24시간 보육은 산업체 밀집 지역, 시간연장보육은 출퇴근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대도시 주변의 소도시 중심으로 우선 실시한다.
  -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및 방과후보육은 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 저소득층 지역은 자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와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아동 및 가정의 문제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실시한다.
  -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아동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련사업의 세 가

지 영역의 사업을 실시한다. 아동지원서비스는 상담, 멘토, 특기활동, 치료프로그램, 정서발달지원, 위생건강서비스, 예방교육 등이고, 가족지원서비스: 상담, 교육, 문화체험, 법률상담 서비스 등이며, 지역사회연계서비스는 자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 서비스 지원 등이다.

-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 실시하되 그 외 일반 지역에도 실시를 검토하고 두 지역의 서비스 내용과 인력 배치에 차이를 둔다.
- 이러한 기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고, 전문요원이 있어야 하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어야 한다.
- 또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보육시설 시설장에 대한 처우로 수당, 위탁시 가산점 등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나. 가정내 보육지원 방안 마련

-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가정내 보육서비스 기회를 확대한다. 보육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있다.
  -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으로, 저소득층 아동 중 이러한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취업모 저소득가정 아동으로 방과후 보육,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휴일보육 등이 필요한 아동
  - 연령이나 기질 특성 상 단체보육보다는 개별서비스를 희망하는 아동
  - 보육시설 등 기관을 이용하지만, 이용 후에 부모 귀가시까지 성인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 등
- 보육도우미 제도 실시 방안을 모색한다.
  -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 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유사 지역사회 지원기능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구를 우선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사업체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보육도우미를 등록하고 교육받도록 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보육 기능을 실시하며, 지도 감독 등 사후관리를 한다.
  - 사업체에는 상근자 1인 이상이 필요하고, 직무 관련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상담이나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공간, 교재교구 수납공간 등 최소한

의 공간이 필요하다.

- 보육도우미 자격은 사업체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인증 받은 자로 한다.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준고령 여성도 심신이 건강하면 가능하다.
  - 교육은 단기교육으로 추진하고, 교육내용은 영아발달, 안전관리와 응급처치기술, 위생과 질병관리, 식생활 관리 등으로 구성한다.
  - 보육서비스는 종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수용한다.
  -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아이의 집을 우선으로 한다.
  - 자신의 집에서 돌볼 경우, 도우미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수를 최소 2인으로 제한한다.
  - 정부는 위탁제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도우미 이용료를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보편적인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 자녀 양육 정보 제공, 상담, 놀이활동 지원 기능 확대

- 육아 플라자, 육아 휴게실과 같은 기능을 확대하여 정보 제공 및 상담은 물론 부모와 자녀의 놀이활동 기능도 갖춘 공공인프라를 배치하여 부모의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 I. 서론

## 1. 필요성과 목적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중심의 정책이었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데 주 목표를 두어 왔다. 부모의 생활과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시되지만, 이 역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취약보육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영아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유아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아 및 야간보육, 방과후 보육에 대한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장애 영유아 아동의 경우에는 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영아의 경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보다 조부모나 비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다.

가정내 보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이유는 보육제공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모의 취미생활, 부부의 문화생활, 집안의 경조사, 급박한 외출 또는 육아스트레스로부터의 일시적 해방 등 부모의 다양한 욕구 및 상황에 따라 장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 아이들이 함께 보육 받는 것을 꺼리는 부모에게 적합하다는 점,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은 이웃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찾아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가정 보육서비스 제공자나 또는 아이의 가정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정보육은 비공식 부분으로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따라서 비혈연에 의한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정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저소득층 여성은 보육시설 이용을 할 수밖에 없으나 아동이 아프거나 장애아동 등으로 사정이 있거나 또는 보육시설 이용이 마땅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방치되는 현실에 놓이게 하며 임시직,

파트타임, 부업 등 불안정고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 보육서비스가 주부 및 준고령자에게 단기 훈련으로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이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로 자리매김하려는 경향이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고, YMCA가 시간제 보육을 추진하면서 가정에 보육제공자를 소개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7억 3천)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층 보육도우미 파견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로 보육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전국 4개 지역에서 실시되던 사업이 6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135 가구에 무료가정보육사가 파견되었다.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은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호받기 어렵거나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의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보육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써, 서비스 공급자인 실직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층은 보육부담 경감으로 간접적인 소득지원효과 및 경제활동 참여 여건이 개선되는 복합적인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 이용과 요구 등을 파악하고, 저소득층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가정보육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즉, 실제 저소득 가정이 겪고 있는 영유아 보육의 실태, 문제점,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저소득층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재가정보육사 파견사업의 제도화 필요성 및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는 영아 및 야간 보육 등 현재 보육시설에서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보육서비스를 창출하는 보육서비스 대안에 대한 제도화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보육실태를 파악하고 취약보육의 대안보육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민간에서 실시하는 가정내 보육 관련 사업을 검토한다. 여성가

족부 아이돌보미 사업, YMCA가 실시하는 아가야 사업 등 이다.

둘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보육실태를 파악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한 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한다.

셋째,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파견한 보육도우미 이용 및 보육도우미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다.

넷째 프랑스, 미국, 일본 3개 국가의 가정내 보육 관련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저소득 가정의 보육실태 및 요구,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 외국 가정내 보육 제도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취약보육에 대한 대안보육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통계 자료 수집, 3종의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 가. 기존 자료 수집 및 검토

관련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내외 가정내 보육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 나. 설문조사

##### 1) 가구 설문조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국여성노동자회 지부가 있는 6개 지역 보육도우미 사업 대상자, 자활, 산모바우처 사업 대상자 등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20만원이다. 조사 규모는 한국여성노동자회 6개 지부가 지역당 200부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와 자기식 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된 항목은 가구 및 부모 특성, 자녀 양육 특성, 기타 총괄 및 의견의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가구 및 부모 특성은 가구원, 주택, 경제적 특성과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로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녀 양육 특성은 기관

이용, 혈연에 의한 지원, 비혈연에 의한 보육으로 구성하였고,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을 부분적으로 포함하였다. 이외 일과 가정의 양립, 가구 부담 비용, 보육도우미 관련 문항,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였다(표 I-3-1 참조).

〈표 I-3-1〉 국공립보육시설 조사 설문 내용

구분	내용
가구 및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특성: 가구원수, 보육대상 아동수, 가족유형, 주택 특성,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li> <li>- 부모특성: 연령, 학력, 건강상태, 고용형태, 근로시간, 급여, 퇴근시간</li> </ul>
자녀 양육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아동 특성: 연령, 성별, 건강상태, 이용하는 기관, 돌보는 사람</li> <li>- 부모 양육태도: 일반적 태도, 문화, 놀이 동반외출 빈도, 서점 동반 외출 빈도, 체벌, 자녀 친구 이름 인식, 아이들만 두는 경우</li> <li>- 취약보육 필요: 야간보육, 병아보육</li> <li>- 기관이용: 이용하는 기관 종류, 이용하는 이유, 주당 이용 일수, 평일 이용시간, 이용시간 만족도, 등원 방법, 등원 소요시간, 보육료, 소득대비 부담되는 정도, 보육료 감면, 취약보육 기대</li> <li>- 친인척 보육: 제공자 및 이용형태: 돌보는 사람, 돌보는 장소, 비용 지불 여부, 지불 액수, 만족도 및 애로</li> <li>- 비혈연인 보육: 제공자: 돌보는 사람, 돌보는 장소, 결혼상태 및 자녀 유무, 자격유무, 비용 지불 여부, 지불 액수, 애로사항, 만족도, 이용 일수 및 시간, 이용경로, 이용이유</li> <li>- 초등학생 방과후: 방과후 이용 프로그램, 혼자 보내는 시간</li> </ul>
기타 총괄 및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과 가정 양립 관련: 막내 출산후 복직, 육아휴직: 이용여부, 육아휴직 미이용 이유, 취업 시 자녀양육 어려움, 미취업 이유</li> <li>- 가구 부담: 보육비용, 보육에 소요되는 월 총 비용, 총비용의 가수 소득 대비 비율, 정부 지원 월 총 비용, 보육도우미; 보육도우미 이용 의사: 영아, 유아, 초등학생, 장애아, 보육도우미 비용 분담의사</li> <li>- 기타: 요구 및 애로사항</li> </ul>

조사는 2007년 6~7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 기준일은 4월 30일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1,020개 가구에 대한 조사표가 수거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148개, 인천광역시 200개, 대구광역시 191개, 부산광역시에서 회수된 조사표가 203개, 전주시가 106개, 광주광역시 172개이다(표 I-3-2 참조).

〈표 1-3-2〉 설문조사 완료 수

구분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전체
가구수	148	200	191	203	106	172	1020
보육도우미 이용가구수	19	36	29	27	13	8	132
보육도우미수	19	34	29	25	3	8	128

조사된 가구 중 132개 가구는 보육도우미 이용 가구이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19개, 인천광역시 36개, 대구광역시, 29개, 부산광역시 27개, 전주와 광주가 각각 13개, 8개이다.

## 2) 보육도우미 조사

활동하는 보육도우미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 도우미 특성, 도우미 활동, 돌보는 자녀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도우미 활동은 활동에 따른 가정내 효과, 아동의 변화, 애로 사항, 보수의 적절성, 교육의 충분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조사 역시 한국여성노동자회 6개 지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였다(표 1-3-3 참조).

〈표 1-3-3〉 보육도우미조사 설문 내용

구분	조사항목
도우미 특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학력, 결혼상태 및 자녀 양육경험, 자격, - 가구소득
도우미 활동	- 활동상태: 활동지역, 활동기간, 급여 - 효과 및 만족도: 만족도, 도우미 와 도우미 가정 내 변화, 아동의 변화, 애로사항 - 보수의 적절성 및 적정보수 수준 - 교육: 양성 초기교육의 충분성, 재교육의 충분성
돌보는 자녀	- 아동 특성: 아동수, 아동 구분, 연령 및 학년, 질병상태, 돌보는 시간

조사완료수는 128개로,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19개, 인천광역시 34개, 대구광역시 29개, 부산광역시에서 회수된 조사표가 25개, 전주와 광주가 각각 3, 8개이다(표 1-3-2 참조).

## 다. 가정 심층면접

보육도우미가 파견되어 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참여자들은 한국여성노동자회를 통하여 모집되었다. 또한, 각 지역의 보육 지원 상황과 전국 각 지역 어머니들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을 비롯하여 경상도 한 지역과 전라도 한 지역에서 골고루 표집 되었다. 최종적으로 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서울 4명, 인천 5명, 대구 3명, 전주 2명으로 총 14명이었다. 이중 종일제 영아 보육지원을 받는 어머니는 8명, 반일제 방과 후 보육지원을 받는 어머니가 6명이었다. 종일제 보육지원을 받는 어머니 중 3명이 장애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방과 후 지원을 받는 어머니들 중 5명이 이혼/별거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 보육지원을 실시한 시기에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들이 보육지원을 경험한 기간은 2개월부터 1년 5개월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모두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중 10명이 전일제로, 4명이 시간제로 취업하고 있었다<sup>1)</sup>.

면접 내용은 먼저 전체적인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들로 시작하여, 보육 지원 전의 아동과 관련된 질문, 어머니의 일에 관한 질문, 그리고 전체 가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어서 보육 지원 후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보육지원 후 변화도 역시 아동, 어머니의 일, 그리고 전체 가구에서 생긴 변화를 중심으로 질문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육 지원에 관한 제안 점에 관련된 질문들을 포함시켰다. 아동에 관한 질문은 아이 양육에 관한 질문, 아이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아이 자체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 라.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으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조사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중앙 및 서울/인천/대구/부산 4개 지역에서 토론회(여노협에서 추진)를 실시하여 제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 4. 가정내보육 지원 사업 현황

가정내 보육지원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돌봄 노동이나 사회적 일자리가 사회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그 동안 민간 비영리단체나 영리사업체를

1) 면접과 제 특성은 제5장에서 표로 제시하였음.

중심으로 실시하던 가정내 육아지원이나 파견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서 실시, 또는 계획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보육도우미 사업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05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도우미 파견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전국 6개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되어 저소득 135가구에 무료 가정보육사가 파견되었다. 사업관리는 중앙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외에 6개 지부가 주체가 되고 있다.

보육도우미 파견 대상 가정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장애아가 있는 가구 등을 우선하였다.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영아보육서비스와 야간보육서비스의 두 가지이다.

기타 보육도우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장에서 별도로 기술하였다.

### 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

#### 1) 사업 수행 및 관리

앞에서도 간략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아이돌보미를 교육하여 0세~만 12세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파견해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지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이 사업의 체계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각 시·도 및 시·군·구 행정 담당자, 그리고 사업시행의 주체인 중앙 및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지원기관으로 사업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돌보미 및 이용회원 DB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담당자 교육, 사업관리 평가,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시행기관으로 지방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돌보미 모집·심사, 면접, 양성 및 파견, 관리 등을 담당하고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서비스의 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중앙건강가정센터가 각 기관에 시달한 지도 및 감독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보미 활동일지를 기간 내 제출 받아 보관하고, 매 격주마다 도우미들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회

의록을 작성·비치한다. 또한 현장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 가정의 의견을 청취, 도우미 회의를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시 이를 반영한다. 둘째,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 가정에 전화로, 연말에는 심층 면접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자원 봉사자, 돌보미 등을 수시로 돌봄 현장에 파견하여 점검하고, 면접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해 사후 서비스의 질을 관리한다.

2007년도 예산이 39억 5천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70%인 26억원이고, 30%인 13억 5천만원이 지방비이다.

## 2) 아이돌보미 자격, 교육 및 근무조건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65세 이하 여성이다. 돌보미 교육은 교육시간이 일반은 40시간이며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등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0시간이다. 교육시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수료로 인정하고 있다. 우대자 교육과정은 40시간 중 후반기부터 참여한다.

〈표 1-4-1〉 아이 돌보미 교육내용

교육내용(40시간)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발달의 원리이해(1) (2)
영·유아 교육방법(동화구연, 미술 지도, 음악지도, 언어지도)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 지역사회네트워킹 및 사례실습
가족지원 사례 면접실습, 육아상담 사례실습
MBTI를 통한 성격유형의 이해, 성격유형에 따른 자녀양육 스타일
아이돌보미 전문요원의 역할과 기본업무 및 방문예절
자녀의 응급처치 방법 및 실습, 자녀의 건강관리지원
자녀의 식습관 지도방법
부모교육: 바람직한 자녀양육행동
부모상담 기법 및 효과적인 대화기법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관리 사례토의
아동 문제 행동과 육아지원 기술 사례 토의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시간당 5,000원이고, 주말, 심야 시간대에는 추가 수당을 받는다.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00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비로 아이에 대한 배상·상해 보험 및 돌보미에 대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다.

돌보미가 활동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비스 질이 낮아 불평 신고가 3회 이상 접수 된 경우, 또는 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등급 받는 경우에 돌보미 활동

을 중지시킬 수 있다.

### 3) 이용 비용

부모가 부담하는 이용 비용은 저소득 가정은 시간당 1,000원, 일반가정은 시간당 5,000원이며 일반 가정의 경우 지역 사정에 따라 요금 조정 가능하고, 한 달에 80시간 이용이 원칙이다. 여기서 저소득 가정은 차상위 이하 가정으로 가구소득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의 130% 이하인 가정을 의미한다.

〈표 1-4-2〉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시 간	아동 1명		아동 2명		비 고
	저소득가정	일반	저소득가정	일반	
기본 2시간	2,000	10,000	3,000	15,000	▶ 회원 회비: 없음
기본 3시간	3,000	15,000	4,500	22,500	▶ 토, 일, 공휴일은 심야
추가시간당	1,000	4,000	1,500	6,000	시간(오후 9시 ~ 오전
심야시간당	1,500	5,000	2,500	7,500	8시) 요금 적용

주: 저소득가정은 차상위 이하 가정임.

### 4) 아이돌보미 활동 및 지침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이돌보미의 가정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용자 가정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한다.

아이돌보미 활동은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이며,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여성가족부는 도우미 준수 사항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서비스 종료 후 활동일지 작성이다. 지속적 서비스의 경우 활동일지는 7일 단위로 하고, 일시적인 서비스의 경우 3일 이내에 직접 방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아이돌보미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과 종료 후 센터 실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무자 업무시간 이후 아이돌보미의 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 날 출근시간 후 3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하였다. 셋째, 돌보미는 봉사하는 자세로 이용 가정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나.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제도

### 1) 사업 수행 및 관리

경기도가 2008년 1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란 숙련된 전문보육교사를 0세아 가정에 파견하여 1:1로 0세아를 보육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교사의 선발과 관리, 파견 유형을 ‘전담기관 관리운영’과, ‘기존보육시설 관리 운영’으로 나누고 있다. 전담기관은 경기도내에 산재한 9개 보육정보센터를 말하며 기존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보육시설 중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을 희망해 시장군수가 선정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보육정보센터에는 사업관리 인력을 고정배치하고, 사업 참여 시설장에게는 월 30만원의 관리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총 5억9천180만8천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육대상은 생후 12개월 미만인 0세아 보육을 원칙으로 하되, 아이정서를 감안하여 24개월까지 보육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제·자매 중 장애아나 미취학아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보육료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하여 책정하며, 기타 상호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 2) 가정보육교사 자격, 교육, 근무조건

가정보육교사의 자격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경력 5년 이상의 교사가 도에서 실시하는 가정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주어진다. 도·시·군 보육정보센터에서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보육교사를 선발하며 40시간의 가정보육교사 전문과정교육을 실시 후 현장에 배치한다. 경기도는 2008년 370명을 예상하고 있다.

교사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교사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이용 부모는 0세아의 상해 및 건물 화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보육장소는 영아의 집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와 교사간 협의를 통해 교사의 집에서 가능하다. 보육시간 역시 부모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했다.

## 다. YMCA 아가야 사업

가정내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교육하거나 이용자와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는 매우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업인 아가야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YMCA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 1) 사업수행체계

YMCA에서는 ‘마을과 아이들’ 사업과 ‘아가야’사업을 통하여 베이비시터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과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아가야사업은 시간제 보육공간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시에 베이비시터 파견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다. 아가야 파견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가야는 3년 기한으로 재정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 중앙에 지원센터가 있고 전국 YMCA 16개 개소에 시간제 육아센터를 두고 시간제 보육을 하고 동시에 가정에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 파견 이외에 영유아의 즐거운 성장을 돕는 놀이 안내시터, 방학, 노는 토요일 등에 체험활동 도우미시터, 교회, 동우회, 친목회, 공공기관 등 행사시 혼합연령지도가 가능한 기관 파견 시터, 보조교사로 도움을 주는 보육시설 파견 도우미 시터 등 다양하다.

### 2) 자격, 교육 및 근무조건

베이비시터로서의 자격은 보육·교육 유자격자를 우선 채용하되, 저소득 실업 여성, 한 부모, 실질 가장 여성, 고학력 실업여성, 30~40대 고졸 여성이다. 교육은 3개월 80시간의 양성과정교육과 1개월 30시간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베이비시터는 회비를 센터에 납부하며, 센터는 이를 시터들의 교육 및 활동에 사용한다. 회비는 월수입 20만원 미만은 월 회비가 없고, 월수입 20만원~50만원은 월 1만원, 월수입 50만원~90만원은 월 2만원, 월수입 90만원 이상은 월 회비 3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아가야에 회원으로 가입한 베이비시터는 돌봄(care)서비스에서 발생할 불의한

사고에 대비하여 ‘돌봄 복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약관에 베이비시터 자격 상실 조항을 두어서 베이비시터 월1회 정기모임에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베이비시터가 이용절차 및 요금 등에 관한 제반 서류 등의 제출에 관하여 불응하였을 경우, 베이비시터는 약관에 있는 의무와 복무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로 재교육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와 태도가 불량할 경우, 베이비시터가 고객과 예약 약속을 해놓고 이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가 3번 이상 발생할 경우, 베이비시터의 승인절차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등에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이용 비용은 대부분이 그대로 베이비시터의 수당이 된다.

### 3) 이용 비용

이용비용은 아동수별로 구분되어 있다. 아동 1명을 기준으로는 최소 3시간에 16,000원이고 시간당 5000원이 추가된다. 야간 및 휴일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이외종일, 1박 등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다양하게 서비스별 비용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표 1-4-3〉 보육도우미 이용 비용

단위: 천원

구분	시간	요금	비고
1명	기본 3시간	1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 일, 공휴일은 심야시간 적용 (심야 오후10시~오전8시)</li> <li>▪ 일, 공휴일 휴무</li> <li>▪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근무</li> <li>▪ 할증요금 : 평일 아침 9시 이전, 저녁9시 이후 / 토요일 6시 이후</li> <li>▪ 일요공휴일-시간당(1명)1,000원 추가</li> <li>▪ 교통비 : 아침 8시 이전 3,000원 밤11시 이후 5,000원 밤12시 이후 10,000원</li> </ul>
	추가시간당	5,000	
	심야시간당	6,000	
	평일 8시간	41,000	
	1박	73,000	
쌍둥이	기본 3시간	19,000	
	추가시간당	6,000	
	심야시간당	7,000	
	평일 8시간	49,000	
	1박	83,000	
3명	기본 3시간	22,000	
	추가시간당	7,000	
	심야시간당	9,000	
	평일 8시간	57,000	
	1박	98,000	
월급제	월-금(오전9시~오후6시)	900,000	▪ 아이1명 추가당 100,000
	월-토(오전9시~오후6시)	1,000,000	▪ 쌍둥이1명추가당 150,000

#### 4) 활동 및 지침

베이비시터 약관을 정하여 아가야 베이비시터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다. 약관 제5조 베이비시터의 의무와 복무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 가정에 방문할 경우 아가야 앞치마를 반드시 착용하고, 업무시작 10분 전에 도착해야 하고, 육아일지 및 도우미 출퇴근 확인사항을 매일 작성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베이비시터 섭외 시 결정된 금액 외에 팁이나 교통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면접을 보거나 시터로 활동하는 동안 센터에 대한 불평이나 이용금액에 대한 불평을 하여서는 안 되며,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동안 알게 된 센터 및 이용자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베이비시터는 근무 중 무단이탈 하거나 음주나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이용자 집으로 불러드려서는 안 된다.

#### 5) 책임과 의무

베이비시터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상해에 대하여는 센터는 책임 지지 않는다. 사고 및 도난에 대한 책임으로 베이비시터는 업무 중에 강도, 절도, 사기, 폭력행위 등을 행함으로써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 당사에게 입힌 재산상, 신체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배상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고, 베이비시터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시터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센터도 도우미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베이비시터가 제공한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 5. 선행연구

### 가. 사회적 격차 및 지원 관련 연구

보육 및 유아교육분야에서 집단간 격차 관련 연구로 소득계층과 관련된 연구들이 비교적 많고, 시설유형별,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김승권, 2001)에서는 소득수준이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및 학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소득수준별 영아와 유아 육아기관 이용비용 규모 및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2004년(서문희 외, 2005)에는 부모의 소득계층별 보육료 부담 정도를 검토하고 소득계층별 보육료 차등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통계청 2003년도 도시가계조사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 분석, 구조화된 분석틀에 의한 정책 검토, 외국의 차등보육료 제도 검토 및 시사점 도출 등의 방법으로 현 보육료의 산출 근거 및 새로운 산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연차별 차등보육료 확대 실시 모형을 개발하여 모형별 장단점을 제시하고 소요예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유아교육분야에서는 1997년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제5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소득계층별 교육 격차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유아교육투자우선지역의 선정을 건의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유아교육투자우선지역 선정 연구를 실시하였고(나정 외, 2001), 2003년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이후 나정과 김미숙(2004)은 서울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저소득 가정 유아의 가정환경 파악, 저소득층 지역 유아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파악, 저소득층 지역 유아의 일과와 부모의 자녀 교육실태 파악, 저소득층 지역 보육·교육기관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 일반지역 및 저소득지역의 유아 일과를 비교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임재택 등(2004)도 부산지역 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영유아의 교육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 외에, 이해영 등(2002)이 저소득지역의 교육복지 욕구 조사의 일부분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시간운영과 교육비,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박기백 등(2005)은 2004년 보육·교육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가구를 소득 10분위별로 비용지출 가구 영유아의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등 4가지 유형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편, 보육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보육재정 지원 방식의 문제와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여 왔다. 즉,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만큼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반면에 민간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료를 받아야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는 이론적으로는 불평등하지만 재정수지는 맞추어져 있으나, 불평등 그 자체가 불러오게 되는 재정수지상의 괴리는 이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시설 차원에서 운영비 수준의 차이를 계수로 환산하여 민간 시설의 수입은 실제 보육료와 현원율을 적용하면 수입상대지수는 0.77이 된다(서문희 외, 2002). 이러한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안으로 아동별 지원방식이 제기되어 왔고(백선희·김교성, 2001; 변용찬 외, 1998; 서문희 외, 2002), 2004년 대통령자문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가 국정과제보고회에서 보고한 제1차 육아지원 방안에서 이를 기본적 정책방향으로 채택한 바 있다.

유아교육분야에서는 1997년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제5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유아교육이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에도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국공립 수준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개념으로 도입하되, 일정액의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여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불보증전표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후 1999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만 5세 무상유아교육은 보육까지 확대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선택한 유아의 부모에게 일정액의 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sup>2)</sup> 또 나정 외(2005)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에 공적재정지원을 받는 유아의 비율 및 유아 1인당 교육비와 보육료에서의 격차,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인당 교육비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비간의 격차가 큼을 지적하고 재정지원 측면에서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별 격차에 대해서는 시·도별 특수사업 규모나 보육아동 1인당 보육비용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 서울을 제외한 일률적 재정분담률이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재정분담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백선희·김교성, 2001; 서문희 외, 2006).

## 나. 대안적 보육서비스 관련 연구

가정보육(provider's in-home care)이란 보육제공자의 가정에서 소규모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형태로서, 많은 국가들이 가정보육을 제도권 안에 있는 시설보육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정부가 관리하고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보육은 친숙한 환경과 분위기, 지역 내 가까운 가정에서 제공되므로 보육

2) 행정편의상 유치원에서 일괄 수령함.

시간의 융통성과 시설 이동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영아의 보육을 위해서는 가정 내 보육이 시설보육보다 선호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 내 보육은 제도권 외 보육으로 주로 친인척이나 이웃주민, 혹은 민간업체에서 파견된 인력(베이비시터)에 의해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내 보육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가정보육모, 베이비시터, 그리고 비영리 가정보육도우미 파견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정보육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외국의 가정보육제도를 검토하고 가정보육모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서문희 외, 2002). 이 연구에서는 영아보육이 시설보육보다는 가정보육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부모들도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지만 우리나라 가정보육은 대규모로 시설보육화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소규모 가정보육 실시 및 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옥 외(2004)는 육아지원센터를 통한 가정보육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아보육 수요자인 0세 영아 자녀를 둔 취업모들의 영아보육 현황과 가정내 보육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하고, 가정보육교사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보육전문가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 사업 실시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육아지원센터는 가정보육교사의 자기 집 보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보육도우미에 의한 가정 내 보육을 지원한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취업모의 양육상담과 육아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에서의 영아 양육과 보육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육아지원센터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내 보육정보센터, 적정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벤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일종의 벤처기업의 하나로 베이비시터 파견사업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영리로 운영되면서 정부의 규제를 일체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영리 부분에서의 파견 서비스인 베이비시터제도에 대해서 베이비시터회사 설치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베이비시터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정의 실태를 조사하여 베이비시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서문희 외, 2002).

한편 최근에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시범사업, 공동모금회 지원의 저소득층 가정보육사 등 비영리 파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관한 제도화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성지미 등(2006)은 노동부 지원으로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영아보육을 설정하고, 사업 유형으로 서비스제공자의 집에서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탁아모형, 영아의 집에서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베이비시터형, 그리고 시설형태의 영아보육센터형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이들 모형의 사업운영방식을 보면 영아보육센터모형은 영아보육센터에서 보육교사 이외에 여성직업훈련기관에서 100~120시간 영아발달·안전 및 보육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자격을 인증 받은 유자녀 기혼여성을 보조요원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형으로, 이용자는 기혼취업여성 또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한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여 근로유인(work incentive)을 제고한다. 탁아모형은 100~120시간 정도 교육받은 2인1조 1팀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가정에서 4명까지 보육한다. 이 경우 제공자 1명이 설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주거환경제공 및 가족사항 및 동의가 전제 조건이다. 베이비시터형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가정보육교사 1인이 영아의 집으로 파견되는 형태이다. 일정한 보육보조원으로서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신분보장이 확인되는 것이 전체조건이다. 이들 모형은 아동보다는 성인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아동 관점에서의 문제 소지가 있다. 연구진도, 표준교육프로그램과 자격에 대한 규정, 관리 주체 선정 및 법제화, 안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정립 등을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민자 등(2006)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 내 육아지원서비스의 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일본을 중심으로 비영리 가정내 보육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사업 여건을 파악하고 적절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며, 경영과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아이돌보미 등록 대상범위 설정, 등록기준, 아이돌보미 양성 프로그램의 교과 기준안, 이용요금 기준과 보험 등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도우미 사업 설계에 반영되었다.

한편으로 여성노동자협의회는 공동모금회 지원의 저소득층 가정보육사 등 비영리 파견 사업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이후의 긍정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1차년도 수혜자의 대다수가 신빈곤층으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한 부모 가구이며, 세 명 중 1명이 질병이나 장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아보육의

경우 세 가구 중 두 가구가 서비스를 받기 전 본인이 직접 아이를 돌보았으며, 야간보육의 경우 세 가구 중 1가구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아이들끼리만 집에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긍정적 변화로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14.5%에서 92.1%로, 아이가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27.7%에서 69.7%로, 요즘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19.7%에서 67.1%로 증가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97.3%가 앞으로도 계속 보육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 Ⅱ. 소득계층별 육아지원 이용 및 비용 격차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 제 특성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격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전체 이용을 아동단위와 가구단위로 분석하고 이어서 각 서비스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sup>3)</sup>

분석은 먼저 소득계층, 지역, 모 학력, 모 취업여부, 모 직종 등 주요 독립변수별로 집단간 이용 및 비용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중요도 및 설명력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1.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아동 1인을 기준으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과 아동 1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집단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육아지원서비스는 보육교육기관, 특기보습학원, 개별그룹방문지도·학습지(이하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보육교육기관은 유치원, 보육시설, 반일제이상 학원과 선교원이 포함되고, 특기보습학원은 단순한 특기와 보습을 위한 학원, 방문지도·학습지는 개별 및 그룹지도를 모두 포함하고, 개인양육지원은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비공식 영역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였다.

#### 가. 이용

영유아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다. 조사된 서비스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득기준 10분위로 이용률을 비교하면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에서는 48~67%에 분포하며 소득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지만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에서는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기보습학원은 2.7~19.7%, 방문지도·학습지는 12.0~41.0%로 소득계층과 정

---

3) 이 부분은 육아정책개발센터(서문화·나정·최혜선, 2006)에서 수행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 비용 적정분담 방안」 보고서 중 소득수준별 격차만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적 관계를 나타내고, 개인양육지원은 3분위가 최저이고 그 전후로 높아지는 완만한 곡선을 나타낸다.

소득 상하위 10% 집단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10분위 이용률을 1분위 이용률과 대비하면 특기보습학원은 각각 19.7%, 3.4%로 5.8배, 방문지도·학습지는 각각 36.2%, 12.0%로 3.0배, 개인양육지원은 각각 34.2%, 17.9%로 1.9배로 10분위의 이용비율이 높다(표 II-1-1, 그림 II-1-1 참조).

다음으로 취업모의 경우는 전체 평균에 비하여 방문지도·학습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나타낸다. 특히 개인양육지원은 전체 20.2%, 취업모 48.1%로 2배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취업모 서비스 이용률의 소득분위별 차이는 소득순위별로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보육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소득 상하위 10% 집단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특기보습학원 4.9배, 방문지도·학습지 6.6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4.1배이다(표 II-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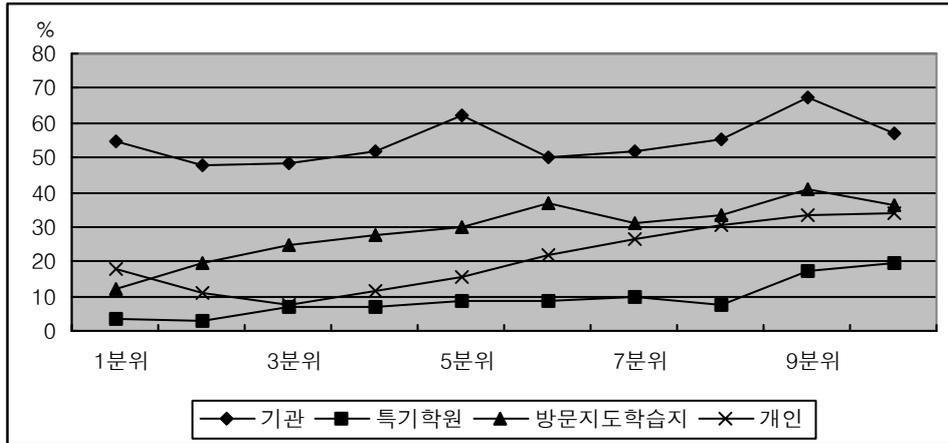
〈표 II-1-1〉 전체 및 취업모 영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전체					취업모				
	보육 교육 기관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보육 교육 기관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전체	54.1	8.7	29.6	20.2	(2,961)	69.1	10.6	27.6	48.1	(957)
1분위	54.5	3.4	12.0	17.9	(233)	66.7	-	5.3	16.1	(56)
2분위	47.8	2.7	19.5	10.8	(335)	67.2	3.5	24.6	31.0	(58)
3분위	48.2	6.8	24.8	7.5	(307)	82.2	12.3	20.5	23.3	(73)
4분위	51.6	6.7	27.6	11.5	(312)	82.5	8.8	23.8	38.8	(80)
5분위	61.9	8.7	30.0	15.7	(310)	76.7	5.8	18.6	42.7	(103)
6분위	50.3	8.5	37.1	21.6	(342)	67.3	15.9	29.9	55.1	(107)
7분위	51.8	9.7	30.9	26.3	(278)	63.6	10.8	31.8	54.5	(110)
8분위	55.0	7.6	33.6	30.3	(289)	61.2	5.8	27.3	64.2	(120)
9분위	67.2	17.2	41.0	33.6	(244)	70.2	16.3	38.7	51.8	(140)
10분위	56.9	19.7	36.2	34.2	(218)	59.8	17.0	34.9	66.4	(107)
$\chi^2(d=9)$	38.4**	82.7**	87.1**	151.5**	-	25.3**	28.4**	35.5**	83.2**	-
10분위/ 1분위	1.0	5.8	3.0	1.9	-	0.9	4.9#	6.6	4.1	-

주: \*\* $p < .01$ , #는 10분위/2분위임.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1-1] 영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표 II-1-2>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 교육 기관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보육 교육 기관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전 체	12.1	9.2	23.4	(1,171)	81.7	14.4	42.9	18.2	(1,790)
1분위	21.6	4.6	16.4	( 87)	74.5	5.5	15.9	18.9	( 145)
2분위	6.5	3.6	8.0	( 138)	76.6	4.6	31.0	12.8	( 197)
3분위	7.7	7.7	6.4	( 130)	78.0	11.9	37.3	8.3	( 177)
4분위	7.7	6.2	9.4	( 129)	83.0	11.5	42.9	13.1	( 182)
5분위	22.0	10.1	17.9	( 108)	83.6	13.4	40.8	14.5	( 201)
6분위	8.8	18.2	25.8	( 147)	81.4	14.4	51.5	18.4	( 195)
7분위	9.2	7.3	33.3	( 109)	79.3	16.0	46.5	21.6	( 164)
8분위	13.0	9.6	40.4	( 14)	82.8	12.6	49.7	24.2	( 174)
9분위	25.8	12.4	50.0	( 89)	91.0	26.9	57.1	24.7	( 155)
10분위	9.6	15.7	42.9	( 82)	85.9	31.1	49.6	29.2	( 135)
$\chi^2(df=9)$	44.0**	28.5**	137.9**	-	21.9**	78.9**	82.8**	42.9**	-
10분위/1분위	0.4	3.4	2.6	-	1.2	5.7	3.1	1.6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II-1-2>는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서 소득분위별 서비스 이용률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유아는 4개 유형의 서비스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

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1분위 대비 10분위의 비율이 특기보습학원 5.7배, 방문지도·학습지 3.1배이다. 영아는 보육교육기관과 방문지도·학습지는 분위별로 일관성은 없고 개인양육지원은 1분위가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대체로 분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1분위 대비 10분위의 비율이 방문지도·학습지 3.4배, 개인양육지원 2.6배로, 상하위 10%의 차이를 나타냈다.

## 나. 비용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1분위 73,500원, 10분위 279,900원으로 10분위가 1분위의 3.8배이다. 소득 대비 비율은 1분위가 8.6%로 다소 높고, 그 이외는 분위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 지출 대비 비율은 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다(표 II-1-3, 그림 II-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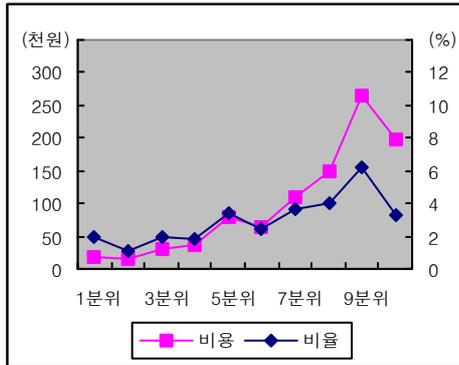
〈표 II-1-3〉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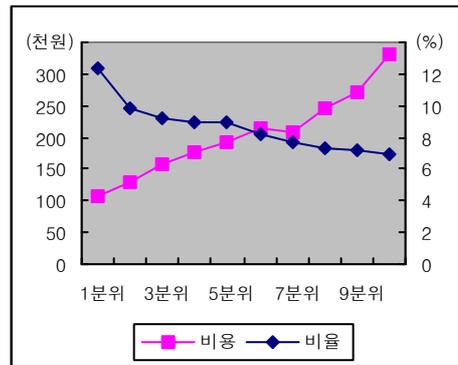
구분	전체(수=2,961)			영아(수=1,171)			유아(수=1,790)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전체 평균	157.6	6.4	8.7	90.6	2.9	4.5	201.4	8.7	11.4
표준편차	174.8	7.5	9.9	180.8	5.4	8.9	155.9	7.8	9.5
1분위	73.5	8.6	7.8	18.0	1.9	1.6	107.0	12.4	11.6
2분위	81.6	6.2	6.7	16.1	1.1	1.3	127.9	9.9	10.6
3분위	103.3	6.1	7.2	30.5	1.9	2.4	157.0	9.2	10.8
4분위	119.2	6.0	7.7	37.1	1.8	2.3	177.4	9.0	11.4
5분위	152.9	7.0	9.3	79.2	3.4	5.0	192.6	9.0	11.6
6분위	149.3	5.7	8.3	63.1	2.4	3.7	214.9	8.2	11.7
7분위	170.5	6.1	8.6	109.8	3.7	5.1	209.5	7.7	10.9
8분위	206.3	6.0	10.1	147.7	4.0	7.5	244.8	7.3	11.7
9분위	270.0	6.9	11.1	266.0	6.2	10.1	272.2	7.2	11.7
10분위	279.9	5.6	10.2	198.8	3.3	7.8	329.6	7.0	11.6
F	51.8**	3.3	5.8	27.4**	8.5**	13.3**	33.0**	6.7**	0.4
10분위/1분위	3.8	0.7	1.3	11.0	1.7	4.9	3.1	0.6	1.0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영아>



<유아>

[그림 II-1-2]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영아와 유아로 구분해 보면 영아는 비용이 1분위 18,000원, 9분위 266,000원으로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매우 크다. 10분위의 비용도 1분위의 11.0배가 된다.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도 대체로 분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차이를 나타낸다. 유아의 비용은 1분위 107,000원, 10분위 329,600원으로 10분위가 1분위의 3.1배이다. 소득 대비 비율은 분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고, 지출 대비 비율은 모두 11% 수준이다.

다음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보면 소득과 소요되는 비용의 관련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 소득별 육아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격차를 보면 유아보다 영아에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 1분위 대비 10분위가 영유아 전체는 2.8배, 영아 4.6배, 유아 2.6배로, 유아보다 영아의 비용 격차가 크다(표 II-1-4, 그림 II-1-3 참조).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는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인데,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 보면 차이가 있다. 유아에서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용에 따른 비용도 많아지고 동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영아의 경우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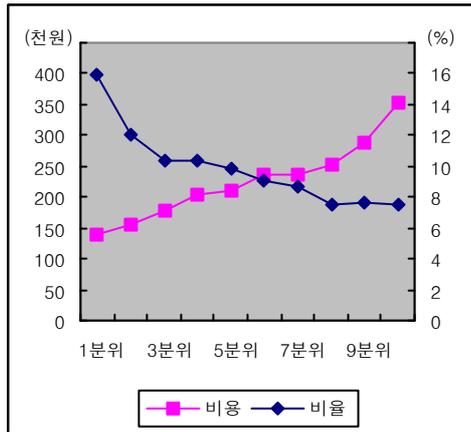
〈표 II-1-4〉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지불아동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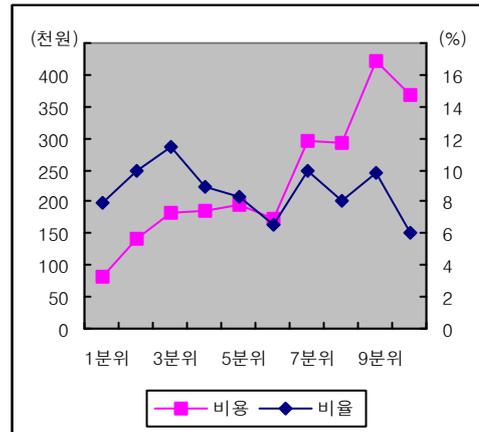
구분	전체(수=1,985)			영아(수=393)			유아(수=1,592)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전체	235.0	9.6	12.9	269.6	8.5	13.5	226.4	9.8	12.8
표준편차	165.4	7.3	9.5	221.5	6.2	10.7	147.2	7.6	9.1
1분위	130.0	14.7	13.9	80.6	7.9	7.3	138.6	15.9	15.0
2분위	153.8	11.8	12.7	141.2	9.9	11.3	155.1	12.0	12.8
3분위	179.3	10.6	12.5	182.9	11.4	14.6	178.8	10.4	12.3
4분위	202.0	10.2	13.0	186.4	9.0	11.8	204.5	10.3	13.2
5분위	208.2	9.5	12.7	193.9	8.3	12.2	211.7	9.9	12.8
6분위	222.3	8.5	12.3	174.2	6.6	10.3	236.9	9.1	12.9
7분위	249.7	9.0	12.6	294.6	10.0	13.6	237.5	8.7	12.3
8분위	263.7	7.6	12.8	293.0	8.0	14.8	253.7	7.5	12.2
9분위	324.2	8.2	13.3	421.8	9.8	15.9	287.0	7.6	12.3
10분위	357.9	7.2	13.0	369.5	6.1	14.4	353.8	7.5	12.5
F	38.9**	15.4**	0.4	11.4**	2.8**	2.1*	29.2**	15.5**	1.0
10분위/1분위	2.8	0.5	0.9	4.6	0.8	2.0	2.6	0.5	0.8

주: \*  $p < .05$ , \*\*  $p < .01$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영아〉



〈유아〉

[그림 II-1-3] 비용 지불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한편 지출 대비 비율은 영유아 전체와 유아의 1분위가 각각 13.9%, 15.0%로 다소 높고 이외는 대체로 12%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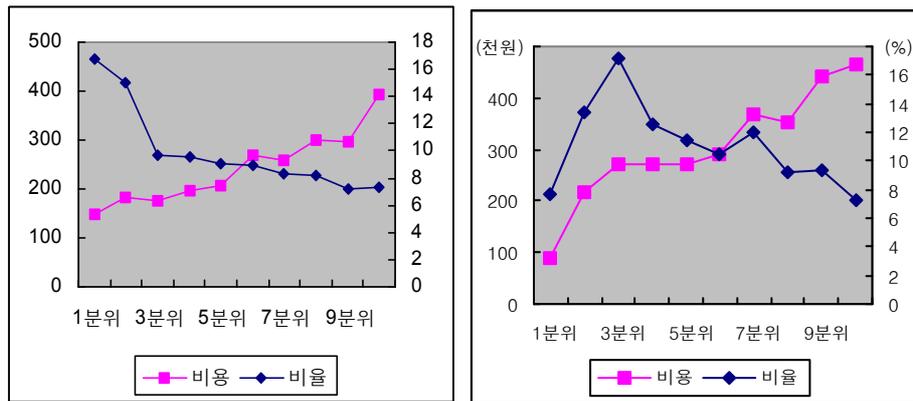
〈표 II-1-5〉 취업모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영유아(수=842)			영아(수=220)			유아(수=622)		
	비용	소득 대비	지출 대비	비용	소득 대비	지출 대비	비용	소득 대비	지출 대비
전체	280.0	9.6	14.1	359.8	10.2	17.1	251.8	9.4	13.0
표준편차	187.4	8.1	10.5	215.1	6.0	10.5	167.1	7.9	9.7
1분위	142.2	15.9	15.3	88.0	7.7	9.4	148.4	16.8	16.0
2분위	187.3	14.8	16.3	216.1	13.4	16.1	183.9	15.0	16.3
3분위	188.6	10.6	13.1	270.5	17.1	19.9	176.2	9.7	12.1
4분위	207.5	10.0	12.4	270.2	12.6	16.5	196.5	9.5	11.6
5분위	221.6	9.6	13.0	269.8	11.4	17.5	206.6	9.1	11.6
6분위	274.4	9.3	13.8	292.1	10.5	16.2	269.2	9.0	13.1
7분위	289.0	9.4	13.9	367.4	12.0	16.8	257.5	8.3	12.7
8분위	318.4	8.6	15.3	351.9	9.2	17.9	298.5	8.2	13.8
9분위	347.5	7.9	13.9	440.1	9.3	16.1	295.6	7.2	12.7
10분위	416.0	7.3	14.8	463.3	7.2	18.3	392.5	7.3	13.0
F	18.4**	7.1**	0.9	3.9**	3.5**	0.5	13.0**	6.6**	1.1
10분위/1분위	2.9	0.5	1.0	5.3	0.9	1.9	2.6	0.4	0.8

주: \*  $p < .05$ , \*\*  $p < .01$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유아〉

〈영아〉

[그림 II-1-4] 취업모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다음으로 취업모 아동의 경우, 비용이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이 전체 아동이나 비용지불 아동보다 높으나, 소득분위별 격차는 전체 아동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였다. 영유아 전체 또는 유아만을 보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용에 따른 비용 규모도 대체로 커지고, 반면에 소득 대비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영아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3분위까지는 높아지고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3분위는 이 비율이 17.0%로 가장 높다. 이는 1, 2분위 저소득계층 대부분이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인 데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표 II-1-5, 그림 II-1-4 참조).

#### 다. 아동 단위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분석한 변수들이 영유아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드는 총 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차(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소득분위, 영유아수, 모의 취업여부, 거주지역, 학력을 사용하였다. 모의 취업여부와 거주지는 각각 취업과 도시거주를 1로 하여 더미화하였고, 학력변수도 중, 고, 3년제대, 4년제대, 대학원 각각을 더미화하였다.

<표 II-1-6>은 아동 1인당 총 비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분석에서는 9개 독립변수 중 5개 변수가 유의하여 5개의 모형이 산출되었는데, 이 중 최종모형을 제시하였다. 아동 1인당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 10분위이고, 다음이 모취업, 도시거주, 모 대학원이상 학력, 모 4년제대학력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누적 Adjusted R<sup>2</sup> 값은 소득분위가 0.153, 여기에 모취업이 포함되면 0.186으로 증가하고 거주지, 학력변수가 포함되어 0.215로 증가하였다.

<표 II-1-6> 영유아 육아지원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sup>2</sup>
(상수)	65.33( 8.92)**		
소득분위	17.51( 1.31)**	0.29	0.153
모 취업	59.34( 6.62)**	0.18	0.186
도시거주	38.75( 7.49)**	0.11	0.198
모 대학원이상	119.81(21.14)**	0.12	0.208
모 4년제대학	34.67( 8.08)**	0.09	0.215

주: \*\*  $p < .01$ , 제외된 변수는 영유아수,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학 변수임

<표 II-1-7>은 소득 대비 비용 비율에 대한 최종 모형 분석결과인데, 이를 보면 9개 독립변수 중 5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아동당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 10분위이고 다음이 도시거주, 모 대학원 이상 학력, 모 취업, 모 4년제대학 변수이다. 이들 5개 변수의 비용에 대한 설명력 0.215에 비하여 가구소득 대비 비율에 대한 설명력은 매우 낮다. 누적 R<sup>2</sup> 조정치가 소득분위는 0.055이고, 거주지, 모 대학원 이상, 모 취업, 모 4년제대학 변수가 포함되어 0.08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유의한 변수는 종속변수가 비용인 분석에 포함된 유의한 변수와 동일하다.

<표 II-1-7> 육아지원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sup>2</sup>
(상수)	12.53(0.60)		
소득분위	-0.76(0.06)**	-0.30	0.055
도시거주	1.91(0.35)**	0.12	0.071
모 대학원이상	3.10(0.98)**	0.07	0.074
모 취업	0.84(0.31)**	0.06	0.077
모 4년제대	0.95(0.37)**	0.06	0.081

주: \*\* p<.01, 제외된 변수는 영유아수,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 4년제대학 변수임.

다음으로 <표 II-1-8>은 비용의 지출 대비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분석에 들어간 9개 독립변수 중 단지 2개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비용에 모 취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이 도시거주이다. 그러나 이 두 변수의 Adjusted R<sup>2</sup>값은 0.021에 불과하다. 앞에서 유의하게 분석된 학력 및 소득분위는 비용의 지출 대비 비율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1-8> 육아지원비용의 가구지출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sup>2</sup>
(상수)	10.32(0.43)		
모 취업	2.12(0.41)**	0.12	0.013
도시거주	1.93(0.46)**	0.09	0.021

주: \*\* p<.01, 제외된 변수는 영유아수, 소득분위,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 4년제대, 대학원이상 변수임.

## 2.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 가. 가구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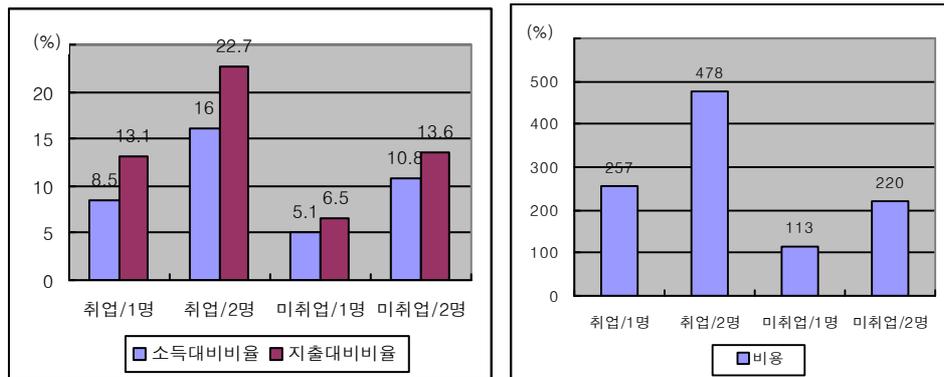
영유아가 있는 가구 단위별로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I-2-1>과 <그림 II-2-1>은 모 취업여부와 영유아수별로 가구당 영유아 양육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구 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표 II-2-1> 영유아 수 및 모취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영유아 1명			영유아 2명이상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전체가구	208.8	8.4	11.4	169.5	6.6	9.2	296.1	12.4	16.4
취업모가구(A)	312.2	10.4	15.5	256.7	8.5	13.1	478.4	16.0	22.7
미취업모가구(B)	150.3	7.1	9.0	113.0	5.1	6.5	220.0	10.8	13.6
A/B	2.1	1.5	1.7	2.3	1.7	2.0	2.2	1.5	1.7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2-1] 영유아 수 및 모취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비용은 2004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은 208,800원인데 영유아수 1명은 169,500원, 2명이상 296,100원으로 아동수가 1명일 때보다 2명일 때 1.8배의 비용이 소

요된다. 또한 영유아 가구 전체의 육아지원비용은 소득 대비 8.4%이고 지출 대비 11.4%이다. 아동수별로는 1명이 각각 6.6%, 9.2%인데 2명 이상은 12.4%, 16.4%로 비율이 높아진다.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2명 이상이 1명보다 평균 1.88배, 지출 대비 비율은 1.78배가 된다.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비용의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를 보면, 미취업모 대비 취업모가 비용은 16만원 이상으로 2.1배를 지출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3.3%p가 더 높고, 지출 대비 비율은 6.5%p가 더 높아서 비율로는 각각 1.5배, 1.7배이다. 이러한 격차는 아동수별 차이 없이 공통되는 현상이다(표 II-2-1 참조).

다음은 이러한 비용과 비율의 제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구 단위의 분석으로 영유아를 둔 가구의 영유아 수에 따른 소득계층별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총 비용<sup>4)</sup>을 제시하였다(표 II-2-2 참조).

〈표 II-2-2〉 영유아 수 및 소득계층별 가구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2,003)			1명(수=1,382)			2명이상(수=621)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전체	208.8	8.4	11.4	169.5	6.6	9.2	296.1	12.4	16.4
표준편차	219.8	8.7	11.7	185.3	6.9	9.8	261.7	10.8	13.9
1분위	85.0	9.8	9.3	66.0	7.7	7.4	138.0	15.7	14.5
2분위	109.0	8.4	9.0	82.4	6.0	6.5	168.1	13.6	14.6
3분위	137.5	8.1	9.5	115.8	6.8	8.3	181.1	10.6	12.0
4분위	163.2	8.2	10.6	121.4	6.1	7.6	244.2	12.3	16.2
5분위	209.9	9.6	12.7	173.0	7.8	10.4	277.6	12.9	17.0
6분위	196.9	7.5	10.9	158.3	6.0	8.6	281.6	10.9	15.8
7분위	234.3	8.4	11.8	189.1	6.6	9.5	324.9	11.8	16.3
8분위	272.7	7.9	13.3	217.8	6.5	11.0	404.4	11.4	18.7
9분위	344.9	8.8	14.2	273.8	6.7	11.2	535.5	14.4	22.2
10분위	336.5	7.9	13.3	287.7	6.2	11.5	464.8	12.4	17.9
F	36.8**	1.3	5.0**	26.7**	1.2	4.7**	16.8**	1.2	2.2'
10분위/ 1분위	4.0	0.8	1.4	4.4	0.8	1.6	3.4	0.8	1.2

주: \*  $p < .05$ ,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4) 초등학교생이 있는 경우 초등학교생 양육지원비는 제외됨.

소득계층별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드는 비용은 모두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였다. 전체 10분위의 비용은 1분위 대비 4.0배로 아동 1인당 비용의 격차 3.8배(표 II-2-2 참조)와 유사한 수준이다.

아동수별로는 아동 1인 가구는 4.4배, 아동 2인 이상 가구는 3.4배이다. 이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아동수별로는 차이가 나지만 소득계층별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나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비율이 낮다. 그러나 가구지출 대비 비율의 차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으로, 10분위는 1분위의 1.4배이다(표 II-2-2 참조).

<표 II-2-3>은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드는 비용 및 비율을 나타낸다.

<표 II-2-3> 모취업 가구 영유아수 및 소득계층별 서비스 이용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711)			1명(수=533)			2명이상(수=178)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전체	312.2	10.4	15.5	256.7	8.5	13.1	478.4	16.0	22.7
표준편차	260.9	8.8	12.8	210.0	6.3	10.4	321.7	12.3	16.0
1분위	79.7	9.4	8.8	74.9	9.1	8.7	102.4	10.6	9.7
2분위	160.2	12.7	14.0	144.3	10.5	11.2	274.4	28.9	33.7
3분위	215.7	12.1	14.7	167.7	9.1	11.3	359.6	21.0	24.9
4분위	225.1	10.8	13.5	190.3	9.2	11.9	378.7	17.9	20.8
5분위	276.5	12.0	16.1	229.1	9.1	13.6	361.9	17.0	20.6
6분위	286.4	9.8	14.5	238.0	8.3	12.6	406.1	13.6	19.1
7분위	340.2	11.0	16.3	295.9	9.7	14.1	439.7	13.9	21.3
8분위	387.0	10.5	18.6	296.0	8.1	15.3	649.6	17.3	28.1
9분위	404.1	9.3	16.2	312.4	7.2	12.8	676.8	15.6	26.5
10분위	447.0	8.9	17.2	400.1	7.4	15.9	599.7	13.6	21.7
F	15.1**	1.5	2.6**	13.2**	1.5	2.1*	5.5**	1.5	1.6
10분위 /1분위	5.6	0.9	2.0	5.3	0.8	1.8	5.9	1.3	2.2

주: \*  $p < .05$ ,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서비스 이용비용이 증가하였다. 10분위의 비용은 1분위 대비 배수는 전체는 5.6배로 전체 아동 대상의 격차 4.0

배(표 II-2-2 참조)보다 더 크다. 아동수별로도 이러한 차이는 마찬가지이다. 이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아동수별로 차이가 나지만 아동수가 동일할 경우 소득분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가구지출 대비 비용의 차이 역시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10분위의 비용은 1분위 대비 2.0배이다.

나. 가구 단위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분석한 변수들이 영유아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차(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소득분위, 영유아수, 모의 취업여부, 거주지역, 모학력, 최연소아동연령을 사용하였다. 모의 취업여부와 거주지는 각각 취업과 도시거주를 1로 하여 더미화하였고, 학력변수도 중, 고, 3년제대, 4년제대, 대학원 각각을 더미화하였다.

<표 II-2-4>는 먼저 총 비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분석에서는 10개 독립변수 중 6개 변수가 유의하여 6개의 모형이 산출되었는데, 이 중 최종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가구당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이고, 다음이 영유아수, 모취업, 도시거주, 대학원이상 학력, 4년제대 학력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 최연소자녀연령은 유의하지 않아서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누적 Adjusted R<sup>2</sup> 값을 보면 소득분위가 0.145이고, 소득분위에 유아수가 포함되면 0.204로 증가하고, 모취업여부를 다시 포함되면 0.270으로 증가하고 이에 거주지 및 학력변수가 포함되어 0.295로 증가하였다.

<표 II-2-4> 영유아 가구 육아지원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 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sup>2</sup>
(상수)	-140.83(20.36)**		
소득분위	23.02(1.87)**	0.30	0.145
영유아수	120.32(8.99)**	0.30	0.204
모 취업	118.76(9.77)**	0.28	0.270
도시거주	57.70(12.88)**	0.10	0.283
모 대학원 이상	92.27(22.16)**	0.09	0.288
모 4년제대학	40.41(10.86)**	0.09	0.295

주: \*\* p<.01, 제외된 독립 변수는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 최연소자녀연령 변수임

즉, 소득, 영유아수, 취업의 세 가지 변수로 육아지원비용을 27.0% 설명한다. 이는 아동 단위분석에서 소득분위, 모취업, 도시거주, 대학원이상 학력, 4년제대

학력의 다섯 개의 변수가 21.5%의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과 비교하면 설명력이 높다.

<표 II-2-5>는 소득 대비 비용 비율에 대한 동일한 방법의 분석결과이다. 이 분석에서는 5개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5개의 모형이 산출되었다. 최종모형을 보면 가구당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유아수이고 다음이 소득, 모취업, 도시거주, 최연소자녀연령으로 나타났다. 더미화한 5개 학력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에 비하여 이들 5개 변수의 설명력은 매우 낮다. 누적 Adjusted R<sup>2</sup> 값을 보면 영유아수가 0.079이고, 영유아수에 소득분위 포함되어 0.102로 증가하고, 여기에 모취업이 다시 포함되면 0.118로 증가하고 이외 거주지 및 최연소아동연령이 포함되어 0.147로 증가하였다.

<표 II-2-5>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육아지원비용 비율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sup>2</sup>
(상수)	0.75(1.22)**		
영유아수	5.77(0.46)**	0.37	0.079
소득분위	-0.55(0.08)**	-0.18	0.102
모 취업	2.49(0.42)**	0.15	0.118
모 도시거주	3.21(0.55)**	0.14	0.136
최연소아동연령	0.55(0.13)**	0.12	0.147

주: \*\*  $p < .01$ , 제외된 변수는 학력변수 5개임.

<표 II-2-6> 영유아 가구 육아지원비용의 지출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sup>2</sup>
(상수)	1.89(1.09)		
영유아수	5.99(0.52)**	0.29	0.056
모 취업	4.93(0.56)**	0.22	0.100
모 도시거주	3.31(0.74)**	0.11	0.111

주: \*\*  $p < .01$ , 모형에서 제외된 변수는 소득분위, 학력변수 5개, 최연소자녀연령 변수임.

끝으로 <표 II-2-6>은 종속변수가 가구 지출 대비 비용 비율인 분석결과이다. 이 표를 보면 가구당 비용의 지출 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영

유아수이고 다음이 모취업, 도시거주이다. 소득변수와 더미화한 5개 학력변수, 최저아동연령은 지출 대비 비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의한 이들 3개 변수의 설명력을 누적 Adjusted R<sup>2</sup> 값으로 보면 영유아수가 0.056이고, 모취업이 포함되어 0.100로 증가하고, 여기에 도시거주 변수가 들어가서 0.111로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분석에 포함된 유의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가구가 지출하는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비용 규모 27.0%,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 11.8%, 지출 대비 비율 11.1%로 차이를 나타냈다. 3개 종속변수에 영유아 수, 모취업, 도시거주가 공동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는 비용과 소득 대비 비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출 대비 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육아지원 유형별 이용 및 비용

앞에서는 아동 1인 및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살펴보았다. 육아지원서비스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어서 여기서는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를 보육교육기관, 특기학원, 개별지도 등 사교육,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서비스별로 부모의 제 특성별 이용 및 비용의 격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가. 보육교육(유사)기관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앞에서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으로 운영하는 학원, 선교원 등 4개 기관의 전체 이용 비율은 48~67%에 분포하며 소득수준과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들 4개 서비스를 각각으로 구분하여 이용과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계층, 지역, 모 학력, 모 직종 변수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각 변수별 차이로 살펴본 후, 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수간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이용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으로 운영하는 학원, 선교원 등 4개 기관 이용에 대한 소득계층별 이용비율은 <표 II-3-1>과 같고, <표 II-3-2>에서는 이를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은 1분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10분위가 가장 낮다. 그러나 소득분위별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유치원은 보육시설과는 반대로 1, 2분위와 9, 10분위를 비교하면 이용률의 차이가 13%p 정도로 9, 10분위가 두드러지게 높고, 소득수준별 일관된 차이를 나타낸다. 10분위 이용률은 1분위의 2.4배이다. 반일제이상학원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1분위 비율이 가장 낮아서, 10분위 이용률은 1분위의 1.7배이다. 그러나 소득수준별 일관된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반면에 선교원은 2, 3분위가 2%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표 II-3-1> 영유아 소득 10분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2004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선교원	(수)
전체	27.9	16.5	8.2	1.9	(2,963)
1분위	37.5	9.9	5.2	2.2	( 232)
2분위	26.6	9.9	9.0	2.4	( 355)
3분위	27.4	12.7	5.9	2.6	( 307)
4분위	24.4	18.3	8.3	1.9	( 312)
5분위	33.0	16.5	11.0	1.9	( 309)
6분위	24.0	16.7	8.8	1.5	( 342)
7분위	28.4	16.2	6.1	1.8	( 278)
8분위	26.3	18.0	8.7	2.1	( 289)
9분위	33.2	23.4	9.4	1.2	( 244)
10분위	23.4	23.9	8.7	1.4	( 218)
$\chi^2(df=9)$	25.3**	39.7**	2.6	10.9**	-
10분위/1분위	0.6	2.4	1.7	0.6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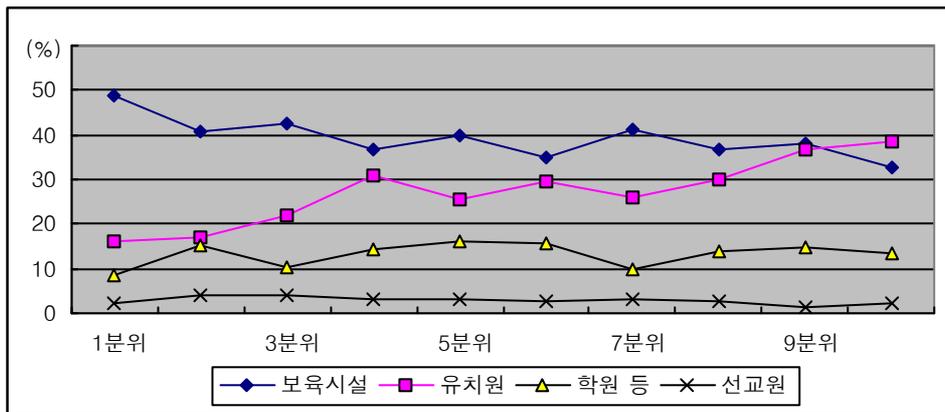
〈표 II-3-2〉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기관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선교원	(수)
전체	11.2	(1,172)	39.1	27.2	13.4	2.9	(1,790)
1분위	19.3	( 88)	48.6	15.9	8.3	2.1	( 145)
2분위	6.5	( 138)	40.6	16.8	15.2	4.1	( 197)
3분위	7.7	( 130)	42.4	22.0	10.2	4.0	( 176)
4분위	6.2	( 129)	36.8	30.8	14.2	3.3	( 183)
5분위	20.4	( 108)	39.8	25.4	15.9	3.0	( 201)
6분위	8.8	( 147)	35.1	29.4	15.5	2.6	( 194)
7분위	8.2	( 101)	41.2	26.0	10.0	3.0	( 169)
8분위	11.3	( 115)	36.6	29.9	13.8	2.9	( 174)
9분위	24.7	( 89)	38.1	36.8	14.8	1.3	( 156)
10분위	8.4	( 83)	32.6	38.5	13.3	2.2	( 135)
$\chi^2(df=9)$	40.7**	-	115	415**	9.3	3.9	-
10분위/1분위	0.4	-	0.7	2.4	1.6	1.0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3-1]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보면, 영아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1, 5, 9분위에서 매우 높은 양상으로 나타나서 소득수준과 이용간의 일관된 관계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유아는 소득 10분위별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보육시설 이용률은 낮아지고, 유치원 이용은 높아지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1분위와 10분위를 비교하면 보육시설은 10분위가 1분위보다 16.2%p가 낮고, 유치원은 12.6%p가 높아서 10분위가 1분위의 2.4배이다.

유아와는 달리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소득분위별로 일관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유아는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반면에 영아의 경우 취업모 등 보육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2) 비용

<표 II-3-3>, <그림 II-3-2>는 소득 10분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과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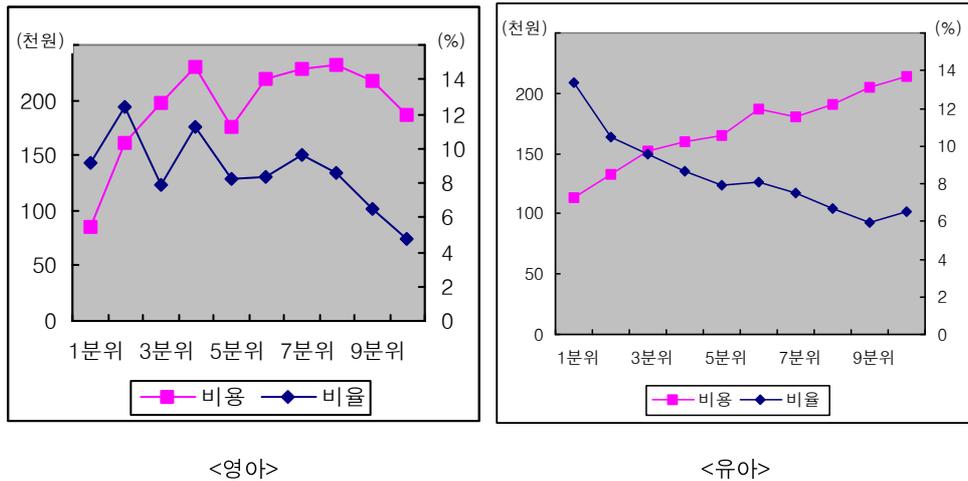
<표 II-3-3> 소득 10분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1,595)			영아(수=140)			유아(수=1,456)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전체 평균	172.2	8.4	10.3	199.0	8.4	10.9	170.5	8.4	9.9
표준편차	78.1	5.4	5.3	81.5	4.7	5.7	78.6	5.4	5.4
1분위	110.0	12.8	11.6	85.4	9.2	7.8	113.9	13.4	12.2
2분위	134.0	10.6	10.8	161.2	12.4	12.2	132.4	10.5	10.7
3분위	154.7	9.5	11.0	198.0	7.9	17.9	151.6	9.6	10.5
4분위	164.0	8.8	10.2	229.2	11.3	13.5	159.9	8.7	10.0
5분위	166.6	7.9	10.0	175.0	8.2	11.1	165.4	7.9	9.9
6분위	189.7	8.1	10.3	219.2	8.3	11.7	187.2	8.1	10.2
7분위	184.1	7.7	9.5	227.6	9.6	10.8	181.0	7.5	9.4
8분위	194.5	6.9	9.4	232.2	8.6	11.8	190.6	6.7	9.2
9분위	206.7	6.0	8.7	216.7	6.5	9.4	205.0	5.9	8.6
10분위	212.5	6.4	8.0	186.8	4.7	6.2	214.3	6.5	8.1
F	26.7**	22.9**	5.7**	6.3**	2.0*	3.5**	23.1**	22.8**	5.8**
10분위/ 1분위	1.9	0.5	0.7	2.2	0.5	0.8	1.9	0.5	0.7

주: \*  $p < .05$ ,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3-2]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기관 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

영아는 기관이용 비용이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는 2.2배로 매우 크지만 분위에 따라 이용률이 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지면서 낮아지는 경향이다. 유아의 경우 비용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1.9배이고, 비용이 소득 10분위와는 정적인 관계이나 소득 대비 비율은 부의 관계가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 3) 제 변수들이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앞에서 살펴본 개별 독립변수들이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분위, 모의 학력, 지역 변수를 대상으로 다분류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보육시설, 유치원과 특기학원 등 사교육으로 하였고 선교원은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다분류 독립변수는 개별 분석에서 사용한 소득 10분위, 모의 학력,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이때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령과 모의 취업변수를 분석에 변수(Co-Variate)로 포함하였다.

먼저, 보육시설 이용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는 <표 II-3-4>과 같다.

〈표 II-3-4〉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다분류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영유아		영아		유아	
	B(se)	Exp( $\beta$ )	B(se)	Exp( $\beta$ )	B(se)	Exp( $\beta$ )
(상수)	-1.71(0.31)**		-4.59(0.89)**		1.28(0.41)**	
연령(연속변수)	0.32(0.03)**	1.38	1.58(0.20)**	4.84	-0.25(0.05)**	0.78
모취업(1= 취업)	1.12(0.10)**	3.08	1.85(0.25)**	6.34	0.92(0.11)**	2.50
10분위(준거: 1분위)						
2분위	-0.39(0.21)*	0.68	-1.07(0.51)**	0.34	-0.23(0.25)	0.79
3분위	-0.49(0.22)*	0.61	-0.93(0.50)**	0.39	-0.42(0.26)	0.66
4분위	-0.69(0.22)**	0.50	-1.51(0.53)**	0.22	-0.60(0.26)*	0.55
5분위	-0.61(0.21)**	0.54	-0.39(0.45)	0.68	-0.74(0.25)**	0.48
6분위	-0.74(0.21)**	0.48	-1.24(0.48)**	0.29	-0.75(0.25)**	0.47
7분위	-0.81(0.23)**	0.44	-1.56(0.55)**	0.21	-0.74(0.26)**	0.48
8분위	-0.78(0.22)**	0.46	-1.37(0.53)**	0.25	-0.77(0.26)**	0.46
9분위	-0.61(0.23)**	0.54	-0.71(0.50)	0.49	-0.68(0.27)**	0.51
10분위	-0.97(0.25)**	0.38	-2.00(0.59)**	0.14	-0.90(0.29)**	0.41
모학력(준거: 중학이하)						
고등학교	0.37(0.26)	1.45	0.42(0.80)	1.52	0.24(0.29)	1.27
전문대	0.24(0.28)	1.28	0.46(0.83)	1.58	0.09(0.32)	1.09
대학	0.25(0.28)	1.28	0.37(0.82)	1.45	0.18(0.31)	1.20
대학원 이상	-0.11(0.43)	0.89	-0.16(1.02)	0.85	-0.20(0.53)	0.82
지역(준거: 읍·면)						
대도시	-0.55(0.11)**	0.58	0.38(0.29)	1.47	-0.81(0.13)**	0.45
중소도시	-0.57(0.11)**	0.57	-0.06(0.30)	0.94	-0.70(0.13)**	0.50
-2 Log Likelihood	2244.6		367.0		1182.8	
$\chi^2(d=17)$	1829.3**		206.8**		164.4**	

주: \*  $p < .05$ ,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령과 모 취업 이외에 소득분위와 지역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모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을 유아로 한정할 경우는 전체 영유아 대상 분석에서와 같이 연령과 모 취업 이외에 소득분위와 지역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모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으나, 영아로 한정할 경우 연령과 모 취업 이외에 소득분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과 모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수별로 방향성을 보면 모 취업, 소득 10분위, 지역은 모두 영유아, 영아,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다. 즉, 모가 취업할수록 이용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에 거주할수록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것

이다. 그러나 연령변수는 영아와 유아의 방향성이 다르다. 즉 영아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지만 유아가 되면 연령이 많아지면서 이용률이 낮아짐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II-3-5>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에 대한 다분류 회귀분석

구분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B(se)	Exp(β)	B(se)	Exp(β)
(상수)	-5.83(0.53)**		-3.38(0.60)**	
연령(연속변수)	0.90(0.06)**	2.47	0.22(0.07)**	1.25
모취업(0, 1= 취업)	-0.58(0.13)**	0.56	-0.24(0.16)	0.79
10분위(준거: 1분위)				
2분위	0.12(0.36)	1.13	0.37(0.41)	1.45
3분위	0.81(0.35)*	2.26	0.24(0.42)	1.27
4분위	1.19(0.34)**	3.29	0.40(0.417)	1.50
5분위	1.01(0.34)**	2.73	0.64(0.40)	1.89
6분위	1.19(0.34)**	3.28	0.48(0.40)	1.61
7분위	1.16(0.35)**	3.18	0.21(0.43)	1.24
8분위	1.21(0.34)**	3.35	0.50(0.41)	1.64
9분위	1.26(0.35)**	3.53	0.67(0.41)	1.96
10분위	1.42(0.36)**	4.15	0.57(0.44)	1.77
모 학력(준거: 중학이하)				
고등학교	-0.39(0.34)	0.68	-0.58(0.38)	0.56
전문대	-0.14(0.37)	0.87	-0.73(0.43)	0.48
대학	0.15(0.36)	1.16	-1.15(0.43)	0.32
대학원 이상	0.63(0.55)	1.87	-2.23(1.10)	0.11
지역(준거: 읍·면)				
대도시	0.20(0.16)	1.22	0.95(0.23)**	2.58
중소도시	0.28(0.16)*	1.33	1.04(0.22)**	2.82
-2 Log Likelihood	984.6		766.3	
$\chi^2(df=17)$	341.3**		711.9**	

주: \*  $p < .05$ ,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표 II-3-5>에서 유아의 유치원 이용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취업모 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높으며, 읍·면에 비하여 중소도시가 이용률이 높음을 나타낸다. 특히 소득수준 중 10분위의 1분위 대비 β값은 4.15이다. 그러나 모의 학력은 보육시설 이용과 같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유아 보육시설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연령, 모취업, 소득수준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그

방향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아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모가 취업하지 않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 아동은 유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일제이상 미술학원 이용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읍·면에 비하여 도시에 거주할수록 이용률이 높음을 나타낸다.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은 것은 유치원과 동일한데 취업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소득수준 역시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높아지지만 유의하지는 않으며, 모의 학력은 여기서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회귀분석에서 모 학력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모 학력변수와 소득변수와의 상관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 나. 유아 사교육 이용 및 비용 격차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와 같은 유아 사교육<sup>5)</sup>의 경우 4종류의 이용률이 모두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용률도 높아지는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학원 이용률은 1분위 대비 10분위 이용률은 5.8배이고 학습지도 이용이 가장 많은 9분위는 1분위 대비 3.5배이다. 방문지도나 그룹지도는 10분위가 각각 8.1%, 5.2%로 타 분위 이용률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다.

다음으로 4종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소득분위별로 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용도 높아진다. 10분위의 비용은 1분위 비용의 2.0배이다.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 대비 비율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낮아져서 1분위 대비 10분위의 비율이 각각 0.3, 0.6이다.

즉,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특기학원 등 유아 사교육의 이용률이 높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투자하는 비용도 많으며,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 사교육의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구소득이나 가구지출에서 그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져,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유아 사교육은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의 4종류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음. 유아보육교육 기능을 하는 반일제이상학원은 기관 이용에 포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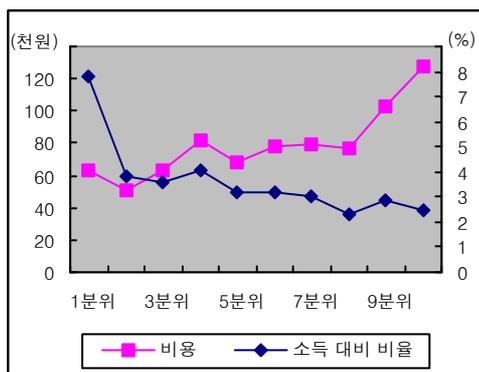
<표 II-3-6> 소득계층별 특기/보습학원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 천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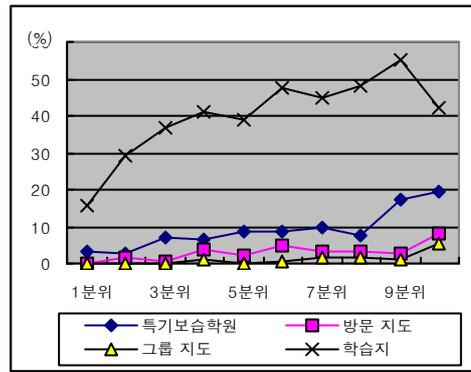
구분	이용					이용 시 비용			
	특기보 습학원	방문 지도	그룹 지도	학습지 학습지	(수)	비용 비율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수)
전체	8.7	2.9	1.0	40.1	(1,730)	81.3	3.3	4.5	(818)
1분위	3.4	-	-	15.9	( 145)	63.4	7.8	7.7	( 26)
2분위	2.7	1.5	-	29.1	( 197)	50.7	3.8	4.0	( 63)
3분위	6.8	0.6	-	36.9	( 176)	63.7	3.6	4.1	( 75)
4분위	6.7	3.8	1.1	41.2	( 183)	82.2	4.1	5.2	( 89)
5분위	8.7	2.0	-	38.8	( 201)	68.7	3.2	4.3	( 95)
6분위	8.5	4.6	0.5	47.4	( 194)	78.1	3.2	4.6	(109)
7분위	9.7	3.0	1.8	45.0	( 169)	79.7	3.0	4.2	( 89)
8분위	7.6	3.4	1.7	48.3	( 174)	76.5	2.3	3.7	( 95)
9분위	17.2	2.6	1.3	55.1	( 155)	102.5	2.9	4.7	( 97)
10분위	19.7	8.1	5.2	42.2	( 136)	128.0	2.5	4.3	( 81)
F	82.7**	25.6(9)**	32.4(9)**	72.1(9)**	-	8.9**	11.7**	3.4**	-
10분위/ 1분위	5.8	5.4	(4.7)	2.7	-	2.0	0.3	0.6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



<이용률>

[그림 II-3-3] 소득계층별 사교육 이용률과 사교육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

## 다. 영유아 개인서비스 이용 및 비용

### 1) 이용

개인서비스 이용률은 일반적 이용과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전체 개인서비스 이용에서는 조부모 등 혈연은 1분위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비교적 높고 3분위까지 점차 낮아져서 최저 이용률은 3분위이고 이후 점차 높아져서 9분위가 가장 높고 10분위는 이보다 다소 낮아지는 모양을 나타냈다.

〈표 II-3-7〉 소득계층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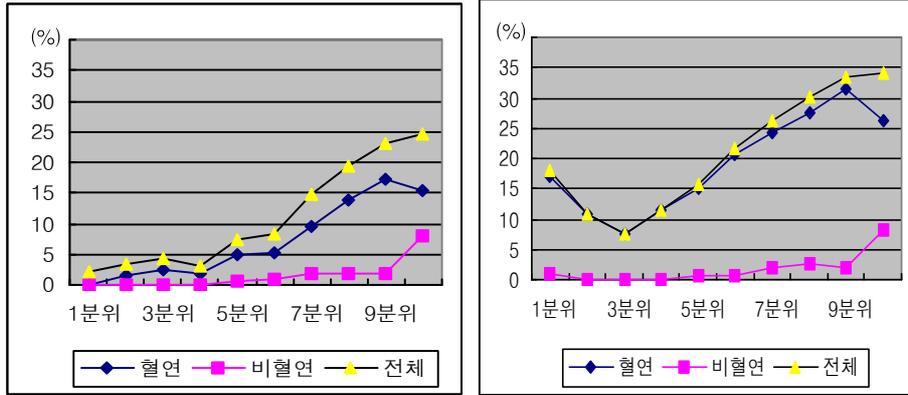
구분	이용			비용 지불 이용			(수)
	혈연	비혈연	소계	혈연	비혈연	소계	
전체	18.7	1.5	20.2	6.9	1.4	10.5	(2,940)
1분위	16.9	1.0	17.9	-	-	2.1	( 195)
2분위	10.8	-	10.8	1.5	-	3.4	( 324)
3분위	7.5	-	7.5	2.5	-	4.4	( 320)
4분위	11.5	-	11.5	1.9	-	3.1	( 321)
5분위	15.1	0.6	15.7	4.9	0.6	7.3	( 344)
6분위	20.8	0.8	21.6	5.3	0.8	8.3	( 361)
7분위	24.2	2.0	26.3	9.6	2.0	14.7	( 293)
8분위	27.6	2.6	30.3	13.8	2.0	19.4	( 304)
9분위	31.6	2.0	33.6	17.2	2.0	23.2	( 250)
10분위	26.3	8.3	34.2	15.4	7.9	24.6	( 228)
$\chi^2(df=9)$	112.8**	91.9**	151.5**	147.2**	93.5**	190.6**	-
10분위/1분위	1.6	8.3	1.9	(10.3)	(13.2)	1.2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비혈연은 소득 7분위를 넘으면서 비율이 2% 수준으로 증가하고 10분위는 8.3%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결국 전체적인 이용률은 3분위까지 낮아진 후 다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용을 지불하고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은 비혈연은 전체 이용률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혈연은 일반 이용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아 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서는 조부모 등 혈연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상당수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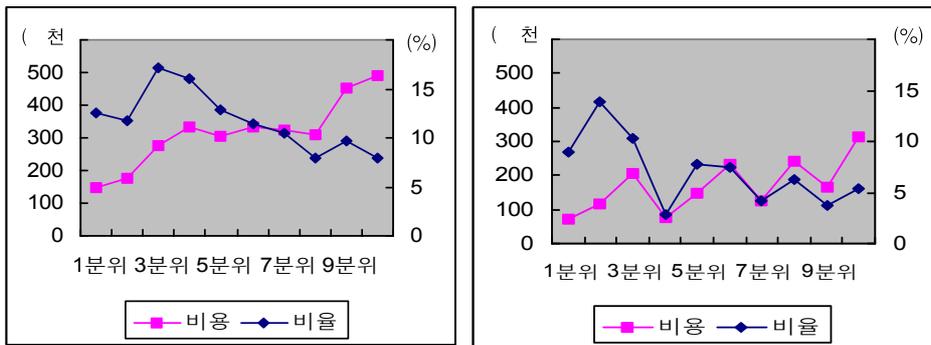
<비용 지불 아동>

<전체 아동>

[그림 II-3-4] 전체 및 비용지불 아동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2) 비용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비용은 전체적으로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를 보면 비용은 5.0배, 소득 대비 비율은 0.7배이다.



<영아>

<유아>

[그림 II-3-5] 개인양육지원 비용지불 영아와 유아 비용 및 비율

〈표 II-3-8〉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영유아			영아			유아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95.2	8.4	13.9	372.7	10.0	17.2	203.6	6.4	10.0
1분위	80.1	9.3	9.3	150.0	12.5	12.5	72.3	8.9	8.9
2분위	125.2	13.5	15.6	176.7	11.8	17.4	115.3	13.9	15.3
3분위	238.3	13.4	17.1	277.3	17.1	17.7	204.8	10.3	16.6
4분위	257.6	12.1	17.6	335.7	16.1	23.6	74.1	2.8	3.5
5분위	224.2	10.2	14.7	303.7	12.8	19.6	146.5	7.7	9.9
6분위	281.6	9.4	14.2	331.4	11.5	18.2	234.9	7.5	10.5
7분위	243.9	8.0	12.0	323.3	10.5	15.2	127.4	4.2	7.3
8분위	283.2	7.2	14.4	310.0	8.0	16.0	243.7	6.2	12.0
9분위	345.6	7.6	12.7	450.3	9.7	15.9	164.5	3.8	7.1
10분위	400.4	6.6	14.4	488.9	7.9	19.6	312.9	5.3	9.3
F	4.2**	3.0**	0.5	2.34*	2.5*	0.6	4.0**	3.1**	1.3
10분위/1분위	5.0	0.7	1.5	3.3	0.6	1.6	4.3	0.6	1.0

주: \*  $p < .05$ ,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영아는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유아에서는 이러한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는 개인양육지원에는 소득이나 취업 요인 이외에도 가족특성 등 외생변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유아에게 개인양육지원은 기관 이용에 대한 보조적 또는 중복되는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

#### 4. 정책시사점

아동과 가구 단위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총 비용의 제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이용과 비용 결정요인으로는 소득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고, 이용에서는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별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아동 부모의 제 특성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수준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 이용은 소득수준별로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에서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10분위 이용률을 1분위 이용률과 대비하면 특기보습학원은 5.8배, 방문지도·학습지는 3배, 개인양육지원은 약 2배이다.

둘째, 소득 10분위로 분석한 가구의 소득 수준은 아동 1인당 및 가구 단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비용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육아지원서비스 비용도 많아진다. 비용 지불 아동만을 대상으로 보면 육아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소득 1분위 대비 10분위가 전체 2.8배, 영아 4.6배, 유아 2.6배로 영아의 비용 격차가 크다. 그러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분위가 14.7%로 가장 높고, 10분위는 7.2%로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비율은 감소하여 저소득 가구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소득 10분위 변수의 소요 비용에 대한 설명력은 15.3%이다. 즉, 이용에서도 소득별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용에 따른 비용에서도 차이가 나, 기회 보장과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소득은 가구당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4.5%의 설명력을 가진다. 영유아수는 소득 다음으로 5.9%의 설명력을 추가한다.

셋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가구당 영유아 양육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동수가 1명일 때보다 2명일 때 1.75배의 비용이 소요되고,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평균 1.88배가 된다.

넷째, 소득 이외에 모취업, 도시거주, 대학원이상 학력, 4년제대 학력 변수도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취업모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전체 평균 9.6%로 전체 평균 6.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취업모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다섯째, 현재 제도권 육아지원서비스로 중요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자는 부모 특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즉, 보육시설은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유치원과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다. 보육시설 이용률은 소득분위별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으나, 1분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10분위가 가장 낮다.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모가 취업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높아진다. 유치원은 보육시설과는 반대로 1, 2분위에 비하여 9, 10분위의 이용률이 13%p 높은데,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읍·면에 비하여 중소도시가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반일제이상미술학원 이용에서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은 것은 유치원과 동일한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높아지는 경향이고, 읍·면에 비하여 도시가 이용률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 이용에서는 소득계층별 격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기회의 아니라 내용과 질적 측면도 격차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보육시설은 취업모가 선호하여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여섯째, 특기학원 등 유아 사교육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소요되는 비용도 많아서, 유아 사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기교육 등 부모의 사교육 욕구를 제도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학원 이용률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5.8배이고 학습지도 이용이 가장 많은 9분위는 1분위 대비 3.5배이다. 특기학원 이용 시 비용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2.0배이다. 그러나 비용의 가구 소득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다.

일곱째, 혈연 및 비혈연 지원서비스 비용은 소득계층과 비례한다. 비용을 지불하고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은 비혈연과 혈연 모두 전체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3분위가 최저인 변형된 U자 형태를 나타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혈연 지원서비스는 상당수가 무급이기 때문으로 무급으로 육아지원을 하는 조부모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영아는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하여, 이 역시 기회와 더불어 질과 내용에서 차별성을 감지할 수 있다.

### Ⅲ.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실태

제3장에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이하인 1,021가구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실태와 요구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저소득 가정의 특성을 기술하고, 자녀 양육태도, 양육지원서비스 개요, 보육·교육기관 및 혈연·비혈연 서비스 이용, 일과 가정 양립, 취약보육, 보육관련 의견의 8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 1. 저소득 가정 특성

##### 가. 가구 및 부모 특성

###### 1) 가구원 특성

조사된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수와 자녀수를 보면, 가구원수는 평균 3.7명이고 초등학교 이하 자녀수는 1.6명이다. 가구원수는 서울이 3.25명으로 다소 낮고, 부산이 3.97명으로 가장 높다. 자녀는 서울이 1.46명으로 가장 적고, 전주가 1.77명으로 가장 많은데, 자녀 연령을 나누어 보면, 광주, 전주에 영아가 적고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많은 특성을 보인다(표 Ⅲ-1-1 참조).

〈표 Ⅲ-1-1〉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수 및 자녀수

단위: 명

구분	가구원수	영아	유아	초등학교	전체	(수)
전체	3.73	0.37	0.56	0.66	1.59	(1020)
서울	3.25	0.30	0.48	0.68	1.46	( 148)
인천	3.62	0.45	0.60	0.52	1.56	( 200)
대구	3.71	0.38	0.60	0.59	1.58	( 191)
부산	3.97	0.46	0.59	0.58	1.60	( 203)
전주	3.92	0.29	0.68	0.79	1.77	( 106)
광주	3.90	0.29	0.46	0.88	1.63	( 172)
F	9.8**	3.8**	2.5*	5.9**	3.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1-2>는 가족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부부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유형이 67.6%이고, 여성 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21.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조부모와 (한)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확대가족 유형은 전체 7.2%이고, 남성 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유형은 1.3%이다. 특히 서울에서 여성 한 부모와 자녀의 가족 유형 비율이 45.3%로 전체 평균의 2배를 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부산과 전주는 한 부모 가정 비율이 약 7~8%로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다.

〈표 III-1-2〉 가족유형

단위: %(가구)

구분	(한)조부모 +(한)부모+ 자녀	부부+자녀	여성한부 모+자녀	남성한부 모+자녀	(한)조부 모+자녀	친인척+ 자녀	기타	계(수)
전체	7.2	67.6	21.2	1.3	0.7	0.4	1.6	100.0(1017)
서울	5.4	43.2	45.3	4.1	1.4	-	0.7	100.0( 148)
인천	9.5	67.0	21.5	1.0	-	-	1.0	100.0( 200)
대구	3.7	66.0	25.7	1.0	-	0.5	3.1	100.0( 191)
부산	11.4	77.2	6.9	1.0	1.0	0.5	2.0	100.0( 202)
전주	7.4	78.7	8.3	0.9	2.8	0.9	0.9	100.0( 108)
광주	4.8	72.6	20.2	0.6	-	0.6	1.2	100.0( 16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2) 주택 특성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전세가 33.8%, 자가 주택이 27.3%, 전세나 월세(보증부 월세)가 21.2% 순으로 나타났다. 무상이나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기타의 비율은 각각 7.9%, 5.4%, 4.3%이다(표 III-1-3 참조).

지역별로는 자가 주택 비율은 서울이 12.2%로 가장 낮고 다음이 대구 19.4%이며, 전주가 최대로 37.0%, 인천 35.5%이다. 전세는 부산이 최대인 39.9%, 광주가 최소인 28.4%로 차이를 보이고,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의 경우, 광주가 10.7%, 무상주택은 대구가 15.2%로 평균의 2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서울도 12.2%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 현재 주택 소유형태

단위: %(가구)

구분	자가	전세	전·월세 (보증부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기타	계(수)	X <sup>2</sup> (df)
전체	27.3	33.8	21.3	5.4	7.9	4.3	100.0(1019)	
서울	12.2	39.2	28.4	5.4	12.2	2.7	100.0( 148)	
인천	35.5	32.5	20.5	1.0	7.0	3.5	100.0( 200)	
대구	19.4	29.8	18.3	9.9	15.2	7.3	100.0( 191)	98.7(25)**
부산	32.0	39.9	19.2	2.5	2.5	3.9	100.0( 203)	
전주	37.0	32.4	21.3	2.8	2.8	3.7	100.0( 108)	
광주	27.8	28.4	21.9	10.7	7.1	4.1	100.0( 16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43.1%로 가장 높고 다세대주택이 20.0%, 단독주택 1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서 72.2%의 응답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반면에 서울은 응답자의 17.7%만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응답하여 지역간의 차이를 보인다. 서울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한다는 비율이 38.8%, 광주는 단독주택 비율이 29.0%, 인천은 연립주택이 27.1%로 각각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표 III-1-4 참조).

〈표 III-1-4〉 주택 유형

단위: %(가구)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상가주택	기타	계(수)	X <sup>2</sup> (df)
전체	19.8	43.1	11.9	20.0	2.7	2.7	100.0(1017)	
서울	17.7	17.7	19.0	38.8	5.4	1.4	100.0( 147)	
인천	12.6	39.7	27.1	16.1	1.0	3.5	100.0( 199)	
대구	21.5	35.6	8.4	25.7	3.1	5.8	100.0( 191)	205.4(25)**
부산	23.2	46.8	7.4	19.2	1.5	2.0	100.0( 203)	
전주	12.0	72.2	2.8	9.3	1.9	1.9	100.0( 108)	
광주	29.0	54.4	3.0	9.5	3.6	0.6	100.0( 16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3) 부모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가) 연령

응답 가구 자녀의 아버지 평균 연령은 38.3세이며 표준편차는 5.2세이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로 40.3세이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6세로 남편과는 2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연령은 역시 서울의 37.6세이며, 모든 지역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 차이는 대체로 2살로 나타났다.

〈표 III-1-5〉 응답 가구 부모 평균 연령

단위: 세(명)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3	5.2	(782)	36.1	5.1	(981)
서울	40.3	6.2	( 77)	37.6	5.9	(141)
인천	37.7	5.6	(155)	35.8	4.8	(193)
대구	37.9	4.8	(141)	35.5	5.2	(185)
부산	38.0	4.8	(184)	35.6	4.7	(193)
전주	37.7	4.5	( 90)	35.5	4.7	(101)
광주	39.0	5.3	(135)	36.7	5.2	(168)
F		3.8**			4.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나) 학력

응답 가구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44.8%로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 이상이 31.3%, 전문(3년제)대학이 17.3%로 나타났고, 고졸 미만이 6.6%이다. 지역 차이를 보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광주로 43.5%이다. 이는 평균인 31.4%에 비해 높다. 서울은 고졸 미만의 학력 비율이 15.6%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전주는 고졸 미만이 없다.

어머니의 학력도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남편의 학력과 비슷한 양상이다. 고졸이 51.6%로 가장 높고, 4년제 대학 이상이 22.4%, 전문(3년제)대학 이상이 19.1%, 고졸 미만이 6.9%순이다. 고졸 미만의 경우 서울이 12.1%로 높고, 4년제 대졸이상은 최대가 전주의 30.0%, 최소가 대구의 17.2%이다.

〈표 III-1-6〉 응답 가구 부모의 학력

단위: %(명)

구분	고졸 미만	고졸	전문(3년제)대학	4년제대학 이상	계(수)	X2(df)
<b>부</b>						
전체	6.6	44.8	17.3	31.3	100.0(770)	
서울	15.6	39.0	6.5	39.0	100.0( 77)	
인천	9.2	46.1	14.5	30.3	100.0(152)	
대구	4.3	53.9	24.8	17.0	100.0(141)	55.0(15)**
부산	6.5	42.9	21.7	28.8	100.0(184)	
전주	-	45.9	17.6	36.5	100.0( 85)	
광주	5.3	38.9	12.2	43.5	100.0(131)	
<b>모</b>						
전체	6.9	51.6	19.1	22.4	100.0(961)	
서울	12.1	45.4	17.0	25.5	100.0(141)	
인천	8.9	53.2	18.4	19.5	100.0(190)	
대구	3.8	54.8	24.2	17.2	100.0(186)	27.9(15)*
부산	6.8	57.1	16.2	19.9	100.0(191)	
전주	2.2	47.8	20.0	30.0	100.0( 90)	
광주	6.1	47.2	19.0	27.7	100.0(16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다) 근로 특성

아버지의 고용형태는 회사원이나 사무직을 상용고의 형태가 42.7%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가 17.5%, 임시근로자가 13.0%, 일용근로자 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27.5%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고, 무직이나 별거, 사망 등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는 전체 5.5%인데 서울은 10.0%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대구와 광주가 자영업자의 비율이 각각 23.2%, 22.9%로 높고, 인천은 상용고의 경우 46.5%로 이 가장 높다(표 III-1-7 참조).

어머니의 고용형태는 무직이 30.6%이고 69.4%가 취업 중인데, 직종으로 보면 임시직이 23.8%, 상용고가 16.0%, 무급직이 12.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하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20% 후반에서 30%대이며, 서울은 14.8%로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상용고 21.1%, 임시직 27.5%, 일용직

23.2%와 같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고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고용주인 경우는 1.1%로 극히 낮은 수치이다.

〈표 III-1-7〉 부모 고용형태

단위: %(명)

구분	고용주	자영업	상용고	임시직	일용직	무급직	무직	계(수)	X <sup>2</sup> (df)
<b>부</b>									
전체	6.0	17.5	42.7	13.0	12.6	2.7	5.5	100.0(784)	
서울	2.5	15.0	30.0	11.3	27.5	3.8	10.0	100.0( 80)	
인천	7.1	11.6	46.5	14.8	11.0	1.3	7.7	100.0(155)	
대구	4.2	23.2	42.3	12.0	12.7	2.8	2.8	100.0(142)	na
부산	4.9	15.7	52.4	10.8	10.8	2.7	2.7	100.0(185)	
전주	7.7	16.5	46.2	16.5	6.6	2.2	4.4	100.0( 91)	
광주	9.2	22.9	30.5	13.7	12.2	3.8	7.6	100.0(131)	
<b>모</b>									
전체	1.1	6.5	16.0	23.8	9.6	12.4	30.5	100.0(973)	
서울	0.7	8.5	21.1	27.5	23.2	4.2	14.8	100.0(142)	
인천	0.5	3.6	18.1	26.4	8.8	11.4	31.1	100.0(193)	
대구	2.1	6.9	14.9	18.1	7.4	13.8	36.7	100.0(188)	116.8(30)**
부산	0.5	6.8	11.5	14.7	7.3	22.5	36.6	100.0(191)	
전주	3.2	7.4	21.3	22.3	5.3	12.8	27.7	100.0( 94)	
광주	0.6	6.7	12.7	35.8	6.1	7.3	30.9	100.0(16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한편 <표 III-1-8>은 최연소 아동 연령별 모의 취업상태를 나타낸다. 막내가 0세아인 경우에도 일을 하는 엄마의 비율은 42.9%이고, 1세 49.1%, 2세 63.8%, 3세 67.8%이다, 4세와 5세에 취업한다는 비율이 다소 낮아져서 59.1%, 63.9%이고 6세부터는 70%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모의 취업비율은 일반 가구의 아동 모의 취업률과 비교하여 높다.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에서는 막내 아동을 기준으로 모의 취업률은 0세아모 20.2%, 1세아모 24.5%, 2세아모 35.6%로, 전체 26.8%로 조사되었다.

〈표 III-1-8〉 최소아동연령별 부인 고용형태

단위: %(명)

구분	고용주	자영업	상용고	임시직	일용직	무급직	무직	계(수)
전체	1.1	6.5	16.0	23.8	9.6	12.4	30.5	100.0(973)
0세	-	-	17.9	17.9	-	7.1	57.1	100.0( 28)
1세	-	1.8	15.8	15.8	3.5	12.3	50.9	100.0( 57)
2세	1.1	8.5	16.0	13.8	4.3	20.2	36.2	100.0( 94)
3세	2.5	10.2	13.6	16.9	9.3	15.3	32.2	100.0(118)
4세	1.1	3.4	18.2	18.2	4.5	13.6	40.9	100.0( 88)
5세	-	6.2	18.6	17.5	6.2	15.5	36.1	100.0( 97)
6세	-	3.4	17.0	25.0	13.6	15.9	25.0	100.0( 88)
7세	1.0	5.9	12.9	35.6	9.9	9.9	24.8	100.0(101)
8세	1.0	10.7	17.5	34.0	15.5	6.8	14.6	100.0(103)
9세	1.3	3.8	15.4	33.3	10.3	7.7	28.2	100.0( 78)
10세	4.1	11.0	19.2	32.9	12.3	5.5	15.1	100.0( 73)
11세	-	40.0	40.0	20.0	-	-	-	100.0( 5)
12세	-	-	33.3	33.3	-	33.3	-	100.0( 3)
13세	-	-	-	50.0	-	33.3	16.7	100.0( 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1-9〉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부			모		
	근로시간	표준편차	(수)	근로시간	표준편차	(수)
전체	51.4	15.0	(659)	41.9	12.8	(539)
서울	44.4	14.3	( 66)	41.5	11.3	(121)
인천	52.6	13.7	(135)	40.8	11.7	(116)
대구	53.6	13.3	(123)	45.7	14.9	( 87)
부산	53.0	14.9	(158)	40.8	17.6	( 71)
전주	49.5	18.2	( 67)	40.0	12.1	( 46)
광주	50.9	15.5	(110)	42.3	8.8	( 98)
F		4.3**			2.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다음은 근로한다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나타내는데, 부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51.4시간이며 모는 41.9시간으로 약 9시간의 차이를 보인다. 아버지의 근

로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대구로 53.6시간이며 가장 짧은 지역은 서울로 44.4시간이다. 어머니의 경우도 대구가 45.7시간으로 가장 길고 가장 근로시간이 짧은 지역은 전주로 40.0시간이다.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근로시간이 어머니의 근로시간보다 길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부산의 12.2시간이다. 서울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가 2.9시간으로 가장 작다(표 III-1-9 참조).

#### 4) 경제적 특성

<표 III-1-10>은 응답자의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각종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소득액을 조사한 결과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액수를 추정하여 월로 환산한 것이다. 이를 보면 월평균 소득은 149만원이고 표준편차는 56만 6천원이다. 최대는 부산 170만 2천원, 최소는 서울 123만원이다.

〈표 III-1-10〉 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만원(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전체	149.0	56.6	0	320	(997)
서울	123.0	51.8	40	220	(147)
인천	157.1	60.5	0	320	(197)
대구	135.0	54.9	0	300	(188)
부산	170.2	46.3	35	270	(201)
전주	167.4	55.5	70	300	( 99)
광주	141.3	55.1	0	300	(165)
F			19.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다음 <표 III-1-11>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이를 보면, 조사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가정이 전체 19.9%, 미수급가정이 80.1%이다. 수급 가정은 서울과 광주가 각각 28.3%, 27.1%, 대구가 21.7%로 평균보다 수급가정이 비율이 높다. 수급가정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13.4%로 서울과 비교하였을 때, 15%포인트의 차이를 가진다.

〈표 III-1-1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단위: %(가구)

구분	수급	미수급	계(수)	X <sup>2</sup> (df)
전체	19.9	80.1	100.0(1008)	
서울	28.3	71.7	100.0( 145)	
인천	15.1	84.9	100.0( 199)	
대구	21.7	78.3	100.0( 189)	21.5(5)**
부산	13.4	86.6	100.0( 201)	
전주	15.7	84.3	100.0( 108)	
광주	27.1	72.9	100.0( 16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1-12〉는 조사된 가구 자녀의 부모가 취업한 경우 받는 월평균 소득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아버지의 월 평균 임금은 143만 6천이고 표준편차가 54만 6천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부산이 160만 6천원, 가장 낮은 서울이 111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어머니의 월평균 소득은 남편의 2/3 수준인 79만 3천원이다. 최대가 전주의 93만 6만원, 최소가 대구의 73만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소득 차이는 작게는 서울의 29만 2천원에서 크게 부산의 80만 9천원까지 나타난다.

〈표 III-1-12〉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단위: 만원(명)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43.6	54.6	(635)	79.3	37.0	(515)
서울	111.9	48.3	( 63)	82.7	34.8	(119)
인천	152.1	54.8	(135)	76.0	36.6	(113)
대구	138.4	45.8	(122)	73.0	31.3	( 84)
부산	160.6	55.6	(148)	79.7	47.7	( 64)
전주	150.6	58.2	( 56)	93.6	56.9	( 38)
광주	130.6	52.8	(111)	78.4	23.1	( 97)
F		10.1**			2.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5) 건강 특성

아버지가 건강하다는 비율이 90.0%로 대부분이고, 질병이 있는 경우가 6.2%이고, 장애가 있는 경우는 2.9%이다. 두 가지 모두를 가진 경우가 0.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건강하다는 응답은 전주가 94.4%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0.5%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인천이 낮다. 서울은 특히 아버지가 질병이 있는 비율이 13.0%, 장애가 있는 경우는 서울과 인천이 모두 3.9%, 질병과 장애가 있는 비율이 2.6%로 가장 높은 지역이다.

〈표 III-1-13〉 응답가구 부모의 건강상태

단위: %(명)

구분	건강	질병	장애	질병과 장애	계(수)
<b>부</b>					
전체	90.0	6.2	2.9	0.9	100.0(780)
서울	80.5	13.0	3.9	2.6	100.0( 77)
인천	86.5	8.4	3.9	1.3	100.0(155)
대구	94.2	2.9	2.2	0.7	100.0(139)
부산	94.1	3.2	2.7	-	100.0(186)
전주	94.4	4.4	1.1	-	100.0( 90)
광주	86.5	8.3	3.8	1.5	100.0(133)
<b>모</b>					
전체	91.3	6.7	1.0	1.0	100.0(967)
서울	90.1	8.5	-	1.4	100.0(142)
인천	91.6	6.3	1.6	0.5	100.0(191)
대구	86.9	9.3	1.1	2.7	100.0(183)
부산	94.1	3.7	1.6	0.5	100.0(187)
전주	94.8	3.1	2.1	-	100.0( 96)
광주	91.6	7.8	-	0.6	100.0(16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는 응답이 91.3%이고, 질병이 있다는 응답이 6.7%, 장애가 1.0%, 질병과 장애를 모두 가졌다는 비율이 1.0%이다. 아버지의 응답결과와 같이 건강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로 94.8%이고, 질병이 있다는 비율도 서울이 8.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역 간 차이보다는 지역 간 차이가 작다.

나. 아동 특성

<표 III-1-14>는 조사된 가구의 아동 특성을 나타낸다. 조사된 1,021가구의 초등학교 이하 아동은 모두 1,591명이다.

<표 III-1-14> 아동특성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전주	광주
<b>성별</b>							
남자	49.2	43.7	49.3	50.3	54.4	47.0	47.7
여자	50.8	56.3	50.7	49.7	45.6	53.0	52.3
<b>취학여부</b>							
미취학	57.8	52.8	66.8	60.9	63.9	53.6	43.9
취학	42.2	47.2	33.2	39.1	36.1	46.4	56.1
<b>연령</b>							
0세	1.8	-	2.5	1.0	3.5	1.1	1.8
1세	4.1	1.9	7.9	3.1	3.2	3.9	3.7
2세	6.2	8.3	7.0	5.8	7.4	4.4	4.1
3세	8.8	9.3	8.5	8.5	12.5	5.0	7.4
4세	7.4	6.9	7.9	8.5	8.7	7.2	4.8
5세	9.6	8.3	9.5	11.6	10.3	11.0	6.6
6세	9.5	9.3	9.2	11.3	9.6	11.6	6.6
7세	10.6	8.8	14.2	10.9	9.3	9.4	9.6
8세	12.8	21.3	12.3	7.5	9.3	15.5	14.4
9세	9.3	11.1	7.3	11.9	8.0	8.3	9.6
10세	9.2	9.3	6.6	8.5	7.7	8.3	15.1
11세	3.9	1.9	2.8	4.4	3.2	6.6	5.2
12세	4.0	1.9	3.2	4.1	3.8	5.0	5.9
13세	2.8	1.9	0.9	2.7	3.5	2.2	5.2
14세	0.1	-	-	-	-	0.6	-
<b>건강상태</b>							
건강	93.9	94.3	87.9	95.4	95.8	94.5	96.5
질병	3.2	3.3	5.4	2.8	2.4	3.0	1.9
장애	2.0	2.4	4.0	1.1	1.0	2.4	1.2
질병·장애	0.9	-	2.7	0.7	0.7	-	0.4
전체 (수)	100.0 (1,591)	100.0 (216)	100.0 (316)	100.0 (294)	100.0 (313)	100.0 (181)	100.0 (27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조사된 아동은 남자 49.2%, 여자 50.8%이며, 미취학 아동이 57.8%, 취학 아동이 42.2%로 근소한 차이가 있다. 조사 아동의 연령은 0세부터 14세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중 7, 8세가 10%이상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아동이 93.9%로 6.1%가 질병 및 장애 상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조사 아동 성별의 비율이 남자 43.7%, 여자 56.3%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나머지 지역과 큰 차이는 없다. 지역에 따른 취학여부는, 미취학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63.9%이고, 취학 아동의 비율은 광주가 56.1%로 가장 높다.

조사 아동의 연령분포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 8세의 비율이 21.3%, 대구는 5, 6세의 비율이 각각 11.6%, 11.3%, 부산은 5세가 10.3%로 타 지역에 비하여 높다. 조사 아동의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한 아동의 비율이 광주가 96.5%로 가장 높고, 인천이 87.9%로 가장 낮다. 인천은 질병을 가진 아동 비율이 5.4%, 장애 아동이 4.0%, 질병과 장애를 모두 가진 아동 비율이 2.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다.

## 2. 자녀 양육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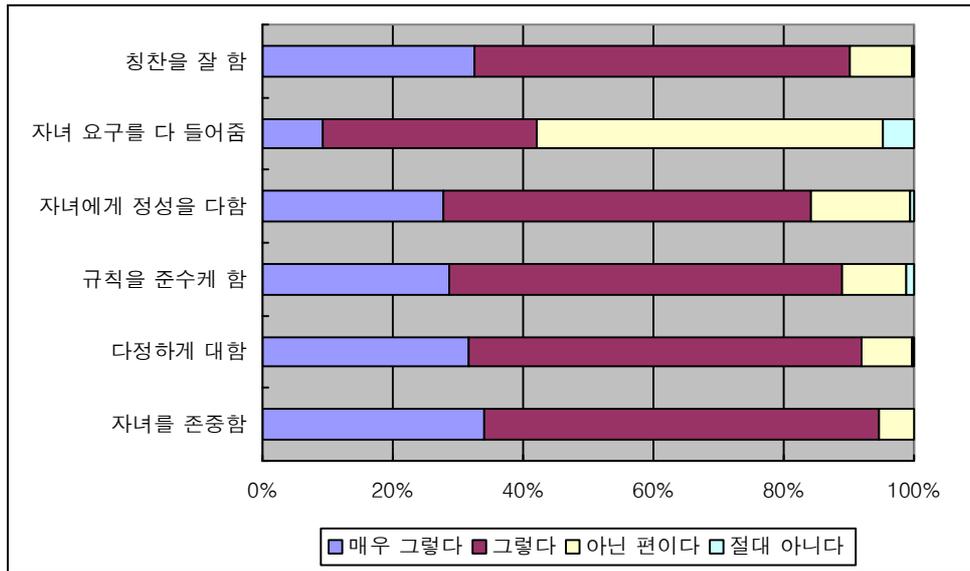
### 가. 일반적 양육 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는 자녀존중, 자녀에 대한 다정함, 규칙 준수 지도, 자녀에 대한 정성, 자녀 요구 수용, 칭찬의 6개 항목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 III-2-1>와 [그림 III-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표 III-2-1>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닌 편이다	절대 아니다	
자녀존중	34.1	60.6	5.2	0.1	100.0(1002)
다정함	31.7	60.2	7.8	0.3	100.0(1003)
규칙준수지도	28.8	60.2	9.8	1.2	100.0(1001)
정성	27.7	56.4	15.2	0.7	100.0(1000)
자녀의 요구 수용	9.4	32.6	53.3	4.7	100.0( 998)
칭찬	32.4	57.7	9.7	0.2	100.0( 997)



[그림 III-2-1]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긍정적인 응답이 바람직한 문항 중에서 아니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자녀에게 정성을 다 한다는 문항으로 16% 정도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자녀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문항 이외에 5개 문항이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0%를 넘고 있었다.

문항별 응답자 가구 및 개인의 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 자녀 존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중 자녀를 존중하는 항목에 있어 그렇다가 60.6%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가 34.1%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총 94.7%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서울은 매우 그렇다는 항목이 56.8%로 그렇다고 응답한 33.1%보다 높아, 매우 긍정이 더 높은 유일한 지역이며,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평균인 5.3%보다 2배가량 높은 10.1%로 타 지역에 비하여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핵가족이 아닌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낮고 확대가족이 가장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닌 편이라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 가정이 11.6%로 가장 높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모 부재 아동은 보호자가 아닌 편인 비율이 높다.

〈표 III-2-2〉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자녀존중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34.1	60.6	5.3	100.0(1002)	
지역					
서울	56.8	33.1	10.1	100.0( 148)	64.6(10)**
인천	31.5	62.5	6.0	100.0( 200)	
대구	22.3	72.3	5.3	100.0( 188)	
부산	30.8	65.6	3.6	100.0( 195)	
전주	34.3	62.7	2.9	100.0( 102)	
광주	34.3	62.1	3.6	100.0( 169)	
가구형태					
확대가족	40.8	47.9	11.3	100.0( 71)	30.3(6)**
핵가족	31.9	65.0	3.1	100.0(674)	
한부모가족	38.2	52.2	9.6	100.0(228)	
기타	44.0	48.0	8.0	100.0( 25)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29.6	58.8	11.6	100.0(199)	20.7(6)**
150만원 이하	35.9	59.4	4.8	100.0(357)	
151~200만원 이하	33.0	63.7	3.3	100.0(303)	
201만원 이상	36.2	61.2	2.6	100.0(116)	
모 취업					
취업	35.3	59.3	5.4	100.0(666)	14.9(4)**
미취업	31.1	65.1	3.8	100.0(289)	
모 부재	36.4	45.5	18.2	100.0( 3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2) 자녀에 대한 다정함

〈표 III-2-3〉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중 자녀를 다정하게 대하는 정도에 대한 결과이다. 여기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고, 매우 그렇다가 31.7%, 아닌 편이라는 응답이 8.1% 순으로 나타난다. 역시 서울은 매우 긍정의 비율이 46.6%로 그렇다는 비율인 41.9%보다 높고, 다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11.5%로 가장 높았다.

〈표 III-2-3〉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다정함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계(수)	$\chi^2(df)$
전체	31.7	60.2	8.1	100.0(1003)	
지역					
서울	46.6	41.9	11.5	100.0( 148)	32.1(10)**
인천	31.0	60.5	8.5	100.0( 200)	
대구	26.6	62.2	11.2	100.0( 188)	
부산	29.7	65.6	4.6	100.0( 195)	
전주	28.2	67.0	4.9	100.0( 103)	
광주	29.6	63.3	7.1	100.0( 169)	
가구형태					
확대가족	30.6	62.5	6.9	100.0( 72)	9.4(6)
핵가족	31.5	61.9	6.7	100.0(674)	
한부모가족	32.5	54.8	12.7	100.0(228)	
기타	32.0	60.0	8.0	100.0( 25)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28.1	59.3	12.6	100.0(199)	11.8(6)
150만원 이하	32.1	58.4	9.5	100.0(358)	
151~200만원 이하	32.0	62.0	5.9	100.0(303)	
201만원 이상	32.8	63.8	3.4	100.0(116)	
모 취업					
취업	32.1	58.9	9.0	100.0(667)	13.0(4)*
미취업	30.8	64.4	4.5	100.0(289)	
모 부재	27.3	51.5	21.2	100.0( 3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닌 편이라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아니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모 부재 아동은 아닌 편인 비율이 21.2%로 매우 높다.

### 3) 규칙 준수 지도

자녀에게 규칙을 지키게 하는가를 묻는 항목에서도 그렇다가 60.2%, 매우 그렇다 28.8%, 아닌 편이다 11.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차이를 보면 긍정보다 매우 긍정이 더 높은 지역은 역시 서울이 유일하

다. 매우 긍정이 39.2%, 긍정이 38.5%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다른 지역과는 비교된다. 부정적인 응답에서도 또한 서울이 22.3%로 평균인 11.0%를 훨씬 넘는 수치를 보였다.

〈표 III-2-4〉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규칙준수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계(수)	$\chi^2(df)$
전체	28.8	60.2	11.0	100.0(1001)	
지역					
서울	39.2	38.5	22.3	100.0( 148)	44.4(10)**
인천	27.6	61.8	10.6	100.0( 199)	
대구	24.5	64.4	11.2	100.0( 188)	
부산	28.7	63.1	8.2	100.0( 195)	
전주	27.5	63.7	8.8	100.0( 102)	
광주	26.6	67.5	5.9	100.0( 169)	
가구형태					
확대가족	25.4	60.6	14.1	100.0( 71)	15.6(6)*
핵가족	29.7	61.4	8.9	100.0(673)	
한부모가족	28.1	54.8	17.1	100.0(228)	
기타	20.0	76.0	4.0	100.0( 25)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23.6	61.3	15.1	100.0(199)	12.1(6)
150만원 이하	30.3	57.4	12.3	100.0(357)	
151~200만원 이하	31.1	59.6	9.3	100.0(302)	
201만원 이상	23.3	69.8	6.9	100.0(116)	
모 취업					
취업	29.2	58.8	12.0	100.0(665)	11.1(4)*
미취업	28.7	64.0	7.3	100.0(289)	
모 부재	24.2	51.5	24.2	100.0( 3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는 응답이 17.1%로 가장 높고,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닌 편이라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아니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모 부재 아동은 아닌 편인 비율이 24.2%로 매우 높다. 이는 전반적으로 다정하게 대하는가를 질문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와 유사하다.

4) 자녀에 대한 정성

자녀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 56.4%, 매우 그렇다 27.7%, 아닌 편이다 15.9% 순으로 역시 수치상의 변화만 있을 뿐 위의 일반적 양육 태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역시 서울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2.7%로 평균의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에 있어서는 인천이 아닌 편이다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정성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닌 편이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27.7	56.4	15.9	100.0(1000)	
지역					
서울	52.7	31.1	16.2	100.0( 148)	
인천	24.6	55.8	19.6	100.0( 199)	
대구	16.5	67.0	16.5	100.0( 188)	71.7(10)**
부산	26.2	62.6	11.3	100.0( 195)	
전주	28.7	58.4	12.9	100.0( 101)	
광주	23.1	59.2	17.8	100.0( 169)	
가구형태					
확대가족	33.8	49.3	16.9	100.0( 71)	
핵가족	25.3	60.9	13.8	100.0(672)	19.5(6)**
한부모가족	33.3	45.6	21.1	100.0(228)	
기타	24.0	52.0	24.0	100.0( 25)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26.6	52.8	20.6	100.0(199)	
150만원 이하	28.7	54.8	16.6	100.0(356)	7.3(6)
151~200만원 이하	25.7	60.1	14.2	100.0(303)	
201만원 이상	27.6	61.2	11.2	100.0(116)	
모 취업					
취업	28.0	53.3	18.7	100.0(664)	
미취업	28.0	63.3	8.7	100.0(289)	21.6(4)**
모 부재	18.2	51.5	30.3	100.0( 3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는 응답이 21.1%로 가장 높고,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닌 편이라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 모의 취업

상태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아니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모 부재 아동은 아닌 편인 비율이 30.3%로 매우 높다.

### 5) 요구 수용

자녀에 대한 일반적 양육 태도 중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는 항목은 부정적인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표 III-2-6>를 보면 다 해주는 편이 아니라는 응답이 53.3%, 절대 아니라는 응답도 4.7%로 긍정적인 답변인 42.0%보다 높은 수치이다. 특히 서울은 절대 아니라는 응답이 15.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는데 동시에 매우 그렇다는 답변도 18.9%로 가장 높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표 III-2-6>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자녀의 요구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닌 편이다	절대 아니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9.4	32.6	53.3	4.7	100.0(998)	
지역						
서울	18.9	29.1	36.5	15.5	100.0(148)	
인천	9.5	33.7	55.3	1.5	100.0(199)	
대구	3.7	32.4	59.6	4.3	100.0(188)	79.7(15)**
부산	8.7	31.3	55.4	4.6	100.0(195)	
전주	7.0	37.0	55.0	1.0	100.0(100)	
광주	9.5	33.3	55.4	1.8	100.0(168)	
가구형태						
확대가족	8.5	25.4	56.3	9.9	100.0( 71)	
핵가족	9.0	35.1	52.5	3.4	100.0(670)	16.2(9)
한부모가족	11.0	28.5	53.1	7.5	100.0(228)	
기타	12.0	28.0	60.0	-	100.0( 25)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8.1	30.3	53.0	8.6	100.0(199)	
150만원 이하	10.1	30.6	54.5	4.8	100.0(356)	11.9(9)
151~200만원 이하	8.3	34.3	54.1	3.3	100.0(303)	
201만원 이상	9.6	38.3	49.6	2.6	100.0(116)	
모 취업						
취업	9.0	29.4	56.6	5.0	100.0(663)	
미취업	11.1	39.6	46.9	2.4	100.0(288)	34.8(6)**
모 부재	3.0	30.3	45.5	21.2	100.0( 3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 특성별로 보면, 먼저 가구형태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고,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닌 편이라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아니라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다.

6) 칭찬

<표 III-2-7>은 자녀에게 칭찬을 잘 한다는 물음에 대한 결과이다. 그렇다가 57.7%, 매우 그렇다가 32.4%로 약 9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매우 긍정의 비율이 54.7%로 긍정인 57.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칭찬을 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평균 9.9%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주가 13.9%로 가장 높다.

<표 III-2-7>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양육 태도 - 자녀 칭찬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닌 편이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32.4	57.7	9.9	100.0(997)	
지역					
서울	54.7	34.5	10.8	100.0(148)	56.5(10)**
인천	29.6	60.3	10.1	100.0(199)	
대구	23.7	64.5	11.8	100.0(186)	
부산	29.2	66.7	4.1	100.0(195)	
전주	31.7	54.5	13.9	100.0(101)	
광주	29.8	58.9	11.3	100.0(168)	
가구형태					
확대가족	31.0	60.6	8.5	100.0( 71)	16.9(6)*
핵가족	31.3	60.4	8.2	100.0(670)	
한부모가족	33.9	50.7	15.4	100.0(227)	
기타	52.0	40.0	8.0	100.0( 25)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27.3	60.1	12.6	100.0(199)	11.6(6)
150만원 이하	36.7	52.5	10.7	100.0(356)	
151~200만원 이하	29.7	61.1	9.2	100.0(303)	
201만원 이상	32.8	62.1	5.2	100.0(116)	
모 취업					
취업	32.6	56.9	18.7	100.0(662)	16.4(4)**
미취업	33.0	60.8	8.7	100.0(288)	
모 부재	21.2	51.5	30.3	100.0( 3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는 응답이 15.4%로 가장 높고, 가구소득별로는 다른 문항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니라는 비율이 높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아니라는 응답이 취업모가 18.7%로 미취업모 8.7%보다 10%포인트가 높다. 모 부재 아동은 아니라는 비율이 30.3%로 매우 높다.

## 나. 자녀 관련 행동

### 1) 문화·레저 공간 자녀 동반 외출

<표 III-2-8>은 지난 6개월 간 자녀와 함께 극장, 공연장, 야외, 놀이공원 등 문화·레저 공간에 간 횟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III-2-8> 지난 6개월간 문화레저 공간 자녀 동반 외출 경험

단위: %(명)

구분	없음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	계(수)	$\chi^2(df)$
전체	19.4	35.4	21.1	9.1	15.0	100.0(1014)	
지역							
서울	29.5	38.9	14.1	10.7	6.7	100.0( 149)	
인천	19.7	28.8	24.2	8.1	19.2	100.0( 198)	
대구	12.6	30.9	26.7	11.0	18.8	100.0( 191)	59.2(20)**
부산	17.5	42.5	19.5	8.0	12.5	100.0( 200)	
전주	10.3	31.8	27.1	9.3	21.5	100.0( 107)	
광주	26.0	39.1	15.4	7.7	11.8	100.0( 169)	
가구형태							
확대가족	23.3	32.9	27.4	6.8	9.6	100.0( 73)	
핵가족	16.2	34.9	21.2	10.7	17.1	100.0( 680)	29.4(12)**
한부모가족	27.0	37.8	18.7	5.7	10.9	100.0( 230)	
기타	29.6	29.6	25.9	-	14.8	100.0( 27)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26.0	40.5	18.0	4.5	11.0	100.0(200)	
150만원 이하	25.8	34.8	18.1	9.6	11.8	100.0(365)	60.2(12)**
151~200만원 이하	11.6	36.3	24.1	11.2	16.8	100.0(303)	
201만원 이상	9.3	26.3	29.7	9.3	25.4	100.0(118)	
모 취업							
취업	19.5	35.8	22.1	9.5	13.1	100.0( 671)	
미취업	16.9	34.9	20.7	8.5	19.0	100.0( 295)	27.0(8)**
모 부재	47.1	32.4		8.8	11.8	100.0( 3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이를 보면 1~2번이 35.4%로 가장 높았고, 3~4번이 21.1%, 없다가 19.4%, 7번 이상이 15.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자녀와 이러한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응답은 서울에서 2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광주 26.0%이며 전주에서 10.3%로 가장 낮았는데, 전주는 7번 이상 방문했다는 응답이 21.5%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한부모, 확대가족의 순으로 이러한 외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없다는 비율이 높다. 특히 가구소득 15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26.0%, 이상은 10~12% 수준으로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외출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모 부재 아동은 아닌 편인 비율이 47.1%로 매우 높다.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다음으로 <표 III-2-9>는 지난 6개월간 자녀와 서점에 간 경험으로, 없음이 34.3%이고 있다가 65.7%인데, 횟수로는 1~2번이 39.5%, 3~4번이 14.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전주가 1~2번 방문했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은 지역이고 5~6번 간 적이 있다는 답변에서도 10.3%로 평균인 6.4%보다 약간 더 높다. 서울은 없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아 자녀와 서점에 간 경험이 가장 낮았다.

<표 III-2-9> 지난 6개월간 자녀와 서점에 간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없음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	계(수)	$\chi^2(df)$
전체	34.3	39.5	14.8	6.4	4.9	100.0(1014)	
지역							
서울	42.3	34.2	13.4	6.7	3.4	100.0( 149)	
인천	34.8	36.9	18.2	5.6	4.5	100.0( 198)	
대구	30.9	42.4	15.2	5.8	5.8	100.0( 191)	20.6(20)
부산	30.5	41.5	16.0	7.5	4.5	100.0( 200)	
전주	27.1	45.8	12.1	10.3	4.7	100.0( 107)	
광주	39.6	37.9	11.8	4.1	6.5	100.0( 169)	
가구형태							
확대가족	41.1	43.8	8.2	4.1	2.7	100.0( 73)	
핵가족	32.1	40.0	15.7	7.1	5.1	100.0( 680)	na
한부모가족	37.4	37.8	13.9	5.2	5.7	100.0( 230)	
기타	44.4	33.3	18.5	3.7	-	100.0( 27)	

(표 계속)

구분	없음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	계(수)	$\chi^2(df)$
<b>가구소득</b>							
국민기초생활대상	44.5	36.0	12.5	4.0	3.0	100.0(200)	35.6(12)**
150만원 이하	38.1	40.8	11.0	5.2	4.9	100.0(365)	
151~200만원 이하	26.7	39.9	19.1	8.9	5.3	100.0(303)	
201만원 이상	24.6	40.7	20.3	7.6	6.8	100.0(118)	
<b>모 취업</b>							
취업	31.9	41.0	15.6	6.4	5.1	100.0( 671)	22.8(8)**
미취업	35.3	39.7	13.9	6.1	5.1	100.0( 295)	
모 부재	70.6	17.6	5.9	5.9	-	100.0( 3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특성별 차이는, 먼저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확대가족, 한부모, 핵가족이 순으로 서점에 함께 간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없다는 비율이 높다. 특히 가구소득 15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44.5%, 38.1%가 경험이 없다고 하여 그 이상 집단의 25~27%와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와 미취업모는 없다는 비율이 31.9%, 35.3% 수준으로 차이는 크지 않으나 모 부재 아동은 서점 외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70.6%로 매우 높다.

## 2) 체벌

지난 6개월 간 자녀를 체벌한 경험과 그 횟수를 보면 없음이 27.3%이고, 35.9%가 1~2번, 3~4번이 19.1%, 7번 이상이 11.5% 순으로, 대부분 1번 이상의 체벌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7번 이상 체벌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1.5%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개월간 7번 이상 체벌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주의 경우 15.9%로 가장 높다. 체벌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광주가 31.4%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서울 30.2% 이다.

가구특성별 차이는, 먼저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확대가족, 한부모, 핵가족이 순으로 체벌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체벌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체벌 경험 비율이 미취업모보다 높다.

〈표 III-2-10〉 지난 6개월간 자녀 체벌 여부

단위: %(명)

구분	없음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	계(수)	$\chi^2(df)$
전체	27.3	35.9	19.1	6.1	11.5	100.0(1014)	
지역							
서울	30.2	30.2	23.5	10.1	6.0	100.0( 149)	
인천	24.2	36.4	19.2	6.6	13.6	100.0( 198)	
대구	24.6	37.7	20.9	4.7	12.0	100.0( 191)	20.8(20)
부산	28.0	35.5	19.0	6.5	11.0	100.0( 200)	
전주	26.2	38.3	15.9	3.7	15.9	100.0( 107)	
광주	31.4	37.3	15.4	4.7	11.2	100.0( 169)	
가구형태							
확대가족	37.0	28.8	16.4	5.5	12.3	100.0( 73)	
핵가족	26.6	35.0	20.3	5.9	12.2	100.0( 680)	13.7(12)
한부모가족	24.3	41.3	17.4	7.4	9.6	100.0( 230)	
기타	44.4	29.6	11.1	3.7	11.1	100.0( 27)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20.0	41.5	18.5	7.5	12.5	100.0(200)	
150만원 이하	29.3	33.7	20.3	6.8	9.9	100.0(365)	13.9(12)
151~200만원 이하	28.4	34.7	20.5	4.3	12.2	100.0(303)	
201만원 이상	32.2	33.9	14.4	6.8	12.7	100.0(118)	
모 취업							
취업	24.7	37.1	20.9	6.4	10.9	100.0( 671)	
미취업	32.9	33.6	15.9	5.1	12.5	100.0( 295)	11.3(8)
모 부재	35.3	29.4	14.7	8.8	11.8	100.0( 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3) 친구 이름 인지

자녀의 친구들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11.3%가 하나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대략 90%이상의 부모가 1명 이상의 자녀 친구 이름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4명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답변이 26.6%로 가장 높고, 1~2명이 24.3%, 7명 이상도 2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다. 3~4명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서울이 35.1%로, 7명 이상은 인천이 27.9%로 가장 높다. 반면 한 명도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15.2%이다.

〈표 III-2-11〉 자녀의 친구 이름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없음	1-2명	3-4명	5-6명	7명 이상	계(수)	$\chi^2(df)$
전체	11.3	24.3	26.6	16.5	21.3	100.0(1008)	
지역							
서울	9.5	20.9	35.1	23.0	11.5	100.0( 148)	
인천	12.2	21.3	21.8	16.8	27.9	100.0( 197)	
대구	7.3	24.1	30.4	13.1	25.1	100.0( 191)	48.3(20)**
부산	15.2	22.2	29.3	16.2	17.2	100.0( 198)	
전주	12.1	27.1	27.1	17.8	15.9	100.0( 107)	
광주	11.4	31.7	16.8	13.8	26.3	100.0( 167)	
가구형태							
확대가족	22.2	18.1	26.4	9.7	23.6	100.0( 73)	
핵가족	10.9	24.6	26.2	16.4	21.9	100.0( 680)	22.9(12)*
한부모가족	7.0	26.5	28.3	18.3	20.0	100.0( 230)	
기타	26.9	19.2	23.1	15.4	15.4	100.0( 27)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10.6	29.1	26.6	14.6	19.1	100.0(199)	
150만원 이하	12.5	25.5	25.8	15.2	21.1	100.0(361)	8.5(12)
151~200만원 이하	9.9	23.8	26.2	16.9	23.2	100.0(302)	
201만원 이상	12.7	16.9	28.0	19.5	22.9	100.0(118)	
모 취업							
취업	9.3	24.7	27.0	17.4	21.6	100.0(667)	
미취업	15.9	22.4	25.1	14.6	22.0	100.0(295)	15.9(8)*
모 부재	15.6	37.5	25.0	15.6	6.3	100.0( 3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형태별로는 자녀 친구 이름을 하나도 모른다는 비율이 한부모가족이 7.0%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확대가족이 22.2%로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고,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가 하나도 모른다는 비율이 9.3%로 가장 낮다.

#### 4) 아이들만 두고 외출

취학전 아이들만 두고 일하러 가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9.2%로 다수이고, 가끔 있다는 비율이 19.9%, 자주 있다는 10.9%이다. 없다는 응답은 대구가 74.7%로 가장 높고, 광주

가 52.4%로 가장 낮다. 광주는 자주 있음이 25.6%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지역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III-2-12〉 취학전 아이들만 두고 일하러 가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

단위: %(명)

구분	자주 있음	가끔 있음	없음	계(수)	X <sup>2</sup> (df)
전체	10.9	19.9	69.2	100.0(988)	
지역					
서울	8.3	20.0	71.7	100.0(145)	53.7(10)**
인천	6.2	21.5	72.3	100.0(195)	
대구	10.8	14.5	74.7	100.0(186)	
부산	6.6	21.4	71.9	100.0(196)	
전주	7.8	20.6	71.6	100.0(102)	
광주	25.6	22.0	52.4	100.0(164)	
가구형태					
확대가족	4.2	18.1	77.8	100.0( 73)	23.6(6)**
핵	9.0	19.4	71.6	100.0( 680)	
한부모가족	18.4	22.4	59.2	100.0( 230)	
기타	7.7	15.4	76.9	100.0( 27)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19.8	24.9	55.3	100.0(197)	32.2(6)**
150만원 이하	9.9	17.7	72.4	100.0(355)	
151~200만원 이하	8.1	21.6	70.3	100.0(296)	
201만원 이상	5.3	15.9	78.8	100.0(113)	
모 취업					
취업	12.6	21.0	66.4	100.0(649)	13.6(4)**
미취업	7.2	16.8	76.0	100.0(292)	
모 부재	9.1	33.3	57.6	100.0( 3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형태별로는 취학전 아이들만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비율이 한부모 가족이 18.4%로 매우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들만 두고 나가는 비율이 낮는데,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 가족은 19.8%로 다른 집단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비율이 취업모가 12.6%로 그 이외 가정에 비하여 비교적 높다.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 3.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가. 이용기관

##### 1) 영유아

<표 III-3-1>은 미취학 아동의 연령별 이용기관 분포를 나타낸다. 조사 시점인 2007년 6월을 기준으로 0세아와 만1세 아동의 기관 이용 비율이 3.8%, 8.5%이고 만2세가 29.6%로 높아진다.<sup>6)</sup> 만3세는 50.4%, 만4세가 74.9%이고, 그 이상 연령 아동은 거의 대부분이 기관에 다니고 있다.

<표 III-3-1> 영유아의 연령별 이용 기관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 상 학원	선교원	복지관	기타	안 다님	계(수)
전체	37.3	29.2	1.3	1.4	0.9	1.6	28.3	100.0(861)
연령								
0세	3.8	-	-	-	-	-	96.2	100.0( 26)
1세	5.1	1.7	-	-	-	1.7	91.5	100.0( 59)
2세	20.9	3.3	-	2.2	-	2.2	71.4	100.0( 91)
3세	37.8	6.3	1.6	-	-	4.7	49.6	100.0(127)
4세	52.2	18.3	0.9	0.9	1.7	-	26.1	100.0(115)
5세	55.6	34.5	2.1	0.7	2.1	1.4	3.5	100.0(142)
6세	39.3	53.8	2.1	2.8	-	1.4	0.7	100.0(145)
7세	33.1	60.3	1.3	2.6	1.3	0.7	0.7	100.0(151)
8세	75.0	-	-	-	25.0	-	-	100.0( 4)
11세	100.0	-	-	-	-	-	-	100.0( 1)
지역								
서울	54.0	18.6	-	4.4	-	-	23.0	100.0(113)
인천	66.7	-	-	-	1.5	1.5	30.3	100.0(198)
대구	49.4	17.1	2.9	0.6	-	3.5	26.5	100.0(170)
부산	23.2	39.0	1.7	0.6	2.3	1.7	31.6	100.0(177)
전주	27.8	46.7	-	-	1.1	1.1	23.3	100.0( 90)
광주	23.9	38.9	1.8	2.7	-	09	31.9	100.0(1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6) 보육 및 유치원 통계는 연령 기준일이 보육시설은 3월 1일, 유치원은 4월 1일로 본 조사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용률도 통계와 직접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음.

지역별로는 기관에 안 다닌다는 비율이 23~31%로 차이를 보인다. 다니는 기관별로는 서울, 인천, 대구가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고 전주, 광주 부산은 유치원 이용률이 높다. 이는 아동 연령분포가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서도 기인하는 바가 있다. 지역별 아동연령별 이용률은 부록에 첨부하였다(부록 참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37.8%가 집에 양육자가 있기 때문이고 23.0%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장애, 질병 때문이라는 응답도 5.4%이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비용 부담 때문에 기관에 안 보낸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에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다(표 III-3-2 참조). 6개 지역 아동연령별 기관 미이용 이유는 부록에 첨부하였다(부록 참조).

〈표 III-3-2〉 미취학아동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질병·장애	기관이 멈	집에 양육자 있음	비용부담	불신	기타	계(수)
전체	5.4	1.4	37.8	23.0	6.1	26.4	100.0(148)
연령							
0세	-	-	55.6	-	11.1	33.3	100.0( 9)
1세	-	-	20.0	-	13.3	66.7	100.0( 15)
2세	3.8	3.8	53.8	15.4	3.8	19.2	100.0( 26)
3세	2.5	-	45.0	30.0	5.0	17.5	100.0( 40)
4세	10.5	-	47.4	15.8	-	26.3	100.0( 19)
5세	21.4	-	28.6	28.6	7.1	14.3	100.0( 14)
6세	-	6.3	12.5	37.5	12.5	31.3	100.0( 16)
7세	12.5	-	12.5	50.0	-	25.0	100.0( 8)
11세	-	-	-	100.0	-	-	100.0( 1)
지역							
서울	-	-	72.7	-	9.1	18.2	100.0(11)
인천	12.5	-	31.2	37.5	6.3	12.5	100.0(16)
대구	4.0	-	36.0	36.0	4.0	20.0	100.0(25)
부산	25.0	-	40.8	14.3	6.1	28.6	100.0(49)
전주	-	-	53.8	15.4	7.7	23.1	100.0(13)
광주	-	5.9	20.6	29.4	5.9	38.2	100.0(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이러한 기관 미이용 이유는 전국조사에서 비용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보육료나 교육비를 차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기관 이용에 따

르는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큼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표 III-3-3>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낮에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이다. 부모 47.4%를 제외하고는 파견도우미가 19.1%로 가장 높고<sup>7)</sup> 조부모가 6.9%이다. 아무도 없다는 비율도 11.2%가 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가 돌본다는 비율이 낮아지며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부모가 돌본다는 비율이 매우 낮고 파견도우미 이용 비율이 높다. 지역별 아동연령별 낮에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의 비율은 부록에 첨부하였다(부록 참조).

<표 III-3-3> 낮 시간에 주로 돌보는 사람: 영유아

단위: %(명)

구분	부모	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파견도우미	기타비혈연	기타	없음	계(수)
<b>연령</b>									
전체	47.4	6.9	1.9	2.1	19.1	3.1	8.3	11.2	100.0(779)
0세	65.4	3.8	-	-	36.9	-	3.8	-	100.0( 26)
1세	57.6	10.2	1.7	-	25.4	-	3.4	1.7	100.0( 59)
2세	51.7	7.9	1.1	-	24.7	4.5	6.7	3.4	100.0( 89)
3세	45.8	7.6	1.7	0.8	23.7	2.5	5.1	12.7	100.0(118)
4세	49.1	9.3	2.8	0.9	13.0	3.7	14.8	6.5	100.0(108)
5세	47.5	5.8	2.5	2.5	15.0	4.2	5.0	17.5	100.0(120)
6세	43.4	8.2	0.8	2.5	17.2	2.5	13.1	12.3	100.0(122)
7세	40.3	3.0	3.0	6.0	16.4	3.7	9.0	18.7	100.0(134)
8세	-	-	-	-	100.0	-	-	-	100.0( 2)
11세	100.0	-	-	-	-	-	-	-	100.0( 1)
<b>지역</b>									
서울	17.8	3.7	-	-	39.3	1.9	18.7	18.7	100.0(107)
인천	47.1	7.0	4.7	1.2	26.2	4.1	3.5	6.4	100.0(172)
대구	56.7	3.0	3.0	1.8	20.1	3.0	6.1	6.1	100.0(164)
부산	47.7	10.3	0.6	1.7	12.1	3.4	7.5	16.7	100.0(174)
전주	64.5	9.7	-	4.8	4.8	3.2	9.7	3.2	100.0( 62)
광주	53.0	9.0	1.0	5.0	5.0	2.0	10.0	15.0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7) 본 조사에 파견도우미 이용 가구가 모두 포함되어서 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대표성은 없음.

## 2) 초등학생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방과후 귀가한 시간을 주로 보내는 방법으로 기관의 공부방 또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6.3%,이고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35.9%, 그 외 그냥 집에서 보낸다는 응답은 22.0%, 과외를 받는 경우는 1.0% 순이다.

〈표 III-3-4〉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시간 이용

단위: %(명)

구분	학원	공부방 또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과외	집	기타	계(수)
전체	35.9	36.3	1.0	22.0	4.8	100.0(518)
지역						
서울	20.7	43.7	1.1	27.6	6.9	100.0( 87)
인천	36.0	37.1	1.1	15.7	10.1	100.0( 89)
대구	29.7	51.6	1.1	15.4	2.2	100.0( 91)
부산	60.0	13.3	1.1	25.6	-	100.0( 90)
전주	44.3	29.5	1.6	18.0	6.6	100.0( 61)
광주	28.0	40.0	-	28.0	14.0	100.0(100)
가구형태						
확대가족	38.9	27.8	-	27.8	5.6	100.0( 36)
핵가족	42.2	31.1	0.9	21.5	4.3	100.0(325)
한부모가족	19.0	50.0	1.4	23.2	6.3	100.0(142)
기타	57.1	35.7	-	7.1	-	100.0( 14)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17.1	54.5	-	22.0	6.5	100.0(123)
150만원 이하	31.7	37.8	1.2	24.4	4.9	100.0(164)
151~200만원 이하	46.1	24.8	1.8	23.0	4.2	100.0(165)
201만원 이상	57.4	25.9	-	13.0	3.7	100.0( 54)
모 취업						
취업	34.6	40.9	1.1	19.3	4.2	100.0(379)
미취업	44.6	22.3	0.9	27.7	4.5	100.0(112)
모 부재	13.6	36.4	-	31.8	18.2	100.0( 2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이러한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응답자의 60.0%가, 기관의 공부방 또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의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로 51.6%이다. 한편 집에 있다는 아동은 서울이 27.6%,

광주 28.0%로 조사되었다.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족이 특히 학원 이용이 낮고 공부방 또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등 공공기관 이용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원 이용이 높고 공공 프로그램 이용 비율과 집에 있다는 비율이 낮아진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하여 공부방 등 공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학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은 낮다(표 III-3-4 참조).

2004년도 전국 조사에서는 공공기관 프로그램 9.4%, 집에 있다는 비율 16.5, 학원의 이용 69.0%로, 이와 비교하면 공공기관 프로그램 이용은 두드러지게 높고 집에 있다는 비율은 다소 높은 반면에 학원의 이용은 매우 낮아서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5〉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시간 이용

단위: %(명)

구분	학원	공부방 또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과외	집	기타	계(수)
본 조사	35.9	36.3	1.0	22.0	4.8	100.0( 518)
전국(2004) <sup>1)</sup>	69.0	9.4	4.5	16.5	0.6	100.0(3,431)

자료: 1) 서문희 외(2004).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여성부.

다음 <표 III-3-6>은 초등학생 자녀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나 학원이 끝난 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 53.0%가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비율은 47.0%이다. 혼자 있는 경우의 비율은 광주가 63.0%로 가장 높고, 부산이 55.1%로 가장 낮다.

가구형태별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한부모 가족의 초등학생이 60.1%로 혼자 있는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모의 취업 특성별로는 취업모가 56.0%, 미취업모 38.1%로 차이가 크고, 특히 모 부재 아동은 77.3%가 학교나 학원이 끝난 후 혼자 지내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I-3-6 참조).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는 경우, 하루 평균 2.7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시간은 인천의 2.4시간에서 최대는 대구의 3.0시간 까지 나타나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다(표 III-3-7 참조).

〈표 III-3-6〉 초등학교 자녀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53.0	47.0	100.0(513)	
지역				
서울	53.5	46.5	100.0( 86)	6.7(5)
인천	50.0	50.0	100.0( 88)	
대구	52.7	47.3	100.0( 91)	
부산	44.9	55.1	100.0( 89)	
전주	52.5	47.5	100.0( 59)	
광주	63.0	37.0	100.0(100)	
가구형태				
확대가족	41.7	58.3	100.0( 36)	5.0(3)
핵가족	51.5	48.5	100.0(324)	
한부모가족	60.1	39.9	100.0(138)	
기타	50.0	50.0	100.0( 14)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57.5	42.5	100.0(120)	1.8(3)
150만원 이하	54.3	45.7	100.0(162)	
151~200만원 이하	49.7	50.3	100.0(165)	
201만원 이상	51.9	48.1	100.0( 54)	
모 취업				
취업	56.0	44.0	100.0(379)	16.7(2)**
미취업	38.1	61.9	100.0(112)	
모 부재	77.3	22.7	100.0( 2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3-7〉 초등학교 자녀가 혼자 지내는 경우 하루 평균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전체	2.7	1.3	7	(264)
서울	2.5	1.3	6	( 46)
인천	2.4	0.9	4	( 44)
대구	3.0	1.3	6	( 47)
부산	2.8	1.4	6	( 38)
전주	2.5	1.3	5	( 29)
광주	2.9	1.5	7	( 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나. 비용

조사된 가구가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개인 서비스 이용 등 자녀의 보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158,70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준편차가 166,600원으로 개인 차이는 적지 않았다.

〈표 III-3-8〉 지난 4월 자녀보육에 들어간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기관		혈연 및 비혈연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9	148.6	24.5	87.1	158.7	166.6
지역						
서울	96.4	103.5	7.3	35.5	103.4	107.4
인천	155.3	167.2	27.0	101.5	179.3	186.2
대구	121.7	135.2	19.6	73.6	141.3	154.6
부산	167.2	158.0	41.0	112.7	197.4	176.8
전주	193.2	187.2	30.6	94.2	222.8	201.5
광주	111.9	133.8	27.3	89.6	143.2	157.5
F	7.0**		2.4*		8.3**	
가구형태						
확대가족	112.7	135.0	20.1	57.7	142.8	151.7
핵가족	152.3	160.2	27.8	97.6	176.5	177.6
한부모가족	98.1	110.5	15.1	57.4	113.1	122.8
기타	134.4	153.6	31.1	82.0	170.8	208.4
F	6.8**		1.1		7.5**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93.6	118.1	19.8	74.3	109.6	132.6
150만원 이하	109.1	128.3	23.1	76.3	133.8	151.6
151~200만원 이하	178.7	163.0	20.1	75.2	196.5	178.5
201만원 이상	205.5	149.6	48.0	149.6	246.0	198.4
F	21.9**		2.5		20.9**	
모 취업						
취업	131.8	139.5	28.1	95.4	157.7	161.5
미취업	151.0	172.8	16.6	65.6	166.8	180.9
모 부재	94.0	109.4	18.5	60.8	112.2	155.4
F	2.4		1.4		1.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이 비용을 기관과 개인 서비스로 나누어보면 기관 이용이 가구 평균 135,900 원이고 개인 보육서비스 비용이 가구 당 월 평균 24,500원이다.

지역별로는 총 비용은 서울이 월 평균 103,400원으로 가장 낮고 전주가 222,800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가구형태별로는 총 비용은 한부모 가족이 113,100원으로 가장 적고, 가구소득 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기관 이용 및 개인서비스 이용 비용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은 월 지출액이 109,600원이지만 가구 소득 201만원 이상인 가족은 246,000원이다. 모의 특성별로는 미취업모가 취업 모보다 높다. 이는 저소득 취업모가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표 III-3-7 참조).

<표 III-3-9>는 이러한 가구 월 총 보육비용은 월 소득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 평균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가 20.4%로 가장 높고, 서울이 9.3%로 가장 낮아 지역간 차이를 보인다.

가구형태별로는 확대 가족이 다소 낮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고, 가구소득별로도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 부재인 가족이 8.4%로 다소 낮고 취업과 미취업 가정의 차이는 없다(표 III-3-9 참조).

<표 III-3-9> 월 소득 중 자녀 보육비 비율

단위: %(명)

구분	비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전체	15.3	13.2	0	93	(811)
지역					
서울	9.3	9.1	0	60	(146)
인천	16.3	15.2	0	93	(151)
대구	14.1	12.7	0	80	(166)
부산	16.3	12.0	0	60	(137)
전주	20.4	13.2	1	69	( 69)
광주	18.4	13.6	0	60	(142)
F			10.9**		
가구형태					
확대가족	11.3	10.3	0	40	( 56)
핵가족	15.5	12.4	0	60	(533)
한부모가족	15.8	16.0	0	93	(201)
기타	15.8	12.7	0	40	( 18)
F			1.8		

(표 계속)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16.3	14.9	0	80	(167)
150만원 이하	15.5	14.3	0	93	(308)
151~200만원 이하	14.1	10.5	0	60	(231)
201만원 이상	15.9	13.1	0	60	( 89)
F			1.0		
모 취업					
취업	15.7	13.6	0	93	(560)
미취업	15.1	12.5	0	70	(216)
모 부재	8.4	9.7	0	40	( 27)
F			4.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이러한 비율 역시 10.8%로 조사된 2004년도 조사결과인 전국 통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비용으로도 2004년 전국 평균치는 26만 7천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 지원으로 절대치로는 적은 비용은 지불하지만 가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음을 나타낸다.

한편 다음 <표 III-3-10>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을 나타낸다. 가구당 평균 175,600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이용비용만은 평균 114,300원이다. 기관 이용비용은 지역별로는 광주와 부산이 지원 금액이 가장 적고, 인천이 가장 많다.

가구형태별로는 확대 가족이나 핵가족에 비하여 한부모 가족과 기타 가족 지원금이 각각 125,600원, 129,300원으로 많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적은 경향이다. 취업모가 개인서비스 이용 지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원 수준이 높다. 이는 보육도우미 이용가정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표 III-3-9 참조)<sup>8)</sup>.

8) 이는 보육도우미 파견가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III-3-10〉 지난 4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보육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기관 이용 비용		도우미 지원비용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4.3	142.6	65.2	204.2	175.6	251.2
지역						
서울	121.2	140.3	175.3	302.5	296.5	340.3
인천	144.2	168.2	0.2	2.1	144.4	168.9
대구	116.7	126.4	110.8	266.6	226.8	291.9
부산	93.2	159.0	7.0	38.4	98.3	179.7
전주	123.5	138.7	12.8	68.7	133.2	148.8
광주	80.6	113.3	-	-	78.7	110.3
F		2.9*		19.4**		15.7**
가구형태						
확대가족	112.8	148.0	50.6	157.4	163.2	247.1
핵가족	109.1	147.7	44.3	184.9	150.4	232.7
한부모가족	125.6	131.7	113.0	238.1	238.0	280.1
기타	129.3	115.2	128.8	295.4	245.2	301.8
F		0.6		5.6**		5.9**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128.4	136.7	87.2	215.2	214.5	265.4
150만원 이하	125.1	148.2	84.0	232.0	204.9	274.8
151~200만원 이하	101.8	143.5	47.8	188.3	147.9	230.0
201만원 이상	72.4	127.8	-	-	70.9	126.2
F		3.4*		4.0**		7.2**
모 취업						
취업	117.2	141.7	86.8	233.1	202.0	277.0
미취업	111.9	152.1	11.3	80.8	119.6	167.8
모 부재	63.5	78.9	54.8	178.7	116.3	191.5
F		1.6		9.0**		8.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 행태

### 가. 이용기관

<표 III-4-1>은 미취학 자녀 중 낮 동안 육아지원기관에 다니는 아동이 있는 경우, 현재 아동이 다니고 있는 기관 유형에 관한 내용이다. 보육시설이 49.9%로 가장 높고, 유치원이 40.0%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선교원이나 반일제이상 학원, 복지관, 공부방은 각각 2.1%, 1.7%, 1.2%, 0.7%로 매우 낮다. 아동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육시설은 감소하고 유치원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표 III-4-1> 현재 아이가 다니는 기관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	공부방	복지관	기타	계(수)
연령별								
전체	49.9	40.0	2.1	1.7	0.7	1.2	4.4	100.0(572)
0세	66.7	-	-	-	-	-	33.3	100.0( 3)
1세	60.0	-	-	-	-	-	40.0	100.0( 10)
2세	70.4	3.7	7.4	-	-	-	18.5	100.0( 27)
3세	69.7	21.2	-	1.5	1.5	-	6.1	100.0( 66)
4세	62.8	26.7	1.2	1.2	-	1.2	7.0	100.0( 86)
5세	56.3	38.9	0.8	1.6	-	1.6	0.8	100.0(126)
6세	35.0	55.6	1.7	3.4	1.7	0.9	1.7	100.0(117)
7세	33.9	57.9	4.1	1.7	-	1.7	0.8	100.0(121)
8세	75.0	-	-	-	-	25.0	-	100.0( 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대구가 65.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내고, 광주, 전주, 부산의 경우에는 유치원에 가는 아동 비율이 각각 58.3%, 56.7%, 55.0%로 보육시설보다 유치원에 더 많은 아동이 다닌다.<sup>9)</sup>

가구형태별로는 특히 한 부모 가족이 보육시설이 57.0%로 높고 유치원은 37.2%로 다른 가족에 비하여 낮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보육시설 이용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다. 보육시설 이용이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는 50% 이상인데 비하여 가구소득 201만원 이상인 가구는 36.1%이다. 모의 취업

9) 지역별 조사 대상 아동 연령 분포가 일정치 않으므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특성별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하여 유치원보다 보육시설을 더 많이 보내는 경향이다(표 III-4-2 참조).

〈표 III-4-2〉 현재 아이가 다니는 기관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	공부방	복지관	기타	계(수)
전체	49.9	40.0	2.1	1.7	0.7	1.2	4.4	100.0(572)
지역								
서울	61.3	29.3	6.7	-	-	1.3	1.3	100.0( 75)
인천	62.2	27.6	1.6	0.8	-	2.4	5.5	100.0(127)
대구	65.8	23.4	0.9	6.3	-	-	3.6	100.0(111)
부산	35.0	55.0	1.7	0.8	0.8	1.7	5.0	100.0(120)
전주	31.3	56.7	-	-	1.5	1.5	9.0	100.0( 67)
광주	33.3	58.3	2.8	1.4	2.8	-	1.4	100.0( 72)
가구형태								
확대가족	36.6	48.8		4.9	-	-	9.8	100.0( 41)
핵가족	49.5	39.6	2.0	2.0	1.0	1.5	4.3	100.0(396)
한부모가족	57.0	37.2	3.3	-	-	-	2.5	100.0(121)
기타	41.7	50.0		-	-	-	8.3	100.0( 12)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52.3	41.4	.9	0.9	-	0.9	3.6	100.0(111)
150만원 이하	57.1	31.0	3.3	2.4	1.4	1.0	3.8	100.0(210)
151~200만원 이하	47.3	41.8	2.4	2.4	0.6	0.6	4.8	100.0(165)
201만원 이상	36.1	54.2	-	-	-	2.8	6.9	100.0( 72)
모 취업								
취업	55.2	37.3	2.1	0.8	0.5	1.3	2.7	100.0(375)
미취업	41.9	43.0	1.7	4.1	0.6	1.2	7.6	100.0(172)
모 부재	14.3	57.1	7.1	-	7.1	-	14.3	100.0( 1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나. 이용 행태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빈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간다는 응답이 83.9%로 가장 높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간다는 응답도 14.5%로 나타났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경우는 서울의 29.3%가 가장 높아서 전체 평균의 2배가량 되는 높은 수치로 가장 낮은 인천의 9.0%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표 III-4-3〉 현재 이용하는 기관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월요일-토요일 까지 매일	월요일-금요일 까지 매일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계(수)
전체	14.5	83.9	0.5	1.1	100.0(553.)
지역					
서울	29.3	69.3	-	1.3	100.0( 75)
인천	9.0	87.7	1.6	1.6	100.0(122)
대구	10.9	88.2	-	0.9	100.0(110)
부산	16.1	82.1	-	1.8	100.0(112)
전주	11.3	87.1	1.6	-	100.0( 62)
광주	13.9	86.1	-	-	100.0( 72)
이용기관					
보육시설	17.7	80.9	-	1.4	100.0(285)
유치원	10.6	88.5	0.4	0.4	100.0(229)
선교원 등 <sup>2)</sup>	27.3	68.2	4.5	-	100.0( 23)
기타 <sup>3)</sup>	-	90.0	5.0	5.0	100.0( 20)
가구형태					
확대가족	5.6	86.1	-	8.3	100.0( 38)
핵가족	10.6	88.1	0.8	0.5	100.0(385)
한부모가족	28.8	70.3	-	0.8	100.0(118)
기타	16.7	83.3	-	-	100.0( 12)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26.9	72.2	0.9	-	100.0(108)
150만원 이하	15.2	83.3	0.5	1.0	100.0(204)
151~200만원 이하	8.8	89.3	-	1.9	100.0(159)
201만원 이상	7.4	89.7	1.5	1.5	100.0( 68)
모 취업					
취업	16.1	82.5	0.3	1.1	100.0(366)
미취업	9.8	87.8	1.2	1.2	100.0(164)
모 부재	33.3	66.7	-	-	100.0( 12)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2) 선교원, 공부방, 복지관 등임.

3) 학원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이용기관별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간다는 비율이 보육시설 17.7%, 유치원이 10.6%, 기타 기관 27.3%로 유치원이 타 기관에 비하여 가장 낮다

가구형태별로는 특히 한 부모 가족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한다는 비

율이 28.8%로 다른 가족보다 높고, 가구소득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아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한다는 비율이 26.9%로 높으며, 모가 없는 아동이 33.3%로 다른 아동에 비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다(표 III-4-3 참조).

다.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 만족도

1) 이용시간

평일에 아동이 기관에 등원하는 시각을 보면 가장 많은 33.8%의 아동이 8시 30분 이후부터 9시까지 등원하고, 다음이 9시 이후부터 9시 30분까지가 24.0%이다.

기관별 차이는 8시까지 등원하는 아동의 비율이 보육시설 10.2%, 유치원 7.0%, 선교원 9.1%이고, 반면에 10시 이후에 등원한다는 비율이 보육시설 2.5% 등 총 1.6%이다(표 III-4-4 참조).

〈표 III-4-4〉 영유아 등원시각

단위: %,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등	기타	전체
7:30까지	2.1	0.4	-	-	1.3
7:31~8:00	8.1	6.6	9.1	-	7.2
8:01~8:30	21.5	23.6	4.5	5.3	21.1
8:31~9:00	28.2	40.6	31.8	36.8	33.8
9:01~9:30	24.6	21.0	40.9	31.6	24.0
9:31~10:00	13.0	7.9	9.1	21.1	11.0
10:01~12:00	0.7	-	4.5	5.3	0.7
12:01 이후	1.8	-	-	-	0.9
계(수)	100.0(284)	100.0(229)	100.0(22)	100.0(19)	100.0(5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하원시각은 전체적으로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에 온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19시 이후는 6.0%이다. 약 1/3 아동은 오후 3시 정도에 귀가한다. 그러나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육시설은 아동의 귀가 시간이 전 시간대에 골고루 분포하는 경향이다.(표 III-4-5 참조).

〈표 III-4-5〉 영유아 하원시각

단위: %,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등	기타	전체
14:00까지	6.0	16.2	4.5	5.3	10.1
14:01~15:00	12.7	28.8	13.6	31.6	20.0
15:01~16:00	19.4	16.2	18.2	26.3	18.2
16:01~17:00	17.3	9.2	36.4	21.1	14.8
17:01~17:30	7.4	10.9	13.6	-	8.8
17:31~18:00	14.4	12.2	-	10.5	12.8
18:01~19:00	14.1	4.4	4.5	-	9.2
19:01 이후	8.8	2.2	9.1	5.3	6.0
계(수)	100.0(284)	100.0(229)	100.0(22)	100.0(19)	100.0(5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2) 평일 이용시간

다음은 영유아의 기관 등원 및 하원 시각으로 산출한 기관 이용시간 분포는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13.2%, 20.8%이고 9시간 이상은 22.4%이며, 평균은 7시간 28분이고 표준편차는 2시간 2분이다. 기관별로 보면 이용시간은 보육시설이 가장 길고 유치원이 가장 짧다.

〈표 III-4-6〉 기관별 이용 시간

단위: %,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등	기타	전체
5시간까지	11.0	16.6	4.5	15.8	13.2
5~6시간까지	12.4	30.1	22.7	31.6	20.8
6~7시간까지	18.7	12.2	18.2	15.8	15.9
7~8시간까지	12.7	11.8	18.2	15.8	12.7
8~9시간까지	15.9	14.0	22.7	5.3	15.0
9~10시간까지	16.3	10.9	9.1	5.3	13.4
10~11시간까지	8.8	2.2	4.5	-	5.6
11시간 그 이상	4.2	2.2	-	10.5	3.4
계(수)	100.0(283)	100.0(229)	100.0(22)	100.0(19)	100.0(553)
평균이용시간	7시간 53분	6시간 59분	7시간 24분	7시간 15분	7시간 28분
표준편차	2시간 7분	1시간 49분	1시간 30분	2시간 44분	2시간 2분
F			8.5**		

주: \*\* p&lt;.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다음 <표 III-4-7>은 아동 각세별, 모 취업여부별로 이용시간을 산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취업모 아동의 기관 이용시간이 7시간 51분으로 미취업 모 아동의 이용시간 6시간 37분보다 1시간 이상이 길다. 취업모의 0세아는 이용시간이 10시간 15분이고, 1, 2세아는 9시간 10분 정도이고, 3, 4세가 8시간대 5, 6세가 7시간대이다. 미취업모의 아동은 평균 6시간 37분으로 만4세가 7시간 25분으로 길게 조사되었지만 그 이외 연령은 모두 6시간대이다. 한편 모가 부재인 아동은 빈도가 많지 않아서 일반화하기 어렵고, 이용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표 III-4-7>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체
<b>취업</b>								
평균	10시간 15분	9시간 11분	9시간 8분	8시간 14분	8시간 1분	7시간 26분	7시간 42분	7시간 51분
표준편차	21분	1시간 54분	2시간 24분	2시간 26분	2시간 8분	1시간 52분	1시간 50분	2시간 1분
(수)	(2)	(6)	(16)	(42)	(52)	(77)	(168)	(363)
F				3.0**				
<b>미취업</b>								
평균	-	-	6시간 47분	6시간 56분	7시간 25분	6시간 14분	6시간 19분	6시간 37분
표준편차	-	-	1시간 52분	1시간 32분	1시간 46분	1시간 25분	1시간 29분	1시간 44분
(수)	-	-	(4)	(21)	(26)	(45)	(89)	(159)
F				4.2**				
<b>모부재</b>								
평균	-	-	-	-	7시간 15분	10시간 30분	7시간 32분	7시간 45분
표준편차	-	-	-	-	2시간 28분	-	2시간 19분	2시간 4분
(수)	-	-	-	-	(2)	(1)	(8)	(11)
F				1.0				
<b>전체</b>								
평균	10시간 15분	9시간 11분	8시간 29분	7시간 49분	7시간 54분	7시간 4분	7시간 19분	7시간 29분
표준편차	21분	1시간 54분	2시간 31분	2시간 15분	2시간 11분	1시간 58분	1시간 51분	2시간 3분
(수)	(2)	(6)	(21)	(64)	(82)	(126)	(243)	(544)
F				4.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는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2) 이용시간 만족도

<표 III-4-8>은 기관의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 여부를 나타낸다. 만족이 70.4%, 매우 만족이 17.0%로 기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이용시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만족하는 총 비율이 95.9%, 불만족 4.1%로 만족도가 가장 높다. 반면에 대구는 불만족이 19.1%, 매우 불만족이 0.9%로 부정적인 의견이 총 20.0%이다.

이용기관별로는 선교원, 공부방, 복지관과 같은 공공기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만족도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III-4-8〉 기관의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계(수)	X <sup>2</sup> (df)
전체	17.0	70.4	12.2	100.0(558)	
지역					
서울	28.0	64.0	8.0	100.0( 75)	
인천	16.3	74.0	9.8	100.0(123)	
대구	14.5	65.5	20.0	100.0(110)	29.6(10)**
부산	8.7	75.7	15.6	100.0(115)	
전주	12.7	73.0	14.3	100.0( 63)	
광주	27.8	68.1	4.1	100.0( 72)	
이용기관					
보육시설	16.5	69.5	14.0	100.0(285)	
유치원	16.2	72.1	11.8	100.0(229)	na
선교원 등 <sup>2)</sup>	34.8	60.9	4.3	100.0( 23)	
기타 <sup>3)</sup>	10.0	80.0	10.0	100.0( 20)	
가구형태					
확대가족	10.5	84.2	5.3	100.0( 38)	
핵가족	17.6	70.0	12.4	100.0(387)	na
한부모가족	17.6	68.1	14.3	100.0(119)	
기타	8.3	75.0	16.7	100.0( 12)	

(표 계속)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계(수)	X <sup>2</sup> (df)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15.6	71.6	12.8	100.0(109)	6.6(6)
150만원 이하	18.0	65.5	16.5	100.0(206)	
151~200만원 이하	16.3	73.8	10.0	100.0(160)	
201만원 이상	15.9	76.8	7.2	100.0( 69)	
모 취업					
취업	16.8	68.9	14.3	100.0(370)	na
미취업	18.9	71.3	9.8	100.0(164)	
모 부재	7.7	84.6	7.7	100.0( 13)	

주: 1)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2) 선교원, 공부방, 복지관 등임.

3) 학원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가족과 한 부모 가족이 불만족 비율이 다소 높고, 가구소득별로는 특정한 경향을 찾기 어려우며 취업모가 불만이라는 비율이 14.3%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다(표 III-4-8 참조).

<표 III-4-9>는 기관의 이용시간에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인데,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67.1%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서울은 85.7%가 이러한 이유를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시작시간이 너무 늦고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응답비율이 27.1%로, 특히 대구는 50.0%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시작시간이 너무 늦다는 의견은 전체 5.7%로 인천에서 14.3%의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용자가 특히 개원시간이 늦다는 응답비율이 많았다. 이는 보육시설 이용자가 취업모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월 소득 150만원 이하 가정은 개원시간이 늦고, 폐원시간이 이르다는 이유의 비율이 40.7%로, 이외 타 소득 계층가구들의 약 70% 가량이 폐원 시간이 이음을 불만족 사유로 선택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가구형태나 모의 취업 특성별로 보면 60% 이상이 폐원시간이 이음을 가장 큰 기관 이용 시간의 불만족 이유로 응답하였다. 특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9 참조).

〈표 III-4-9〉 이용시간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개원시간이 낮고 폐원시간이 이릅니다	개원시간이 늦음	폐원시간이 이릅니다	계(수)
전체	27.1	5.7	67.1	100.0(70)
지역				
서울	14.3	-	85.7	100.0( 7)
인천	7.1	14.3	78.6	100.0(14)
대구	50.0	4.5	45.5	100.0(22)
부산	15.4	7.7	76.9	100.0(13)
전주	37.5	-	62.5	100.0( 8)
광주	16.7	-	83.3	100.0( 6)
이용기관				
보육시설	32.5	5.0	62.5	100.0(40)
유치원	15.4	7.7	76.9	100.0(26)
선교원 등 <sup>2)</sup>	-	-	100.0	100.0( 1)
기타 <sup>3)</sup>	66.7	-	33.3	100.0( 3)
가구형태				
확대가족	33.3	-	66.7	100.0(38)
핵가족	27.7	6.4	66.0	100.0(47)
한부모가족	29.4	5.9	64.7	100.0(17)
기타	-	-	100.0	100.0( 2)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11.8	11.8	76.5	100.0(17)
150만원 이하	40.7	3.7	55.6	100.0(27)
151~200만원 이하	26.3	-	73.7	100.0(19)
201만원 이상	16.7	16.7	66.7	100.0( 6)
모 취업				
취업	27.5	5.9	66.7	100.0(51)
미취업	27.8	5.6	66.7	100.0(18)
모 부재	-	-	100.0	100.0( 1)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2) 선교원, 공부방, 복지관 등임.

3) 학원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라. 비용

다음 <표 III-4-10>은 기관 이용 시 일정하게 납입하는 월 보육·교육비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표 III-4-10〉 기관 이용 시 일정하게 납입하는 월 보육료나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분	보육료 / 교육비			추가 비용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15.1	120.9	(512)	38.9	65.6	(483)
지역						
서울	57.9	73.2	( 71)	38.0	46.9	( 75)
인천	145.0	144.0	(117)	31.2	43.8	(102)
대구	100.0	88.2	( 99)	33.8	49.5	( 96)
부산	133.5	116.5	(106)	48.2	99.4	( 99)
전주	168.7	163.5	( 54)	47.0	53.0	( 43)
광주	72.5	80.1	( 65)	40.0	75.3	( 68)
F		10.0**			0.9	
이용기관						
보육시설	103.5	116.6	(263)	34.0	55.7	(245)
유치원	127.5	121.8	(211)	46.0	73.4	(192)
선교원 등 <sup>2)</sup>	140.5	171.6	( 19)	51.4	113.8	( 19)
기타 <sup>3)</sup>	123.6	101.4	( 17)	21.9	29.0	( 17)
F		1.9			1.8	
가구형태						
확대가족	121.1	115.0	( 37)	50.2	80.1	( 33)
핵가족	132.4	129.5	(357)	36.5	57.2	(327)
한부모가족	57.5	68.0	(105)	41.5	81.9	(111)
기타	89.7	85.2	( 11)	49.8	75.5	( 11)
F		11.2**			0.6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64.3	71.0	( 98)	38.0	85.6	( 97)
150만원 이하	89.2	106.5	(187)	45.0	67.7	(186)
151~200만원 이하	139.2	109.4	(151)	36.1	50.7	(134)
201만원 이상	201.4	157.0	( 65)	28.5	54.3	( 57)
F		26.3**			1.1	
모 취업						
취업	110.8	125.0	(340)	40.4	67.4	(328)
미취업	125.3	111.6	(154)	36.0	64.3	(141)
모 부재	95.3	93.5	( 9)	42.9	32.1	( 7)
F		0.9			0.2	

주: 1)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2) 선교원, 공부방, 복지관 등임.

3) 학원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기관을 이용하면서 일정하게 정해진 월 보육료나 교육비는 평균 11만 5천원으로 최대는 전주의 16만 9천원, 최소는 서울의 5만 8천원이다. 이는 응답자의 소득수준 차이에서 오는 보육료·교육비 지원금의 차이 때문이다.

지난 3~5개월 간 특별활동, 견학 등으로 추가로 비용을 낸 경우, 월 평균 3만 9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는 부산의 4만 8천원, 최소는 인천이 3만 1천원의 추가비용이 들었다.

정해진 보육료나 교육비는 기관별로 보면 보육시설 이용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및 모 특성별로는 한부모 가족이 기관 이용비용이 57.5%로 가장 낮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용이 낮으며,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다소 적은 비용을 부담한다. 한편으로 추가비용은 기관별로는 기타 기관과 보육시설이 제일 저렴하고 이외는 가구나 부모 특성별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표 III-4-10 참조).

다음으로 <표 III-4-11>은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아동을 위하여 매월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내는 비용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그 결과를 보면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51.9%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부담 13.8%로 전체적으로 64.7%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은 6.4%이다. 지역 차이는 인천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가 가장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천은 20.0%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광주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18.2%로 전체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선교원, 공부방, 복지관 이용자가 매우 부담 5.3%, 부담 57.9%로 부담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학원 등 이용자가 매우 부담 40.9%, 부담 36.4%로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모 특성별로는 한부모 가족이 적당하다는 응답비율이 31.4%로 가장 높고, 가구소득별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이 된다는 비율이 다소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는 매우 부담 9.1%, 부담 54.5%인 반면, 월 소득 201만원 이상 가구는 매우 부담이 15.2%, 부담이 65.2%로 비교적 높다. 모의 취업에 따른 차이는 불분명한데, 모 부재 아동 보호자는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58.3%로 취업모 53.8%, 미취업모 46.4%에 비하여 다소 높다(표 III-4-11 참조).

〈표 III-4-11〉 생활수준에 비추어 보육·교육기관 비용의 적절성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	부담	적당	전혀 부담 안 됨	계(수)	X <sup>2</sup> (df)
전체	13.8	51.9	27.9	6.4	100.0(513)	
지역						
서울	4.4	55.9	36.8	2.9	100.0( 68)	
인천	20.0	54.3	22.9	2.9	100.0(105)	39.7(15)**
대구	12.9	49.5	32.7	5.0	100.0(101)	
부산	13.5	62.2	19.8	4.5	100.0(111)	
전주	16.1	43.5	30.6	9.7	100.0( 62)	
광주	13.6	37.9	30.3	18.2	100.0( 66)	
이용기관						
보육시설	13.9	50.4	28.7	7.0	100.0(244)	
유치원	11.1	55.3	28.1	5.5	100.0(217)	na
선교원 등 <sup>2)</sup>	5.3	57.9	26.3	10.5	100.0( 19)	
기타 <sup>3)</sup>	40.9	36.4	18.2	4.5	100.0( 22)	
가구형태						
확대가족	16.7	50.0	27.8	5.6	100.0( 36)	
핵가족	14.8	51.3	27.7	6.2	100.0(357)	na
한부모가족	8.6	51.4	31.4	8.6	100.0(105)	
기타	15.4	76.9	7.7	-	100.0( 13)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9.1	54.5	27.3	9.1	100.0( 99)	
150만원 이하	15.8	44.0	32.1	8.2	100.0(184)	15.6(9)
151~200만원 이하	14.7	54.0	27.3	4.0	100.0(150)	
201만원 이상	15.2	65.2	16.7	3.0	100.0( 66)	
모 취업						
취업	12.7	53.8	27.5	5.9	100.0(338)	
미취업	17.0	46.4	29.4	7.2	100.0(153)	na
모 부재	16.7	58.3	16.7	8.3	100.0( 12)	

주: 1)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2) 선교원, 공부방, 복지관 등임.

3) 학원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4-12〉는 보육료 또는 교육비를 지원받는지 여부와 지원받는 경우 감면 및 면제 이유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전체의 83.0%가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

원받고 있고, 나머지 17.0%는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중 가장 많은 36.8%가 기타 저소득층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9%, 차상위 계층 14.9% 순이다.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대상자, 모·부자가정자녀와 장애아동무상보육 대상자인 경우는 각각 7.2%, 5.3%, 1.6%로 조사되었다.

기타 저소득층 지원의 경우, 전주가 53.3%로 가장 높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서울이 27.0%, 24.3%로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이다.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대상자는 대구에서 12.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율이 높은 편이다.

보육료 미지원 대상의 비율은 부산이 26.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2.7%로 가장 낮아 지역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4-12〉 보육료 지원 여부 및 보육료 감면 및 면제 이유

단위: %(명)

구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부자 가정자녀	기타 저소득 층	만5세아 무상보육 ·교육대 상자	장애아동 무상보육	기타	미지원	계(수)
지역									
전체	15.9	14.9	5.3	36.8	7.2	1.6	1.3	17.0	100.0(552)
서울	27.0	24.3	6.8	35.1	1.4	2.7	-	2.7	100.0( 74)
인천	15.8	20.0	5.8	28.3	6.7	4.2	4.2	15.0	100.0(120)
대구	13.9	11.1	5.6	39.8	12.0	-	0.9	16.7	100.0(108)
부산	11.1	10.3	3.4	37.6	8.5	1.7	0.9	26.5	100.0(117)
전주	13.3	5.0	3.3	53.3	6.7	-	-	18.3	100.0( 60)
광주	17.8	17.8	6.8	32.9	5.5	-	-	19.2	100.0( 7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마. 서비스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유치원 등 기관에 예방접종, 병원 데려가기, 아픈 아동 병간호, 야간연장보육을 마음 놓고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가지 항목 중 의뢰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병간호가 65.9%로 가장 높고, 다음이 병원 데려가기로 41.5%이며, 예방접종이 36.3%, 야간 연장보육이 30.6%로 조사되었다. 즉, 육아지원기관에는 건강 서비스보다 야간 보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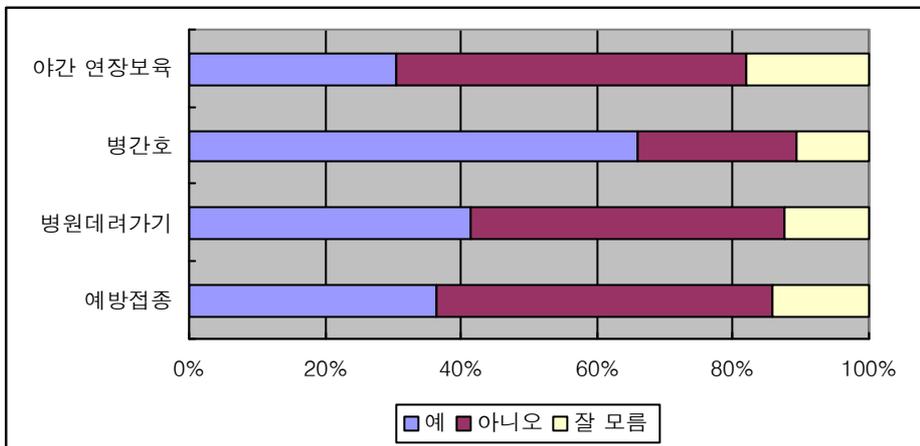
기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표 III-4-13〉 보육시설에 의뢰 가능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름	계(수)
예방접종	36.3	49.5	14.2	100.0(560)
병원 데려가기	41.5	46.2	12.3	100.0(561)
병간호	65.9	23.4	10.7	100.0(559)
야간 연장보육	30.6	51.4	18.0	100.0(5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그림 III-4-1] 보육시설에 의뢰 가능 여부

각 항목별로 지역 및 이용기관별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 의뢰

먼저, 보육시설·유치원 등 기관에 예방접종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체의 절반 가량인 49.5%가 아니라고 응답했고, 36.3%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이 14.2%로 다소 높다.

지역별로는 아니라는 응답은 57.8%로 대구가 가장 높고, 가능하다는 답변은 40.5%로 광주가 가장 높다.

이용기관별로는 유치원이 의뢰 가능하다는 응답이 40.5%로, 보육시설 33.1%,

선교원 등 31.8%, 기타 기관 34.8%와 비교하여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모두 집단 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표 III-4-14〉 보육시설에 예방접종 의뢰 가능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름	계(수)	$\chi^2(df)$
전체	36.3	49.5	14.2	100.0(560)	
지역					
서울	34.7	57.3	8.0	100.0( 75)	15.3(10)
인천	40.7	43.1	16.3	100.0(123)	
대구	27.5	57.8	14.7	100.0(109)	
부산	41.2	46.2	12.6	100.0(119)	
전주	30.0	56.7	13.3	100.0( 60)	
광주	40.5	39.2	20.3	100.0( 74)	
이용기관					
보육시설	33.1	53.2	13.7	100.0(284)	4.7(6)
유치원	40.5	45.0	14.5	100.0(220)	
선교원 등 <sup>1)</sup>	31.8	50.0	18.2	100.0( 22)	
기타 <sup>2)</sup>	34.8	56.5	8.7	100.0( 23)	

주: 1) 선교원, 공부방, 복지관 등임.

2) 학원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2) 병원 데려가기

다음 <표 III-4-15>는 아동이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를 마음 놓고 의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를 보면, 의뢰가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46.2%로 의뢰 가능함 41.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12.3%로 나타났다. 아니라는 응답은 서울이 49.3%로 가장 높고, 가능하다는 답변은 45.8%로 부산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의견 중 아니다에 비하여 가능하다는 응답이 더 높은 지역은 부산이 유일하고, 광주의 경우 두 의견이 모두 44.0%로 동일하다.

이용기관별로는 의뢰 가능하다는 비율이 보육시설에서 43.3%로 유치원 39.4%보다 다소 높다. 의뢰가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선교원 등의 기관이 50.0%로 가장 높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표 III-4-15〉 보육시설에 병원 데려가기 의뢰 가능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름	계(수)	X <sup>2</sup> (df)
전체	41.5	46.2	12.3	100.0(561)	
지역					
서울	36.0	49.3	14.7	100.0( 75)	
인천	40.7	48.0	11.4	100.0(123)	
대구	38.9	49.1	12.0	100.0(108)	3.5(10)
부산	45.8	40.8	13.3	100.0(120)	
전주	44.3	45.9	9.8	100.0( 61)	
광주	43.2	44.6	12.2	100.0( 74)	
이용기관					
보육시설	43.3	45.1	11.6	100.0(284)	
유치원	39.4	48.4	12.2	100.0(221)	1.9(6)
선교원 등 <sup>1)</sup>	36.4	50.0	13.6	100.0( 22)	
기타 <sup>2)</sup>	43.5	39.1	17.4	100.0( 23)	

주: 1) 선교원, 공부방, 복지관 등임.

2) 학원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3) 병간호

〈표 III-4-16〉은 보육시설·유치원 등 아동이 다니는 기관에 투약 등 아픈 아이를 보살피는 것을 마음 놓고 의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표를 보면 전체 평균 65.9%의 응답자가 가능, 23.4%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해, 비교적 병간호 의뢰 가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관에 투약 등 병간호 의뢰가 가능하다는 경우는 전주가 70.5%, 불가능하다는 경우는 광주가 27.4%로 가장 높다. 모든 조사 지역에서 의뢰 가능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병간호 의뢰 가능 비율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용기관별로는 의뢰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보육시설이 70.0%, 유치원이 63.2%로 비교적 높고, 그 이외 선교원 등 기관은 59.1%, 기타 기관은 52.2%로 60% 미만의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표 III-4-12 참조). 기타 학원 등의 기관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1.7%로 타 기관에 비하여 다소 높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표 III-4-16〉 보육시설에 투약 등 병간호 의뢰 가능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름	계(수)	X <sup>2</sup> (df)
전체	65.9	23.4	10.7	100.0(559)	
지역					
서울	66.7	21.3	12.0	100.0( 75)	
인천	65.9	24.4	9.8	100.0(123)	
대구	66.1	22.9	11.0	100.0(109)	5.2(10)
부산	61.9	23.7	14.4	100.0(118)	
전주	70.5	19.7	9.8	100.0( 61)	
광주	67.1	27.4	5.5	100.0( 73)	
이용기관					
보육시설	70.0	19.8	10.2	100.0(283)	
유치원	63.2	26.4	10.5	100.0(220)	9.3(6)
선교원 등 <sup>1)</sup>	59.1	36.4	4.5	100.0( 22)	
기타 <sup>2)</sup>	52.2	26.1	21.7	100.0( 23)	

주: 1) 선교원, 공부방, 복지관 등임.

2) 학원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4) 야간 연장보육

다음은 긴급상황 시 육아지원기관에 야간 연장보육을 마음 놓고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하여 가능하다 30.6%, 아니오라는 응답이 51.3%, 잘 모르겠다 18.1%로 나타났다(표 III-4-17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의뢰 가능하다는 경우는 39.3%로 인천에서 응답이 가장 높았고, 대구가 60.6%로 의뢰가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한편, 서울의 경우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0%로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인 20.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과 선교원 등은 야간 보육 의뢰 가능성이 각각 32.3%, 31.8%로 유치원 28.2%, 기타 기관 21.7%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표 III-4-17〉 보육시설에 야간 연장보육 의뢰 가능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름	계(수)	X <sup>2</sup> (df)
전체	30.6	51.4	18.0	100.0(558)	
지역					
서울	20.3	56.8	23.0	100.0( 74)	
인천	39.3	45.9	14.8	100.0(122)	
대구	25.7	60.6	13.8	100.0(109)	18.0(10)
부산	26.9	48.7	24.4	100.0(119)	
전주	37.7	49.2	13.1	100.0( 61)	
광주	34.2	47.9	17.8	100.0( 74)	
이용기관					
보육시설	32.3	53.9	13.8	100.0(282)	
유치원	28.2	50.5	21.4	100.0(220)	7.8(6)
선교원 등 <sup>1)</sup>	31.8	50.0	18.2	100.0( 22)	
기타 <sup>2)</sup>	21.7	47.8	30.4	100.0( 23)	

주:1) 선교원, 공부방, 복지관 등임.

2) 학원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마.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

본 조사에서는 이용시간의 다양화, 가족같은 분위기, 다양한 프로그램, 저렴한 비용, 양질의 급간식, 부모대리 역할, 기타의 7개의 보기를 주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가장 바라는 바를 하나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9%가 가족이나 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뒤이어 다양한 프로그램 실사가 25.7%, 저녁시간, 휴일 등 상황에 따른 이용시간의 다양함 23.4% 순으로 꼽았다.

지역을 나누어 보면 지역별로 가장 선호하는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같은 분위기를 원하는 경우는 인천이 31.7%, 이용시간의 다양화는 33.0%로 대구가, 다양한 프로그램은 31.7%로 부산이 가장 높다. 서울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비용 요구가 2.7%로 낮은 반면, 급간식과 부모대리 역할 수행이 모두 12.2%로 평균인 6.3%, 5.4%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서울 응답자의 소득수준이 낮아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이 많고, 취업모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용기관별 차이는 보육시설이 이용시간 다양화를 지적한 비율이 30.7%로 가

장 높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28.6%이다. 유치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31.9%로 가장 많고 가족 같은 분위기와 저렴한 비용 희망이 각각 19.9%, 18.6%이다.

〈표 III-4-18〉 보육시설에 가장 바라는 점

단위: %(명)

구분	이용시간 다양화	가족같은 분위기	다양한 프로그램	저렴한 비용	급간식	부모대리 역할	기타	계(수)
전체	23.4	25.9	25.7	12.0	6.3	5.5	1.2	100.0(568)
지역								
서울	27.0	20.3	24.3	2.7	12.2	12.2	1.4	100.0( 74)
인천	20.3	31.7	21.1	14.6	5.7	5.7	0.8	100.0(123)
대구	33.0	24.8	24.8	7.3	4.6	4.6	0.9	100.0(109)
부산	16.3	24.4	31.7	19.5	5.7	2.4	-	100.0(123)
전주	21.5	27.7	26.2	7.7	9.2	7.7	-	100.0( 65)
광주	24.3	24.3	25.7	14.9	2.7	2.7	5.4	100.0( 74)
이용기관								
보육시설	30.7	28.6	19.1	7.4	7.1	5.7	1.4	100.0(283)
유치원	15.9	19.9	31.9	18.6	6.2	6.2	1.3	100.0(226)
선교원 등 <sup>2)</sup>	9.5	47.6	23.8	9.5	4.8	4.8	-	100.0( 21)
기타 <sup>3)</sup>	20.0	32.0	32.0	12.0	4.0	-	-	100.0( 25)
가구형태								
확대가족	18.4	21.1	26.3	21.1	5.3	7.9	-	100.0( 38)
핵가족	21.7	28.2	25.7	12.6	5.8	4.8	1.3	100.0(397)
한부모가족	33.1	17.8	24.6	8.5	7.6	7.6	0.8	100.0(118)
기타	7.7	30.8	38.5	-	15.4	-	7.7	100.0( 13)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35.5	20.0	22.7	5.5	8.2	6.4	1.8	100.0(110)
150만원 이하	23.2	24.2	24.2	11.8	9.0	6.2	1.4	100.0(211)
151~200만원 이하	21.0	26.3	28.1	16.2	3.6	3.6	1.2	100.0(167)
201만원 이상	13.6	31.8	33.3	13.6	3.0	4.5	-	100.0( 66)
모 취업								
취업	26.6	27.2	22.7	9.0	7.9	5.8	0.8	100.0(379)
미취업	18.0	22.8	31.7	19.2	1.8	4.2	2.4	100.0(167)
모 부재	9.1	27.3	36.4	9.1	9.1	9.1	-	100.0( 11)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2) 선교원, 공부방, 복지관 등임.

3) 학원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한부모 가족이 이용시간 다양화를 희망하는 비율이 33.1%로 가장 높다. 확대가족과 핵가족은 저렴한 비용은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가족에 비하여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들 가족이 보육료 지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용시간의 다양화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같은 분위기나 다양한 프로그램, 저렴한 비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이용시간의 다양화를 희망하는 비율이 26.6%로 미취업모 18.0%에 비하여 높다.

## 5.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가. 주 양육자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친인척이나 비혈연이 아이를 돌본다는 경우 양육지원 제공자가 누구인가를 조사하였다.

〈표 III-5-1〉 부모가 돌보지 못할 때 양육자

단위: %(명)

구분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파출부	가정부 (동거 비혈연)	이웃· 탁아모	보육(파견) 도우미	기타	계(수)
전체	18.3	17.8	12.3	0.2	0.2	2.4	36.5	12.3	100.0(416)
지역									
서울	4.6	6.2	6.2	-	-	3.1	72.3	7.7	100.0( 65)
인천	16.0	16.0	11.0	-	-	2.0	47.0	8.0	100.0(100)
대구	11.4	20.0	12.9	-	-	2.9	40.0	12.9	100.0( 70)
부산	29.9	21.8	6.9	1.1	1.1	2.3	19.5	17.2	100.0( 87)
전주	20.5	25.0	22.7	-	-	-	18.2	13.6	100.0( 44)
광주	28.0	20.0	22.0	-	-	4.0	10.0	16.0	100.0( 5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으로 보육(파견)도우미가 36.5%로 가장 높고, 친조부모가 18.3%, 외조부모가 17.8%, 친인척이 12.3% 순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족 및 친인척이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총 48.4%로 보육(파견)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율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서울은 보육(파견)도우미 고용비율이 72.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반면, 광주는 10.0%만이 보육(파견)도우미를 이용하고, 총 70.0%가 가족 및 친인척을 이용하여 지역간 차이를 보인다. 파출부나 가정부(동거 비혈연)는 두 경우 모두 1.1%씩 부산에서만 나타난다.

## 나. 장소

개인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주로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아이의 집이 71.8%, 돌보는 사람 집이 28.2%로 대부분 아이의 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집에서 돌보는 비율이 서울이 81.0%로 가장 높았고, 돌보는 사람 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43.5%로 광주가 가장 높았다. 지역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표 III-5-2〉 주된 양육 장소

구분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단위: %(명)
전체	71.8	28.2	100.0(379)	9.1(5)
서울	81.0	19.0	100.0( 63)	
인천	75.5	24.5	100.0( 94)	
대구	69.7	30.3	100.0( 66)	
부산	69.0	31.0	100.0( 71)	
전주	74.4	25.6	100.0( 39)	
광주	56.5	43.5	100.0( 4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다. 돌보는 일수 및 시간

일주일에 조부모나 비혈연인과 같은 대리 양육자가 아동을 돌보는 일수는 4.4일로 최대값은 서울의 4.7일, 최소값은 전주의 3.8일이다.

조부모나 비혈연인이 평일 평균 아동을 돌보는 시간은 7.5시간으로 최대 전주가 8.9시간부터 최소 대구의 6.5시간이다.

〈표 III-5-3〉 대리 양육자의 일주일 평균 양육일수

단위: 일(명)

구분	일주일 중 일수			평일 중 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4	1.8	(372)	7.5	5.1	(369)
서울	4.7	1.5	( 65)	7.5	4.8	( 65)
인천	4.6	1.5	( 90)	7.3	5.2	( 90)
대구	4.4	1.7	( 68)	6.5	3.0	( 69)
부산	4.4	2.1	( 71)	8.9	5.7	( 72)
전주	3.8	2.1	( 32)	8.0	5.8	( 30)
광주	3.9	2.0	( 46)	7.3	5.8	( 43)
F		0.1			6.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평일 중 대리 양육자가 아동을 주로 돌보는 시간은 방과후가 38.5%, 아침에서 저녁까지가 27.3%,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이 11.9%순으로 나타났다. 아침부터 밤까지 돌보는 경우는 7.7%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방과후 시간에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52.3%이며,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의 경우는 인천이 20.0%로 평균인 11.9%에 비해 다소 높다. 부산과 전주는 아침부터 밤까지라는 응답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표 III-5-4〉 평일 중 주로 돌보는 시간

단위: %(명)

구분	아침~밤	아침~저녁	오전이나 반나절		방과후	기타	계(수)	X <sup>2</sup> (df)
			오전	오후				
전체	7.7	27.2	11.9	38.1	15.1	100.0(404)		
서울	6.2	29.2	3.1	52.3	9.2	100.0( 65)		
인천	4.2	29.5	20.0	33.7	12.6	100.0( 95)		
대구	5.6	23.9	7.0	47.9	15.5	100.0( 71)	36.2(20)*	
부산	12.8	27.9	12.8	33.7	12.8	100.0( 86)		
전주	13.2	21.1	18.4	26.3	21.1	100.0( 38)		
광주	6.1	28.6	8.2	30.6	26.5	100.0( 4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라. 이용 및 미이용 이유

본 조사에서는 조부모나 비혈연 보육서비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하였다. <표 III-5-5>를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보육시설 등 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그 비율은 30.6%이다. 그 외에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 이용의 전후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전체 27.6%이고, 초등학생을 방과후에 보살피기 위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21.7% 순으로 나타났다. 집안일 돕기는 2.2%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표 III-5-5> 조부모·비혈연 보육서비스를 받는 이유

단위: %(명)

구분	기관이용 어려움	기관이용 전후 보완	초등학생 방과후	집안 일 돕기	기타	계(수)	$\chi^2(df)$
전체	30.6	27.6	21.7	2.2	17.9	100.0(369)	
지역							
서울	29.7	32.8	23.4	-	14.1	100.0( 64)	
인천	29.5	30.7	25.0	1.1	13.6	100.0( 88)	
대구	28.6	37.1	18.6	1.4	14.3	100.0( 70)	23.3(20)
부산	32.0	20.0	18.7	4.0	25.3	100.0( 75)	
전주	21.4	21.4	28.6	7.1	21.4	100.0( 28)	
광주	40.9	15.9	18.2	2.3	22.7	100.0( 44)	
가구형태							
확대가족	24.4	24.4	26.7	4.4	20.0	100.0( 45)	
핵가족	38.8	23.3	16.5	1.9	19.4	100.0(206)	na
한부모가족	16.7	39.2	28.4	2.0	13.7	100.0(102)	
기타	26.7	20.0	33.3		20.0	100.0( 15)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14.3	31.0	31.0	2.4	21.4	100.0(111)	
150만원 이하	35.5	27.5	17.4	2.9	16.7	100.0(210)	22.0(12)**
151~200만원 이하	34.3	24.5	24.5	1.0	15.7	100.0(165)	
201만원 이상	43.6	28.2	7.7	2.6	17.9	100.0( 72)	
모 취업							
취업	30.6	30.3	20.5	2.0	16.5	100.0(297)	
미취업	36.4	18.2	18.2	3.6	23.6	100.0( 55)	na
모 부재	12.5	12.5	56.3	-	18.8	100.0( 1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광주가 40.9%로 가장 높고, 보육시설 이용 전후 시간 보완은 서울이 32.8%, 초등학생 방과후 시간에 보살피는 경우는 전주가 28.6%로 가장 높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핵가족이 보육시설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38.8%로 가장 높고 한부모 가족은 기관 이용 전후 보완이 39.2%로 가장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관 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등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지적하는 복수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표 III-5-6>를 보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8.1%로 가장 높다. 그 이외에 비용부담이 42.9%, 보육시설이 없어서가 18.1% 순이다.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응답은 부산이 85.7%로, 비용부담은 서울과 대구가 52.6%로 가장 높다. 비용부담 때문에 안 보낸다는 비율은 서울과 대구에서 50%를 넘게 높고, 전주가 가장 비율이 낮다. 인천의 경우 아이가 아파서라는 답변이 20.0%, 장애가 있어서가 32.0%로 각각의 평균인 9.5%에 비해 높은데 반해 전주는 이들 3가지 항목에서 응답 빈도가 없어서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서 지역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표 III-5-6>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가 너무 어림	아이가 아픔	장애있음	보육시설 없음	보육시설 불만족	비용부담	기타
전체	78.1	9.5	9.5	18.1	5.7	42.9	7.6
서울	84.2	15.8	-	26.3	10.5	52.6	-
인천	80.0	20.0	32.0	36.0	4.0	40.0	12.0
대구	68.4	5.3	5.3	15.8	-	52.6	5.3
부산	85.7	-	4.8	9.5	4.8	33.3	4.8
전주	83.3	-	-	-	-	16.7	-
광주	66.7	6.7	-	-	13.3	46.7	20.0
(수)	(105)	(105)	(105)	(105)	(105)	(105)	(105)
X <sup>2</sup> (df)	na	na	na	na	na	4.1(5)	na

주: 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2) 복수응답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마. 비용

<표 III-5-7>은 아이를 돌보는 대리 양육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지, 그리고 지불하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지불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6%, 지불하는 경우가 총 28.4%이다. 지불하는 경우에 그 방법은 정기적인 지불이 17.3%로 가장 높고, 부정기적 지불이 6.4%, 현물 지불이 2.8%, 숙식만 제공하는 경우가 1.9% 순이다.

지불을 하지 않는 비율은 서울이 86.2%로 가장 높고, 전주가 51.5%로 가장 낮은 반면, 정기적인 지불 방법을 채택하는 비율은 전주가 33.3%로 가장 높고, 서울이 10.8%로 가장 낮다.

대리양육자별로는 보육도우미를 제외하고는 친인척이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고 그 이외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5-7 참조).

〈표 III-5-7〉 아이를 돌보는 비용 지급 여부

단위: %(명)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로 지불	숙식만 제공	지불 안 함	계(수)
전체	17.3	6.4	2.8	1.9	71.6	100.0(359)
지역						
서울	10.8	1.5	1.5	-	86.2	100.0( 65)
인천	11.8	5.9	2.4	2.4	77.6	100.0( 95)
대구	14.9	1.5	3.0	6.0	74.6	100.0( 67)
부산	22.4	13.4	-	-	64.2	100.0( 67)
전주	33.3	6.1	9.1	-	51.5	100.0( 33)
광주	21.4	11.9	4.8	2.4	59.5	100.0( 42)
대리양육자별						
친조부모	25.0	17.9	1.8	3.6	51.8	100.0( 56)
외조부모	30.3	13.6	9.1	3.0	43.9	100.0( 66)
친인척	21.1	2.6	2.6	-	73.7	100.0( 38)
기타 비혈연인 <sup>2)</sup>	27.9	7.0	-	-	65.1	100.0( 43)
보육도우미	4.1	-	0.7	2.0	93.2	100.0(147)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2) 파출부, 이웃탁아모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아이를 돌보는 대리 양육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 월평균 지급 액수는 20만 4천원으로 전주의 26만 1천원부터 대구의 15만 1천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표 III-5-8 참조).

〈표 III-5-8〉 월평균 지급 액수

단위: 천원(명)

구분	지불금액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204.6	190.0	0	800	(84)
지역					
서울	178.9	70.8	50	300	( 9)
인천	233.4	203.7	13	700	(17)
대구	151.9	187.3	10	600	(13)
부산	228.3	224.8	20	800	(22)
전주	261.3	235.5	40	800	( 8)
광주	168.2	148.1	20	500	(15)
F			0.6		
대리양육자별					
친조부모	265.5	172.7	40	600	(22)
외조부모	159.1	132.1	10	500	(29)
친인척	225.4	252.9	23	700	( 8)
기타 비혈연인 <sup>1)</sup>	208.7	262.1	13	800	(14)
보육도우미	225.7	225.2	20	700	( 7)
F			1.0		

주: 1) 파출부, 이웃탁아모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대리양육자별로는 친조부모가 265,500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친인척 및 보육도우미가 225,000원 수준이고, 외조부모가 159,100원으로 가장 낮다.

#### 바. 서비스 제공자 특성

비혈연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 대리 양육자의 결혼상태 및 양육경험은 기혼이며 양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93.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주의 경우는 100.0%가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기혼자이다. 미혼은 4.5%이며,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12.5%이고 서울과 전주는 미혼이 없다<sup>10)</sup>.

10) 조사표에서는 기혼, 양육경험 무를 보기로 주었으나 응답 빈도가 없어 <표>에서 제외하였음.

〈표 III-5-9〉 비혈연이 돌보는 경우 결혼 상태 및 자녀양육경험

단위: %(명)

구분	미혼	기혼, 양육경험 유	모름	계(수)
전체	4.5	93.8	1.7	100.0(178)
서울	-	98.1	1.9	100.0( 53)
인천	5.8	92.3	1.9	100.0( 52)
대구	5.7	94.3	-	100.0( 35)
부산	8.3	87.5	4.2	100.0( 24)
전주	-	100.0	-	100.0( 6)
광주	12.5	87.5	-	100.0( 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비혈연 대리 양육자의 자격은 별다른 자격이 없는 경우가 36.2%로 가장 높았고, 보육교사가 30.3%이고 유치원교사가 3.3%로 조사되었고, 자격 유무를 모르겠다는 경우가 30.3%로 나타났다. 자격이 없는 대리 양육인의 비율은 인천이 56.5%, 보육교사는 광주가 57.1%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른다고 대답한 비율은 서울이 44.0%로 비교적 높다. 초등학교 교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비혈연 양육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1)</sup>.

〈표 III-5-10〉 비혈연이 돌보는 경우 자격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없음	모름	계(수)
전체	30.3	3.3	36.2	30.3	100.0(152)
서울	30.0	2.0	24.0	44.0	100.0( 50)
인천	17.4	4.3	56.5	21.7	100.0( 46)
대구	37.5	4.2	41.7	16.7	100.0( 24)
부산	42.9	4.8	19.0	33.3	100.0( 21)
전주	25.0	-	50.0	25.0	100.0( 4)
광주	57.1	-	14.3	28.6	100.0( 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아동을 돌봐 주는 비혈연을 소개 받은 경로는 주변 소개가 38.5%, 지역신문

11) 조사표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보기로 주었으나 응답빈도가 없어 <표>에서 제외하였음.

등 광고가 27.5%, 인력전문기관의 소개가 12.6% 순으로 높았다. 주변 소개는 인천이 54.9%인 반면 서울은 22.6%로 낮은 편이고, 광고를 통한 소개는 대구와 광주가 40.0%로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표 III-5-11〉 비혈연이 돌보는 경우 소개 경로

단위: %(명)

구분	인력전문 기관소개	주변소개	광고	평소알던 사람	기타	계(수)
전체	12.6	38.5	27.5	8.2	13.2	100.0(182)
서울	15.1	22.6	32.1	15.1	15.1	100.0( 53)
인천	11.8	54.9	17.6	2.0	13.7	100.0( 51)
대구	14.3	34.3	40.0	8.6	2.9	100.0( 35)
부산	11.5	42.3	15.4	7.7	23.1	100.0( 26)
전주	14.3	42.9	28.6	-	14.3	100.0( 7)
광주	-	40.0	40.0	10.0	10.0	100.0( 1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사. 애로사항

〈표 III-5-12〉는 비혈연인에게 자녀를 돌보게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표 III-5-12〉 비혈연이 돌보는 경우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별로없음	비용부담	찾은교체	양육방식	갑자기 빠지는경우	신뢰부족	기타	계(수)
전체	57.4	5.3	4.1	11.8	11.8	2.4	7.1	100.0(169)
서울	41.2	3.9	3.9	23.5	21.6	5.9	-	100.0( 51)
인천	62.0	6.0	4.0	6.0	8.0	2.0	12.0	100.0( 50)
대구	61.3	9.7	-	9.7	9.7	-	9.7	100.0( 31)
부산	68.2	-	9.1	9.1	4.5	-	9.1	100.0( 22)
전주	71.4	-	14.3	-	14.3	-	-	100.0( 7)
광주	75.0	12.5	-	-	-	-	12.5	100.0( 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애로사항이 별로 없다는 응답이 57.4%로 과반수 이상이 별 애로가 없는 것으로

로 조사되었다. 애로 사항으로는 비혈연인이 갑자기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나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각각 11.8%씩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이나 잦은 교체, 신뢰부족은 각각 5.3%, 4.1%, 2.4%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애로사항이 별로 없다는 경우는 75.0%로 광주가 가장 높고, 서울이 41.2%로 가장 낮다. 애로사항이 가장 많다는 서울의 경우는 갑자기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21.6%, 양육방식 23.5%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았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양육방식이나 갑자기 돌보지 못하는 경우 응답은 없고 비용부담을 12.5%로 꼽으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지역간의 차이를 보인다.

## 6. 일과 가정 양립

### 가. 막내자녀 출산 전후 취업

<표 III-6-1>은 막내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취업 여부와 출산 이후 원직으로의 복귀 여부에 관한 결과이다. 출산 당시 취업 상태의 응답자는 총 61.3%이고, 취업중인 경우는 38.7%이었다. 출산 후 원직으로 복귀된 경우는 전체의 12.0%이며 휴직은 3.8%이다. 출산 직전 퇴직이 20.6%, 출산 후 퇴직 6.0%로 26.6%가 출산을 전후로 퇴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 기타가 18.9%인데, 이는 여성 취업 자체의 성격 때문에 보기 중에서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다.

〈표 III-6-1〉 막내자녀 출산 시 취업 여부와 이후 복직 여부

단위: %(명)

구분	미취업	원직복귀	출산 전 퇴직	출산 후 퇴직	휴직	기타	계(수)	X <sup>2</sup> (df)
전체	38.7	12.0	20.6	6.0	3.8	18.9	100.0(927)	
서울	24.8	17.4	22.1	13.4	2.7	19.5	100.0(149)	
인천	37.6	12.2	27.6	5.5	4.4	12.7	100.0(181)	
대구	47.2	6.7	20.0	2.2	3.9	20.0	100.0(180)	58.2(25)**
부산	38.4	11.9	19.2	7.3	4.0	19.2	100.0(177)	
전주	41.0	12.0	22.9	3.6	3.6	16.9	100.0( 83)	
광주	42.7	12.7	12.1	3.8	3.8	24.8	100.0(15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다음 <표 III-6-2>는 출산 전 퇴직하거나 출산 후 직장을 그만 둔 경우 그 이유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그 이유로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항목이 40.8%로 가장 높고,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31.8%로 비교적 높은 수치이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은 광주가 52.0%로,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 둔 경우는 인천이 40.0%로 가장 높다. 한편 전주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가 27.3%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광주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8.0%로 전체 평균 1.6%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III-6-2> 막내자녀 출산 전후 일을 그만 둔 이유

단위: %(명)

구분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회사사정으로	자녀맡길 곳이 없어서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	건강상 이유	주위의 반대로	기타	계(수)
전체	1.6	9.8	40.8	31.8	9.4	3.3	3.3	100.0(245)
서울	-	7.5	47.2	24.5	9.4	5.7	5.7	100.0( 53)
인천	-	10.0	35.0	40.0	10.0	3.3	1.7	100.0( 60)
대구	2.6	10.3	41.0	33.3	5.1	5.1	2.6	100.0( 39)
부산	2.2	15.2	41.3	32.6	6.5	2.2	-	100.0( 46)
전주	-	9.1	27.3	36.4	27.3	-	-	100.0( 22)
광주	8.0	4.0	52.0	20.0	4.0	-	12.0	100.0( 2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6-3>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 해당되지 않음	회사 분위기때문	수당이 적어서	직장에 나가는 것이 더 좋아서	기타	계(수)
전체	24.6	23.1	5.6	3.6	43.1	100.0(195)
서울	17.6	26.5	11.8	-	44.1	100.0( 34)
인천	33.3	30.8	7.7	2.6	25.6	100.0( 39)
대구	25.0	29.2	8.3	8.3	29.2	100.0( 24)
부산	32.4	10.8	-	8.1	48.6	100.0( 37)
전주	50.0	16.7	-	-	33.3	100.0( 12)
광주	10.2	22.4	4.1	2.0	61.2	100.0( 4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6-3>은 막내 자녀 출산 시 취업 중이었던 경우, 출산휴가 이후에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이유를 나타내는 데, 육아휴직이 해당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24.6%로 가장 높았고, 회사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3.1%이다. 육아휴직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전주가 50.0%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17.6%로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은 회사분위기 상 육아휴직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6.5%이고, 육아휴직수당<sup>12)</sup>이 적기 때문이라는 항목에도 11.8%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 나. 취업모의 자녀양육 애로사항

모가 현재 취업 중인 경우 현재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과중한 육체적·심리적 부담이 28.5%, 비용의 부담이 24.5%,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이 19.9%,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이 17.4%로 나타났다(표 III-6-4 참조).

지역에 따라서는 과중한 육체적·신체적 부담은 대구가 40.2%로, 비용부담은 전주가 34.8%로 가장 높고 서울은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비율이 27.5%로 타 지역보다 높다. 인천과 광주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비율이 높다.

<표 III-6-4> 현재 직업 종사하면서 자녀 양육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비용부담	과중한 육체적 심리적 부담	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	긴급상황 대처 어려움	기타	없음	계(수)
전체	24.5	28.5	19.9	17.4	5.1	4.6	100.0(547)
서울	16.7	32.5	27.5	17.5	5.0	0.8	100.0(120)
인천	24.8	23.9	16.8	22.1	4.4	8.0	100.0(113)
대구	21.7	40.2	18.5	15.2	-	4.3	100.0( 92)
부산	26.8	22.0	19.5	7.3	15.9	8.5	100.0( 82)
전주	34.8	26.1	19.6	15.2	2.2	2.2	100.0( 46)
광주	29.8	24.5	16.0	23.4	3.2	3.2	100.0( 9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12) 2007.3월부터 50만원임.

아동연령별로는

〈표 III-6-5〉 (최소아동별) 현재 직업 종사하면서 자녀 양육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비용부담	과중한 육체적 심리적 부담	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	긴급상황 대처 어려움	기타	없음	계(수)
전체	24.2	28.9	19.7	17.5	4.9	4.7	100.0(532)
0세	-	22.2	44.4	11.1	11.1	11.1	100.0( 9)
1세	38.1	38.1	9.5	9.5	-	4.8	100.0( 21)
2세	23.4	25.5	23.4	12.8	6.4	8.5	100.0( 47)
3세	13.8	27.7	24.6	16.9	12.3	4.6	100.0( 65)
4세	9.3	30.2	27.9	14.0	11.6	7.0	100.0( 43)
5세	19.1	36.2	19.1	21.3	-	4.3	100.0( 47)
6세	21.6	31.4	19.6	23.5	-	3.9	100.0( 51)
7세	26.1	37.7	20.3	11.6	1.4	2.9	100.0( 69)
8세	29.3	29.3	14.7	18.7	6.7	1.3	100.0( 75)
9세	28.9	20.0	26.7	24.4	-	-	100.0( 45)
10세	42.0	22.0	6.0	20.0	2.0	8.0	100.0( 50)
11세	25.0	-	-	25.0	25.0	25.0	100.0( 4)
12세	-	-	50.0	50.0	-	-	100.0( 2)
13세	50.0	-	-	-	25.0	25.0	100.0( 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6-6〉 현재 취업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일자리 없음	자녀 맡길 곳이 없어서	자녀양육 과 가사에 전념	건강상 이유	주위의 반대로	기타	계(수)
전체	2.9	21.9	30.1	29.8	1.5	4.1	9.6	100.0(342)
서울	-	40.0	15.0	25.0	5.0	10.0	5.0	100.0( 20)
인천	-	15.5	39.4	35.2	-	5.6	4.2	100.0( 71)
대구	3.5	24.7	35.3	24.7	-	2.4	9.4	100.0( 85)
부산	3.3	18.7	30.8	34.1	2.2	4.4	6.6	100.0( 91)
전주	8.0	20.0	28.0	28.0	4.0	4.0	8.0	100.0( 25)
광주	4.0	26.0	14.0	26.0	2.0	2.0	26.0	100.0( 5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6-6>과 <표 III-6-7>은 모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지역과 막내아동 연령별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미취업 이유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의견이 30.1%,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29.8%,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이 21.9%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고, 주위의 반대가 있었다는 응답이 10.0%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

아동연령별로는

<표 III-6-7> (최소아동별) 현재 취업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일자리 없음	자녀 맡길 곳이 없어서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	건강상 이유	주위의 반대로	기타	계(수)
전체	2.7	24.0	27.3	25.3	1.3	4.7	14.7	100.0(150)
0세	-	-	66.7	-	-	-	33.3	100.0( 3)
1세	-	-	37.5	50.0	-	-	12.5	100.0( 8)
2세	-	14.3	21.4	42.9	7.1	-	14.3	100.0( 14)
3세	3.7	29.6	18.5	29.6	-	3.7	14.8	100.0( 27)
4세	-	6.3	50.0	37.5	-	-	6.3	100.0( 16)
5세	-	18.8	50.0	18.8	-	12.5	-	100.0( 16)
6세	-	46.2	15.4	30.8	-	7.7	-	100.0( 13)
7세	7.7	23.1	30.8	30.8	-	7.7	-	100.0( 13)
8세	5.9	23.5	17.6	5.9	-	5.9	41.2	100.0( 17)
9세	-	57.1	14.3	14.3	-	-	14.3	100.0( 7)
10세	7.1	35.7	14.3	7.1	-	7.1	28.6	100.0( 4)
13세	-	-	-	-	50.0	-	50.0	100.0( 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7. 취약보육 필요성 및 대처

<표 III-7-1>, <표 III-7-2> 및 각 그림은 시간제, 야간, 아픈 자녀 보육, 24시간, 휴일 보육의 필요성과 필요시 대처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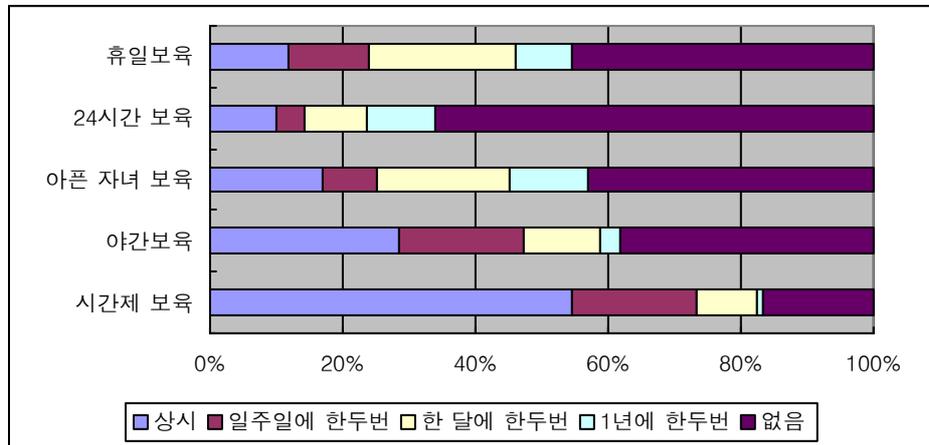
먼저 필요성은 취약보육 중에서는 상시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시간제보육이 54.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야간보육으로 28.5%이고 아픈자녀 보육이 16.9%이며, 그 이외 24시간 및 휴일보육이 상시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11% 정도이다(표

Ⅲ-7-1, 그림 Ⅲ-7-2 참조).

〈표 Ⅲ-7-1〉 취약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상시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계(수)
시간제 보육	54.6	18.7	9.0	1.1	16.6	100.0(851)
야간보육	28.5	18.8	11.5	3.0	38.2	100.0(825)
아픈 자녀 보육	16.9	8.4	20.0	11.8	42.9	100.0(805)
24시간 보육	10.0	4.3	9.2	10.5	66.0	100.0(797)
휴일보육	11.9	12.1	22.0	8.4	45.6	100.0(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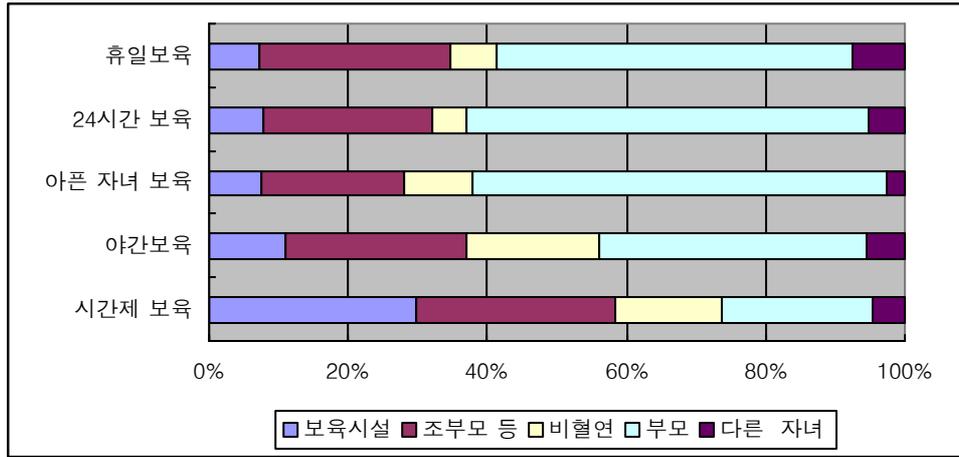


[그림 Ⅲ-7-1] 취약보육의 필요성

〈표 Ⅲ-7-2〉 취약보육의 대처방안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이용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이용	부모가 해결	다른자녀가 돌봄	계(수)
시간제 보육	29.7	28.8	15.2	21.8	4.5	100.0(716)
야간보육	10.9	26.2	18.9	38.6	5.4	100.0(588)
아픈 자녀 보육	7.4	20.5	10.0	59.4	2.7	100.0(552)
24시간 보육	7.9	24.2	5.0	57.6	5.3	100.0(417)
휴일보육	7.1	27.6	6.6	51.2	7.5	100.0(533)



[그림 III-7-2] 취약보육의 대처방안

다음으로 대처방안은 시간제보육은 보육시설 이용이 29.7%로 가장 높고, 그 이외는 모두 부모가 해결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뢰한다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20~29%로 조사되었다(표 III-7-2, 그림 III-7-2, 참조).

각 취약보육에 대하여 응답자 특성별 필요성 및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시간제보육

#### 1) 필요성

일시 시간제보육의 필요성에 관한 <표 III-7-3>를 살펴보면,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이 총 83.5%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시 시간제 보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 중 상시로 일시 시간제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6%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일주일에 1~2번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 18.7%이고 일시 시간제 보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전체 16.6%이다.

특히 서울에서 상시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69.1%로 가장 높다. 일시 시간제 보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광주가 28.7%로 가장 높고, 서울이 7.4%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족이 시간제 보육이 상시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61.1%로 다른 가족에 비하여 비교적 높고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월 소득 151~200만원인 가족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며, 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도 미취업모가 다소 필요성이 높은 경향이나 유의성은 없다.

〈표 III-7-3〉 일시 시간제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상시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계(수)	X <sup>2</sup> (df)
전체	54.6	18.7	9.0	1.1	16.6	100.0(851)	
지역							
서울	69.1	18.1	5.4	-	7.4	100.0(149)	
인천	50.0	18.2	12.5	1.1	18.2	100.0(176)	
대구	56.0	15.9	9.3	1.6	17.0	100.0(182)	na
부산	58.9	22.6	4.8	1.4	12.3	100.0(146)	
전주	49.1	14.5	18.2	3.6	14.5	100.0( 55)	
광주	41.3	21.0	9.1	-	28.7	100.0(143)	
가구형태							
확대가족	57.4	14.8	4.9	1.6	21.3	100.0( 61)	
핵가족	51.6	20.4	10.4	.9	16.7	100.0(558)	na
한부모가족	61.1	14.7	7.1	.9	16.1	100.0(211)	
기타	55.6	27.8	5.6	5.6	5.6	100.0( 18)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55.1	18.2	8.0	-	18.8	100.0(176)	
150만원 이하	59.2	18.6	7.1	0.3	14.8	100.0(311)	21.0(12)
151~200만원 이하	47.8	19.8	12.6	2.8	17.0	100.0(247)	
201만원 이상	55.6	16.2	8.1	1.0	19.2	100.0( 99)	
모 취업							
취업	53.6	18.3	9.5	1.6	17.0	100.0(569)	
미취업	55.4	21.5	8.8	-	14.3	100.0(251)	na
모 부재	70.8	4.2	-	-	25.0	100.0( 24)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2) 대처방안

일시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경우 29.7%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28.8%가 조부모나 친인척을, 21.8%는 부모가 직접 해결을 한다고 응답했다(표 III-7-4 참조).

보육시설의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부산의 35.3%가, 조부모나 친인척은 전주의 43.2%가, 부모이용의 경우는 서울의 34.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혈연을 이용하는 경우는 서울이 24.5%로 평균인 15.2%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고, 다른 자녀가 돌본다는 응답은 전체 4.5%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구형태별로는 확대가족과 핵가족은 시간제 보육 필요시에 혈연을, 한부모가족은 비혈연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다.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혈연, 낮을수록 비혈연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모가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을 지적한 비율이 높고, 취업모는 조부모, 친인척 이용 비율이 높다.

〈표 III-7-4〉 일시 시간제보육의 대처방안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이용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이 용	부모가 해결	다른자녀가 돌봄	계(수)	$\chi^2(df)$
전체	29.7	28.8	15.2	21.8	4.5	100.0(716)	
지역							
서울	23.0	14.4	24.5	34.5	3.6	100.0(139)	
인천	30.2	32.2	20.8	13.4	3.4	100.0(149)	82.8(20)**
대구	19.6	35.1	12.8	27.7	4.7	100.0(148)	
부산	35.3	29.3	10.5	21.1	3.8	100.0(133)	
전주	29.5	43.2	4.5	20.5	2.3	100.0( 44)	
광주	45.6	27.2	8.7	9.7	8.7	100.0(103)	
가구형태							
확대가족	27.1	45.8	14.6	12.5	-	100.0( 48)	
핵가족	31.9	31.2	9.7	22.8	4.4	100.0(474)	59.5(12)**
한부모가족	25.0	16.3	29.7	22.7	6.4	100.0(172)	
기타	21.1	36.8	26.3	15.8	-	100.0( 19)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32.6	19.9	19.9	21.3	6.4	100.0(141)	
150만원 이하	29.5	24.1	19.2	22.6	4.6	100.0(261)	28.3(12)**
151~200만원 이하	29.8	34.9	11.2	20.5	3.7	100.0(215)	
201만원 이상	28.9	43.4	7.2	18.1	2.4	100.0( 83)	
모 취업							
취업	26.7	30.8	19.5	18.0	5.0	100.0(483)	
미취업	36.8	24.4	5.3	30.1	3.3	100.0(209)	38.1(8)**
모 부재	21.1	31.6	21.1	21.1	5.3	100.0( 1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나. 야간보육

1) 필요성

<표 III-7-5>는 야간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야간보육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비율은 총 61.8%이고, 상시 운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8.5%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특히 67.8%가 상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는 야간보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58.2%로 서울의 15.4%에 비하여 매우 높아 조사지역 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다.

<표 III-7-5> 야간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상시	일주일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계(수)	X <sup>2</sup> (df)
전체	28.5	18.8	11.5	3.0	38.2	100.0(825)	
지역							
서울	67.8	12.8	4.0	-	15.4	100.0(149)	
인천	23.4	17.5	12.3	5.8	40.9	100.0(171)	
대구	15.7	22.5	15.7	3.4	42.7	100.0(178)	183.7(20)**
부산	26.1	21.0	15.9	2.2	34.8	100.0(138)	
전주	12.5	27.1	16.7	10.4	33.3	100.0( 48)	
광주	17.0	17.0	7.1	0.7	58.2	100.0(141)	
가구형태							
확대가족	24.6	15.8	12.3	-	47.4	100.0( 57)	
핵가족	21.2	19.7	13.2	3.9	42.1	100.0(539)	na
한부모가족	48.3	17.7	6.2	1.4	26.3	100.0(209)	
기타	29.4	11.8	17.6	5.9	35.3	100.0( 17)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35.8	17.3	11.0	1.7	34.1	100.0(173)	
150만원 이하	32.5	22.2	9.6	1.3	34.4	100.0(302)	33.6(12)**
151~200만원 이하	21.0	16.8	13.0	5.0	44.1	100.0(238)	
201만원 이상	18.9	15.8	15.8	6.3	43.2	100.0( 95)	
모 취업							
취업	31.9	20.1	11.4	2.9	33.7	100.0(552)	
미취업	18.8	17.1	12.7	3.7	47.8	100.0(245)	27.8(8)**
모 부재	50.0	8.3	4.2	-	37.5	100.0( 2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족이 야간보육은 상시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48.3%로 다른 가족에 비하여 비교적 높고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야간보육을 필요로 한다는 비율이 높고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가 필요로 한다는 비율 및 상시 필요 비율이 높다.

## 2) 대처방안

〈표 III-7-6〉은 야간보육이 필요할 경우 대처방법인데, 부모가 해결한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고,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가 26.2%, 비혈연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18.9% 순으로 나타났고, 보육시설 이용 비율은 10.9%에 불과하다. 5.4%는 다른 자녀가 돌본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부모가 해결한다는 응답과 비혈연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서울이 각각 45.3%, 34.3%로, 조부모나 친인척은 전주가 45.7%로 가장 높았다.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10.9%이나 광주는 이의 2배 가량인 21.6%를 나타내며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보인다.

〈표 III-7-6〉 야간보육의 대처방안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이용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이용	부모가 해결	다른 자녀가 돌봄	계(수)	$\chi^2(df)$
전체	10.9	26.2	18.9	38.6	5.4	100.0(588)	
지역							
서울	8.8	10.2	34.3	45.3	1.5	100.0(137)	
인천	12.5	31.7	25.0	22.5	8.3	100.0(120)	
대구	5.1	28.8	11.0	50.0	5.1	100.0(118)	97.7(20)**
부산	10.6	35.6	10.6	40.4	2.9	100.0(104)	
전주	11.4	45.7	5.7	31.4	5.7	100.0( 35)	
광주	21.6	20.3	10.8	35.1	12.2	100.0( 74)	
가구형태							
확대가족	5.3	47.4	18.4	23.7	5.3	100.0( 38)	
핵가족	11.8	28.9	12.0	42.5	4.8	100.0(374)	na
한부모가족	9.4	14.5	34.6	34.6	6.9	100.0(159)	
기타	14.3	35.7	28.6	21.4	-	100.0( 14)	

(표 계속)

구분	보육시설 이용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이용	부모가 해결	다른 자녀가 돌봄	계(수)	$\chi^2(df)$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9.6	20.8	27.2	32.8	9.6	100.0(125)	
150만원 이하	11.1	19.0	22.2	43.5	4.2	100.0(216)	34.4(12)**
151~200만원 이하	12.8	34.3	11.6	36.0	5.2	100.0(172)	
201만원 이상	7.7	38.5	13.8	36.9	3.1	100.0( 65)	
모 취업							
취업	10.1	28.3	23.2	31.9	6.5	100.0(414)	
미취업	13.7	20.3	5.2	57.5	3.3	100.0(153)	49.5(8)**
모 부재	5.0	30.0	35.0	30.0	-	100.0( 2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형태별로는 특히 한부모 가족이 다른 가족에 비하여 야간에 비혈연 이용 비율이 비교적 높고,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혈연 이용 비율이 높으며,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가 보육시설 이용한다는 비율이 오히려 다소 낮고 혈연 및 비혈연에게 의뢰한다는 비율이 높다.

## 다. 아픈 자녀 보육

### 1) 필요성

아픈 자녀 보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총 57.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2.9%가 필요 없다고 답변했다. 빈도로 보면 상시로 아픈 자녀 보육을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응답이 16.9%이고 한 달에 1~2번 가량이 20.0%이며, 1년 1~2번은 11.8%이다.

조사 지역 중 서울이 아픈 자녀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총 83.2%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47.5%로 필요성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특히 서울은 상시와 1년에 1~2번 항목이 모두 24.2%로 전체 평균인 16.9%, 11.8%에 비해 비교적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특히 한 부모 가족이 다른 가족에 비하여 아픈 자녀 보육 필요 및 상시 필요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필요

및 상시 필요 비율이 높고,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필요 및 상시 필요 비율이 높다.

〈표 III-7-7〉 아픈 자녀 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상시	일주일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계(수)	X <sup>2</sup> (df)
전체	16.9	8.4	20.0	11.8	42.9	100.0(805)	
지역							
서울	24.2	7.4	27.5	24.2	16.8	100.0(149)	
인천	16.4	4.7	19.3	8.2	51.5	100.0(171)	
대구	15.8	9.0	19.2	8.5	47.5	100.0(177)	90.5(20)**
부산	16.4	3.3	18.0	9.8	52.5	100.0(122)	
전주	15.6	11.1	15.6	20.0	37.8	100.0( 45)	
광주	12.1	17.0	17.0	6.4	47.5	100.0(141)	
가구형태							
확대가족	14.5	3.6	14.5	10.9	56.4	100.0( 55)	
핵가족	13.8	8.8	19.3	11.1	47.0	100.0(523)	na
한부모가족	25.1	8.7	23.2	13.0	30.0	100.0(207)	
기타	23.5	11.8	17.6	11.8	35.3	100.0( 17)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25.6	10.7	20.2	6.5	36.9	100.0(168)	
150만원 이하	16.3	8.5	21.0	13.6	40.7	100.0(295)	23.8(12)*
151~200만원 이하	11.7	9.1	18.2	13.0	48.1	100.0(231)	
201만원 이상	16.8	4.2	18.9	11.6	48.4	100.0( 95)	
모 취업							
취업	18.1	7.1	22.9	14.9	36.9	100.0(536)	
미취업	12.9	11.6	14.9	5.8	54.8	100.0(241)	na
모 부재	29.2	8.3	4.2	4.2	54.2	100.0( 2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2) 대처방안

〈표 III-7-8〉은 아픈 자녀 보육 필요시의 대처 방안이다. 이를 보면 아픈 자녀 보육의 대처 방안으로는 부모가 해결한다는 항목이 59.4%로 가장 높다. 그 외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가 20.5%, 비혈연 이용 10.0% 순이다. 다른 자녀가 돌보는 경우도 2.7%이다.

〈표 III-7-8〉 아픈 자녀 보육의 대처 방안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이용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이용	부모가 해결	다른자녀 가 돌봄	계(수)	$\chi^2(df)$
전체	7.4	20.5	10.0	59.4	2.7	100.0(552)	
지역							
서울	5.8	8.0	13.1	73.0	-	100.0(137)	
인천	9.4	26.4	17.9	43.4	2.8	100.0(106)	
대구	2.6	23.5	6.1	66.1	1.7	100.0(115)	na
부산	8.8	26.3	2.5	56.3	6.3	100.0( 80)	
전주	3.1	37.5	6.3	53.1	-	100.0( 32)	
광주	14.6	17.1	8.5	53.7	6.1	100.0( 82)	
가구형태							
확대가족	6.3	28.1	12.5	50.0	3.1	100.0( 32)	
핵가족	7.4	22.9	5.4	61.0	3.2	100.0(349)	na
한부모가족	6.5	13.5	18.1	60.0	1.9	100.0(155)	
기타	23.1	23.1	30.8	23.1	-	100.0( 13)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4.4	20.4	15.9	54.9	4.4	100.0(113)	
150만원 이하	10.7	12.7	11.7	62.9	2.0	100.0(205)	30.7(12)**
151~200만원 이하	8.2	25.8	6.3	57.9	1.9	100.0(159)	
201만원 이상	1.6	31.3	4.7	59.4	3.1	100.0( 64)	
모 취업							
취업	6.5	24.5	12.0	54.0	3.0	100.0(400)	
미취업	10.2	8.8	3.6	75.2	2.2	100.0(137)	na
모 부재	7.1	21.4	14.3	57.1	-	100.0( 1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서울은 부모가 해결한다는 응답의 경우 조사 지역 중 73.0%로 가장 높지만,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본다는 항목에서는 8.0%로 평균인 20.5%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다른 자녀가 돌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형태별로는 특히 한부모 가족이 다른 가족에 비하여 비혈연 이용 비율이 비교적 높고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혈연 이용 비율이 높으며,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보육시설 이용한다는 비율이 오히려 높다.

## 라. 24시간 보육

## 1) 필요성

<표 III-7-9>는 24시간 보육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24시간 보육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응답이 전체의 34.0%이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견 중 상시 필요가 10.0%, 한 달에 1~2번이 9.2%, 1년에 1~2번 필요 10.5%로, 다른 취약 보육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필요성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III-7-9〉 24시간 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상시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계(수)	X <sup>2</sup> (df)
전체	10.0	4.3	9.2	10.5	66.0	100.0(797)	
지역							
서울	12.8	1.3	12.8	17.4	55.7	100.0(149)	
인천	9.4	2.4	4.7	10.0	73.5	100.0(170)	
대구	7.3	5.6	10.2	9.6	67.2	100.0(177)	33.7(20)*
부산	12.0	5.1	12.8	9.4	60.7	100.0(117)	
전주	9.1	6.8	9.1	9.1	65.9	100.0( 44)	
광주	10.0	6.4	6.4	6.4	70.7	100.0(140)	
가구형태							
확대가족	9.1	3.6	3.6	7.3	76.4	100.0( 55)	
핵가족	9.1	3.9	8.5	11.0	67.5	100.0(517)	na
한부모가족	12.7	4.4	12.2	9.8	61.0	100.0(205)	
기타	11.8	17.6	5.9	5.9	58.8	100.0( 17)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10.3	6.1	10.3	9.1	64.2	100.0(165)	
150만원 이하	10.2	5.1	8.2	10.5	66.0	100.0(294)	6.6(12)
151~200만원 이하	9.6	3.5	9.6	10.5	66.8	100.0(229)	
201만원 이상	9.7	1.1	7.5	14.0	67.7	100.0( 93)	
모 취업							
취업	9.8	3.4	10.4	11.6	64.8	100.0(528)	
미취업	11.2	6.6	6.2	8.7	67.2	100.0(241)	na
모 부재	4.2	-	12.5	8.3	75.0	100.0( 2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에서 필요 및 상시 필요 비율이 비교적 높다. 두 지역 모두 24시간 보육이 상시로 필요하다는 비율은 모두 12~13% 수준이다. 반면에 인천에서 필요하다는 비율이 다소 낮다. 가구와 모 특성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 대처방안

24시간 보육의 대처방안으로는 부모가 해결한다는 항목이 57.6%, 조부모나 친인척 이용이 24.2%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들은 보육시설 이용이 7.9%, 다른 자녀가 돌봄이 5.3%, 비혈연 이용이 5.0%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7-10〉 24시간 보육의 대처방안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이용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이용	부모가 해결	다른 자녀가 돌봄	계(수)
전체	7.9	24.2	5.0	57.6	5.3	100.0(417)
지역						
서울	5.3	10.6	6.4	73.4	4.3	100.0( 94)
인천	6.3	32.5	6.3	48.8	6.3	100.0( 80)
대구	5.6	20.0	3.3	65.6	5.6	100.0( 90)
부산	6.6	27.6	1.3	57.9	6.6	100.0( 76)
전주	9.5	42.9	9.5	33.3	4.8	100.0( 21)
광주	19.6	30.4	7.1	39.3	3.6	100.0( 56)
가구형태						
확대가족	-	41.4	-	51.7	6.9	100.0( 29)
핵가족	7.7	24.6	2.9	59.6	5.1	100.0(272)
한부모가족	8.7	18.3	10.6	56.7	5.8	100.0(104)
기타	33.3	22.2	11.1	33.3	-	100.0( 9)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12.2	20.7	11.0	48.8	7.3	100.0( 82)
150만원 이하	5.6	23.9	3.5	62.7	4.2	100.0(142)
151~200만원 이하	9.6	20.6	2.9	62.5	4.4	100.0(136)
201만원 이상	4.2	39.6	4.2	43.8	8.3	100.0( 48)
모 취업						
취업	6.0	29.9	6.0	52.3	5.7	100.0(281)
미취업	12.2	10.6	2.4	69.9	4.9	100.0(123)
모 부재	8.3	33.3	8.3	50.0	-	100.0( 1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부모가 해결하는 경우 서울이 73.4%, 조부모나 친인척의 경우는 전주가 42.9%로 가장 높았고, 보육시설의 이용에서는 광주가 19.6%로 전체 평균 7.9%에 비해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족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족이 비혈연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고,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 가족과 미취업모가 24시간 보육 필요시 보육시설에 의지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다(표 III-7-10 참조).

## 마. 휴일보육

### 1) 필요성

휴일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총 54.4%로 그 중 상시로 필요하다는 11.9%이고, 한 달에 1~2번 필요하다는 22.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일주일 1~2번이 12.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조사지역 중 전주와 서울이 휴일보육이 필요하다는 총 응답이 63.0% 수준으로 가장 높고, 광주는 필요없다는 응답이 54.5%로 필요하다는 비율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서울은 상시 휴일보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21.6%로 매우 높다.

〈표 III-7-11〉 휴일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상시	일주일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계(수)	X <sup>2</sup> (df)
전체	11.9	12.1	22.0	8.4	45.6	100.0(813)	
지역							
서울	21.6	10.1	17.6	13.5	37.2	100.0(148)	
인천	8.8	11.8	27.6	8.2	43.5	100.0(170)	
대구	6.2	12.4	21.5	6.8	53.1	100.0(177)	58.6(20)**
부산	14.0	14.7	24.0	6.2	41.1	100.0(129)	
전주	10.9	-	39.1	13.0	37.0	100.0( 46)	
광주	11.2	15.4	13.3	5.6	54.5	100.0(143)	
가구형태							
확대가족	8.8	12.3	24.6	8.8	45.6	100.0( 57)	
핵가족	9.8	9.8	21.8	8.9	49.6	100.0(528)	na
한부모가족	18.4	17.0	21.8	7.3	35.4	100.0(206)	
기타	10.5	21.1	15.8	5.3	47.4	100.0( 19)	

(표 계속)

구분	상시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계(수)	X <sup>2</sup> (df)
<b>가구소득</b>							
국민기초생활대상	15.3	17.6	19.4	8.2	39.4	100.0(170)	
150만원 이하	13.4	13.4	20.7	5.7	46.8	100.0(299)	33.2(12)**
151~200만원 이하	9.1	8.6	21.6	9.1	51.7	100.0(232)	
201만원 이상	7.3	7.3	32.3	15.6	37.5	100.0( 96)	
<b>모 취업</b>							
취업	12.6	13.1	23.9	8.7	41.7	100.0(540)	
미취업	10.7	7.4	19.3	7.8	54.9	100.0(244)	26.1(8)**
모 부재	4.2	33.3	8.3	8.3	45.8	100.0( 2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휴일보육은 한부모 가족이 필요 64.6%, 상시 필요하다는 비율이 18.4%로 타 지역에 비하여 필요성을 많이 느끼며, 가구소득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상시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다. 모의 취업에 따라서는 취업모가 휴일보육이 필요하다는 비율과 상시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다.

## 2) 대처방안

다음 <표 III-7-12>는 휴일보육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방법이다. 이를 보면 부모가 해결하는 경우가 51.2%, 조부모나 친인척 이용이 27.6%이고 나머지 다른 자녀가 돌봄, 보육시설 이용, 비혈연 이용과 같은 항목은 모두 7% 수준이다.

부모가 해결한다는 응답은 서울이 64.5%로 가장 높았지만 비혈연의 이용 항목에서는 4.7%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의 경우는 조부모나 친인척 이용 비율이 41.1%로 가장 높으나 다른 자녀가 돌보는 항목에서는 3.6%로 가장 낮았다. 한편으로 광주주는 보육시설 이용이 19.2%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가족형태별로는 휴일보육 필요시 확대가족은 혈연에 의지한다는 비율이 높고,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 가족은 다른 자녀가 돌본다는 비율이 15.7%로 다른 가족에 비하여 높으며, 미취업모가 보육시설에 의지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고 취업모는 혈연에 의지한다는 비율이 미취업모보다 높다.

〈표 III-7-12〉 휴일보육의 대처방안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이용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이용	부모가 해결	형제자매 가 돌봄	계(수)	X <sup>2</sup> (df)
전체	7.1	27.6	6.6	51.2	7.5	100.0(533)	
지역							
서울	5.6	15.9	4.7	64.5	9.3	100.0(107)	
인천	6.3	41.1	6.3	42.9	3.6	100.0(112)	
대구	4.7	19.6	8.4	58.9	8.4	100.0(107)	53.9(20)**
부산	4.0	30.0	7.0	54.0	5.0	100.0(100)	
전주	5.9	41.2	5.9	38.2	8.8	100.0( 34)	
광주	19.2	26.0	6.8	35.6	12.3	100.0( 73)	
가구형태							
확대가족	2.6	44.7	2.6	42.1	7.9	100.0( 38)	
핵가족	6.6	27.1	5.2	55.0	6.1	100.0(347)	na
한부모가족	8.3	24.2	10.6	45.5	11.4	100.0(132)	
기타	23.1	30.8	15.4	30.8	-	100.0( 13)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8.3	24.1	14.8	37.0	15.7	100.0(108)	
150만원 이하	6.9	27.7	4.8	54.3	6.4	100.0(188)	39.8(12)**
151~200만원 이하	8.7	26.1	3.7	57.8	3.7	100.0(161)	
201만원 이상	3.0	38.8	4.5	46.3	7.5	100.0( 67)	
모 취업							
취업	5.2	31.0	8.2	47.0	8.7	100.0(368)	
미취업	10.9	18.4	2.7	63.3	4.8	100.0(147)	na
모 부재	7.1	42.9	7.1	42.9	-	100.0( 1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na는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8. 보육 관련 의견

제8절에서는 연령별 바람직한 대리양육자와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가. 대리 보육자

다음 <표 III-8-1>은 어머니의 취업 등으로 부모가 0~2세 영아 자녀를 보살

필 수 없을 때 가장 좋은 대리양육 방법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조부모 비율은 감소하고, 보육시설 비율은 증가한다. 만1세 미만아의 바람직한 대리양육방법으로는 조부모 양육이 59.4%로 가장 높고, 비혈연 12.9%, 친인척 12.1%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은 모두 9.2%이다. 만1세아에게 가장 좋은 대리양육 방법으로 역시 조부모가 44.5%로 가장 높고, 비혈연 17.1%, 친인척 16.0%순이다. 만2세아의 대리양육 방법으로도 조부모가 28.2%로 가장 높으나, 어린이집도 24.9%로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표 III-8-1> 영아 연령별 바람직한 대리양육 방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보육시설 <sup>1)</sup>	기타 기관 <sup>2)</sup>	잘 모름	계(수)
0세아	59.4	12.1	12.9	9.2	2.8	3.4	100.0(850)
1세아	44.5	16.0	17.1	16.2	3.1	3.0	100.0(820)
2세아	28.2	9.0	15.9	37.7	6.1	3.0	100.0(822)

주: 1) 어린이집, 놀이방임.

2) 유치원, 선교원, 학원, 방과후 프로그램 기관, 기타 기관이 포함됨.

다음은 <III-8-2>는 지역별 차이를 나타낸다. 0세아는 조사지역 중 대구에서 69.8%로 조부모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전주는 20.3%가 친인척을, 서울은 21.8%가 비혈연 대리 양육 항목을 가장 좋은 대리양육 방법으로 꼽았다. 보육 시설은 서울에서 20.4%가 적절한 대리보육자로 응답하였다. 유치원과 선교원, 학원 등을 응답한 비율은 각각 광주에서 1.4%, 5.0%, 전주에서 1.7%로 매우 낮다.

만1세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31.3%로 비혈연 이용을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나머지 인천, 대구, 부산, 전주, 광주는 각각 37.8%, 57.9%, 59.8%, 48.1%, 41.0%로 모두 조부모를 가장 좋은 대리양육자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조사지역 중 대리양육 방법으로 기타 기관도 3.1%로 매우 낮다.

만2세아의 대리양육 방법으로 서울과 인천의 경우는 보육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1%, 51.2%로 타 지역과는 달리 보육시설 선택 비율이 조부모를 선택한 비율보다 높았다. 그리고 기타 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전체 6.1%로 만 1세 미만아나 만1세아의 응답 비율에 비해 비교적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의 경우는 최대 11.6%까지 기타 기관 이용의사를 밝혔다.

〈표 III-8-2〉 영아 연령별·지역별 바람직한 대리양육 방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보육시설 <sup>2)</sup>	기타 기관 <sup>3)</sup>	잘 모름	계(수)
0세아							
전체	59.4	12.1	12.9	9.2	2.8	3.4	100.0(850)
서울	46.9	9.5	21.8	20.4	0.7	0.7	100.0(147)
인천	59.2	14.4	10.3	11.5	2.3	2.3	100.0(174)
대구	69.8	10.4	14.8	2.2	1.1	1.6	100.0(182)
부산	68.9	11.5	12.2	4.1	0.7	2.7	100.0(148)
전주	50.8	20.3	10.2	11.9	5.1	1.7	100.0( 59)
광주	52.9	11.4	6.4	7.8	11.0	11.4	100.0(140)
1세아							
전체	44.5	16.0	17.1	16.2	3.1	3.0	100.0(820)
서울	24.5	12.2	31.3	29.9	2.1	-	100.0(147)
인천	37.8	20.3	14.0	22.6	2.9	2.3	100.0(172)
대구	57.9	11.5	19.1	8.2	2.1	1.1	100.0(183)
부산	59.8	15.0	12.6	8.7	1.6	2.4	100.0(127)
전주	48.1	17.3	13.5	19.2	-	1.9	100.0( 52)
광주	41.0	20.9	8.6	10.0	8.7	10.8	100.0(139)
2세아							
전체	28.2	9.0	15.9	37.7	6.1	3.0	100.0(822)
서울	8.8	5.4	21.1	53.1	11.6	-	100.0(147)
인천	18.8	9.4	15.3	51.2	3.0	2.4	100.0(170)
대구	39.6	8.2	18.1	29.7	3.8	0.5	100.0(182)
부산	42.0	8.4	19.8	23.7	3.9	2.3	100.0(131)
전주	31.5	7.4	5.6	50.9	-	3.7	100.0( 54)
광주	31.2	14.5	8.7	23.2	11.6	10.9	100.0(138)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2) 어린이집, 놀이방임.

3) 유치원, 선교원, 학원, 방과후 프로그램 기관, 기타 기관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표 III-8-3>은 어머니의 취업 등으로 부모가 만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직접 보살필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한 결과이다. 오후 2~3시까지 기관을 이용한 후 부모 퇴근시까지 집에서 다른 성인 보살피는 경우가 44.5%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됐고, 보육시설 등 기관을 종일 이용하는 방법이 34.7%,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다른 성인이 보살피는 경우가 10.2%이다. 이는 유아의 경우에도 보육시설 이외의 개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큼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기관 이용 이후 다른 성인이 보살핀다는 항목은 대구가 51.6%로 가장 높고, 광주가 31.8%로 가장 낮다. 보육시설 등 기관을 종일 이용하는 방법은 42.3%로 전주가 가장 높고 대구가 28.8%로 가장 낮다.

〈표 III-8-3〉 부모 취업시 만3세이상 미취학 아동 양육 방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종일 이용	기관이용 후 다른 성인이 보살핌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고 다른 성인이 보살핌	기타	잘 모르겠음	계(수)	$\chi^2$ (df)
전체	34.7	44.5	10.2	4.2	6.5	100.0(929)	
서울	38.5	45.9	10.8	-	4.7	100.0(148)	
인천	38.9	46.3	8.4	3.7	2.6	100.0(190)	
대구	28.8	51.6	10.3	5.4	3.8	100.0(184)	54.3(20)**
부산	30.9	44.0	9.7	6.3	9.1	100.0(175)	
전주	42.3	46.2	5.1	2.6	3.8	100.0( 78)	
광주	33.1	31.8	14.9	5.8	14.3	100.0(15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나. 정책별 실시 필요성 의견

### 1)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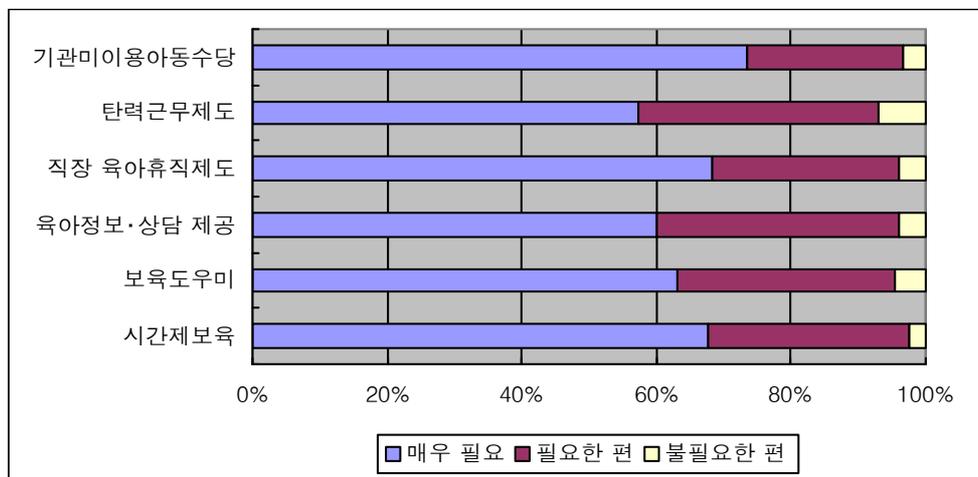
시간제보육, 보육도우미, 육아정보·상담 제공, 직장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의 6가지 육아지원 정책에 대하여 필요성을 질문하였다. 모두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최대 7.1%로 매우 낮아서 6가지 정책 모두 필요성은 인정된다. 매우 필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기관 미이용 아동수당으로 73.4%이고, 가장 낮은 것은 탄력근무 제도로 57.3%이다.

<표 III-8-4> 보육시설 관련 정책 확대 실시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불필요한 편	계(수)
시간제보육	67.8	29.9	2.3	100.0(961)
보육도우미	63.3	32.2	4.6	100.0(961)
육아정보·상담 제공	60.2	35.7	4.1	100.0(958)
직장 육아휴직제도	68.3	27.6	4.1	100.0(958)
탄력근무제도	57.3	35.6	7.1	100.0(954)
기관미이용아동수당	73.4	23.2	3.4	100.0(95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그림 III-8-1] 보육시설 관련 정책 확대의 필요성

아래의 <표 III-8-5>는 6가지 문항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이다. 가장 많은 31.4%의 응답자가 파견보육의 확대 및 제도화를 선택했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정책을 25.4%, 시간제 보육 확대를 22.2%의 응답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하여서 이 세 가지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표 III-8-5〉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단위: %(명)

구분	시간제 보육확대	파견보육 확대 및 제도화	정부육아정 보와 상담 제공 확대	직장 육아휴직 제도정착	직장 탄력근무 제도정착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비 지원	계(수)	X <sup>2</sup> (df)
전체	22.2	31.4	5.2	10.3	5.5	25.4	100.0(960)	
지역								
서울	25.7	47.3	2.7	7.4	3.4	13.5	100.0(148)	
인천	24.1	27.7	5.1	10.3	6.7	26.2	100.0(195)	
대구	18.2	38.0	3.2	8.6	6.4	25.7	100.0(187)	73.1(25)**
부산	23.0	28.4	7.7	6.0	2.7	32.2	100.0(183)	
전주	20.0	27.8	10.0	12.2	8.9	21.1	100.0( 90)	
광주	21.7	18.5	4.5	19.1	6.4	29.9	100.0(157)	
가구형태								
확대가족	20.0	34.3	4.3	11.4	5.7	24.3	100.0( 70)	
핵가족	21.1	26.4	6.4	12.5	5.6	28.0	100.0(640)	na
한부모가족	26.6	43.7	2.7	3.6	4.5	18.9	100.0(222)	
기타	20.8	41.7	-	12.5	12.5	12.5	100.0( 24)	
가구소득								
국민기초 생활대상	27.8	30.4	4.1	6.7	4.6	26.3	100.0(194)	
150만원 이하	19.6	37.1	5.6	8.2	3.8	25.7	100.0(342)	26.2(5)*
151~ 200만원 이하	22.6	26.1	6.3	14.3	7.3	23.3	100.0(287)	
201만원 이상	22.1	27.4	3.5	12.4	7.1	27.4	100.0(113)	
모 취업								
취업	21.4	33.5	4.2	10.7	6.0	24.2	100.0(636)	
미취업	23.5	25.3	7.5	10.3	5.3	28.1	100.0(281)	18.5(10)*
모 부재	25.8	51.6	3.2	6.5	-	12.9	100.0( 3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가 파견보육 확대 및 제도화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47.3%, 38.0%로 다른 지역보다 높고, 부산과 광주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각각 30.6%, 29.9%로 가장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족이 시간제 보육과 파견보육을 희망한다는 비율이 각각 26.6%, 43.7%로 높고 확대가족 및 핵가족은 기관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

원을 희망한다는 비율이 각각 24.3%, 28.0%로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국민기초생활대상이 시간제 보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27.8%로 높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가 육아휴직 정책을 지적한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은 가구는 파견보육확대 및 정착을 희망한다는 비율이 높다. 한편 모의 취업별로는 모 부재와 취업모가 파견보육 제도화 희망 비율이 각각 51.6%, 33.5%로 다소 높다.

2) 정책별 필요성

가) 시간제 보육

다음 <표 III-8-6>는 보육시설 시간제보육 확대 실시 필요성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보육시설 시간제보육 정책의 확대 실시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67.7%, 필요하다 30.0%로 총 97.7%의 응답자가 시간제보육의 확대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역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서울이 79.2%로 가장 높고, 다음 인천 76.1%로 수도권에서 필요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8-6> 보육시설 시간제보육 확대 실시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불필요한 편	계(수)	X <sup>2</sup> (df)
전체	67.7	30.0	2.3	100.0(964)	
지역					
서울	79.2	18.8	2.0	100.0(149)	na
인천	76.1	20.8	3.0	100.0(197)	
대구	71.1	27.8	1.1	100.0(187)	
부산	57.9	40.5	1.6	100.0(190)	
전주	70.6	28.2	1.2	100.0( 85)	
광주	52.6	42.9	4.5	100.0(156)	
가구형태					
확대가족	68.1	27.8	4.2	100.0( 72)	15.0(6)*
핵가족	64.4	33.1	2.5	100.0(638)	
한부모가족	77.6	21.1	1.3	100.0(223)	
기타	70.8	29.2	-	100.0( 24)	

(표 계속)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불필요한 편	계(수)	$\chi^2(df)$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74.3	25.7	-	100.0(191)	
150만원 이하	69.5	28.2	2.3	100.0(347)	13.3(6)*
151~200만원 이하	64.5	32.1	3.5	100.0(287)	
201만원 이상	59.8	37.5	2.7	100.0(112)	
모 취업					
취업	67.9	30.3	1.8	100.0(641)	
미취업	68.1	28.7	3.2	100.0(282)	2.3(4)
모 부재	73.3	23.3	3.3	100.0( 3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족이 시간제 보육을 필요로 한다는 비율이 77.6%로 다른 가족보다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으며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고, 모 부재 가정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 나) 보육도우미 등

보육도우미와 같은 과건보육 확대 및 제도화에 관한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3.3%, 필요한 편이라는 답변이 32.2%로 대부분의 응답이 긍정적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5.8%로 가장 높고, 부산과 광주가 모두 51.6%로 다소 낮고, 특히 광주에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1.2%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족이 시간제 보육을 매우 필요로 한다는 비율이 74.4%로 다른 가족보다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으며,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매우 필요 비율이 높고, 모 부재 가정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8-7〉 파견보육 확대 및 제도화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불필요한 편	계(수)	$\chi^2(df)$
전체	63.3	32.2	4.6	100.0(961)	
지역					
서울	75.8	22.8	1.4	100.0(149)	48.1(10)**
인천	68.0	28.4	3.5	100.0(197)	
대구	69.0	29.4	1.6	100.0(187)	
부산	51.6	42.6	5.9	100.0(188)	
전주	64.4	31.0	4.6	100.0( 87)	
광주	51.6	37.3	11.2	100.0(153)	
가구형태					
확대가족	59.7	33.3	7.0	100.0( 72)	18.8(6)**
핵가족	59.4	35.6	5.0	100.0(638)	
한부모가족	74.4	22.9	2.7	100.0(223)	
기타	75.0	20.8	4.2	100.0( 24)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68.2	27.6	4.1	100.0(192)	17.4(6)**
150만원 이하	67.2	28.2	4.6	100.0(348)	
151~200만원 이하	59.1	35.0	5.9	100.0(286)	
201만원 이상	52.7	45.5	1.8	100.0(112)	
모 취업					
취업	64.9	31.7	3.5	100.0(641)	7.0(4)
미취업	59.3	33.9	6.8	100.0(280)	
모 부재	71.0	25.8	3.2	100.0( 3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다음, <표 III-8-8>은 아동의 집에 가서 아동을 돌보아 주는 보육도우미 제도가 있을 경우, 보육도우미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이다. 이표를 보면 비용이 적절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8.6% 무조건 이용이 23.8%로 총 70.4%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보육도우미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8.4%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현재 보육도우미를 이용 중인 응답자는 전체의 3.9%로 낮은 편인데, 도우미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그 비율은 평균의 3배가량인 10.2%이다. 비용이 적절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52.1%로 대구가, 무조건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서울이 38.3%로 가장 높고,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부산이 13.8%로 가장 높다.

〈표 III-8-8〉 보육도우미 이용 가능성 여부

단위: %(명)

구분	무조건 이용	비용적절시 이용	이용하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	이용 중	계(수)	X <sup>2</sup> (df)
전체	23.8	46.6	8.4	17.3	3.9	100.0(975)	
서울	38.3	45.0	1.3	15.4	-	100.0(149)	
인천	19.9	46.9	10.7	12.2	10.2	100.0(196)	
대구	30.3	52.1	3.2	12.2	2.1	100.0(188)	106.9(20)**
부산	18.0	45.0	13.8	19.6	3.7	100.0(189)	
전주	21.5	50.5	12.9	12.9	2.2	100.0( 93)	
광주	15.6	40.6	9.4	31.3	3.1	100.0(16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다음 <표 III-8-9>는 보육도우미 이용 이유이다. 보육도우미를 이용하겠다는 경우와 이미 이용 중인 경우, 가장 중요한 이용 이유로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 후에 늦게까지 보살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6.5%로 가장 높다. 시설에 보내기 싫어서 부모대신 보육한다는 응답 비율은 21.9%, 아이의 질병 및 장애로 인해 보육시설에 보내기 부적절한 경우가 7.9%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도우미 등 개인양육지원서비스가 보육시설 대체기능도 가지지만 보완기능도 큼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 III-8-9〉 보육도우미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시설에 가지 않고 부모대신 보육	아이의 질병·장애로 시설부적절	기관이용 후 늦은 시간까지 보육	기타	계(수)	X <sup>2</sup> (df)
전체	21.9	7.9	56.5	13.7	100.0(722)	
서울	21.0	6.5	62.9	9.7	100.0(124)	
인천	17.3	16.0	53.3	13.3	100.0(150)	
대구	21.7	6.4	61.1	10.8	100.0(157)	33.1(15)**
부산	25.4	3.2	52.4	19.0	100.0(126)	
전주	32.8	6.0	44.8	16.4	100.0( 67)	
광주	18.4	7.1	59.2	15.3	100.0( 9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기관이용 후 늦은 시간까지 보육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서울이 62.9%로 가장 높고, 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모대신 보육한다는 응답은 전주가 32.8%, 아이의 질병 및 장애로 보육시설에 보내기 부적절한 경우는 인천이 16.0%로 가장 높다.

#### 다) 육아 정보와 상담 제공 기능 확대

정부의 육아 정보와 상담 제공 기능 확대에 관한 정책의 필요성에 관하여 매우 필요 60.2%, 필요한 편 35.7%로 역시 대부분 정책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함을 나타낸다. 불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은 4.0%로 매우 낮다.

특히 전주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가정이 없다. 인천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로 가장 높고, 서울에서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9.4%로 타 지역보다 다소 높다.

〈표 III-8-10〉 정부 육아 정보와 상담 제공 기능 확대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불필요한 편	계(수)	X <sup>2</sup> (df)
전체	60.2	35.7	4.0	100.0(958)	
지역					
서울	58.4	32.2	9.4	100.0(149)	
인천	71.1	24.4	4.6	100.0(197)	
대구	65.2	33.7	1.1	100.0(187)	48.6(10)**
부산	46.8	50.0	3.2	100.0(188)	
전주	63.5	36.5	-	100.0( 85)	
광주	56.6	38.2	5.2	100.0(152)	
가구형태					
확대가족	56.9	37.5	5.6	100.0( 72)	
핵가족	59.3	36.5	4.3	100.0(636)	3.7(6)
한부모가족	62.8	33.6	3.6	100.0(223)	
기타	73.9	26.1	-	100.0( 23)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66.5	29.3	4.2	100.0(191)	
150만원 이하	60.5	35.2	4.4	100.0(347)	7.8(6)
151~200만원 이하	59.1	36.4	4.5	100.0(286)	
201만원 이상	54.5	43.8	1.8	100.0(112)	

(표 계속)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불필요한 편	계(수)	X <sup>2</sup> (df)
모 취업					
취업	60.6	34.9	4.5	100.0(640)	
미취업	63.1	34.4	2.5	100.0(279)	13.4(4)*
모 부재	32.3	58.1	9.7	100.0( 3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족이 정보와 상담 제공 기능을 매우 필요로 한다는 비율이 62.8%로 핵가족 및 확대가족보다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를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으며,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상담과 정보 제공 기능 필요하다는 비율이 약간 높다.

#### 라) 직장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확대

직장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확대에 관한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8.3%, 필요한 편이 27.6%로 대부분 정책 확대에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로 총 98.8%가 육아휴직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88.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지역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가족이 육아휴직을 매우 필요로 한다는 비율이 83.3%로 다른 가족보다 높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필요하다는 비율이 낮은 경향이며,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차이는 거의 없다.

〈표 III-8-11〉 직장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불필요한 편	계(수)	X <sup>2</sup> (df)
전체	68.3	27.6	3.2	100.0(958)	
지역					
서울	57.0	31.5	11.5	100.0(149)	
인천	82.7	13.8	3.6	100.0(196)	
대구	80.2	18.2	1.6	100.0(187)	88.1(10)**
부산	51.1	45.7	3.2	100.0(188)	
전주	69.4	29.4	1.2	100.0( 85)	
광주	66.7	29.4	3.9	100.0(1563)	

(표 계속)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불필요한 편	계(수)	X <sup>2</sup> (df)
가구형태					
확대가족	63.4	31.0	5.6	100.0(124)	8.9(6)
핵가족	68.7	28.1	3.3	100.0(150)	
한부모가족	67.4	25.8	6.8	100.0(157)	
기타	83.3	16.7	-	100.0(126)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69.3	24.3	6.3	100.0(189)	10.7(6)
150만원 이하	64.7	29.8	5.5	100.0(346)	
151~200만원 이하	72.5	25.1	2.4	100.0(287)	
201만원 이상	67.9	30.4	1.8	100.0(112)	
모 취업					
취업	70.2	25.0	4.9	100.0(639)	23.8(4)**
미취업	68.1	30.5	1.5	100.0(280)	
모 부재	43.3	40.0	16.6	100.0( 3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마) 탄력근무제도

직장 탄력근무제도 정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 III-8-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필요 57.3%, 필요한 편 35.6%로 탄력근무제도 정책 확대에 대하여 총 92.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III-8-12> 직장 탄력근무제도 정착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불필요한 편	계(수)	X <sup>2</sup> (df)
전체	57.3	35.6	7.0	100.0(954)	
지역					
서울	47.7	34.9	17.4	100.0(149)	64.9(10)**
인천	67.0	26.3	6.7	100.0(194)	
대구	65.6	31.2	3.2	100.0(186)	
부산	43.9	50.8	5.3	100.0(189)	
전주	68.2	28.3	3.5	100.0( 85)	
광주	55.0	38.1	5.9	100.0(151)	

(표 계속)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불필요한 편	계(수)	X <sup>2</sup> (df)
가구형태					
확대가족	57.5	30.1	12.3	100.0( 73)	14.3(6)*
핵가족	56.8	37.3	5.9	100.0(632)	
한부모가족	56.1	34.4	9.5	100.0(221)	
기타	83.3	16.7	-	100.0( 24)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55.9	35.6	8.6	100.0(188)	4.4(6)
150만원 이하	56.0	35.6	8.5	100.0(343)	
151~200만원 이하	59.9	35.2	4.8	100.0(287)	
201만원 이상	55.4	38.4	6.3	100.0(112)	
모 취업					
취업	59.2	32.9	7.9	100.0(639)	13.6(4)**
미취업	56.4	39.3	4.3	100.0(280)	
모 부재	36.7	46.7	16.6	100.0( 3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로 96.5%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서울은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한 지역으로, 불필요하다는 비율이 총 17.4%로 다른 조사지역의 7.0%에 비하여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가족 이외에는 별 차이가 없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필요하다는 비율이 낮은 경향이며, 취업모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다소 높다.

#### 바) 양육수당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 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표 III-8-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필요 73.4%, 필요한 편 23.2%로 총 96.6%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특히 대구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100.0%로 매우 필요하다는 항목에서도 8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정적인 응답은 서울에서 가장 많았는데 불필요하다는 비율이 10.1%로, 전체 3.4%에 비하여 비교적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가족 이외에는 응답에 별 차이가 없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이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며,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차이는 거의 없다. 가구소득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표 III-8-13〉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불필요한 편	계(수)	X <sup>2</sup> (df)
전체	73.4	23.2	3.4	100.0(957)	
지역					
서울	67.8	22.1	10.1	100.0(149)	58.9(10)**
인천	80.2	17.3	2.5	100.0(197)	
대구	84.0	16.0	-	100.0(187)	
부산	65.4	33.0	1.6	100.0(188)	
전주	77.1	16.9	6.0	100.0( 83)	
광주	64.7	32.0	3.3	100.0(153)	
가구형태					
확대가족	66.7	30.6	2.8	100.0( 72)	9.1(6)
핵가족	73.7	23.3	3.0	100.0(636)	
한부모가족	72.5	22.1	5.5	100.0(222)	
기타	91.3	8.7	-	100.0( 23)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78.9	17.9	3.1	100.0(190)	14.7(6)*
150만원 이하	74.1	20.7	5.2	100.0(347)	
151~200만원 이하	71.2	26.3	2.5	100.0(285)	
201만원 이상	66.1	32.1	1.8	100.0(112)	
모 취업					
취업	73.1	23.0	3.9	100.0(639)	1.1(4)
미취업	74.1	23.4	2.5	100.0(278)	
모 부재	74.2	22.6	3.2	100.0( 3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 9. 정책시사점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저소득계층 아동은 단순 보육 이외에 가정 환경의 열악함에서 오는 자원의 부족과 이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선 초등학생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의 모 취업률이 61.3%로 매우 높고, 아이들만 두고 일하러 가거나 외출하는 경우가 10% 정도는 자주 있다고 응답하였고, 초등학생도 25%는 방과후에 그냥 집에서 보낸다고 응

답하였고, 53%는 혼자 있을 때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저소득 가정은 문화공간, 서점 등으로의 자녀 동반 외출 등이 제한적이다.

둘째, 저소득가정 보육비 지출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월 가구소득 중 15%를 보육비로 사용하고, 기관 이용자의 64.7%가 기관 이용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기관 미이용 이유가 23.0%는 비용 부담 때문이다. 정부의 보육료 및 교육비 차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느끼는 비용 부담은 크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비용 부담 때문에 기관에 안 보낸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초등학교도 25%는 방과후에 그냥 집에서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보육시설의 기능이 보다 확대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모의 미취업 이유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의견이 30.1%이다. 보육시설에서 부모의 취약보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부모들의 취약보육은 필요성은 높으나 대부분 부모가 해결하거나 조부모 친인척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13% 정도는 이용시간에 불만족하고, 이들의 30.7%가 이용시간의 다양성을 희망하였다.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유치원 등 기관에 예방접종, 병원 데려가기, 아픈 아동 병간호, 야간연장보육 중 병간호가 65.9%로 가장 높고, 다음이 병원 데려가기로 41.5%이며, 예방접종이 36.3%, 야간 연장보육이 30.6%로 조사되었다. 즉, 육아지원기관에는 건강 서비스보다 야간 보육을 기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개인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있다. 대리보육자로 0, 1세는 조부모, 유아는 오후 2~3시까지 기관 이용 후 집에서 성인에 의한 보호를 가장 선호하였다. 시설 미이용 이유는 기관과의 대체관계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그 비율은 30.6%이다. 장애, 질병 때문에 기관을 안 보낸다는 응답도 5.4%이다. 개인서비스 이용은 조부모나 비혈연 보육서비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시설 등 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그 비율은 30.6%이다. 기관과 보완 기능으로 시설 이용의 전후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전체 27.6%이고, 초등학교를 방과후에 보살피기 위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 21.7% 순이다. 주요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은 가장 많은 31.4%의 응답자가 파견보육의 확대 및 제도화를 선택했다.

다섯째, 기관 미이용 아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주요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은 파견보육의 확대 및 제도화 이외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정책 25.4%, 시간제 보육 확대 22.2%로, 이 세 가지가 주요 정책과제임을 나타냈다.

## IV. 보육도우미 사업 현황과 성과

제4장에서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보육도우미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이어서 보육도우미 활동, 보육도우미 이용 행태, 보육도우미가 미치는 영향 및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이 사업의 성과를 가름하고자 하였다.

### 1. 보육도우미 사업 개요

#### 가. 사업 내용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은 실직여성을 보육도우미로 교육하여 보육시설에서 보호받기 어렵거나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의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보육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비스 공급자인 실직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증대를 가져오게 하고, 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층에게는 보육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소득지원효과 및 경제활동 참여 여건이 개선되는 복합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05년부터 실시한 저소득층 보육도우미 파견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전국 6개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되어 저소득 135가구에 무료 가정보육사가 파견된다. 사업관리는 중앙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외에 6개 지부가 주체가 되고 있다.

보육도우미 파견 대상 가정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장애아가 있는 가구 등을 우선하였다.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영아보육서비스와 야간보육서비스의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전자는 영아를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보육하는 것이고, 후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을 방과후에 부모 귀가시간에 맞추어 보육하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수혜가구와 1:1 상담 및 사례관리도 실시하는 등, 보육도우미 파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도 포함하고 있다.

## 나. 도우미 교육 및 관리

### 1) 자격

보육도우미 훈련 대상은 실직여성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훈련생 모집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만 첨부하면 된다.

### 2) 교육

보육도우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신입교육시간은 80시간 교육, 24시간(1박 2일) MBTI 교육, 현장실습 40시간으로 총 144시간이다(표 IV-1-1 참조).

〈표 IV-1-1〉 보육도우미 교육내용 및 시간

구분	교육내용
보육도우미 (14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관계 프로그램, 저소득 가정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이해</li> <li>- 영유아기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 이해, 영유아 놀이지도(언어, 음율 지도)</li> <li>- 돌봄노동 사회화와 조직화의 필요성, 직업인의 자세</li> <li>- 마음이 통하는 아이들과의 대화법, 문제 행동에 따른 이해와 대응</li> <li>- 방과후 아동지도 및 학습, 생활지도 프로그램 짜기</li> <li>-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종이접기, 풍선아트 동화구연 등)</li> <li>- MBTI를 통한 자존감 향상 훈련, 신생아에 대한 이해 및 돌봄</li> <li>- 건강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양식 만들기 및 식단 짜기</li> <li>-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부모교육훈련, 빈곤가정에 대한 이해</li> <li>-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사회(아동)복지의 역사</li> <li>- 보육 정책 현황과 과제</li> </ul>

자료: 한국여성노동자회(2007). 내부자료.

보육도우미 현장실습은 알콜홀릭 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영아보육시설, 어린이집, 공부방, 가정 등 지역 복지 기관 및 단체에서 가능하고, 교육 3주차부터 취업상담을 실시한다.

교육을 받고 보육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 월 1회 보수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월 1회 보육도우미 월례모임을 통하여 보육도우미 서로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 3) 급여

보육도우미 급여는 영아보육도우미는 시간급 3,503원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728,759원이 기본이고, 여기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3개 보험료를 제하면 674,710이 실 수령액에 된다. 10시간을 일할 경우 수령액은 886,490원이 된다. 야간보육도우미는 시급 5,300원으로 최대 6시간을 일하면 기본이 699,600원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3개 보험료를 제하면 실 수령액이 651,072원이 된다(표 IV-1-2, 표 IV-1-3 참조).

〈표 IV-1-2〉 영아보육도우미

단위: 원

구분	1일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10시간	9시간	8시간
시간급	3503.65	3503.65	3503.65
일 연장 근로시간	2시간	1시간	-
월 연장 근로시간	43시간	21.5시간	-
기본급	728,759	728,759	728,759
연장 근로수당	231,241	115,620	-
월급	960,000	844,380	728,759
건강보험료	24,640	20,160	17,920
국민연금	44,550	38,250	32,850
고용보험료	4,320	3,800	3,279
실 수령액	886,490	782,170	674,710

주: 기본임금은 시급 3,503원임.

〈표 IV-1-3〉 야간보육도우미

단위: 원

구분	1일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6시간	5시간	4시간
시간급	5300	5300	5300
월 근무일수	22일	22일	22일
일당	31,800	26,500	21,200
기본급	699,600	583,000	466,400
건강보험료	15,230	12,990	10,750
국민연금	30,150	25,650	21,600
고용보험료	3,148	2,624	2,099
실 수령액	651,072	541,737	431,951

주: 기본임금은 시급 5,300원임.

기본 비용 이외에 쌍둥이, 연년생 등 종일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1명 추가될 경우 월 10만원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아이 한명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녀와 간단한 보살핌이 필요한 큰 아이가 추가될 경우 월 5만원을 추가수당으로 지급한다.

근로시간은 영아보육도우미는 오전 8시 이후 하루 8~11시간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에서 제외), 야간보육도우미는 4시 이후부터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4) 보험 등 처우

영아보육도우미는 모두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야간보육도우미는 희망자에 한해 보험에 가입한다. 보육도우미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단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배상의 범위는 실내와 실외를 포함하여 아이가 다쳤을 경우에 적용되도록 한다.

영아보육도우미는 월 1회 유급 월차휴가를 사용한다. 휴가 사용하지 않을 시에 수당 지급은 없다. 보육도우미의 월차휴가 사용 시 대체인력 마련은 수혜자 부담으로 한다. 영아보육도우미의 병가, 경조사 휴가 시 유급휴가로 하고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 수혜자에게 대체인력을 파견한다.

#### 5) 활동 및 지침

보육도우미 기본 활동은 아이 돌봄, 건강 돌봄, 정서 돌봄,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아기 돌봄은 우유이유식 먹이기, 목욕과 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잠재우기 등이며, 건강 돌봄은 젖병 소독, 병원 또는 보건소 가기, 약 먹이기, 예방접종하기이고, 정서 돌봄은 음악, 동화책 읽어주기, 연령별 놀이지도, 언어발달 지도 등이고, 이외에 아기용품 정리와 아기 옷 빨래가 포함된다.

보육도우미는 매일 가정보육일지를 작성하고, 아동발달을 위한 놀이지도 및 학습지도를 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 2. 보육도우미 활동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144시간의 교육을 받고 보육도우미로 활동하는 126명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이들의 활동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가. 인구학적 특성

보육도우미의 평균 연령은 49세이고 표준편차는 6.3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이 51세로 가장 높았고, 대구와 광주가 46세로 가장 낮으나 모두 중년 여성으로 큰 차이는 없다. 최연소자는 33세이고 최고령자는 63세이다.

보육도우미유형에 따르면 영아도우미는 평균 49세, 야간도우미는 48세로 거의 차이가 없다.

〈표 IV-2-1〉 도우미 연령

단위: 세(명)

구분	연령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전체	48.6	6.3	33	63	(126)
지역					
서울	51.4	5.7	40	62	( 19)
인천	50.6	6.3	33	61	( 34)
대구	46.0	6.3	33	56	( 29)
부산	48.4	5.4	36	57	( 25)
전주	47.4	7.3	36	63	( 11)
광주	45.5	3.2	42	51	( 8)
F			3.1*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49.0	6.5	33	62	( 56)
야간도우미	48.3	6.2	33	63	( 68)
T			0.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보육도우미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53.9%로 가장 많으며, 고졸 미만이 25.8%, 전문대(중퇴)졸이 14.1%, 4년제대학 이상이 6.3%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고졸의 비율이 62.5%로 가장 높고, 동시에 4년제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25.0%로 가장 많고, 그리고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보육도우미의 비율은 없어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소 특이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대구는 4년제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보육도우미가 없고, 전주는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없다(표 IV-2-2 참조).

보육도우미의 유형에 따르면, 영아도우미보다 야간도우미의 학력이 다소 높다. 영아도우미는 고졸 미만의 학력이 35.1%로 야간도우미 19.1%에 비해 높고,

4년제대학 이상의 비율은 각각 3.5%로, 8.8%로 야간도우미가 높다.

〈표 IV-2-2〉 도우미 최종학력

단위: %(명)

구분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중퇴) 졸	4년제대학 이상	계(수)
전체	25.8	53.9	14.1	6.3	100.0(128)
지역					
서울	31.6	36.8	15.8	15.8	100.0( 19)
인천	29.4	55.9	11.8	2.9	100.0( 34)
대구	31.0	48.3	20.7	-	100.0( 29)
부산	20.0	56.0	16.0	8.0	100.0( 25)
전주	23.1	76.9	-	-	100.0( 13)
광주	-	62.5	12.5	25.0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35.1	50.9	10.5	3.5	100.0( 57)
야간도우미	19.1	55.9	16.2	8.8	100.0( 6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표 IV-2-3〉 도우미 결혼상태 및 자녀양육경험

단위: %(명)

구분	미혼	기혼, 양육경험 유	기혼, 양육경험 무	계(수)
전체	6.3	92.9	0.8	100.0(127)
지역				
서울	5.3	94.7	-	100.0( 19)
인천	2.9	94.1	2.9	100.0( 34)
대구	13.8	86.2	-	100.0( 29)
부산	4.2	95.8	-	100.0( 24)
전주	-	100.0	-	100.0( 13)
광주	12.5	87.5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	5.4	92.9	1.8	100.0( 56)
야간	7.4	92.6	-	100.0( 6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표 IV-2-3〉은 보육도우미의 결혼상태 및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기혼이며 양육경험이 있는 보육도우미의 비율이 92.9%로 대다수이고, 미혼

이 6.3%, 기혼이나 양육경험이 없는 보육도우미가 0.8%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기혼이며 양육경험이 있으나, 대구와 광주의 경우 미혼이 각각 13.8%, 12.5%로 다른 지역보다 미혼의 비율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유일하게 인천에서 기혼이면서 양육경험이 없는 보육도우미가 2.9%를 차지한다.

영아도우미와 야간도우미 모두 기혼이며 양육경험이 있는 보육도우미의 비율이 각각 92.9%, 92.6%로 차이가 없다. 그리고 미혼인 경우의 비율이 영아도우미 5.4%, 야간도우미 7.4%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표 IV-2-4>는 보육도우미의 자격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자격이 없는 보육도우미가 52.8%로 과반수를 넘고, 조사표에 제시된 자격 이외의 기타 자격<sup>13)</sup>을 가진 보육도우미가 29.1%로 나타났다. 서울은 자격이 없는 보육도우미의 비율이 78.9%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비율이 37.5%로 타 지역보다 높다. 한편 유일하게 대구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의 보육도우미가 3.4%이고, 전주와 광주는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보육도우미가 없다.<sup>14)</sup>

<표 IV-2-4> 도우미 자격

단위: %(명)

구분	없음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비해당	계(수)
전체	52.8	13.4	3.9	0.8	29.1	100.0(127)
지역						
서울	78.9	10.5	5.3	-	5.3	100.0( 19)
인천	44.1	11.8	2.9	-	41.2	100.0( 34)
대구	37.9	6.9	3.4	3.4	48.3	100.0( 29)
부산	58.3	8.3	8.3	-	25.0	100.0( 24)
전주	61.5	30.8	-	-	7.7	100.0( 13)
광주	50.0	37.5	-	-	12.5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45.6	14.0	3.5	-	36.8	100.0( 57)
야간도우미	57.4	13.2	4.4	1.5	23.5	100.0( 6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13) 조사 시 보기로 준 자격은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초등학교 교사임.

14) 조사표에서는 보기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주었으나 응답자가 없으므로 <표>에서는 삭제하였음.

보육도우미의 유형별로보면, 도우미 자격이 없는 비율은 야간도우미가 57.4%로 영아도우미 45.6%보다 다소 높고, 보육교사 자격은 각각 14.0%, 13.2%,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도우미의 비율은 각각 3.5%, 4.4%로 근소한 차이만을 보인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도우미는 야간도우미의 경우에서만 1.5% 나타난다.

보육도우미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168만 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이 219만 3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주가 110만 7천원으로 가장 낮다(표 IV-2-5 참조).

보육도우미의 유형에 따르면, 영아도우미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150만 2천원이나, 야간도우미의 경우 184만 7천원으로 야간도우미가 다소 높아 유형 간에 가구 소득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IV-2-5〉 도우미 월 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원(명)

구분	소득	표준편차	(수)
전체	168.1	104.3	(126)
지역			
서울	172.4	121.2	( 19)
인천	219.3	106.1	( 34)
대구	170.0	118.9	( 29)
부산	134.2	68.3	( 25)
전주	110.7	47.5	( 11)
광주	118.8	51.7	( 8)
도우미유형			
영아	150.2	74.3	( 57)
야간	184.7	123.9	( 6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 나. 교육

〈표 IV-2-6〉은 보육도우미 자격을 받기 위한 144시간의 교육시간의 충분성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교육시간 144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9.0%로 가장 높았고, 부족하다는 응답이 20.9%로 나타났다. 교육시간이 긴 편이라는 응답은 10.1%이다. 지역별로는 교육시간이 길다가 서울 15.8%, 인천이 14.7%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전주에서는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38.5%로 타 지역보다 높다.

도우미의 유형별로 보면, 144시간의 교육시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영아도우미 71.9%, 야간도우미 68.1%로 나타났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영아도우미 21.1%로 야간도우미 20.3%와 유사하고, 긴 편이라는 경우는 야간도우미가 11.6%로 영아도우미 7.0%보다 약간 높다.

〈표 IV-2-6〉 144시간 교육시간의 충분성 여부

단위: %(명)

구분	긴 편이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계(수)	$\chi^2(df)$
전체	10.1	69.0	20.9	100.0(129)	
지역					
서울	15.8	78.9	5.3	100.0( 19)	
인천	14.7	73.5	11.8	100.0( 34)	
대구	3.4	69.0	27.6	100.0( 29)	na
부산	11.5	61.5	26.9	100.0( 26)	
전주	7.7	53.8	38.5	100.0( 13)	
광주	-	75.0	25.0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7.0	71.9	21.1	100.0( 57)	0.8(2)
야간도우미	11.6	68.1	20.3	100.0( 69)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표 IV-2-7〉 기존 활동 보육도우미 재교육의 충분성 여부

단위: %(명)

구분	많은 편이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계(수)
전체	7.0	76.0	17.1	100.0(129)
지역				
서울	10.5	84.2	5.3	100.0( 19)
인천	14.7	67.6	17.6	100.0( 34)
대구	-	79.3	20.7	100.0( 29)
부산	7.7	69.2	23.1	100.0( 26)
전주	-	76.9	23.1	100.0( 13)
광주	-	100.0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8.8	80.7	10.5	100.0( 57)
야간도우미	4.3	72.5	23.2	100.0( 6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표 IV-2-7>은 재교육의 충분성을 나타낸다. 재교육과 관련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이 76.0%로 가장 높았고, 부족하다는 의견은 17.1%,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6.2%로 낮은 편이다. 특히 광주는 모두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재교육이 부족하다는 비율은 부산과 광주가 모두 23.1%로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교육이 많은 편이라는 의견은 인천과 서울이 각각 11.8%, 10.5%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약간 높은 편이다(표 IV-2-7 참조).

도우미유형에 따르면, 야간도우미가 영아도우미에 비하여 재교육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각각 10.5%, 23.2%로 야간도우미가 영아도우미에 비해 비교적 높고, 재교육이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영아도우미가 8.8%로 야간도우미 2.9%로 보다 다소 높다. 재교육이 너무 많다는 의견은 야간도우미의 경우에만 1.4%이다.

#### 다. 도우미 활동 기간

<표 IV-2-8>은 보육도우미로 활동한 기간에 관한 결과이다. 조사된 2007년 6월 현재 일하는 보육도우미는 평균적으로 8.9개월 동안 보육도우미 활동을 했으며, 그 중 부산이 11.5개월로 가장 긴 기간이다. 반면 광주와 전주는 평균인 8.9개월보다 매우 낮은 1.6개월, 2.2개월이라고 대답했다.

도우미의 유형에 따르면, 영아도우미의 활동 기간은 평균 10.0개월, 야간도우미는 8.3개월로 영아도우미의 활동 기간이 약간 더 길게 나타났다.

<표 IV-2-8> 보육도우미로 활동한 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기간	표준편차	(수)
전체	8.9	6.0	(128)
지역			
서울	11.0	5.6	( 19)
인천	9.2	6.4	( 34)
대구	10.0	4.8	( 29)
부산	11.5	5.6	( 25)
전주	2.2	0.8	( 13)
광주	1.6	0.9	(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10.0	5.8	( 57)
야간도우미	8.3	6.1	( 6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보육도우미가 평균적으로 돌보는 아동의 수는 1명이라는 응답이 55.0%로 가장 많았고 2명이 36.4%, 3명이 8.5%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3명이라고 답한 응답이 없는 반면 전주는 3명을 돌본다는 응답이 15.4%로 평균의 2배 가량이다.

도우미유형에 따르면, 영아도우미와 야간도우미 모두 돌보는 아동이 1명인 경우가 각각 56.1%, 52.2%로 가장 높고, 2명은 각각 36.8%, 37.7%, 3명은 7.0%, 10.1%로, 유형별로 돌보는 아동의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IV-2-9〉 돌보는 아동의 수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55.0	36.4	8.5	100.0(129)	1.5(0.7)
지역					
서울	47.4	47.4	5.3	100.0( 19)	1.6(0.6)
인천	55.9	35.3	8.8	100.0( 34)	1.5(0.7)
대구	51.7	37.9	10.3	100.0( 29)	1.6(0.7)
부산	69.2	23.1	7.7	100.0( 26)	1.4(0.6)
전주	38.5	46.2	15.4	100.0( 13)	1.8(0.7)
광주	62.5	37.5	-	100.0( 8)	1.4(0.5)
F					0.4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56.1	36.8	7.0	100.0( 57)	1.5(0.6)
야간도우미	52.2	37.7	10.1	100.0( 69)	1.6(0.7)
T					0.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 라. 보수수준

〈표 IV-2-10〉은 현재 보육도우미 활동에 따른 보수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업무에 비하여 보수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2.2%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광주는 응답한 모든 보육도우미가 활동에 따른 보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우미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수 수준이 부적절하다는 경우가 영아도우미 91.2%, 야간도우미 92.8%로 별 차이가 없다.

이에 보육도우미 활동에 따른 보수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적절한 수준에 대하여 시간당 평균 5,935원을 제시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6,675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대구가 5,396원으로 가장 낮은 액수를 제시하였다.

보육도우미 활동에 따른 보수 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적절하게 생각되는 보수 수준에 관한 물음에 영아도우미는 5,619원, 야간도우미 6,176원이라고 응답해, 두 유형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현재 보수 수준인 영아도우미 3,503원, 야간도우미 5,300원보다 각각 2,116원, 876원이 높은 가격이다.

〈표 IV-2-10〉 보육 도우미 보수 수준의 적절성 여부

단위: %(명), 원

구분	적절성			부적절하다는 경우 적절한 보수		
	적절함	부적절	계(수)	보수(시간당)	표준편차	(수)
전체	7.8	92.2	100.0(128)	5934.8	1131.2	(112)
지역						
서울	5.3	94.7	100.0( 19)	6588.9	1456.0	( 18)
인천	11.8	88.2	100.0( 34)	6171.0	1219.3	( 31)
대구	6.9	93.1	100.0( 29)	5396.3	526.6	( 27)
부산	4.0	96.0	100.0( 25)	5631.6	1025.3	( 19)
전주	15.4	84.6	100.0( 13)	5411.1	797.6	( 9)
광주	-	100.0	100.0( 8)	6675.0	785.1	(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8.8	91.2	100.0( 57)	5619.2	1092.8	( 57)
야간도우미	7.2	92.8	100.0( 69)	6176.2	1118.4	( 6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 마. 도우미 만족도 및 개인 변화

#### 1) 만족도

보육도우미 활동에 매우 만족하는 응답이 33.6%, 만족하는 비율이 51.6%로 85.2%가 보육도우미 활동에 만족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는 매우 만족이 53.8%, 만족이 46.2%로 모든 보육도우미가 활동에 만족하고 있으나, 서울과 부산의 경우 각각 21.1%, 20.0%의 보육도우미가 보통이라고 답하였고, 대구는 불만이라는 응답이 10.3%를 나타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표 IV-2-11 참조).

보육도우미의 유형에 따르면, 영아도우미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42.9%인데, 야간도우미는 매우 만족한다는 경우가 27.5%로 두 유형 간에 만족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보육도우미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영아도우미 87.5%, 야간도우미 84.0%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야간도우미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이 없다.

〈표 IV-2-11〉 보육도우미 활동 만족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계(수)
전체	33.6	51.6	12.5	2.3	100.0(128)
지역					
서울	42.1	36.8	21.1	-	100.0( 19)
인천	35.3	55.9	8.8	-	100.0( 34)
대구	20.7	58.6	10.3	10.3	100.0( 29)
부산	32.0	48.0	20.0	-	100.0( 25)
전주	53.8	46.2	-	-	100.0( 13)
광주	25.0	62.5	12.5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42.9	44.6	7.1	5.4	100.0( 56)
야간도우미	27.5	56.5	15.9	-	100.0( 6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 2) 도우미 개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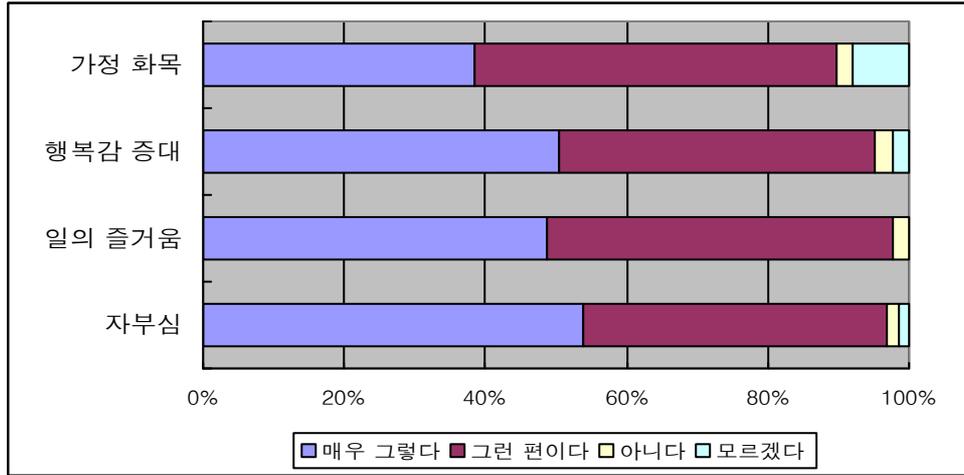
도우미 활동 이후 전문 가정보육사로서의 자부심, 일의 즐거움, 행복감 증대, 가정 화목 증대의 4가지 요인으로 개인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가정보육사로 자부심이 생겼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53.9%가 된다.

〈표 IV-2-12〉 보육도우미 활동 이후 변화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모르겠다	계(수)
자부심	53.9	43.0	1.6	1.5	100.0(128)
일의 즐거움	48.8	48.8	2.4	-	100.0(127)
행복감 증대	50.4	44.9	2.4	2.4	100.0(127)
가정 화목	38.6	51.2	2.4	7.9	100.0(12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그림 IV-2-1] 보육도우미 활동 이후 변화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문 가정보육사로서의 자부심

<표 IV-2-13>은 전문 가정보육사로 자부심에 대한 변화 의견이다.

<표 IV-2-13> 보육도우미 활동 이후 변화 - 자부심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전체	53.9	43.0	1.6	100.0(128)
지역				
서울	52.6	42.1	5.3	100.0( 19)
인천	52.9	44.1	2.9	100.0( 34)
대구	48.3	51.7	-	100.0( 29)
부산	61.5	30.8	7.7	100.0( 26)
전주	83.3	16.7	-	100.0( 12)
광주	12.5	87.5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70.2	28.1	1.8	100.0( 57)
야간도우미	42.6	52.9	4.4	100.0( 6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보육도우미로 활동한 이후에 전문 가정보육사로 매우 자부심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3.9%로 가장 높았고, 그런 편이라는 응답도 43.0%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는 자부심이 생기지 않았다는 응답이 7.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차이를 보인다.

도우미유형별로 보면, 영아도우미는 전문 가정보육사로 매우 자부심이 생겼다는 응답이 71.2%로 가장 높고, 야간도우미는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52.9%로 가장 높아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육도우미로 활동한 이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 나) 일의 즐거움

두 번째로 <표 IV-2-14>는 보육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즐거움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모두 48.8%씩을 보여 97.6%가 즐거움이 증가되었다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인천과 전주, 광주는 모든 보육도우미들이 일의 즐거움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보육도우미의 유형에 따르면, 영아도우미로 일하는 시간이 매우 즐거워졌다는 응답이 57.9%로, 야간도우미는 43.3%로, 영아도우미가 14.7%포인트 높으나 전체적 긍정적인 응답비율은 차이가 없다.

<표 IV-2-14> 보육도우미 활동 이후 변화 - 일의 즐거움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전체	48.8	48.8	2.4	100.0(127)
지역				
서울	47.4	47.4	5.3	100.0( 19)
인천	47.1	52.9	-	100.0( 34)
대구	44.8	51.7	3.4	100.0( 29)
부산	56.0	40.0	4.0	100.0( 25)
전주	66.7	33.3	-	100.0( 12)
광주	25.0	75.0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57.9	40.4	1.7	100.0( 57)
야간도우미	43.3	55.2	1.5	100.0( 6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다) 행복감

세 번째로 보육도우미로 활동한 이후 사는 것이 즐거워졌고 행복감이 매우 증가되었다는 응답이 50.4%, 그런 편이라는 응답도 44.9%로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매우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5.8%가 아니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다소 비율이 떨어진다.

도우미의 유형별로 보면, 행복감이 매우 증대되었다는 응답은 영아도우미 57.9%, 야간도우미 46.3%로, 영아도우미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다소 높다.

〈표 IV-2-15〉 보육도우미 활동 이후 변화 - 행복감 증대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전체	50.4	44.9	4.8	100.0(127)
지역				
서울	31.6	52.6	15.8	100.0( 19)
인천	47.1	50.0	2.9	100.0( 34)
대구	62.1	37.9	-	100.0( 29)
부산	56.0	40.0	4.0	100.0( 25)
전주	66.7	25.0	8.3	100.0( 12)
광주	25.0	75.0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57.9	38.5	3.6	100.0( 57)
야간도우미	46.3	47.7	6.0	100.0( 6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라) 가족의 화목

네 번째로 도우미 활동 이후 가족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38.6%, 그런 편이다가 51.2%로 총 89.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10.3%는 아니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광주는 전원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68.4%이고, 모르겠다 또는 아니라는 응답이 31.6%로 전체 평균인 10.3%의 약 3배가 되어서 다른 지역과의 비교하여 가정화목 효과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도우미의 유형에 따르면, 영아도우미는 보육도우미로 활동한 이후 가족의

화목이 매우 증대되었다는 응답이 47.4%이고, 야간도우미는 32.8%로 영아도우미의 가정화목 만족도가 더 높다. 야간도우미는 모르겠다 또는 아니라는 응답이 13.5%로 평균이 7.9%에 비해 약간 높다.

〈표 IV-2-16〉 보육도우미 활동 이후 변화 - 가정 화목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38.6	51.2	10.3	100.0(127)	
지역					
서울	26.3	42.1	31.6	100.0( 19)	
인천	50.0	41.2	8.8	100.0( 34)	
대구	27.6	62.1	10.3	100.0( 29)	na
부산	40.0	56.0	4.0	100.0( 25)	
전주	66.7	33.3	-	100.0( 12)	
광주	12.5	87.5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47.4	45.6	7.0	100.0( 57)	3.3(2)
야간도우미	32.8	53.7	13.5	100.0( 67)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 바. 어려움 점

보육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식사문제가 24.2%로 가장 높았고, 고용인이 가사 일을 기대하는 것이 22.7%, 양육방식에 대한 갈등 12.5%이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서울은 가사일 기대 및 양육방식 갈등, 인천과 부산은 식사문제, 대구는 불규칙한 시간을 어려움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다.

유형별로 보면, 영아도우미는 식사문제를 32.1%, 야간도우미는 가사 일을 기대하는 것을 23.2%가 지적하여 이들이 각각 활동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두 유형 간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아이 다루기에 미숙하다는 항목에서는 영아도우미가 1.8%로 평균인 8.6%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야간도우미의 경우 14.5%로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높다. 이는 돌보는 아동의 연령과 발달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영유아보다 초등학교 다루기가 더 어려움을 나타냈다고 하겠다. 그리고 식사문제에 관한 어려움이 야간도우미보다는 종일 근무하는 영아도우미가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17〉 보육도우미 활동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양육방식 갈등	가사일 기대	불규칙한 근무시간	아이다루기 미숙	식사문제	기타	계(수)
전체	12.5	22.7	5.5	8.6	24.2	26.6	100.0(128)
지역							
서울	21.1	31.6	-	15.8	15.8	15.8	100.0( 19)
인천	6.1	21.2	3.0	12.1	33.3	24.2	100.0( 33)
대구	10.3	27.6	17.2	10.3	13.8	20.7	100.0( 29)
부산	23.1	19.2	3.8	-	34.6	19.2	100.0( 26)
전주	-	7.7	-	-	15.4	76.9	100.0( 13)
광주	12.5	25.0	-	12.5	25.0	25.0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12.5	23.2	5.4	1.8	32.1	25.0	100.0( 57)
야간도우미	13.0	23.2	5.8	14.5	14.5	29.0	100.0( 6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 3. 보육도우미 이용행태

제3절에서는 보육도우미를 이용하는 13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보육도우미 이용행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 가. 이용 도우미 유형

〈표 IV-3-1〉은 보육도우미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표에 따르면 132명의 보육 이용 부모 중 영아보육도우미 이용이 60명, 야간보육도우미 이용이 72명이다.

〈표 IV-3-1〉 보육도우미 유형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전체	132	19	36	29	27	13	8
영아도우미	60	8	19	13	14	4	2
야간도우미	72	11	17	16	13	9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 나. 이용기간

평균적으로 보육도우미가 파견된 기간은 9.3개월로 나타났다. 그 중 부산이 10.5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서울도 10.2개월로 비슷한 기간이다. 반면 광주는 보육도우미의 평균파견기간이 7.5개월로 조사지역 중 기간이 가장 짧다.

〈표 IV-3-2〉 보육도우미가 파견된 기간

단위: 개월(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9.3	7.7	(130)
지역			
서울	10.2	5.7	( 19)
인천	8.6	6.1	( 36)
대구	8.9	5.3	( 29)
부산	10.5	5.5	( 25)
전주	9.7	15.1	( 13)
광주	7.5	14.0	( 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 다. 돌보는 아동

부모조사에서 나타난 도우미가 돌보는 아동수는 평균 1.7명이다. 분포로 보면 1명이 49.2%, 2명 38.6%이고 3명 9.8%, 4명 2.3%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평균 2.0명으로 다소 많고 광주가 1.4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다. 도우미 유형별로는 별 차이가 없다(표 IV-3-3 참조).

보육도우미가 돌보는 아동 중 장애아가 없다는 비율이 84.1%이고, 1명의 장애아를 돌본다는 응답은 15.2%, 2명은 0.8%이다. 인천의 경우, 장애아 1명을 돌보는 보육도우미가 33.3%, 2명의 장애아를 돌보는 보육도우미가 2.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는 장애아 2명을 돌보는 보육도우미가 없었으며, 특히 서울은 돌보는 장애아가 전혀 없다(IV-3-4 참조).

〈표 IV-3-3〉 돌보는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49.2	38.6	9.8	2.3	100.0(132)	1.7(0.8)
지역						
서울	42.1	47.4	10.5	-	100.0( 19)	1.7(0.7)
인천	41.7	50.0	8.3	-	100.0( 36)	1.7(0.6)
대구	51.7	34.5	10.3	3.4	100.0( 29)	1.7(0.8)
부산	63.0	25.9	7.4	3.7	100.0( 27)	1.5(0.8)
전주	38.5	30.8	23.1	7.7	100.0( 13)	2.0(1.0)
광주	62.5	37.5	-	-	100.0( 8)	1.4(0.5)
F						1.0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50.0	38.3	10.0	1.7	100.0( 60)	1.6(0.7)
야간도우미	48.6	38.9	9.7	2.8	100.0( 72)	1.7(0.8)
T						0.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표 IV-3-4〉 돌보는 아동 수 - 장애아

단위: %(명)

구분	없음	1명	2명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84.1	15.2	0.8	100.0(132)	0.2(0.4)
지역					
서울	100.0	-	-	100.0( 19)	0.0(0.0)
인천	63.9	33.3	2.8	100.0( 36)	0.4(0.5)
대구	93.1	6.9	-	100.0( 29)	0.1(0.3)
부산	85.2	14.8	-	100.0( 27)	0.2(0.4)
전주	92.3	7.7	-	100.0( 13)	0.1(0.3)
광주	87.5	12.5	-	100.0( 8)	0.1(0.4)
F					3.9**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85.0	13.3	1.7	100.0( 60)	0.2(0.4)
야간도우미	83.3	16.7	-	100.0( 72)	0.2(0.4)
T					0.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 라. 이용 경로

다음 <표 IV-3-5>는 보육도우미 이용자가 한국여성노동자회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을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이다. 주변의 소개가 5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신문 등 광고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28.0%이다. 주변의 소개를 통해 이 사업을 알게 되었다는 비율은 인천이 69.4%로 가장 높았고, 부산도 63.0%로 높다. 반면에 서울과 광주는 지역신문 등의 광고를 통해 이 사업을 접했다는 응답이 각각 42.1%, 50.0%로 다른 지역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울은 인력전문기관의 소개를 받아 보육도우미를 이용하였다는 응답이 15.8%로 평균인 7.6%의 두 배를 넘는다. 인천은 이 비율이 11.1%이다.

<표 IV-3-5> 한국여성노동자회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인지 경로

단위: %(명)

구분	광고	주변 소개	인력전문기관의 소개	기타	계(수)	X <sup>2</sup> (df)
전체	28.0	54.5	7.6	9.8	100.0(132)	
지역						
서울	42.1	31.6	15.8	10.5	100.0( 19)	
인천	13.9	69.4	11.1	5.6	100.0( 36)	
대구	37.9	48.3	3.4	10.3	100.0( 29)	na
부산	18.5	63.0	3.7	14.8	100.0( 27)	
전주	30.8	53.8	7.7	7.7	100.0( 13)	
광주	50.0	37.5	-	12.5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28.3	63.3	-	8.3	100.0( 60)	10.2(3)*
야간도우미	27.8	47.2	13.9	11.1	100.0( 7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 마. 도우미 파견 이전 보육

영아보육도우미 파견 이전에 주로 아이들을 돌본 사람으로는 본인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이나 친인척이 13.3%, 기타 의견이 6.7%로 나타났다. 영아보육도우미 파견 이전에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였거나, 아이들끼리 지내도

록 했다는 응답은 없다. 지역별로 대구와 광주는 본인이 돌보았다는 응답이 100.0%, 인천이 89.5%로 높은 편이다. 반면, 서울과 부산은 가족이나 친인척의 양육 비율이 각각 37.5%, 21.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IV-3-6〉 보육도우미 파견 이전 양육자

단위: %(명)

구분	본인	가족, 친인척	보육시설	아이들끼리	기타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80.0	13.3	-	-	6.7	100.0(60)
서울	50.0	37.5	-	-	12.5	100.0( 8)
인천	89.5	10.5	-	-	-	100.0(19)
대구	100.0	-	-	-	-	100.0(13)
부산	64.3	21.4	-	-	14.3	100.0(14)
전주	75.0	-	-	-	25.0	100.0( 4)
광주	100.0	-	-	-	-	100.0( 2)
<b>야간도우미</b>						
전체	20.8	29.2	18.1	20.8	11.1	100.0(72)
서울	-	18.2	54.5	27.3	-	100.0(11)
인천	23.5	23.5	-	29.4	23.5	100.0(17)
대구	6.3	50.0	12.5	18.8	12.5	100.0(16)
부산	46.2	15.4	30.8	-	7.7	100.0(13)
전주	33.3	33.3	-	22.2	11.1	100.0( 9)
광주	16.7	33.3	16.7	33.3	-	100.0( 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야간보육도우미 파견 이전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이들을 주로 돌보았다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돌보거나 아이들끼리 지냈다는 비율이 각각 20.8%,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18.1%로 나타났다. 야간도우미는 지역별로는 대구에서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이들을 돌보았다는 비율이 50.0%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인데 반해, 본인이 돌보았다는 응답은 6.3%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인천과 전주는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없었으나, 서울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였다는 비율이 54.5%로 응답비율 중 가장 높게 나왔고, 오히려 본인이 돌보았다는 경우가 없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서울의 이러한 특성은 취업모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IV-3-6 참조).

## 바. 이용 이유

<표 IV-3-7>은 보육도우미를 이용하는 이유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먼저 영아보육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영아보육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써 보육시설이 있으나 최근에 늦을 때가 많아서 시설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22.0%, 시설에 보내면 마음이 안 놓여서라는 응답이 1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 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는 광주와 대구가 각각 50.0%, 30.8%로 가장 높았으나, 전주는 이러한 응답자가 없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의 부적절함과 동시에 장애아보육시설이 없어서 야간보육도우미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각각 25.0%로 타 지역에 비하여 높다.

<표 IV-3-7> 보육도우미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없음	장애아보육 시설없음	시설이용 부적절	불안	아이의 질병 및 장애	비용 부담	기타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11.9	10.2	22.0	18.6	15.3	11.9	10.2	100.0(59)
서울	12.5	25.0	25.0	12.5	12.5	12.5	-	100.0( 8)
인천	10.5	15.8	15.8	10.5	31.6	5.3	10.5	100.0(19)
대구	7.7	7.7	30.8	30.8	15.4	-	7.7	100.0(13)
부산	15.4	-	23.1	15.4	-	23.1	23.1	100.0(13)
전주	-	-	-	50.0	-	50.0	-	100.0( 4)
광주	50.0	-	50.0	-	-	-	-	100.0( 2)
<b>야간도우미</b>								
전체	20.0	28.6	10.0	20.0	10.0	11.4	-	100.0(70)
서울	9.1	36.4	18.2	18.2	-	18.2	-	100.0(11)
인천	29.4	23.5	17.6	17.6	5.9	5.9	-	100.0(17)
대구	33.3	26.7	-	6.7	13.3	20.0	-	100.0(15)
부산	16.7	25.0	8.3	33.3	16.7	-	-	100.0(12)
전주	-	22.2	11.1	33.3	22.2	11.1	-	100.0( 9)
광주	16.7	50.0	-	16.7	-	16.7	-	100.0( 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아동이 유아나 초등학생인 경우 보육시설의 야간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

보육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근에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고, 야간에 시설에 두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라는 비율이 각각 20.0% 순이다. 광주의 경우 질병과 장애의 필요에 의해 야간보육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전주가 22.2%로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비율을 보였다. 반면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다는 비율이 대구에서 33.3%로 타 지역에 비하여 비율이 높고, 보육시설에 맡기기 불안하다는 대답이 부산과 전주에서 33.3%로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높다.

### 사. 비용에 대한 의견

현재 보육도우미는 무료로 제공된다. 본 조사에서는 도우미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도우미 이용 비용 중 일부분을 부모가 소득별로 차등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응답이 69.5%로 30.5%인 찬성비율보다 약 2배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주는 반대비율이 91.7%로 매우 높고, 서울이 52.6%로 가장 낮다.

이용 중인 도우미의 유형별로 보면, 영아도우미 이용 부모와 야간도우미 이용 부모 모두 보육도우미 비용의 차등 부담에 관한 반대 의견이 각각 70.0%, 69.0%로 차이가 없다.

〈표 IV-3-8〉 보육 도우미 비용 부모 차등 부담

단위: %(명)

구분	의견				찬성시 부담 비율		
	찬성	반대	계(수)	$\chi^2(df)$	부담비율	표준편차	(수)
전체	30.5	69.5	100.0(131)		18.2	12.9	(39)
지역							
서울	47.4	52.6	100.0( 19)	5.5(5)	17.8	10.6	( 9)
인천	30.6	69.4	100.0( 36)		11.0	8.3	(11)
대구	31.0	69.0	100.0( 29)		17.8	13.0	( 9)
부산	29.6	70.4	100.0( 27)		24.3	15.1	( 7)
전주	8.3	91.7	100.0( 12)		20.0	-	( 1)
광주	25.0	75.0	100.0( 8)		40.0	14.1	( 2)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30.0	70.0	100.0( 60)	0.0(1)	20.3	13.6	(18)
야간도우미	31.0	69.0	100.0( 71)		16.4	12.4	(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다음은 부모가 소득별로 보육도우미 비용을 차등 부담 하는 데에 찬성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비용 부담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평균적으로 18.2%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광주가 40.0%로 가장 높고 부산과 전주가 각각 24.3%, 20.0%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치의 비용 부담 의사를 보인다(표 IV-3-8 참조).

이용 도우미의 유형에 따르면, 보육도우미 비용 부담 찬성 시, 영아도우미 이용 부모는 20.3%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야간도우미 이용 부모는 16.4%로 평균에 비하여 약간 낮은 수준에서 부담할 용의를 보인다.

#### 4. 보육도우미가 미치는 영향 및 만족도

제 4절에서는 보육도우미 조사와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도우미가 아동 및 이용 부모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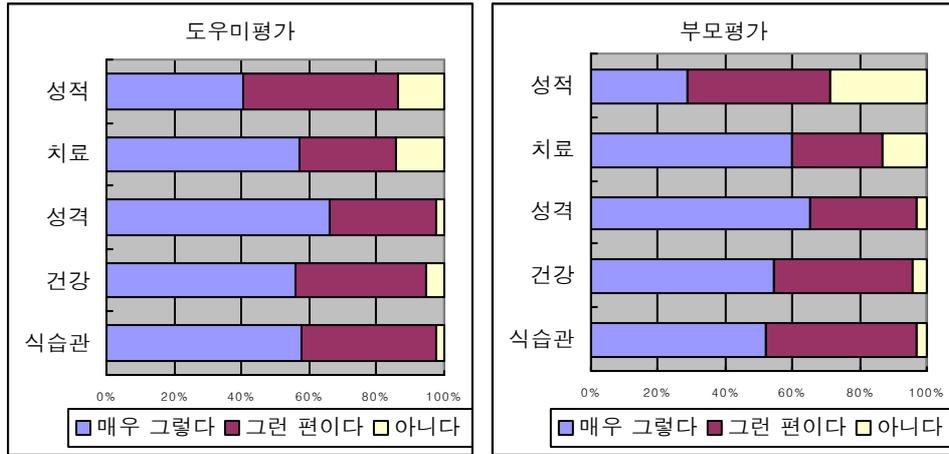
<표 IV-4-1>은 보육도우미로 파견된 이후 돌보는 아동의 변화에 대한 도우미와 부모의 응답 결과이다. 식습관, 건강, 성격 밝아짐에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장애아동 치료 및 초등학생 성적 개선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타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도우미와 부모의 응답은 대체로 유사한데 성적 향상여부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4-1>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 변화 총괄

단위: %(명)

구분	도우미평가				부모평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식습관	57.8	39.8	2.4	100.0(127)	51.9	45.0	3.1	100.0(129)
건강	56.3	38.3	5.5	100.0(128)	54.3	41.9	3.9	100.0(129)
성격 밝아짐	65.9	31.8	2.4	100.0(129)	65.1	31.8	3.1	100.0(129)
치료	57.1	28.6	14.3	100.0(21)	60.0	26.7	13.3	100.0(30)
성적 향상	40.5	45.9	13.5	100.0(37)	28.6	42.9	28.6	100.0(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그림 IV-4-1]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 변화 총괄

### 1) 식습관

먼저 아동 식습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4-2>는 보육도우미로 파견된 이후 돌보는 아동의 식습관 변화에 대한 도우미와 부모의 응답 결과이다.

먼저 도우미 응답결과를 보면 매우 잘 먹게 되었다는 응답이 57.8%, 그런 편이라는 응답도 39.8%로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났다. 부산과 대구, 인천은 잘 먹게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4.0%, 3.4%, 2.9%이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100.0%로 높았다. 도우미유형에 따르면, 영아도우미와 야간도우미 모두 아동이 매우 잘 먹게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59.6%, 55.9%로 가장 높고, 그런 편이라는 응답은 36.8%, 42.6%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매우 높다.

다음은 보육도우미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평가한 결과는 영아보육도우미가 파견된 이후로 아이가 매우 건강해졌다는 비율이 50.0%, 건강해진 편이라는 응답이 46.6%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 특히 광주와 전주는 모든 부모가 아이가 매우 건강해졌다고 대답했다. 야간보육도우미가 파견된 이후 아이가 매우 건강해졌다는 비율은 53.5%, 그런 편이라는 응답은 43.7%로 긍정적인 변화가 전체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대구, 전주, 광주는 긍정적인 응답이 100.0%이다. 부산의 경우 아이가 건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8.3%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수치는 미미하다.

〈표 IV-4-2〉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 - 잘 먹게 됨

단위: %(명)

구분	도우미평가				부모평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전체	57.8	39.8	2.4	100.0(127)	51.9	45.0	3.1	100.0(129)
지역								
서울	68.4	31.6	-	100.0( 19)	73.7	26.3	-	100.0( 19)
인천	55.9	41.2	2.9	100.0( 34)	44.4	50.0	5.6	100.0( 36)
대구	44.8	51.7	3.4	100.0( 29)	48.3	51.7	-	100.0( 29)
부산	44.0	52.0	4.0	100.0( 25)	41.7	50.0	8.3	100.0( 24)
전주	84.6	15.4	-	100.0( 13)	76.9	23.1	-	100.0( 13)
광주	87.5	12.5	-	100.0( 8)	37.5	62.5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59.6	36.8	3.6	100.0( 57)	50.0	46.6	3.4	100.0( 58)
야간도우미	55.9	42.6	1.5	100.0( 68)	53.5	43.7	2.8	100.0( 7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 2) 건강

건강 변화에 대하여 도우미평가를 살펴보면, 보육도우미 파견 이후 아동이 매우 건강해졌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았고, 그런 편이라는 응답도 38.3%로 대부분 아동이 건강해졌다고 응답했다. 보육도우미 유형에 따르면, 매우 건강해졌다는 응답이 종일제 영아도우미 59.7%, 야간도우미 52.9%, 그런 편이 각각 36.8%, 39.7%로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보육도우미를 이용한 부모의 응답 결과를 보면 전체 비율은 도우미 평가와 유사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고 광주가 가장 평가가 낮다. 서울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81.8%로 가장 높고 인천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100.0%를 보인다. 유형별로는 영아보육도우미가 파견된 이후 아이가 매우 잘 먹게 되었다는 응답이 53.4%,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41.4%로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94.8%로 나타났다. 야간보육도우미를 고용한 이후로 아이가 매우 잘 먹게 되었다는 응답은 54.9%, 그런 편이라는 비율은 42.3%로 역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

〈표 IV-4-3〉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 - 건강해짐

단위: %(명)

구분	도우미평가				부모평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전체	56.3	38.3	5.5	100.0(128)	54.3	41.9	3.9	100.0(129)
지역								
서울	63.2	31.6	5.3	100.0( 19)	78.9	21.1	-	100.0( 19)
인천	58.8	29.4	2.9	100.0( 34)	44.4	47.2	8.3	100.0( 36)
대구	41.4	55.2	3.4	100.0( 29)	58.6	41.4	-	100.0( 29)
부산	50.0	46.2	3.8	100.0( 26)	41.7	50.0	8.3	100.0( 24)
전주	83.3	16.7	-	100.0( 12)	69.2	30.8	-	100.0( 13)
광주	62.5	37.5	-	100.0( 8)	37.5	62.5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59.7	36.8	3.5	100.0( 57)	53.4	41.4	5.2	100.0( 58)
야간도우미	52.9	39.7	7.4	100.0( 68)	54.9	42.3	2.8	100.0( 7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 3) 성격

도우미 응답에 따르면, 보육도우미로 파견된 이후 돌보는 아동이 매우 잘 웃게 밝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65.9%로 가장 높았고 그런 편이라는 응답도 31.8%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3%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였다. 도우미유형별로 보면, 영아도우미는 잘 모르겠다는 1.8%를 제외하고, 매우 그렇다 71.9%, 그런 편이다 26.3%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대부분이며, 야간도우미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총 97.2%로 매우 높다.

부모의 응답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의견으로 도우미 평가와 유사하다. 아동의 성격이 매우 밝아졌다는 비율은 89.5%로 서울이 가장 높고, 인천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응답비율이 100.0%이다. 유형별로는 영아보육도우미가 파견된 이후 아이가 매우 잘 웃고 밝아졌다는 응답이 63.8%, 야간보육도우미의 파견 이후 아동이 잘 웃고 매우 밝아졌다는 의견이 66.2%로 유형별 차이는 거의 없다.

〈표 IV-4-4〉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 - 성격 밝아짐

단위: %(명)

구분	도우미평가				부모평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전체	65.9	31.8	2.4	100.0(129)	65.1	31.8	3.1	100.0(129)
지역								
서울	73.7	21.1	5.3	100.0( 19)	89.5	10.5		100.0( 19)
인천	61.8	32.4	5.8	100.0( 34)	55.6	38.9	5.6	100.0( 36)
대구	62.1	37.9	-	100.0( 29)	69.0	31.0		100.0( 29)
부산	65.4	34.6	-	100.0( 26)	50.0	41.7	8.3	100.0( 24)
전주	84.6	15.4	-	100.0( 13)	76.9	23.1		100.0( 13)
광주	50.0	50.0	-	100.0( 8)	62.5	37.5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71.9	26.3	1.8	100.0( 57)	63.8	32.8	3.4	100.0( 58)
야간도우미	62.4	34.8	2.8	100.0( 69)	66.2	31.0	2.8	100.0( 7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 4) 장애아 치료

보육도우미의 응답을 보면, 장애아동의 경우 보육도우미가 파견된 이후 지속적인 치료 가능 여부에 관한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7.1%이고, 그런 편이라는 응답도 28.6%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00.0%로, 전주와 광주는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100.0%를 보이며 높은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하지만 부산은 잘 모르겠다/아니라는 의견이 33.3%, 인천은 15.4%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수치가 다소 높다. 도우미의 유형에 따르면, 영아도우미의 경우 매우 그렇다 60.0%, 그런 편이다 40.0%로 지속적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응답이 100.0%로 매우 높은 반면, 야간도우미는 매우 그렇다 54.5%, 그런 편이다 18.2%로 평균에 비하여 긍정적 응답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표 IV-4-5 참조).

도우미 이용 부모의 응답 결과도 총괄적으로는 유사하다. 그러나 내용은 좀 차이를 보여서 영아보육도우미 이용 아동 부모의 평가가 영아도우미 평가보다 높고, 야간도우미는 그 반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 영아보육도우미 파견 이후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75.0%,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12.5%이다. 야간보육도

우미 파견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게 된 편이라는 비율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42.9%로,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14.3%에 비해 높다.

〈표 IV-4-5〉 (장애)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 - 지속적 치료 가능

단위: %(명)

구분	도우미평가				부모평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전체	57.1	28.6	14.3	100.0(21)	60.0	26.7	13.3	100.0(30)
지역								
서울	-	-	-	-	-	-	-	-
인천	53.8	30.8	15.4	100.0(13)	62.5	31.3	6.3	100.0(16)
대구	100.0	-	-	100.0( 3)	50.0	16.7	33.3	100.0( 6)
부산	66.7	-	33.3	100.0( 3)	60.0	20.0	20.0	100.0( 5)
전주	-	100.0	-	100.0( 1)	100.0	-	-	100.0( 2)
광주	-	100.0	-	100.0( 1)	-	100.0	-	100.0( 1)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60.0	40.0		100.0(10)	75.0	12.5	12.5	100.0(16)
야간도우미	54.5	18.2	27.3	100.0(11)	42.9	42.9	14.3	100.0(1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 5) 성적 향상

보육도우미가 돌보는 아동이 초등학생인 경우 학습능력 향상 여부에 관한 도우미 조사 결과를 보면, 성적이 매우 향상 되었다는 응답이 40.5%, 그런 편이다가 45.9%로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이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서울과 전주가 66.7%로 가장 높고, 그런 편이라는 응답은 광주가 100.0%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구는 긍정적인 응답이 80.0%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아니라는 응답 또한 20.0%로 타 지역에 비하여 다소 높다(표 IV-4-6 참조).

부모의 응답은 도우미의 응답보다 부정적이다. 초등학생 부모의 경우 야간보육도우미의 파견 이후에 성적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28.6%, 그런 편이라는 비율이 42.9%로 아니라는 응답이 도우미 응답보다 15.1% 포인트가 높다.

〈표 IV-4-6〉 (초등)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 - 성적 향상

단위: %(명)

구분	도우미평가				부모평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전체	40.5	45.9	13.5	100.0(37)	28.6	42.9	28.6	100.0(35)
서울	66.7	33.3	-	100.0( 3)	-	50.0	50.0	100.0( 4)
인천	45.5	36.4	18.2	100.0(11)	18.2	27.3	54.5	100.0(11)
대구	30.0	50.0	20.0	100.0(10)	42.9	42.9	14.3	100.0( 7)
부산	25.0	75.0	-	100.0( 4)	25.0	50.0	25.0	100.0( 4)
전주	66.7	16.7	16.7	100.0( 6)	66.7	33.3	-	100.0( 6)
광주	-	100.0	-	100.0( 3)	-	100.0	-	100.0( 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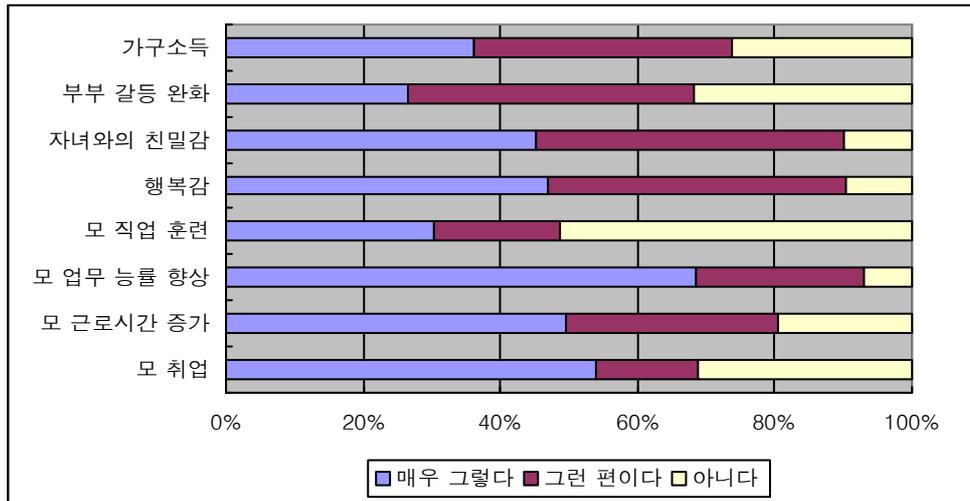
#### 나. 가정과 부모에 미친 영향

〈표 IV-4-7〉와 〈그림 IV-4-2〉는 보육도우미로 파견된 이후 가정 및 부모 변화에 대한 부모의 응답 결과이다. 모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업무능률 향상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다음 취업, 근로시간 증가이며 직업 훈련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은 낮다. 다음으로 부모와 가정에 미친 영향은 행복감 증대, 자녀와의 친밀감 증대, 소득 증대의 순으로 그렇다는 비율이 높고 부부갈등 완화가 가장 그렇다는 비율이 낮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비율은 높다.

〈표 IV-4-7〉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총괄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모 취업	53.9	14.8	31.3	100.0(115)
모 근로시간 증가	49.6	30.9	19.5	100.0(123)
모 업무 능률 향상	68.5	24.4	7.1	100.0(127)
모 직업 훈련	30.4	18.3	51.3	100.0(115)
행복감	46.8	43.7	9.5	100.0(126)
자녀와의 친밀감	45.1	45.1	9.8	100.0(122)
부부 갈등 완화	26.7	41.7	31.7	100.0(122)
가구소득	36.1	37.7	26.2	100.0(122)



[그림 IV-4-2]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총괄

1) 모의 취업 및 근로

<표 IV-4-8>은 보육도우미 파견이 모의 취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IV-4-8>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모(母)의 취업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53.9	14.8	31.3	100.0(115)	
지역					
서울	21.1	10.5	68.4	100.0( 19)	
인천	50.0	13.9	36.1	100.0( 36)	
대구	67.9	14.3	17.9	100.0( 28)	na
부산	57.1	21.4	21.4	100.0( 14)	
전주	70.0	30.0	-	100.0( 10)	
광주	75.0	-	25.0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64.2	15.1	20.8	100.0( 53)	5.4(2)
야간도우미	45.2	14.5	40.3	100.0( 6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전체적으로 31.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긍정적 응답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이외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다.

그렇다는 응답은 영아도우미가 높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아보육도우미 파견 이후, 아동의 엄마가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매우 그러함이 64.2%,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15.1%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엄마의 취업상태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의견도 20.8%로, 특히 서울과 인천의 경우 각각 37.5%, 31.6%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야간보육도우미는 매우 그러함이 45.2%, 그런 편이 14.5%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영아보육도우미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다음 <표 IV-4-9>는 일하는 시간의 변화이다. 영아와 야간도우미 모두 유의하게 모의 근무시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이외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다.

<표 IV-4-9>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모(母)의 근무시간증가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49.6	30.9	19.5	100.0(123)	
지역					
서울	31.6	47.4	21.1	100.0( 19)	
인천	44.4	22.2	33.3	100.0( 36)	
대구	51.7	37.9	10.3	100.0( 29)	na
부산	36.8	42.1	21.1	100.0( 19)	
전주	83.3	16.7	-	100.0( 12)	
광주	87.5	-	12.5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50.9	27.3	21.8	100.0( 55)	0.7(2)
야간도우미	48.5	33.8	17.6	100.0( 68)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영아보육도우미가 파견된 이후 엄마의 일하는 시간이 증가되었다는 비율은 매우 그렇다가 50.9%, 그런 편이다가 27.3%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야간보육도우미 고용 이후 엄마의 일하는 시간이 증가되었다는 비율이 33.8%,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8.5%로 높은 편이다.

<표 IV-4-10>은 업무 능력 향상에 보육도우미가 도움을 주었는가를 나타낸다. 대다수인 약 9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인천에서 부정적인 평가 비

율이 높고, 야간 도우미 이용 부모의 평가가 더 높다.

야간보육도우미 파견 이후 안심하고 일 할 수 있어서 부모의 업무능률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23.2%,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72.5%로 영아보육도우미보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

〈표 IV-4-10〉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업무능력향상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전체	68.5	24.4	7.1	100.0(127)
지역				
서울	68.4	31.6	-	100.0( 19)
인천	58.3	19.4	22.2	100.0( 36)
대구	75.9	24.1	-	100.0( 29)
부산	56.5	39.1	4.3	100.0( 23)
전주	91.7	8.3	-	100.0( 10)
광주	87.5	12.5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63.8	25.9	10.3	100.0( 58)
야간도우미	72.5	23.2	4.3	100.0( 6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직업 훈련에 대해서는 보육도우미가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84.2%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표 IV-4-11 참조).

도우미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영아보육도우미의 파견으로 부모가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냐는 물음에는 매우 그렇다가 30.8%, 받을 수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17.3%로 긍정적인 응답이 48.1%인데 비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51.9%를 나타냈다. 야간보육도우미가 파견된 이후 부모가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0.2%,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1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11〉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교육·직업훈련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30.4	18.3	51.3	100.0(115)	
지역					
서울	15.8	-	84.2	100.0( 19)	
인천	33.3	22.2	44.4	100.0( 36)	
대구	13.8	27.6	58.6	100.0( 29)	na
부산	35.7	21.4	42.9	100.0( 23)	
전주	88.9	-	11.1	100.0( 9)	
광주	37.5	25.0	37.5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30.8	17.3	51.9	100.0( 52)	0.1(2)
야간도우미	30.2	19.0	50.8	100.0( 63)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 2) 모의 행복감 및 자녀와의 친밀감

〈표 IV-4-12〉는 보육도우미가 파견된 이후 엄마의 행복감 증진 정도에 관한 결과이다.

〈표 IV-4-12〉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행복감 증진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46.8	43.7	9.5	100.0(126)	
지역					
서울	26.3	42.1	31.6	100.0( 19)	
인천	55.6	44.4	-	100.0( 36)	
대구	37.9	48.3	13.8	100.0( 29)	na
부산	54.5	40.9	4.5	100.0( 22)	
전주	75.0	25.0	-	100.0( 12)	
광주	25.0	62.5	12.5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43.9	49.1	7.0	100.0( 57)	1.6(2)
야간도우미	49.3	39.1	11.6	100.0( 69)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도우미가 파견된 이후로 엄마가 사는 것이 즐거워졌고 행복감이 매우 증가되었다가 46.8%, 그런 편이다가 43.7%이고 9.5%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31.6%로 타 지역이 긍정적인 응답만을 한 것에 비해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다. 도우미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IV-4-13>은 보육도우미의 고용 이후 아이와 엄마의 친밀감 증대에 관한 결과이다. 영아보육도우미 파견 이후로 아이와 엄마의 친밀감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45.1%, 그런 편이다가 45.1%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와 전주가 친밀감이 향상되었다는 비율이 각각 100.0%이다. 그러나 대구는 17.2%가 아니다/잘 모르겠다는 응답으로 지역 간 차이를 보인다.

영아도우미가 야간도우미에 비하여 매우 증진되었다는 비율과 아니라는 비율이 모두 높다.

<표 IV-4-13>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아이와 엄마의 친밀감향상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45.1	45.1	9.8	100.0(122)	
지역					
서울	26.3	63.2	10.5	100.0( 19)	na
인천	52.8	38.9	8.3	100.0( 36)	
대구	31.0	51.7	17.2	100.0( 29)	
부산	55.0	35.0	10.0	100.0( 20)	
전주	70.0	30.0	-	100.0( 10)	
광주	50.0	50.0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46.4	39.3	14.3	100.0( 56)	2.9(2)
야간도우미	43.9	50.0	6.1	100.0( 66)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 3) 가족 갈등

보육도우미를 고용한 이후 부부 등 가족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신뢰가 생겼다는 응답이 41.7%,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6.8%로 68.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인 응답비율은 전주가 가장 높고, 서울은 가족 간의 갈등이 완화되거나

신뢰가 생기는 데에 영향을 주지 못했거나 모른다는 의견이 52.6%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통계적 유의성을 없으나 영아도우미가 야간보육도우미 보다 가족 간의 갈등 완화와 신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다.

〈표 IV-4-14〉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부부간 갈등완화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26.7	41.7	31.7	100.0(122)	
지역					
서울	15.8	31.6	52.6	100.0( 19)	
인천	27.8	36.1	36.1	100.0( 36)	
대구	17.2	55.2	27.6	100.0( 29)	na
부산	36.8	47.4	15.8	100.0( 19)	
전주	55.6	33.3	11.1	100.0( 9)	
광주	25.0	37.5	37.5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30.4	48.2	21.4	100.0( 56)	5.1(2)
야간도우미	23.4	35.9	40.6	100.0( 64)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 4) 가구 소득

다음 <표 IV-4-15>는 보육도우미 고용 이후, 가구 소득의 증가 여부에 관한 결과이다. 보육도우미의 파견 이후 가구 소득이 매우 증가되었다는 비율이 36.1%, 증가한 편이라는 응답이 37.7%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가구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거나 모른다는 비율은 26.2%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에서 아니라는 비율이 낮다. 영아와 야간 보육도우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IV-4-15〉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가구 소득 증가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X <sup>2</sup> (df)
전체	36.1	37.7	26.2	100.0(122)	
지역					
서울	10.5	52.6	36.8	100.0( 19)	
인천	33.3	36.1	30.6	100.0( 36)	
대구	37.9	41.4	20.7	100.0( 29)	na
부산	36.8	36.8	26.3	100.0( 19)	
전주	81.8	18.2	-	100.0( 11)	
광주	37.5	25.0	37.5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36.4	40.0	23.6	100.0( 55)	0.4(2)
야간도우미	35.8	35.8	28.4	100.0( 67)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다. 이용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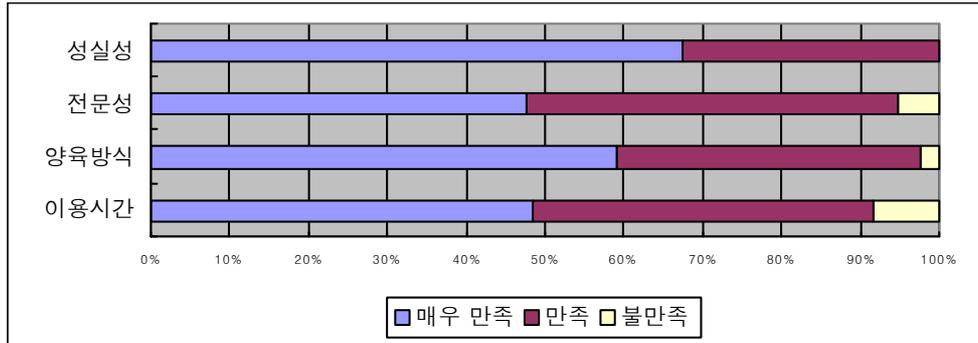
다음은 보육도우미 이용에 따른 부모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이용시간, 도우미의 자녀 양육방식, 도우미의 전문성, 도우미의 성실성의 4가지 문항이다. 조사결과, <표 IV-4-16>과 <그림 IV-4-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족도가 대체로 높다. 도우미의 성실성에 대해서는 모두 만족 한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이 보육 도우미의 전문성과 이용시간이다.

〈표 IV-4-16〉 보육 도우미 만족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계(수)	X <sup>2</sup> (df)
이용시간	48.5	43.2	8.3	100.0(132)	na
양육방식	59.1	38.6	2.3	100.0(132)	na
전문성	47.7	47.0	5.3	100.0(132)	na
성실성	67.4	32.6	-	100.0(132)	11.0(5)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그림 IV-4-3] 보육도우미 만족 여부

### 1) 이용기간

먼저 보육도우미의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만족이 48.5%, 만족이 43.2%, 불만족이 8.3%로 나타나 대부분 이용시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100.0%로 높게 나타났고 전주와 인천에서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각각 15.4%, 13.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표 IV-4-17> 보육 도우미 이용시간 만족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계(수)	X <sup>2</sup> (df)
전체	48.5	43.2	8.3	100.0(132)	
지역					
서울	42.1	47.4	10.5	100.0( 19)	
인천	41.7	44.4	13.9	100.0( 36)	
대구	58.6	37.9	3.4	100.0( 29)	na
부산	37.0	59.3	3.7	100.0( 27)	
전주	69.2	15.4	15.4	100.0( 13)	
광주	62.5	37.5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63.3	33.3	3.3	100.0( 60)	10.8(2)**
야간도우미	36.1	51.4	12.5	100.0( 7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도우미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아도우미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63.3%, 만족이 33.3%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고, 야간도우미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총 87.5%로 영아도우미에 비하여 낮다. 보육도우미의 이용시간에 대하여 만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도우미의 이용시간에 대한 불만족은 평균인 8.3%보다 약간 높은 12.5%로 영아도우미의 3.3%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2) 양육방식

<표 IV-4-18>은 보육도우미의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만족 여부가 나타나 있다.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59.1%, 만족한다는 비율도 38.6%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에서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각각 5.3%, 5.6%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100.0%로 높다.

도우미의 유형에 따르면, 영아도우미의 양육방식에 대해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은 65.0%, 만족은 33.3%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대부분이다. 야간도우미의 경우 매우 만족이 54.2%, 만족이 43.1%로 수치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아도우미와 같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매우 높다.

<표 IV-4-18> 보육 도우미 양육방식 만족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계(수)
전체	59.1	38.6	2.3	100.0(132)
지역				
서울	63.2	31.6	5.3	100.0( 19)
인천	47.2	47.2	5.6	100.0( 36)
대구	65.5	34.5	-	100.0( 29)
부산	44.4	55.6	-	100.0( 27)
전주	100.0	-	-	100.0( 13)
광주	62.5	37.5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65.0	33.3	1.7	100.0( 60)
야간도우미	54.2	43.1	2.8	100.0( 7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 3) 전문성

보육도우미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만족이 47.7%, 만족이 47.0%로 역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천과 부산에서 불만족 비율이 각각 11.1%, 7.4%를 보인다.

도우미 유형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영아도우미는 매우 만족이 51.7%, 만족 43.3%, 야간도우미는 매우 만족 44.4%, 만족 50.0%로 만족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두 유형 모두 불만족 하는 비율이 각각 5.0%, 5.6%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 대부분의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들이 보육도우미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4-19〉 보육 도우미 전문성 만족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계(수)
전체	47.7	47.0	5.3	100.0(132)
지역				
서울	47.4	47.4	5.3	100.0( 19)
인천	33.3	55.6	11.1	100.0( 36)
대구	55.2	44.8	-	100.0( 29)
부산	40.7	51.9	7.4	100.0( 27)
전주	84.6	15.4	-	100.0( 13)
광주	50.0	50.0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51.7	43.3	5.0	100.0( 60)
야간도우미	44.4	50.0	5.6	100.0( 7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 4) 성실성

보육도우미의 성실성에 대하여 매우 만족 67.4%, 만족 32.6%로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없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00.0%가 매우 만족이고 부산은 매우 만족, 만족이 반반이다. 보육도우미 유형에 따라서는 영아도우미가 매우 만족 71.7%로 야간도우미 63.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표 IV-4-20〉 보육 도우미 성실성 만족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계(수)	$\chi^2(df)$
전체	67.4	32.6	-	100.0(132)	
지역					
서울	68.4	31.6	-	100.0( 19)	11.0(5)
인천	61.1	38.9	-	100.0( 36)	
대구	75.9	24.1	-	100.0( 29)	
부산	51.9	48.1	-	100.0( 27)	
전주	100.0	-	-	100.0( 13)	
광주	62.5	37.5	-	100.0( 8)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71.7	28.3	-	100.0( 60)	0.9(1)
야간도우미	63.9	36.1	-	100.0( 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 5. 정책시사점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육도우미 활동이 도우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보육도우미 보수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92.2%로 높았으나, 도우미 활동 이후 전문 가정보육사로서의 자부심, 일의 즐거움, 행복감 증대, 가정 화목 증대의 4가지 요인이 변화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가정보육사로 자부심이 생겼다는 데에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53.9%가 된다.

둘째, 보육도우미로 파견된 이후 아동과 가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크다. 부모 만족도가 높고, 특히 부모들은 도우미의 성실성을 높이 평가한다. 도우미와 부모는 식습관, 건강, 성격 밝아짐에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장애아동 치료 및 초등학생 성적 개선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다소 있다. 모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업무능률 향상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다음 취업, 근로시간 증가이며 직업 훈련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부모와 가정에 미친 영향은 행복감 증대, 자녀와의 친밀감 증대, 소득 증대의 순으로 그렇다는 비율이 높고 부부갈등 완화가 가장 그렇다는 비율이 낮다.

셋째, 저소득층도 가정내보육 수요가 있고, 보육시설이 부모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였다. 영아보육도우미 이용 이유는 인근에 보육시설

이 있으나 퇴근이 늦을 때가 많아서 이용하기 부적절하다가 22.0%, 시설은 마음이 안 놓여서라는 응답이 18.6%이다. 야간보육도우미 이용 이유로는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근에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고, 야간에 시설에 두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라는 비율이 각각 20.0% 순이다.

## V. 보육도우미 이용 사례

제5장에서는 보육도우미 이용부모 심층면접 결과를 수록하였다. 14명의 보육지원 수혜자들과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여, 보육지원을 받은 어머니들이 경험한 변화와 보다 효과적인 지원 정책에 관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 1. 심층면접 방법

#### 가. 심층면접자 특성

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서울 4명, 대구 3명, 인천 5명, 전주 2명으로 총 14명이었다. 이중 종일제 영아 보육지원을 받는 어머니는 8명, 반일제 방과 후 보육지원을 받는 어머니가 6명이었다. 종일제 보육지원을 받는 어머니 중 3명이 장애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방과 후 지원을 받는 어머니들 중 5명이 이혼/별거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표 V-1-1〉 면접 참여 어머니들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면접 대상	나이	이용 중인 서비스	직업 (전일, 시간제)	자녀		비고
				수	(나이)	
서울 1	43세	방과후 보육지원	부동산중계 (전일제)	2	15, 9세	
서울 2	38세	종일제 영유아보육지원	방문교사 (전일제)	1	2세	
서울 3	22세	종일제 영유아보육지원	아르바이트 (시간제)	1	2세	아빠 군복무
서울 4	38세	방과후 보육지원	장애인보조 (전일제)	2	12, 7세	
대구 1	29세	종일제 영유아보육지원	재봉 (시간제)	2	15개월(쌍둥이)	
대구 2	32세	종일제 영유아보육지원	보험설계 (전일제)	3	9, 6, 2세	장애아가족
대구 3	37세	방과후 보육지원	휴폐선강사 (시간제)	2	9, 7세	이혼가족
인천 1	36세	종일제 영유아보육지원	방문교사 (전일제)	1	8세	장애아가족
인천 2	29세	종일제 영유아보육지원	사무직 (전일제)	2	2세, 5개월	장애아가족
인천 3	35세	방과후 보육지원	사무직 (전일제)	3	8, 6, 1세	
인천 4	39세	종일제 영유아보육지원	통신원 (전일제)	2	6, 3세	이혼가족
인천 5	42세	방과후 보육지원	간병 (전일제)	1	7세	이혼가족
전주 1	37세	방과후 보육지원	제과점보조 (시간제)	2	7, 5세	이혼가정
전주 2	33세	종일제 영유아보육지원	사무직 (전일제)	1	6개월	

지역에 따라 보육 지원을 실시한 시기에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들이 보육 지원을 경험한 기간은 2개월부터 1년 5개월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모두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중 10명이 전일제로, 4명이 시간제로 취업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표 V-1-1>에 제공되어 있다.

##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에 사용된 주요 정보는 약 1~2시간에 걸친 개인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면접 외에도 다양한 홍보자료 및 면접 현장에서 작성된 현장 기록을 통하여 보육지원정책과 어머니들의 전체적인 생활 상황에 관한 파악이 이루어졌다. 면접은 두 명의 훈련받은 면접자들이 2007년 6월에 실시하였으며,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사무실에서 실시되었다.

면접 내용은 크게 어머니들의 가족, 직장 및 결혼 생활에 관한 질문들, 보육 지원을 받기 전 자녀양육 및 가정생활에 관한 질문들, 보육을 받은 후 자녀양육, 가정생활 및 직장 생활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보육지원정책에 관한 제언에 관한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면접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으며, 분석을 위하여 두 명의 연구자가 녹음된 면접 내용을 전사하였다. 전사 과정에서 어머니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이 사용되었다.

면접자료 분석 과정에서 앞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비교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는 삼각측정(triangulation)이 실시되었다. 삼각측정은 질적연구 자료를 분석할 때 면접, 관찰, 문서 등의 다양한 자료를 함께 수집하거나, 다양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개념을 도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삼각측정을 위하여 면접 내용을 현장 기록 및 보육지원정책에 관한 자료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면접을 실시한 연구자간에 면접 상황 및 전체적인 의견을 나눔으로써 면접내용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 연구법(grounded theory)에서 사용되는 세단계의 코딩 방법을 기초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개방코딩(open coding)단계에서는 면접 자료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가지 개념들과 현상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 단계에서 분류된 개념의 예로 “보육 지원 후 아동의 정서적 안정,” “보육지원 후 나타난 간접

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개방코딩을 거쳐 여러 개념들이 찾아진 자료는 축코딩(axial coding) 단계에서 재분석 되었다. 축코딩은 개방코딩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개념화된 내용들을 다시 고려하고, 각 개념들을 서로 비교하고, 범주 및 하위범주와 연관 시켜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은혜·이미리·박소연, 2006).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 단계에서 분류된 개념과 현상들을 보육지원 서비스의 종류, 거주 지역, 아동의 연령별로 비교하였다. 또한, 면접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장애아 가정, 이혼 가정이라는 환경적 맥락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접 자료는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단계를 거쳐 분석되었다. 선택코딩 단계는 면접 자료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패턴과 흐름을 찾아내는 단계로, 본 연구의 경우 보육지원정책 전과 후의 변화 및 앞으로 정책이 나아가갈 방향에 관한 패턴을 파악하는 작업이 실시되었다.

## 2. 심층면접 결과

심층면접 결과는

### 가. 기존 지원 및 정보의 부족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실제 본인이 제공 할 수 있는 자녀양육 시간이나 질에 상관없이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결혼 생활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녀양육”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전일제로 취업중인 38세한 어머니는 결혼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애기가 생겨가지고……. 가정이 들만 있을 때는 많이 싸우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가정이 이뤄져가고 가정을 위해서 미래 준비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요. 애기가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애기 보면서 뭐랄까, 마음이 흐뭇해져요. (서울2, 38세)

양육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자원 및 정보의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에 참여한 14명의 어머니들 중 기존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5명에 불과했다. 어머니

들이 이용한 기존의 서비스는 주로 어린이집, 복지관 등이었으며 자녀의 나이가 어린 영유아나 장애아의 경우 양육지원 서비스를 더욱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 자녀를 둔 36세의 한 어머니는 양육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장애인은 있지만 장애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보육 기관)도 찾기 힘들더라고요. 지금 여성부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 지원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중증장애 아이들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지원 자체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천 1, 36세)

또한, 장애아를 셋째 자녀로 둔 32세의 어머니는 셋째 자녀를 위한 기존에 마련된 지원을 받거나 지원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동사무소고 뭐고 엄청 쫓아 다녔어요. 동사무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이래저래 혹시 셋째 갖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다니면서 또 여쭙보고. 근데,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은 촌(시골)에.. 그러니까 대구를 벗어나서 좀 촌이다 싶은데.. 그전에는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름 값이라도 좀 받던지, 아니면 셋째 낳고나서 일 년간 분유 값이라도 나온다면지, 한 달에 얼마씩...십만원, 이십만 원 씩 나온다고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대구 안에서는 제가 받으셨다고 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 2, 32세)

시부모, 친정 부모 및 형제들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도(사례수=4), 이들의 건강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립 청소년 회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1명의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어머니들은 현재 이용 중인 보육지원정책이 처음 경험하는 공공 서비스라고 답했다. 현재의 보육지원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도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 이상의 어머니들이 길에 붙어 있는 포스터나 현수막을 보고 우연히 서비스를 알게 되었으며, 나머지 어머니들도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친지나 친척을 통해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본 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우 동사무소나 공공 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알게 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37세의 어머니는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정보전달 서비스 부재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이번에도 제가 길가다가 포스터를 봤으니까 안 건데……. 별로 누가 가서 알려주지도 않고……. 하다못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복지사가 무조건 그랬잖아요. "어머니 종일반 맡기고 일하세요. 돈 버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한번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애들이 크면 그런 걸 안 받아도 엄마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주 1, 37세)

## 나. 보육지원의 효과

### 1) 기본적인 기대의 충족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기존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용 중인 보육지원의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처음 보육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당시에 대한 어머니들의 기대 효과는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 자신들의 부재시 자녀들과 함께 있어주면서 자녀들이 안전하도록 돌봐주는 수준을 기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기대는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방과 후 보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43세의 어머니는 기존의 방과 후 보육 서비스의 부재 속에서 현재 이용 중인 보육지원 서비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매우 크다고 보고하였다.

아이의 안전이요. 선생님이 너무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냥 같이 계셔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늦으니까.. 늦을 때에 식사... 집에 혼자 있으니까 밥하고 안전만...뭐 나라에서,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하네 마네 해도 그거 다 말 뿐인 것이고, 뭐 자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예요 그게. 그럼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거의 저학년일 경우에 방과 후 시간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을 하는 거예요. (서울 1, 43세)

이러한 “안전,” “정서적 안정감” 등의 기본적인 효과 외에도 어머니들이 초기에 기대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아동 양육 및 교육 환경에 있어서의 직접적 효과와 가족 체계 전체로 확장되는 간접적인 효과들이 보고되었다. 보육지원 서비스의 직접적인 효과란 보육지원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어머니와 아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간접적 효과란 어머니와 아이가 변화

함으로써 가족 내의 이차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 2) 양육 및 교육 환경에의 직접 효과

보육지원 서비스가 양육 및 교육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크게 어머니들이 경험한 효과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면접에 참여한 많은 어머니들은 보육지원 서비스를 받은 후 자녀들에게 나타난 효과로 “생활의 기본 규칙 및 예절 습득”을 보고하였다(사례수=6).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는 특히 보육지원을 받기 전에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들과 거의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이혼모의 자녀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사례수=4). 예를 들어, 학령기 자녀 두 명에 대한 방과 후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37세의 이혼모는 서비스의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죠. 딱딱 규칙적인 게 있고요. 아예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보육사)이 자꾸 잔소리도 하고, 어떤 소리든 간에 체크를 하니까 해야 될 거를 하는 거죠. 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챙기고,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숙제라든지 방과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챙겨 주시니까, 그런 면이 좋죠. 무질서 한 게 아니라 질서는 잡혔어요. (대구 3, 37세)

위의 어머니와 같이 방과 후 보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42세의 이혼모 역시 자녀가 보육사를 통해 예절을 배운다고 설명하였다.

제가 참 좋으신 보육선생님을 만났어요. 행운이죠. 이 선생님이 00한테 예쁘게 말하는 법, 말에 "요"를 붙이는 존댓말 쓰는 방법 등을 잘 가르쳐주셔서 참 좋아요. 선생님도 아기처럼 이야기 하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뭐... 지금은 00한테 바랄게 없어요. (인천 5, 42세)

두 번째, 면접에 참여한 5명의 어머니들은 보육지원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긍정적 효과로 평소에 부모가 줄 수 없었던 “교육 및 문화적 자극의 제공”을 보고하였다.

보육도 신경 써주시고, 그림 같은 것도 너무 잘 그리세요. 저는 그림은 잘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잘 그리시고... 그래서 00이 가면 '엄마

이건 수박, 참외, 물레방아(웃음), 문화경기장에 물레방아가 있는데…….’ 또 애가 자신감도 있고요. (인천 4, 42세)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들은 보육사들이 자녀들과 자신들이 평소 알지 못했던 놀이 기술을 사용하여 놀아주거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 갈 수 없었던 장소에 가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장애아를 가진 29세의 어머니는 장애아들의 경우 아이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보육사가 행하는 기초적인 언어 및 행동 교육이 치료적인 효과까지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보육사님이 하나씩 하나씩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손 흔드는 거, 인사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너무 잘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육사님이 오셨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애기가 물건도 잡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불러도 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애기가 장족의 발전을 한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인사하지, 손 흔들지. 우리 애기는 걸지를 못하니까 공둥이를 통통 튀기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걸해요. 하루 종일 애기만 보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좋죠. (인천 2, 29세)

“규칙 및 예절 습득”과 “교육 및 문화적 자극 제공” 외에도 몇몇 어머니들은 (사례수=4) 보육지원의 효과로 달라진 “자녀의 성격”을 보고하였다. 즉, 성인의 지속적인 돌봄으로 아이들의 성격이 매우 밝아졌다는 것으로, 38세의 어머니(서울 4)의 경우 “애들이 안정을 되찾은 것”을, 22세의 어머니(서울 3)의 경우 “아이가 활발해졌다”는 면을 긍정적인 효과로 꼽았다.

다음으로 보육지원 서비스와 관련되어 어머니들에게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 개선”을 들 수 있다. 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 중 반 이상의(사례수=8) 어머니들은 보육지원 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 한다고 답하였다. 예를 들어 보육 지원을 받은 후 취업 시간이 증가한 37세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함께 있을 때 더욱 다정하게 행동하려 노력한다고 보고하였다.

좀 많이 안아주려고 그래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전에는 어린이집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엄마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엄마가 나갔다가 저녁에 오는 거잖아요. 애들 거의 잠잘 시간에 오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애들한테 많이 안아주고, 나갔다 오면 얘기를 막 하잖아요. 엄마한테 하는 말... 그런 거 또 들어주고, 대답을 많이 해주려고. 귀찮아도 피곤하고 그

래도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전주 1, 37세)

또한, 두 자녀를 둔 38세의 어머니는 보육사와 공동으로 아이들을 양육함으로써 자신의 짜증이 줄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전에는 시간에 막 쫓기다 보니까 막 명령식으로 이거 해, 저거 해... 막 그런 명령, 지시형으로 많이 말을 했는데, 지금은 애들의 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엄마가 되었어요. (서울 2, 38세)

위의 어머니들과는 약간 다르게 이혼하여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42세의 어머니는 보육지원 서비스를 받은 후 자신에게 경제적 능력이 증가하여, 아이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게 된 것을 관계 개선의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였다.

아무래도 보육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니까, 제가 또 금전적인 면이 조금 넉넉하니까, 00이 '이거 사주세요.'라고 하면 이전에는 거부를 했는데, 지금은 00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면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사주면 저도 흐뭇하고, 아이도 좋아하니 웃음이 한번 또 지어져요. 그런 점이 참 좋죠. (인천 5, 42세)

어머니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직접적인 변화로 실제적인 “양육정보 및 기술 습득”을 들 수 있다. 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 중 보육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기 이전의 자신의 양육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머니는 없었다. 일례로 6개월의 딸을 둔 33세의 어머니는 보육지원 전에 자신의 양육 능력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저의 아이 보는 능력은, 첫 아이고 뭘 몰라서 그런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점수로 따지면 기본적인 거, 모유를 주고 하는 거, 기본적인 거 외에는 해결해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정서적으로 많이 그걸 못 해준 거 같아요. (전주 2, 33세)

이 어머니들 중 5명의 어머니들은 보육사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자신이 모르던 양육기술을 습득하거나, 보육사가 제공하는 새로운 양육 정보를 들으며 자신의 양육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보고한 5명의 어머니들은 모두 영아를 두고 전일제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보육지원을 경험하기 전 자신의 양육 능력을 “50점”으로 평가했던

어머니는 보육지원을 나오는 보육사의 양육 스타일을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양육에 있어서 많은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보육사님께서 많이 아시고 잘 아시니까 제가 따르는 편이었어요. 서로 이렇게 의견 의논하면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애한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대구 1, 29세)

자녀 3명을 둔 32세의 어머니는 보육사가 자신의 받은 교육 내용을 부모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양육 방식이 변화했다고 설명하였다.

예전에는 무조건 회초리였어요. 말 안 들으면 회초리. 지금은 말로 먼저 해요. 언니가(보육사) 여기서 교육받은 것을 한 뼛씩 얘기해 주거든요. 성교육 받을 때 이야기라던지, 애들이 뭐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한 뼛씩 가르쳐줘요. 내가 어제 뭐 배우고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더라.... 그런 쪽으로 많이 가르쳐 주는데 그걸 많이 실천하려고 하죠. (대구 2, 32세)

또한, 전일제 보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38세의 어머니는 보육사로부터 양육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상담하고 상의할 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뭐.. 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애를 많이 키워보신 분이어서 아이를 안달하지 말고 기다려봐... 애들은 다해요... 뭐 이러면서 조언도 해주시고 또 굉장히 안정감을 주시고. 저는 첫 애니까 걱정도 많고, 애가 잘 클까 뭐, 엄마가 못해줘서 언어가 느릴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다 때가 되면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서울 2, 38세)

위에서 보이는 어머니들의 양육 능력이나 양육에 있어서의 심리적 안정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효과로, 보육지원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 3) 가족 미시체계에 미치는 간접 효과

보육지원을 경험 한 후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나타난 일차적 변화와 더불어

가족 미시체계 전체에 나타난 간접적 변화로는 크게 아버지의 행동 변화와 전체적 가족 관계 향상을 들 수 있다. 보육지원 서비스를 받기 전의 양육은 전적으로 어머니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몇몇 아버지들을 제외하고는 보육사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들은(사례수=5) 보육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양육 태도 및 부부관계 개선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다. 4개월째 보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32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남편의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여유가 생기니까 아빠도 나름대로 어깨에 짐이 많이 가벼워졌죠. 많이 가벼워졌고, 솔직히 전에는 자기 능력이 굉장히 있어서 다른 아빠들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자기 한계가 있으니 늘 위축되고, 외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많이 밝아지고 아이 앞에서든 저보다 더 애기 같이 어르고 하는거 보면 남편도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전주 2, 32세)

장애아를 둔 36세의 어머니 역시 보육지원 경험 후 자신의 정신적 안정이 남편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일단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했을 때 돌아오면 남편한테 그 스트레스를 풀게 되죠.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이 줄어들니까 자기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피곤해하고 자기가 돌아오면 말도 안 좋게 나가고 싸움이 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편해지니까 남편의 스트레스도 줄었죠. (인천 1, 36세)

남편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4명의 어머니들은 보육지원 서비스가 전체적인 가족관계 및 분위기 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음을 밝혔다.

아무래도 같이 모이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애들 아빠도 애들하고, 애들이 서로 질투를 느끼고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걸어 다니니까, 애기 아빠가 한 명 말고, 제가 한 명 말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이 있는 거 같아요. (대구 1, 29)

위 면접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지원으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는 가족들이 휴일이나 저녁 시간에 함께 모이는 시간의 증가와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수혜자들의 경험을 통해 본 보육지원 효과 증진을 위한 방안

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보육지원 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고하였다. 이 중 4명의 어머니들만이 다른 사람이 집에 매일 방문 하게 되면서 식사 준비 및 청소와 같은 가사 일이 증가했다고 언급하였다.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와서 밥을 해서 그냥 먹었는데, 선생님이 아이 밥을 먹이셔야 하니까 아침에 거의 집안일을 다 해놓고 가야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녁하고 반찬하고 먹을거리를 미리 다 해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 선생님도 드실 것이 없으니까. (서울 1, 43세)

하지만, 이러한 문제도 매우 경미한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이 4명의 어머니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곧 보육사의 방문에 적응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이 보육사의 방문에 빠르게 적응하고 보육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설명하였다.

어머니들이 제시한 서비스 개선의 첫 번째 방안으로 “보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현재 모든 것을 다 보육사 선생님께 맡길 수 있다”(인천 5, 42세)는 언급이나, “선생님께 100% 믿고 맡길 수가 있다”(인천 4, 39세)는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 대부분이 자신의 가정에 파견된 보육사에 매우 만족하며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믿음은 각 가정에 파견된 보육사들의 자질에 기초한다. 전일제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22세의 어머니(대구 1)는 보육사의 자질에 대하여 “우선 보육사님께서 아기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방과 후 보육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어머니는 보육사의 자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애들이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떼어 놓고 나가서 돈 벌고 해봤자 애들한테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적응을 잘하니까...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 오는 것을 기다릴 때도 있고. 왜 그러냐하면 엄마가 못해주는 답변

이 많은데 선생님은 하다못해 그 다음날 책이라도 보고 와서 알려주는 그런 성의가 있으시니까. 제일 먼저 선생님의 자질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전주 1, 37세)

위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지원 서비스의 효과 향상을 위하여 보육사들이 갖춰야 할 자질 중 하나는 “아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나타났다.

보육사이 갖춰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질에는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 외에도 보육사의 기본적 “성격 및 성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한 어머니는 보육사의 자질에 대하여 “뭐랄까, 자질이라고 해야 하나? 자기관리는 힘들어도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 4, 38세)라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냈다. 방과 후 보육지원을 경험하고 있는 35세의 어머니 역시 보육사의 자질을 보육사의 성품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선생님들 자질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문제가 아니라, 돈벌이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애들을 예뻐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어야지요. (인천 3, 35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들, 특히 영아 및 장애아를 둔 어머니들은 보육사로부터 양육에 관한 지식 및 양육 태도와 같은 실제적 정보와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기 원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사의 지식과 성품 양면에 균형을 맞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수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두 번째, 면접에 참여한 여러 어머니들(사례수=5)은 보육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사항으로 “어머니-보육사 간 의견 일치도”를 강조하였다. 방과 후 보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어머니는 자신과 맞는 보육사를 만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하고도 잘 맞아야지. 무조건 뭐 선생님 다 보내준다고 해서 그 엄마하고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보육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사람들이 안 맞아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서로 노력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 1, 43세)

또한, 어머니와 보육사의 양육에 대한 태도가 맞지 않을 경우 어머니들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불안까지도 느끼게 된다고 보고되었다.

연세가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그런데 이제 세대차이라 해야 하나? 그게 많죠. 제 입장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 사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잘 못 보이면 찔릴텐데.. 이러한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웃음)... 웬만한 것은 맞춰 드리려고, 맞춰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대구 3, 37세)

위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세 자녀를 둔 32세의 어머니 역시 어머니와 보육사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만일 성격이 정말 반대인 분들을 보내시면, 진짜 많이 부딪치고 막 맘적으로도 힘들고 그걸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받는 입장인니까. 솔직히 돈을 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로로 받는 입장인니까, 제가 말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혹시나 이분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만 둔다고 하면 갑자기 애들에 대한 걱정도 들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성격을 먼저 파악해 가지고 그 집에 맞는 분을 보내주시는 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2, 32세)

지금까지의 면접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면접, 가정 관찰 등을 통한 수혜자 부모와 가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종사 할 수 있는 직장은 대부분 비정규직 혹은 시간제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들은 어느 정도 양육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주는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단순 직업을 찾으면 시간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공휴일도 안 쉬고, 토요일, 일요일도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애들이 아플 때는 엄마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럴 때도 편의를 또 안 봐주고. 그러니까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에 맞춰서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주 1, 37세)

전일제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도 보육지원 시간과 출퇴근 시간의 맞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일반 회사나 노무사 사무실이나 아홉시까지 출근이라고 해도 거기서는 여덟시까지 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인천 4, 39세)

따라서 면접에 참여한 반 이상의 어머니들(사례수=9)은 “어머니들의 취업 상황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서비스 운영”을 제안하였다. 어머니들이 제안하는 시간의 융통성은 크게 주중 시간의 조절과 주말 서비스 제공으로 나누어진다. 주중 보육시간의 융통성 있는 활용에 대하여 방화 후 보육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융통성 있게... 차라리 좀 시간을 빼서, 꼭 5시간이 아니라고요. 어떤 분은 5시간이면 제가 일찍 가도 어떤 때는 서로 민망한 거예요. 일찍 보내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 저 사람은 왜 일찍 가지?' 이렇듯이요. 좀 융통성 있게 관리가 되면, 그 시간 안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에 쓰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다섯 시간이면 스물다섯 시간을 일주일 안에 쓰는 거예요. 서로 조율해서. 제가 있는 날은 더 일찍 와서 애들하고 있는 동안 선생님도 땀땀하게 가시고.. 남에 눈치도 안보고. (대구 3, 37세)

역시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방과 후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한 어머니는 주말 보육지원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수가 적으니까, 저녁 좀 어렵 저녁을 데리고 생활하는 분들은 누구나 주말에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이 어리니까 어디 맡길 곳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나 봐요... 금전도 부족하고... 주위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주말에도 이렇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하고요. (인천 5, 42세)

이러한 보육사와 협의를 거친 융통성 있는 시간의 운영은 어머니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보육지원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인 저소득층 가정의 빠른 경제적 안정과 독립을 앞당기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토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머니들이 보고한 지원 효과와 보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다른 보육지원 서비스와 같은 지원을 이용하게 되는 저소득층 가족의 장기적인 적응과 독립을 위하여 보육지원 서비스 중에 실시되는 다양한 준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보육사나 보육지원 서비스에 만족하는 동시에 생활 자체를 보육사에게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15개월 된 쌍둥이 자녀의 보육지원을 받는 어머니는 보육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저보다 더 좋아해요. 보육사님이 퇴근하실 때 작은애가 막 울어요(웃음). 보육사님이 가실 때는 나한테 오라고 하면 잘 안 오고, 보육사님을 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대구 1, 29세)

이러한 의존은 전일제 보육지원을 받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일수록 그리고 보육지원 서비스를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보육지원을 4개월째 경험하고 있는 한 어머니도 자신도 점점 더 보육사에게 "케어를 받고 마음에 의지가 된다" (전주2, 33세)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가족이 보육사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보육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 가족들이 어떻게 보육사가 없는 일상에 적응하며, 보육사를 대신할 만한 보육 서비스를 찾을 것인지에 관한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보육지원 서비스 종료를 한 달 앞둔 한 어머니는 보육지원을 받던 아이뿐 아니라 부모도 여전히 보육지원이 없어진다는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솔직히 계획... 앞이 안 서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가 지금 안 좋아요. 병원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지금 2주에 한 번씩 통원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죠. 지금 뜬 애

도 틀이 어린이집을 갔다 와서 시간도 그렇고, 종일반을 맡긴다 하더라도 돈이 만만치 않고. 하여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린 상황이에요.---- (아이들 준비는) 아직 못시켰어요. 제가 이제 충격에서 못 벗어나서요 (웃음). 제가 아직 준비를 못하니까 애들한테도 아직까지 준비를 못 시켰어요. (대구 2, 32세)

위의 가족과 같이 사전에 준비 없이 보육지원 기간이 끝날 경우 어머니의 경제 활동 및 아이의 적응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경험한 보육지원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보육지원 종료 후에 대상 아동과 부모를 비롯한 전체 가족이 경험하게 될 재적응의 어려움, 상실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교육에는 1)보육지원 기간 중에 어머니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 교육, 2) 보육지원 기간 종료 후에 어머니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정보제공 및 연계 서비스, 3) 그리고 아이가 보육사와 헤어지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 시킬 수 있도록 보육지원 서비스 후 반부부터 지원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거나, 아이에게 보육지원 서비스가 끝나 감을 인지시키는 적응교육이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지원 제도들에 대한 재평가 및 기존 제도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초반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이 보육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의 부재나 실제로 이용 가능한 효율적인 서비스의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에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의 부족 및 자원 부족 등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보육지원 제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개발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족들의 효율적인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과, 보다 폭넓은 요구 수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 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소득층 가족에게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또한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이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 5. 효과적인 보육지원 서비스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모델

본 심층면접 연구의 결론으로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한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간 생태학에 의하면, 개인 및 가족은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 지역 사회, 정치기구, 국가, 문화 등과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하고 적응한다(Bubolz & Sontag, 1993). 따라서 개인 및 가족의 발달과 적응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속한 여러 단계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말해주듯이 저소득층 가족의 적응은 각 가족의 노력 뿐 아니라 지원 기관의 정책, 국가 및 지역사회 지원 및 육아를 바라보는 사회 문화적인 시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인간 생태학적 맥락과 생태학에서 제공하는 개념들을 적용하는 것은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보육지원 서비스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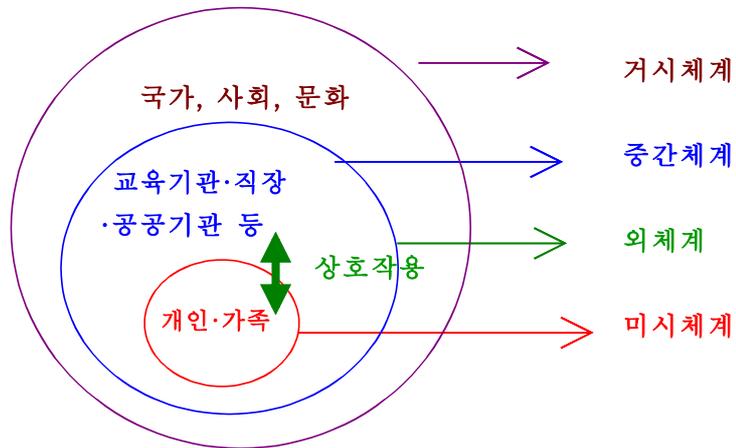
인간 생태학에 개인과 가족이 발달하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미시체계(micro system), 외체계(meso system), 중간체계(exso system), 그리고 거시체계(macro system)의 네 가지의 체계로 이루어진다(Bronfenbrenner, 1986). 미시체계는 발달과 적응의 주체가 되는 개인 및 가족을 의미한다. 외체계는 가족과 가족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어린이집이나 직장 등의 기관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중간체계는 가족이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 직장, 사회적 관계망 등의 외부 기관이나 환경을 의미하며, 거시체계는 보다 넓게 인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 및 문화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생태학적 개념들을 적용해보면 우선 보육지원을 받는 어머니와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은 미시체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이 구청이나 공공 기관에서 겪는 경험 및 관계는 외체계를 형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가족을 둘러싼 저소득층 지원 기관, 자녀들의 학교 및 부모들의 직장은 중간체계가 되며, 현재 어머니들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한 지역 사회 및 국가 정책은 거시체계를 이룬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체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V-5-1]과 같다.

[그림 V-5-1]에서 볼 수 있듯이, 저소득층 가족의 궁극적인 안녕을 위해서는 어느 한 체계를 바꾸려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각 수준에 따라 가능한 지원을 할 경우 보육지원 서비스나 다른 종류의 서비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체계가 다른 체계들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지원을 하는 것이 저소득층 가족의 안녕을 도모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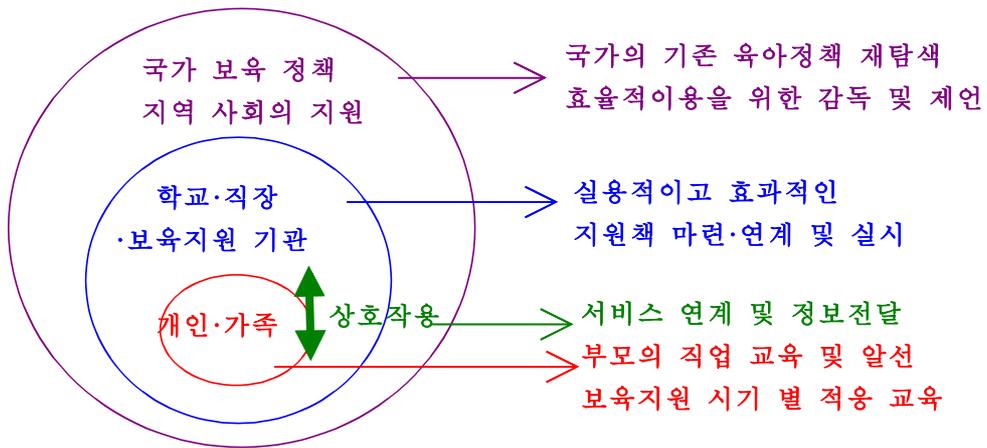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 생태학



보육지원의 생태학적 접근

체계별 지원 방향



[그림 V-5-1] 저소득층 보육지원을 생태학적 모델

## VI. 외국의 가정내 보육서비스

보육의 유형은 시설보육과 가정내 개별보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내 개별 보육은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소규모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family child care providers)와 보육제공자가 아동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in-home caregivers)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육은 시설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성장과 취업 부모의 양육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흐름이며, 그 과정에서 가정보육 모 제도는 시설보육의 보완적 성격으로서 발달하고 있다<sup>15)</sup>. 그렇지만 국가마다 가정보육 모 제도의 위치와 성격은 서로 달라서 각국의 전체 보육정책의 체계 속에서 가정보육 모 제도를 살펴보아야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서는 프랑스, 미국,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별 보육정책의 특징 및 가정보육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프랑스

#### 가. 보육정책 개요<sup>16)</sup>

프랑스는 오랜 전통의 출산장려주의 정책과 공화주의적 평등교육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왔다. 보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논리 역시 국가가 아동기의 보호자이며,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책임자라는 개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미 1970년대 초부

15) 가정보육(in-home care)은 부모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시설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음.

- 야간근무나 당직 등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하는 부모
- 장애나 질병이 있는 부모나 아동이 있는 가족이어서 시설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우
- 시골지역이나 외진 지역에 살고 있어서 시설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가족
- 수유 중인 어머니 노동자
- 다른 공인 서비스(의사, 지역보건국, GP 등)에서 리퍼된 가족
- 보육서비스 욕구 상 두 가지 서비스가 다 필요한 가족이나, 지역 보육서비스가 요구되는 보육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 장애나 질병이 있는 부모나 아동이 있는 가족이어서 시설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우(<http://www.health.nsw.gov.au>).

16) 홍승아(2005).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프랑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2005-2에서 요약하였음.

터 아동보육 영역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여성취업자 증가와 더불어 집단 크레체(Crèches collectives), 가정 크레체 creches<sup>17)</sup>, 미니 크레체(mini-creches), 일시 탁아소(haltes-garderies) 등 다양한 집단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즉 프랑스는 이탈리아, 벨기에와 함께 유럽에서 손꼽히는 공보육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국가이다. 특히 아동의 보편적인 조기교육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3~6세 연령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교육은 보편적 서비스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프랑스 보육정책은 첫째 취업부모를 지원하는 것과, 둘째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두 가지 목표로 하고 있다(Fagnani, 2003).

그렇지만 보편적 보육서비스 정책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및 혜택이 크게 다르다. 3세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보편적 서비스로 대상연령층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데 비해, 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는 대상연령층 아동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 3세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충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1980년대 초 이후 크레체 내 보육 자리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약 200,000개소로 증가하였다(표 VI-1-1 참조).

〈표 VI-1-1〉 공보육시설내 자릿수: 3세미만 아동의 경우

단위: 개,%

보육형태	자릿수	비율
유치원(école maternelles)	255,000	56.0
집단 creches	138,400	30.5
기타 creches	61,000	13.5
공보육시설내 전체 자릿수(전일제의 경우)	454,500	100.0
일시보육시설(시간제 보육)	68,100	

자료: DREES(2000), Fagnani(2004)에서 재인용

그렇지만 이러한 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3세미만 아동의 보육수용율은 매우

17) 집단크레체(Crèches collectives)란 공공재원으로 지원되는 보육시설로, 3세미만 아동이 전문가에 의해 보육됨. 6세미만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는 아동관리국(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음.. 반면 가정크레체(Crèches familiales)는 등록된 보육사들로 조직된 가정보육시설로, 이들 보육사들은 지방정부에서 임금을 받으며, 국가보육위원의 관리감독을 받음. 1971년 이후 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집단 크레체보다 증가속도가 훨씬 빠름. 일시탁아소(haltes-garderies)란 6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시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원생들도 유치원 이외의 시간에 이용할 수 있음(Letablier,2003; Fagnani, 2003).

낮아서 전체 대상연령층의 약 44%만이 크레체에서 보육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책입안가들은 영아보육을 위한 크레체 설립과 기존 크레체 내에 영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크레체 내 영아자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적인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Fagnani, 2004).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전달방식에 따라 공공재원으로 제공되거나 지원되는 공공보육서비스와 민간보육서비스를 이용하되 이들의 보육비용을 보조해주는 “개별화된 보육서비스”(individualised childcare)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80년대 경제위기와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보육정책이 주로 공공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별지원과 개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공공보육서비스는 다시 대상연령에 따라 이원화되어 제공되고 있는데, 3세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원(crèches)과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성학교(école maternelles)제도가 있다. 3세미만의 아동은 가족정책에서 보육으로 접근하고, 3세이상은 교육부에서 조기교육정책으로 접근한다. 두 제도는 관할부서도 서로 달라서 유아원(crèches)은 사회보험청과 전국가족수당기금에서, 모성학교(école maternelles)은 교육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표 VI-1-2〉 프랑스의 보육현황

단위: 세, %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수용률
	연령	시설	운영시간	수용률	연령	시설	운영시간	수용률	
0~3세	0-3	공동크레체 (공동,가족, 부모협동)	전일제, 연중개원	9.1	2-6		주중 8:30-16:30, 토요일 아침, 수요일 휴업, 학기	11.6	43.0
	0-6	개별보육사 (가정방문 보육사)	다양함	20.9					
	0-6	유아원	다양함	0.9					
3세~학령기	0-6	개별보육사	다양함	12.0	2-6		주중 8:30-16:30, 토요일 개원, 수요일 휴업, 학기	100.0	100.0
	3-12	레저센터	수요일, 등교전과 방과후 +휴일	13.0					
학령기~12세		레저센터		0.2		학교			

자료: Eurostat(2004).

현재 프랑스의 연령별 보육현황을 보면, 3세미만 아동의 약 40% 가량이 공공 보육시설(crèches)이나 공적지원을 받는 개별보육의 형태로 보살펴지고 있으며, 3~6세미만 아동의 거의 전부가 모성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 및 보육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아동중심적 가족정책에서 기원되기는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부모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인다.

프랑스의 보육정책은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째 교육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교육기구를 통하여 제도화된 보편적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3~6세 아동의 대부분이 조기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sup>18)</sup>. 둘째 1994년 가족법 개정 이후 보육정책에서는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보육의 개별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공공재원의 공립보육시설을 제공하기보다는 민간보육서비스를 대폭 끌어들이어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양적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sup>19)</sup>, 양육의 경제적 보상(수당제공과 세금감면제도)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개별보육 방안(individualised childcare)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개별보육 방안이 발달하게 된 배경으로는 프랑스의 보편적인 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3세미만 영아의 보육서비스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1999년의 경우 3세미만 아동은 215만 명이지만, 이들 중 25만 명이 유아원, 20만 명이 공동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전체 영아의 보육이용률은 약 25%에 불과하였다(International Reform Monitor). 이 같은 공동보육의 부족한 수용력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개별보육방안이 나타나게 되었다.

프랑스의 개별보육 방안은 부모가 취업을 중단하고 양육을 직접 하는 방법과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home-based) 보육사를 고용토록 하여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개별 보육 방안의 구체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자녀출산 이후 3년간 부모 중 한 사람이 취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18) 연령별 보육실태를 보면 2세 아동의 유치원 등록비율은 35%, 3세 99%, 4세와 5세는 각각 100%로 나타나 3세이상 보육율은 거의 100%이다(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1997, Morgan, 2003에서 재인용).

19) 1983년 이후 긴축재정과 실업률 증가로 집단보육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보육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음. 불규칙한 시간대의 파트타임 노동을 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에 대한 카드제(acceuil a la carte) 도입 및 보육계약(contrat creche), 아동계약(contrat enfance), 응급보육(acceuil d'urgence) 등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대안들이었음(장혜경 외, 2002).

감축하는 경우 그 조건에 따라서 양육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양육수당(APE)이 있다.

둘째, 등록된 자격인증 보육사가 운영하거나 혹은 등록보육사가 고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AFEAMA)가 있다.

셋째, 아동의 가정에서 보육사를 직접 고용하여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일정액의 현금지원<sup>20)</sup>과 세제혜택(tax credit)을 제공하는 가정내 보육수당(AGED) 등이 도입되었다<sup>21)</sup>.

〈표 VI-1-3〉 프랑스의 가정 내 보육 지원

구분	대상 아동연령	사업내용
양육수당(APE)	6세미만 아동	·특징: 아동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한 경우 ·급여조건: 노동시간 감축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지급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 (AFEAMA)	6세미만 아동	·특징: 보육사 자신의 집이나 등록보육사가 고용되어 있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서비스 이용 ·급여조건: 사회보장기여금의 일부를 총당해 줌
가정보육수당 (AGED)	6세미만 아동	·특징: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급여조건: 보육비용의 50%를 지급. 보육사의 사회보장기여금 일부 지급

그러나 첫 번째 양육수당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취업을 중단하고 일정기간의 양육을 책임진다는 형태로 다른 서구사회의 부모휴가제도에 양육수당을 결합한 프랑스식의 양육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엄밀하게 말하자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가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서비스는 가정보육사가 자신의 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와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견서비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후에서는 이들 제도 중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형태로 볼 수 있는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AFEAMA), 가정내 보육수당제도(AGED)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프랑스의 용어와 우

20)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사회보장기여금 일부를 지원함.

21) 양육수당(APE)은 1985년, 가정내보육수당(AGED)은 1987년, 등록보육사고용지원제도(AFEAMA)는 1990년에 각각 도입되었음(Martin, & Renaudat., 1998).

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정보육모에 대한 개념 차이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먼저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AFEAMA)는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 번역하자면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가정보육모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등록보육사는 자신의 집이나 보육사가 고용된 (민간)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는” 가정보육모제도와는 다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아이돌보미”, “가정보육모”의 성격은 가정내 보육수당제도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와 유사하다.

#### 나.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AFEAMA; 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

프랑스에서 등록보육사 혹은 가정보육모란<sup>22)</sup> 가족·사회부조법전(le code de la famille et de l'aide sociale) 제123-1조로 규정하는 승인(l'agrément)을 받은 자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를 보육하는 자”(등록보육사에 관한 법 제92-642호, 1조, 정민자 외, 2006에서 재인용)라고 규정되어 있다. 등록보육사제도는 일정 자격을 갖춘 등록보육사가 자신의 집에서 최대 3명까지 유아들을 개별적으로 돌보는 형태이며, 이 때 등록보육사는 공·사립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들로부터 보수를 받고 활동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www.childcaringinachanginaworld).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1990년 도입된 제도로, 제도의 핵심은 등록된 보육교사(licensed childminder)로 구성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족수당기금(CNAF)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기여분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때 보육교사는 6세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로서, 가족사회지원법(Family and Social Assistance Code)에서 정의된 바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Fagnani, 2004).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자녀의 연령이 6세 미만이어야 하며, 둘째, 등록보육사는 해당

22)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프랑스의 등록보육사고용지원수당은 등록보육사가 자신의 집에서 소규모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보육시설에 고용된 상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 대한 지원을 의미함.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정보육모의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서는 등록보육사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함.

시·도 의회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등록보육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일일단위로 환산할 때 영유아 1인당 33.35유로(약 39,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는 기타 부대비용(기저귀, 이유식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 액수는 최저임금의 5배에 해당된다. 위의 조건이 만족될 경우 등록보육사를 고용하는 가정은 가족수당기금(CAF)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회보장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분담금을 보조받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다. 사회복지분담금의 경우는 각 가정을 거치지 않고 가족수당기금에서 정수처(URSSAP)로 직접 지불된다. 반면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수당의 경우는 각 가정으로 입금되는데, 그 액수는 영유아의 연령(만3세미만/ 만3세~6세)과 가계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보육사 고용비용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는 없으며, 3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여 가족수당기금(CAF)에 제출하여야 한다(한지혜, 2002).

지원되는 급여액은 아동연령과 가족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데, 2001년 현재 급여액은 최고 FRF 1,290(€196.66)(빈곤가족 혹은 3세미만 아동대상)에서 FRF 645(€98.33)(중산층가족 혹은 3~6세 아동대상)이다.

등록보육사에 대한 고용지원수당이 지급되면서 등록보육사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아래의 <표 VI-1-4>에서 살펴볼 수 있듯 등록보육사수는 1991년 130,000명에서 2002년 384,000명으로,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수당(AFEAMA) 수급자수는 1991년 110,000명에서 2002년 612,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VI-1-4> 보육사와 AFEAMA 수급자수의 변화(1991-2002)

단위: 명

구분	1991년	2002년
등록보육사수	130,000	384,000
AFEAMA 수급자수	110,000	612,000

자료: Fagnani(2005).

또한 지원수당의 지급조건이 되었던 등록보육사 고용은 자연히 가정보육사들로 하여금 자격 인증을 유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의 보육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첫째는 등록보육사에 대한 고용지원제도를 통하여 보육모라는 사회적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였다는 고용정책 측면이 있고, 둘째는 등록보육사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일정 부분 개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점이다.

#### 다. 가정내 보육수당(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 AGED)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1987년 도입된 것으로 개별가정에서 보육사(personal caregiver)를 고용할 경우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개별가정에 6세미만의 아동이 있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취업한 맞벌이 가정에 적용된다. 수당은 그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보육사의 사회보장기여금의 일부를 충당하는 수준이다. 급여지급은 소득수준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3세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FRF 6,561(€ 1,000), 3~6세 아동의 경우 FRF 3,279(€ 500)가 분기별로 지급된다. 이 경우 가족수입이 연 FRF 220,784(€ 33,658)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992년부터는 가정에서 보육사를 고용하는 경우 “가족고용” 세금감면제가 새로 생겨서, 개별가족이 지출하는 보육비용의 5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최고 FRF 25,000까지만 가능)(ILO, 2004).

가정내보육수당 제도는 이제까지 비공식적으로 제공되었던 보육서비스를 지하경제(black economy)에서 합법적인 보호망으로 편입시켰다는 점과, 잠재적인 고용을 창출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노동시장으로의 편입과정에서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보육 외 가외 일들로(가사노동이나 식사준비 등) 보육서비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에게는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재편입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Martin, & Renaudat, 1998).

그러나 이 수당제도의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개별적으로 보육사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소득계층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임금 가족들이 주요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있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육사를 고용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없는 현실에서 제도효과는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재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Letablier, 2003)<sup>23)</sup>.

이상에서 살펴본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나 가정내보육수당 제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공보육을 확대하려는 경제적, 정책적 노력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4년 이후 전국 가족수당기금(CNAF)의 지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집단보육시설(crèches)에 지원

23) 개별보육사를 고용하는 것이 공동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듦(표 VI-1-6 참조).

되는 금액보다 개별보육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organ, 2002; Letablier, 2003). 특히 양육수당, 가정내보육수당,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 등의 급여를 계기로 프랑스 보육정책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Martin, & Renaudat, 1998). 이러한 국가책임 방식의 변화는 2003년 현재 APE 예산이 약 FRF 180억인데 반해, 공공보육 지출예산은 FRF 28억에 불과한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Silvera, 2004). 또한 <표 VI-1-5>를 보면, 1994년과 2000년을 비교했을 때 양육수당이나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에 대한 지출이 무려 197%, 147%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5> 개별보육형태에 대한 공공지출, 1994, 2000(불변 유로화 기준)

단위: 백만유로, %

구분	1994년	2000년	증감비율
양육수당(APE): 집에 남는 조건	942.35	2,799.43	+197
등록보육사 고용지원(AFEAMA)	685.58	1,694.95	+147
가정내 보육수당(AGED)	85.49	134.60	+ 57

주: 모든 수당은 사회보험에서 지급됨

자료: CNAF, Bureau des prévisions, Fagnani, 2003에서 재인용

<표 VI-1-6> AFEAMA, AGED 수급자와 지출

단위: 천명, 백만프랑

구분	수급자수		지출	
	AFEAMA	AGED	AFEAMA	AGED
1987년	-	2	-	23
1991년	110	12	534	272
1993년	218	21	3,165	440
1995년	326	47	5,652	937
1996년	380	67	7,018	1704

자료: Caisse Na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Martin, & Renaudat, 1998:148에서 발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AFEAMA)의 경우, 수급자 수는 1991년 110,000명에서 1996년 380,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출규모 역시 1991년 5억 3,400만 백만 프랑에서 1996년 70억 1,800만 백만 프랑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등록보육사고용지원제도는 크레체(Crèches)의 수용능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맞벌이소득자가족 및 편부모가족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

용되는 보육형태가 되고 있다.

가정내보육수당제도(AGED) 역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수급자와 수급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수급자 수는 1991년 12,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67,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출규모 역시 1991년 2억 7,200만 프랑에서 1996년 17억 4,000만 프랑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수당 외에도 보육비용의 50%까지를 세금공제해 주어서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의 실제적인 보육비용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sup>24)</sup>(Fagnani, 2003).

##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서비스 정책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가정보육모 제도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대상연령층을 6세미만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연령층은 보편적 보육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3세미만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보육정책의 개별보육방안의 전환과정에서 발전된 형태라는 점에서의 차이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의 80년대 이후 실업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다시 말해서 실업정책, 고용정책의 일환으로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sup>25)</sup>.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서비스 정책은 공보육서비스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또한 프랑스 사회가 당면한 실업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강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는 개별보육사를 등록,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수십만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육수당 제도의 확산으로 노동시장 저변부에 있던 많은 여성들이 양육자로서의 자리로 돌아가는 정치경제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보육서비스의 접근권과 재분배의 측면에서 공공보육 서비스(crèches)의 제공과는 대조적으로 반(反)재분배적 형태이다. 반(反)재분배적이라 함은 가정보육수당(AGED)나 등록보육사고용지원제도(AFEAMA) 등의 혜택은 개별보육사를 고용할 수 있는 중상위 소득계층이나 부유한 가족이 주수급자가 된다는 점에서이다<sup>26)</sup>. 혹은 등록보육사고용지원제도(AFEAMA)의 경우에

24) 상한선은 4,430유로임.

25)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홍승아, 2005를 참조.

26)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AGED 수급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여성의 3/4이 전문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종일보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결국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음(Yoo, 2000, 장혜경 외, 2002:98-9

는 비공식 시장에서 개별 보육사를 보다 저렴하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보육노동시장을 보다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낳기도 한다. 결국 개별 보육사를 고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입장으로는 이러한 수당제도나 세금공제는 실효성이 없고 저소득가족의 경우 보육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게 된다<sup>27)</sup>.

비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집단보육시설이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타난다. 프랑스의 보육비용을 보육의 형태에 따라 비교해 보면, 보육비용은 집단보육시설인 크레체(crèches)가 가장 저렴할 뿐 아니라, 보육비용의 책정이 가족수입을 고려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보육의 공공성 관점에서 본다면 집단보육이 가장 재분배적이다. 또한 양육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이들이 보육사나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크레체(crèches)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저임금가족의 입장에서는 크레체(crèches)와 같은 공공보육시설의 제공이 가장 절실한 보육대안이 되고 있다(표 VI-1-6 참조)<sup>28)</sup>. 이러한 현실에서 집단보육 시설이 보육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저소득층 여성들은 비공식보육에 의존하거나 양육수당으로 집에 남게 되는 두 가지 선택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표 VI-1-7〉 보육비용 비교(1세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우)

보육형태	월수입(€ 914.69) <sup>1)</sup>	월수입 (€ 2286.74)
집단 Crèche	94.98	237.52
등록된 보육모(AFEAMA)	201.54	269.38
가정모모 <sup>1)</sup> (AGED)	계산불가 <sup>2)</sup>	1050.68 *

주: 전일제, 월 20일 근무조건에 기반하여 계산됨

- 1) 부모에게는 법정최소임금이 지급된다(SMIC:Statutory minimum wage).
- 2) 이 소득수준의 가족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다

자료: CNAF, Action sociale, 2001, Fagnani, 2003에서 재인용

9에서 재인용).

- 27) 저소득층에서는 비공식보육이나 이용가능한 공보육시설 어디든지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실제로 3세미만 아동의 반 이상, 일하는 여성의 1/5이 취업모가 직접 양육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인식한 교육영역에서 빈민지역 유치원에서 2세대상 영아를 위한 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Martin, & Renaudat, 1998).
- 28) 2000년과 2001년에는 부모들의 보육욕구에 의해 가족부(Ministry of Family Affairs)에서는 crèches의 자리수를 실질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228백만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하였다(Letablier,2003).

무엇보다도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AFEAMA)나 가정내 보육수당제도(AGED) 등은 개별화된 보육서비스 형태로서, 이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보육서비스의 확대 노력 대신에 현금지원을 통하여 국가의 보육책임을 이전,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이것은 국가의 보육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 2. 미국

### 가. 보육정책 개요

각국의 보육정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스웨덴, 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한 노르딕 국가에서는 보육을 공보육으로서, 국가의 책임지고 재정을 제공하는 특성을 갖는다. 둘째,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대륙유럽에서는 조기교육의 일환으로서 공보육을 제공하며, 동시에 이들 국가에서는 3세 이상의 아동들을 주요 목표 그룹으로 한다. 셋째,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주로 시장화 전략을 지향하여 보육시장내 서비스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공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보육정책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시장의 보육서비스로 해결하려는 시장화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공보육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상의 성격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른바 이원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홍승아, 2006).

미국의 보육제도는 국가적으로 통합된 정책적 틀이 없기 때문에 각 주별로 다르고, 학령기 이전의 유아서비스에 대한 접근법도 매우 다양하다. 운영주체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산업체, 종교나 자선단체, 대학 부모모임, 영리단체, 개인 등으로 다양하다. 대표적인 보육유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표 VI-2-1>과 같다.

한편 보육이용 형태를 아동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학령인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공교육제도 안에서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반면<sup>29)</sup>, 3,4세 아동들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민간유아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보육제도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헤드스타트를 포함하여 저소

29) 1995년을 기준으로 5세아의 100%가 취원 또는 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은, 2003).

특층이나 특수아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며, 이들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및 주정부의 지원 하에 실시되고 있다.

〈표 VI-2-1〉 미국의 보육시설 유형 및 특징

유형	특징	
가정내보육 (in-home care)	·성인이 유아의 집으로 와서 돌봄	
친척에 의한 보호 (care by relatives)	·친척집에서 친척이 돌봄 (여러 형태의 상품이나 지불방법이 개입됨)	
가정보육 (family day care/ family child care homes)	·양육자의 가정에서 돌봄 (개인적인 관계의 비형식적 형태에서부터 형식적으로 면허받은 조직까지 다양함) ·수익자 비용부담	
반일제 교육 (part-day education program)	·지역사회, 공립학교, 교회, 기타 건물 등에서 발달과 교육에 적합한 놀이와 일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보육시설 (15명에서 30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가 있음)	영리사립기관 (private for profit centers)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의하여 운영
	비영리 사립기관 (private nonprofit centers)	·교회나 자선기관에 의하여 운영
	공립기관 (publicly operated centers)	·빈곤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부모협동센터 (parent cooperative center)	·부모가 보호, 관리, 정책결정에 참여하므로 비용이 싼 편이며 대부분 반일제임
	직장보육 (employer-provided center)	·공장, 병원, 대학, 조합 등의 고용인을 위한 것으로 직장 근처에 설치함
	·주로 취업모를 위해 보건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이 운영하거나, 사립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주로 2세까지의 영아와 3-5세까지의 유아가 대상 ·종일제(07:00-18:00)로 연중 운영 ·일부 지역에서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도 함 ·아동발달센터(child development center), 조기학습센터(early learning center) 등의 이름을 붙이기도 함	

자료: 김지은(2003).

한편 보육시장의 구성은 보육시설 외에 가정방문 도우미(in-home sitters), 다른 가정에 맡기는 경우, 혹은 가정에서 하는 놀이방 등이 포함된다. 제한적이고 부족한 공공보육 서비스 대신에 민간 보육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현실에서 미국 취업모 대부분은 아동보육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과중하게 민영

화되어 있는 미국의 보육서비스는 개별가족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보육이용료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부모 60%, 연방정부 25%, 주정부 15%의 비율로 분담되며, 대부분의 정부지출은 저소득 가족에 집중된다(OECD, 2001).

보육서비스에 대한 구매의 경향과 비용은 구체적인 보육방법의 선택과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취업모의 54%가 취학전 아동의 보육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보육비용을 지불하고, 보육서비스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999년의 경우 월 소득 \$4,500이상의 가족 중 63%가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반해 월 소득이 \$1,200미만인 가족에서는 42%만이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보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빈곤가족에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빈곤가족의 경우 주당 \$55를 보육구매에 사용하는데, 이는 가족소득의 약 29%가 된다. 반대로 비빈곤가족의 경우 주당 보육비로 \$70을 사용하지만 이는 가족소득의 7%에 불과하다. 2000년에 실시된 다른 연구에 의하면(Children's Defense Fund) 모든 주에서 평균적인 보육비용은 아동당 \$3,300이며, 20개주에서는 \$5,000를 초과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U.S. House of Representative, 2004). 결국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은 부모들의 서비스 구매력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 나. 가정내 보육

미국의 보육유형은 보육이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기관보육, 보육자 가정보육과 자기집 보육 등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Sission & Black, 1992, 서문희 외, 2002에서 재인용). 보육자 가정보육이란 보육자가 자신의 집에서 소규모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고, 자기집 보육이란 아동의 집에서 보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문 가정보육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다. 세 가지 중에서 기관보육을 제외한 보육자 가정보육과 자기집 보육이 가정내 보육(home-based care, family day care)에 해당된다.

우선, 보육자 가정보육은 보육자 집에서 6~7명 이내의 소수 아동을 돌보는 보육형태로, 여러 가정의 아동들이 함께 보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보육유형은 미국에서는 흔히 가정보육(day home care)이라고 불리며, 제도권 밖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달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면허제도를 도입, 지도·감독 및 지원제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 무면허 가정보육과 면허 가정보육이 공존하고 있다. 무면허 가정보육(unlicensed caregiver's home care)은 사적 보육의 형태로 가정보육 제공자는 공식적인 보유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가정보육 제공자는 친인척 또는 이웃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이옥 외, 2004).

다음으로 자기집 보육은 보모(nanny)와 베이비시터, 조부모, 친구, 이웃 등에 의하여 보육아동의 집에서 행해지는 보육형태이다. 이 경우 보육자는 자격 또는 공식적인 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적 보육형태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의 가정보육은 사회나 전문가들의 관심과 지원을 별로 받지 못했고, 최근 들어 서서히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최근에는 가정보육의 서비스 질과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주정부들은 가정보육 관련 일부 규정을 제시하거나, 면허를 주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licensing agency)을 선정하여, 이 기관에서 보다 엄격한 과정을 요구하도록 하기도 한다. 일정 지역 내의 보육가정들을 주정부나 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후원기관의 산하에 두고 관리하는 형태이다. 즉 가정보육이 독립적,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큰 체제 안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후원기관에서 대상가정이나 아동의 특성에 따라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해 주거나, 보육비용, 한 가정내의 아동수 등을 관리해 주며, 여러 복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서문희, 2000).

가정내 보육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나 주의 규제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 주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청구할 때에는 관계당국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sup>30)</sup>.

미국의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구체적인 유형은 <표 VI-2-2>와 같이 구성된다. 미국의 가정보육은 인가 여부, 운영방식 및 법적 지위, 행정구조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비인가 가정보육형태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비형식적이며 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가정보육, 둘째, 인가 또는 등록된 가정보육으로 법적 체계 안에 있으나 규제기관과 최소한

30) 미국의 노동부에서는 유아보육 관련 서비스 종사자들을 “보육사(childcare worker)”와 “유아원교사(per-school teacher)” 두 가지 역할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 “보육사(childcare worker)”는 유아의 옷을 입혀주고, 목욕 시켜주고, 먹이고, 놀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조력자 혹은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유아원교사(per-school teacher)”는 유아원 프로그램이나 유아보호시설에서 유아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김지은, 2003).

의 유대를 맺을 뿐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셋째, 인가되어 법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가정보육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후원기관의 행정구조 안에서 운영되는 가정보육(sponsored family day care home)으로 구분된다.

〈표 VI-2-2〉 가정내 보육서비스

구분	특징
가정보육서비스	
Family Day Care	·보육자의 집에서 제공하는 가정보육 서비스
방문가정보육서비스	
Nannies	·대부분이 훈련(내니훈련프로그램 등)을 받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된다. 내니는 동거형태든 비동거형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Au Pairs	·국제적으로 공인된 Au Pairs에서 진행하는 교환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Mothers'/Parents' helpers (조부모, 친척, 이웃 등)	·주로 성인이나 청년층이 부모의 감독 하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특별히 보육과 관련된 훈련이 요구되지는 않음
Babysitters	·주로 부모들의 외출시 임시로 아이를 돌보는 것. 대부분 시간제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게 됨. 종종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임시적으로 일하게 되지만, 어른이나 노인들도 일하는 경우 있음.

자료: MIT Center for Work, Family & Personal Life 를 기반으로 재구성함

특히 미국은 영리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보육시설 중 약 35%가 영리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육은 대부분이 영리로 운영되고 있다. 베이비시터, 내니 등에 의한 비공식 보육서비스는 취업모의 5세미만 아동 중 6%가 주된 보육자로, 8% 정도가 보조적인 보육제공자로 이용하고 있다(서문희, 2002a).

베이비시터 및 정규 내니의 연령 및 교육조건을 일정하지 않다. 미국 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에서는 베이비시터 연령을 12세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청소년 대상의 단순 베이비시터에 대한 교육은 초단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내니는 통상적으로 연령은 18세~19세이상, 고졸이상 학력, 금연 등을 명시하고 이외에 응급구조사 자격, 무사고운전면허,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소한 친인척 이외에 3명의 참고인을 제시하여야 하고 아동학대 여부 등 범죄여부에 대한 신원조회를 한다. 전문적인 내니에 대한 교육과정은 비교적 길고 전문적이다. 한 훈련기관에서는 3개월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공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지급을 받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선택하기도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보육비용 지불 확인증을 지급하며, 부모들은 이것을 가지고 보육시설(center-based care)이나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서비스,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보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에 따라서 제공되는 보육형태는 부모, 친구, 이웃 등으로 다양하며 아동의 집에서 제공되는 보육까지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바우처나 보육비용 지불확인증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부모가 취업이나, 학교를 다니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이며, 각 주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이어야 하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보육제공자는 각 주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기본적인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에서 제공하는 보육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주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주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일부 주에서는 모든 보육제공자에게 자격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반면 다른 주들은 친척이나 적은 수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인증 과정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06).

가정내 보육서비스가 비공식보육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수의 아동들이 이러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그러나 몇몇 조사결과를 보면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육방법은 친척에 의한 비공식 보육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1997년도 조사에 의하면, 공립이나 사립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5세미만 유아의 약 70% 정도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보육되고 있으며(non-parental care arrangement), 이들의 수치는 대략 1,240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육방법은 친척에 의한 보호 25.8%, 부모 22.3%, 보육시설 21.7%, 가정보육 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VI-2-3 참조).

〈표 VI-2-3〉 5세미만 유아의 보육형태

단위: %

보육유형	가정내 보육	친척에 의한 보호	가정보육	보육시설	부모	기타	계
비율	4	25.8	18.1	21.7	22.3	8.1	100

자료: 김지은(2003).

〈표 VI-2-4〉 취업모 아동의 보육형태 (5세 미만, 2002)

단위: %(명)

	계	농촌	도시
이용률 <sup>1)</sup>			
부모	28	27	29
친척	36	37	35
비공식, 비친척 보육	21	25	20
시설보육	32	31	33
주로 이용하는 보육형태 <sup>2)</sup>			
부모	21	20	22
친척	25	26	24
비공식/친척외 보육	18	21	17
시설보육	25	23	25
기타/정기적인 이용이 없음 <sup>3)</sup>	11	10	12
(수)	(10,193)	(2,307)	(7,886)

주 1) 모든 종류의 보육형태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중복응답이므로 합이 100%를 넘음

2) 주로 이용하는 보육형태라 함은 주당 가장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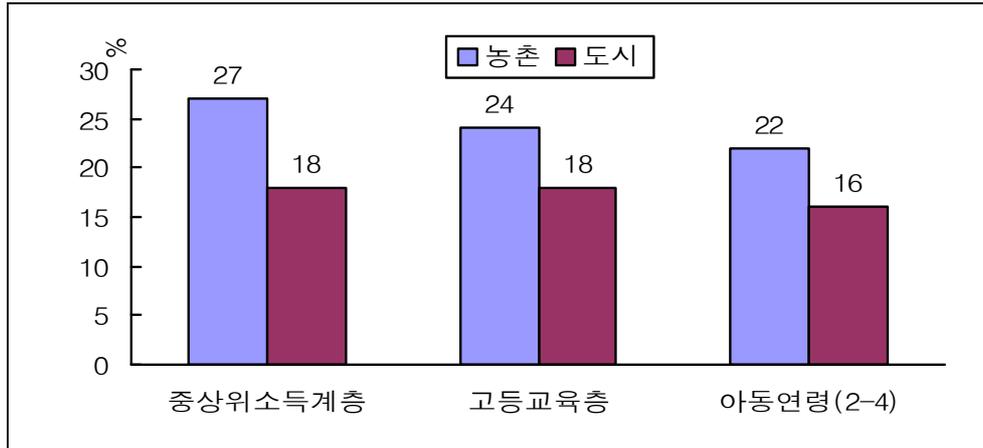
3) 기타에는 아동 혼자 지내는 경우도 포함됨. 정기적인 이용이 없는 경우란 일정한 이용 형태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 2001 SIPP, Wave 4 data, Smith, 2006에서 재인용

또한, 취업모의 5세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보육형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의 경우 친인척보육 이용률이 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설보육 31%, 부모보육 27%, 비공식/비친척 보육 25%의 순으로 나타난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친인척보육이 가장 높고, 시설보육, 부모보육, 비공식/비친척 보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로 이용하는 보육형태는, 역시 친인척보육이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취업모의 주양육 방법이 친인척에 의한 비공식 보육임을 알 수 있다.

1997년의 경우에도 취업부모의 5세미만 아동 1,11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44% 이상이 조부모나 친인척들에 의해 보육되고 있었으며, 15%가 친인척이 아닌 개인, 그리고 13%가 인가된 가정보육시설(licensed family child care homes, FCCHs)에서 보육되고 있었다(Smith, 2002, Fuller etc, 2004에서 재인용). 미시간 주의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시간 주에서도 2000년 현재 취업모 어린이의 약 40%가 친인척 등에 의해 보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31)</sup>. 결과적으로 미국의 보육현황은 주로 친인척에 의존

하는 비공식 보육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중상위소득계층은 빈곤선 200% 이상으로, 고등교육층은 대졸이상,교육 이수로 정의하였음.  
 자료: 2001 SIIP, Wave 4 data, Smith, 2006에서 재인용

[그림 VI-2-1] 비공식 보육사용율(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아동연령별)

한편 비공식 보육의 사용현황을 소득수준, 교육수준, 아동연령별로 살펴보면, 중상위 소득계층에서, 고등교육층에서, 2~4세 아동연령대에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농촌지역에서 접근가능한 시설보육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VI-2-1 참조).

#### 다. 가정보육모의 자격 및 관리<sup>32)</sup>

미국의 가정보육모는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졸 학력을 가진 가정보육모는 드물다. 현재 가정보육모들이 보육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받은 교육은 공식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컨퍼런스나 워크숍 참여와 같은 비공식적인 교육형태이다. 미국의 가정보육모들은 그들의 보육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식적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31) <http://www.michiganinbrief.org>

32) 이옥 외(2004) pp.185-190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따라서 일률적인 가정보육모 자격관련 규정은 없으나,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의 표준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ruissen, 1993).

〈표 VI-2-5〉 가정보육모 면허취득에 필요한 기본규정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또는 19세) 이상의 연령</li> <li>·응급처치사 자격</li> <li>·두 명의 신원보증인의 보증서</li> <li>·내과 의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 진단서</li> <li>·가정보육모 면허 신청자 자신과 가족원 모두에 대한 지방경찰의 범죄기록 및 아동학대</li> <li>·사실 관련 기록검토와 참고인 조사승인 서류에 서명할 것</li> <li>·신청자의 가정시설과 설비의 건강, 안전, 위생에 대한 검사에 합격할 것</li> <li>·아동교육, 아동발달 및 관련과목에 대한 20,30.45 또는 6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li> </ul>
--

가정보육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안으로는 정기적으로 가정보육모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정보육모들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현재 수백 개의 지역에 주 수준의 가정보육모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가정보육모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주요 사업내용은 가정보육모 연합체 구성, 가정보육모의 참여에 인센티브 제공 사업, 가정보육모 컨퍼런스 지원, 가정보육모 연수교육 훈련지원, 가정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부모의 보육유형 선택 지원사업 등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약 31개 주에서 가정보육모 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 13개 주가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개 주에서는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며, 면허와 등록제도 중 선택하도록 하는 주도 있다. 가정보육모에 의한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정부 등 관련기관의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서문희 외, 2002). 한 연구에 의하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은 저소득층 여성들은 이 시간대에 이용이 어려운 시설보육 대신 가정보육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용하는 가정보육의 서비스 질이 낮다는 우려가 보고되고 있다(Fuller et al., 2004).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 민간단체인 전국가정보육협회(NAFCC: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Family Child Care)가 구성되어 가

정보육모의 훈련 및 교육 등을 담당하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는 이 단체에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보육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아동발달연합(Child Development Associate: CDA)에서 부여하는 자격인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정보육모에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① 18세 이상일 것, ② 고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유할 것, ③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를 것, ④ 친인척 관계가 아닌 5세 이하 어린이를 최소한 2명 이상 보육할 것, ⑤ 5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일한 경험이 최소한 480시간이 있을 것, ⑥ 아동행동의 관찰과 기록,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원리, 건강과 안전, 사회정서 발달의 증진, 신체와 인지발달의 증진, 가족관계, 개인과 집단관리, 직업정신 등 8개 영역에서 각각 최소한 10시간씩을 포함하여 120시간의 공식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등이다. 이러한 교육은 대학을 포함하여 교육대행기관, 직업학교 등에서 공식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 라.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내 가정보육 서비스

헤드스타트의 목적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조기교육을 지원하여 이들의 인지발달과 사회정서적 발달을 돕는데 목적을 둔다. 즉 정부는 빈민아동의 조기교육에 공공재원과 세금정책으로 지원하며, 주로 빈곤아동의 사회경제적, 인적자본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보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1964년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 의해 196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0~5세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 학습기술, 건강 및 영양상태 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다. 대상 아동은 90% 이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10% 이상을 장애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홍승아, 2006).

특히 1995년부터 시작된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의 경우, 임신과 출산기간, 그리고 만3세까지의 영아와 부모에게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가정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기 헤드스타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조기 중재와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영아와 가정에 중요한 장기적 효과를 줄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정방문 보육활동은 영아와 그 부모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지지하기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기 헤드스타트에서 가정방문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와 영아-부모간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지지하며 이때 부모가 지닌 견해를 수용

한다. 둘째, 영아발달을 지지하며 가정의 일상에서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 훈육방법을 제안한다. 셋째, 영아기 발달단계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며, 영아의 기질, 학습성향, 흥미에 따라 개별화된 경험 제공 방법, 영아의 행동관찰 방법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넷째, 동생이 태어나는 등의 가정환경 변화에 대한 가족의 대처 방법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걸음마기 영아에게는 일상 속에서 엄마와 함께 옷을 입거나 목욕하는 법, 밥을 먹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래, 동작, 손유희 활동 등을 제공한다. 여섯째, 장애아 전문가나 조기 중재프로그램 제공자와 상담하여 각 가정의 장애 영아와 그의 가족에게 보조기구, 보조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한다(김명순·이미화, 20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내 가정보육 서비스는 보육 서비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담, 놀이교육 등을 통하여 아동발달을 지원하는 보조프로그램의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

#### 마. 소결

미국은 취업모의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로, 이들의 보육욕구 역시 매우 높지만, 사회적인 보육지원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보육이용 유형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모들의 자녀양육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친척 및 제3자에게 맡기는 방법, 그 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별적인 방식으로 보육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장화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은 빈곤가족과 비빈곤가족 간에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어, 비빈곤가족에서 보육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에서는 가정보육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인가서비스와 비인가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통제나 관리를 받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 등 다양하고 이질적인 서비스들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도 너무나 다양하다.

그렇지만 미국의 가정보육서비스는 시설보육서비스의 보완으로서가 아니라 시설보육의 대안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공급이 과도하게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들이 혼재해 있는 현실에서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 3. 일본

#### 가. 보육정책 개요

일본의 보육제도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3가지 원칙 하에서 발달되었다. 첫째 국민의 보육받을 권리를 규명하며, 둘째 보육의 내용은 국가가 기준을 세워 보장하며, 셋째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sup>33)</sup>. 이러한 원칙 하에서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운영비 전액을 보조하는 인가보육소와 인가의 보육소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미인가보육시설로는 가정보육, 베이비호텔, 사업장보육소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06).

인가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기반하여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sup>34)</sup>, 설치도 국가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인가 보육시설 중 58.3%가 공영 보육시설이고 41.7%가 민영 보육시설이지만 민영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만이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정민자 외, 2006). 중앙정부 예산의 86.1%가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은 주로 인가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인가보육시설의 경우 공립과 법인시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된다. 공립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체제이고, 비영리법인은 위탁을 하는 형태이다. 또한 공립보육시설의 교사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취업모 중심의 선별적 보육정책을 고수하고 있는<sup>35)</sup> 일본의 인가보육시설은 2006년 12월 현재 22,624개소로 공립시설보다 사립시설이 다소 많다. 보육 아동수는 공립시설과 사립시설이 각각 1,006,544명, 1,111,535명으로 모두 2,118,079명이다. 사립시설은 대부분이 법인보육시설이다. 인가시설 이외에 베이비호텔, 보육실 등 인가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외 3,389개소의 사업소 내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47,77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표 VI-3-1 참조).

33) 현실적으로는 국가비용부담의 원칙이 무상보육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육 비용은 대략 부모 1/2, 중앙정부 1/4, 시정촌 1/8, 도도부현(우리의 시도) 1/8 정도로 분담하고 있음.

34) 시설과 보육환경에 대한 최저기준을 충족하면 인가시설이 됨.

35)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육소 입소 우선순위를 고려하기 위한 기본요인으로 출퇴근근무, 재택근무 등 부모의 취업과 개호가 필요한 가정 등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표 VI-3-1〉 일본의 보육시설 및 아동규모

단위: 억엔, %

구분	인가			인가외		사업소
	공립	사립	전체	베이비호텔	기타	
시설수	11,752	10,872	22,624	1,620	5,558	3,389
아동수	1,006,544	1,111,535	2,118,079	30,640	149,108	47,775

자료: 일본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편(2007). 보육백서.

한편 일본의 보육서비스는 저출산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발달되어온 특징을 갖는다<sup>36)</sup>. 일본에서는 저출산의 주요한 대응책으로 “보육의 국가지원”으로 진단하고 1994년 엔젤플랜을 시작으로 하여 1998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1999년 신엔젤플랜, 2003년 차세대육성계획에 이르기까지 보육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보육시설을 확대, 증축하여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고, 보육시간을 연장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시보육, 휴일보육을 확충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하였다.

특히 2003년 차세대육성추진법 제정이후 자녀양육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대기아 제로작전, 영아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 일시보육 등 특별보육의 활성화, 인가보육시설의 확대” 등이 주요과제로 추진되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별로 다양한 보육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즉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일반적인 아동양육 기능 외에 양육지원을 위한 특별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연장보육, 장시간 연장보육, 일시보육, 영아보육, 지역양육지원사업, 보육원 지역활동사업, 장애아 보육대책 사업, 가정지원추진보육사업, 휴일 보육사업 등이 있다. 유형별 보육서비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2004).

### 1) 영아보육

0세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3:1이며, 0세아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인가 보육시설은 많지 않다. 특히 공립에서의 실시가 눈에 띄게 적다. 인가보육시설(1998

36) 일례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보육료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다. 2자녀인 경우는 1/2, 3째부터는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년 10월 현재)에 입소해 있는 0세아는 전체의 2.1%이며, 1세아는 전체의 8.5%에 지나지 않는다. 0세아 보육을 실시하더라도 입소는 6개월이 지나서부터 또는 8개월부터 받아들이는 등 제한이 있고, 정원을 미리 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일본 정부가 영아보육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같이 영아보육율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보육시설 정원이 신학기가 시작하는 4월에 거의 차버리기 때문에 산후휴가나 육아휴직 후에 보육시설에 도중 입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아는 인가와 보육시설, 특히 베이비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후생노동성은 영아보육의 확대를 위해 분원의 설치 정원 20명 이하, 0~2세아까지, 가정보육모 도입 등을 허용하고 있다.<sup>37)</sup>

## 2) 연장보육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보호자의 근로시간과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육시설의 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연장보육의 대상아동은 시정촌이 오후 7시경까지 보육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아동으로서 보육단가의 10%를 보육시설 운영비로 가산해 주고 보호자에게는 소득에 따라서 연장 보육료를 징수하게 된다.

## 3) 일시보육

1990년 일시적인 보육과 보호자의 간병 등에 의해 긴급한 경우 보육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는 비형태적 보육서비스 사업, 긴급보육사업의 두 가지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1996년부터 개인적 이유에 의한 보육서비스 사업이 추가되었다. 일시보육의 사업의 실시주체는 시·정·촌이며, 보호자 부담은 1/2로 책정되어 있다.

비형태적 보육서비스는 보호자의 근무형태에 의해 가정에서 보육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보육서비스로, 원칙적으로 주 3일을 한도로 보육을 시행한다.

긴급보육사업은 보호자의 병, 입원, 간호, 노인부양, 관혼상제 등으로 인하여 긴급, 일시적으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이다.

개인적 이유에 의한 보육서비스는 보호자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보육서비스로 장애아와 지역아동의 체험입소 등도 포

37) 급식은 본원에서 보낼 수 있음.

합된다.

#### 4) 아픈 아이의 보육

병에서 회복되는 아이를 위한 보육으로 시설방식과 방문방식 두 종류가 있다. 시설보육에는 하루 이용정원 4명(종사자는 상근 간호사 1명과 비상근 보육사 1명)의 형태, 이용정원 2명(상근적 비상근 간호사 1명)의 형태, 그리고 상근 종사자를 두지 않는 형태 등이 있다. 방문방식은 보육시설과 병원의 빈방, 또는 아동의 자택으로 비상근 간호사를 파견하여 보육을 실시한다.

#### 5) 휴일보육

일요일, 기념일 등 휴일에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휴일보육을 실시한다. 2006년 현재 960개소가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간은 7시 반에서 18시 반, 대상은 구내 거주자로 이용료는 하루 2000엔이다. 비상근 보육사 1명 외에 공립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윤번제로 보육을 한다.

#### 6) 장애아 보육

장애아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매일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으며, 집단보육이 가능한, 보육을 잘 받을 수 없는 환경의, 중정도의 장애아로 되어 있다. 정부의 지원대상은 특별 아동부양수당의 지급대상 장애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경증 장애아와 학습 장애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 7) 가정보육

가정에서 소수의 아동을 돌보는 보육형태를 말하며, 보육하는 사람을 가정보육모라고 부른다. 보육시설에서의 영아보육이 부족하고, 입소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급되어 왔다. 영아를 시설보육이 아니라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르고 싶어하는 보호자들, 특히 영아보육을 위한 선택으로 널리 활용된다.

가정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후생노동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① 자격은 보육사 또는 간호사이며, ② 보육자의 자택에 전용 보육실을 설치할 것, ③ 보육하는 아동은 3명 이하일 것, ④ 보육시간은 9시간으로 연장보육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 ⑤ 보육시설과 연계를 가질 것이다.

또한 가정보육모와 연계되어 있는 보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① 가정보육모의 등록을 받고, ② 가정보육모 신청 대행을 실시하고, ③ 시·정·촌이 보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가정보육모를 알선하고, ④ 가정보육모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⑤ 가정보육모가 휴가를 내는 등의 경우에 대신해서 보육을 실시한다.

### 8) 특수보육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 등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보육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세미만아를 대상으로 2~3일 정도, 또는 오전이나 오후에 한정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이다. 보육의 실시장소는 보육 전용방 외에 공공시설의 빈방 등이라도 가능하다. 보육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보육이 실시될 경우는 보육시설의 보육사가 그곳에 나가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경우 시·정·촌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양을 고려해서 부담액을 정한다. 일시보육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아동의 요건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긴급하게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에는 일시보육의 이용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예상되었던 긴급한 일에 관해서는 특수보육과 일시보육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9) 자녀양육지원사업

아동복지법에서는 보육시설이 지역 주민에 대해서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 부모의 다수가 핵가족에서 성장하고 아이들을 접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육시설이 지역의 양육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육시설만으로는 지역의 자녀양육 요구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보건소, 병원, 아동복지시설, 아동회관, 유치원, 학교, 아동상담소, 그 외 아동과 관계되는 모든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의 자녀양육지원센터는 2004년 현재 2,783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4,40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내용은 육아상담 활동, 자녀양육 모임 등의 활성화와 지원, 특별 보육사업의 실시,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가정보육을 실시하는 보육복지원에의 지원 등이다. 종사자는 2명(지도자와 담당자 각 1명)이 배치된다. 1998년부터 시정촌의 실정에 따라 종사자 1명

(지도자)만의 배치로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형 자녀 양육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있다.

〈표 VI-3-2〉 주요 자녀양육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2003년 예산
시설	일시보육	·보호자의 취업형태, 병, 입원, 사적인 이유 등으로 긴급, 일시적인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	24.3
	특정보육	·주 2,3일 정도 혹은 오전이나 오후만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14.9
	긴급일시보호	·보호자의 병 등으로 아동의 보육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진 경우의 단기간 보호	
	아픈 아이 일시보육	·병회복기에 있는 영유아를 보육소, 병원, 아동의 자택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11
	방과후 아동보육	·보호자가 노동 등으로 인해 낮 시간에 집에 없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74.3
재택	가정방문보육	·아동양육에 불안이나 고민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인을 파견하여 육아상담지원	0.2
	일시보육 (파견형)	·산후 건강상태 등의 문제로 가사나 육아가 곤란한 핵가족 가정에 보육사 등을 파견하여 어머니나 아이를 돌보고 보육	11
	가정보육	·보육자의 자택에서 3세미만의 아동 보육	6.3
	지역아동 양육지원센터	·아동양육가정의 육아상담, 육아서클 등에 대한 지원	47.1
상담 지원	패밀리서포트 센터	·육아원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과 육아원조를 행하고 싶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조직을 통해 보육소까지의 송영, 귀가후 원조 등	25.5
	교류방	·주로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1.5
	아동커뮤니케이션교류	·아동관에서 부모자녀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식사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프로그램을 전개함으로써 자녀와 부모의 커뮤니케이션 기회 제공	2.8
	아동등건강지원	·육아불안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요경과관찰”인 아동의 부모에 대해 건강센터 등에서 필요한 지도	5
조정	아동양육지원 종합 코디네이터사업	·지역에서 다양한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정보를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아동양육지원 종합코디네이터”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케이스관리 등의 지원	10

자료: 차세대육성지원대책연구회(003:744-5), 여성가족부, 2005에서 재인용

일본의 보육정책의 주요한 특성은 단순히 보육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녀를 양육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며, 자녀양육에 따른 불안과 부담감을 경감하는 문제도 중요한 서비스로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자녀양육지원체계는 ① 시설에서의 아동양육 지원사업, ② 가정에서의 (재택) 아동양육 지원사업, ③ 상담지원사업, ④ 서비스 조정사업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 나. 가정내 보육서비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보육제도는 인가보육시설 등의 시설보육형태의 집단보육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보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지금까지의 시설보육을 보완하는, 또는 대체하는 서비스로서 재가보육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가정보육서비스는 재가보육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실시·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명칭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며, 공통된 정의는 물론, 보육의 규정, 규모도 일정하지 않다(서문희 외, 2002b).

일본의 가정보육제도에는 가정복지원, 가정보육복지원, 주간위탁모, 가정보육실·소, 아기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보육소 등 시설형의 집단보육 등과는 달리 보육자의 집 등에서 소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정형”의 보육형태를 총칭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으로서 요강, 규칙, 조례 등이 존재하는 것을 “가정보육제도”라 칭한다.

가정보육모는 시정촌장의 인정을 받은 보육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가정보육모 자신의 집에서 3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단, 가정보육모가 보조자를 고용하여 2명이 보육하는 경우에는 5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다. 가정보육모는 시정촌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계를 도모할 보육소 등을 지정받고, 해당 연계보육소에 등록해야 한다. 가정보육모의 자격요건으로 일본 후생노동성의 <실시요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서문희 외, 2002b).

- 보육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단, 보조자에 대해서는 연계보육소 또는 시정촌이 실시하는 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 한하지 않는다.
- 보육의 장소는 가정보육모 자신의 집으로 한다.

- 보육하는 아동의 수는 3인 이하이다. 단, 가정보육모가 보조자를 고용하여 2명이 보육하는 경우에는 5인 이하로 한다.
- 보육시간은 대략 9시간으로 하고 연장보육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야간형에 대해서는 대략 낮부터 밤 10시까지 9시간으로 한다.
- 아동보육을 하는 전용방이 있는 경우: 아동보육을 하는 전용방은 면적 9.9 평방미터이상이며, 채광 및 환기의 상황이 양호해야 한다. 단, 3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3인을 초과하는 아동 1인당 3.3 평방미터를 가산한다.
- 위생적인 조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집의 대지 내에 아동이 놀이를 할 수 있는 넓이의 마당이 있든지, 혹은 부근에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공원, 공터, 절과 신사경내에 개방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현재 양육하는 취학전 아동 또는 개호가 필요한 자가 없어야 한다.
- 야간형 가정적 보육을 행하는 경우에는 긴급시의 대응에 보육자 가정의 협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가정보육의 대상은 매일 보육을 받을 수 없는 3세미만의 저연령아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간형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도 무관하다. 또한 당해에 3세에 달하는 경우는 해당 연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가정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현황을 보면, 출산휴가 종료후인 생후 6~8주간 동안이 가장 많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탁아의 약 3/4이 “3세미만”이며, “3세이상을 포함”하는 경우는 약 10%이다.

보육시간은 오전 8시 혹은 8시 30분, 종료시간은 오후 5시 혹은 6시이며, 보육시간도 대부분 8~9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는 65% 정도이며, 많은 경우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의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조 및 심야의 시간대까지 연장보육을 설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서문희 외, 2002b).

#### 다 패밀리 서포트 센터(family support center)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일종으로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 패밀리 서포트 센터를 통한 육아지원 서비스이다. 패밀리 서포트 센터의 설립운영은 상호협조 활동을 하는 회원조직으로 운영된다. 육아에 대해 원조를 의뢰하고 싶은 사람과 원조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이 회원으로 등록한 후 회원들이 서로의 육아를 지

원하는 사업이다.

패밀리 서포트 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취업여성의 급한 잔업이나 전업주부의 급한 용무시 요구되는 임시적, 일시적 보육요구에 대응하는 등, 기존의 제도나 체제하에서는 도저히 충족하기 어려웠던 보육요구를 지역내 주민들의 상호협조 활동을 통해 유상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후생노동성에서는 Family Support Center 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센터 이용방법은 육아원조를 필요로 하는 회원과 육아원조 제공회원은 모두 패밀리서포트센터의 구조와 규칙을 이해하기 위한 단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공회원은 당해 지방 내에 거주하는 자로 자택에서 자녀를 맡아 보호할 수 있는 자로서<sup>38)</sup>,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약 18시간의 강습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강습내용은 아동의 심리, 아동의 신체와 병, 아동의 안전과 응급처치, 상호원조활동 등에 관한 것이다. 의뢰회원은 당해 지방 내에 거주하는 생후 3개월부터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장소는 제공회원의 자택을 원칙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05).

현재 시·도·현 뿐 아니라 시·정·촌에 460개의 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또는 직영의 형태로 운영한다. 특히 육아종합센터나 자녀-가정지원센터를 두고 가정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하기관으로 패밀리서포트센터를 운영하고, 가정보육모를 교육하여 가정내 육아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정에 파견하고 있다(서문희 외, 2002a).

육아지원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원조를 제공해 주는 회원의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른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숙박은 하지 않는다. 이용요금은 통상시간 대에는(7:00~20:00) 시간당 800엔이며, 통상이외의 아침시간이나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는 시간당 900엔으로 정해져 있고, 아이가 아픈 경우에도 시간당 900엔을 지불해야 한다.

패밀리 서포트 센터의 주요 원조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옥 외, 2004).

- 주로 보육소나 유치원 등이 시작되기 전이나 종료후 자녀를 돌봄
- 보육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등, 하원을 도와줌
- 방과후 아동건강육성활동의 종료이후 아동을 돌보아 줌
- 자녀가 아플 때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경우 임시적으로 돌보아 줌
- 보호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일어난 경우(간호, 질병, 관혼상제 등) 틈새시간에 자녀를 돌봄

38) 자격이나 경험, 남녀 불문.

- 회원이 일과 자녀양육이라는 두가지 일을 하기 위해 원조가 필요한 경우
- 기타 필요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자녀양육을 지원해 줌

## 라. 소결

일본의 가정내 보육서비스는 프랑스나 미국의 제도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갖는다. 프랑스에서는 가정내 보육서비스가 전체 보육정책의 전환과정에서 고용정책과 맞물려 제도화를 확산해 나가는 대안적 보육서비스로 자리잡고 있고, 미국은 공보육의 부족현실에서 다양한 제도의 일부로 상당한 보육수요를 담당하고 있다며, 일본의 가정보육서비스는 공보육서비스의 보완적 성격으로서의 역할이 강하다. 연장보육, 일시보육, 휴일보육, 아픈 아이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로서 보육수요에 맞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이들 서비스로서도 충족되지 못하는 보육욕구에 대한 대안적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보육시설 시작 전이나 종료후, 보육시설 등하원 서비스, 보육시간외 지원, 방과후 아동의 보육, 부모의 급한 용무나 잔업 등의 비상사태, 그 외 아이가 아픈 경우 등에 이용가능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시설보육이 충분하지 못한 일본에서는 가정보육모제도가 인가보육소의 보육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보육모를 통해 가정내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과반수 이상이 출산휴가 종료 후인 생후 6~8주 영아가 있는 가정이었다는 점을 보면 가정보육모제도의 역할을 잘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가정내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집으로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자의 집에서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2 '기타의 적절한 보호'의 일환으로서 소규모 가정보육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으로 가정보육모 관련요강, 규칙, 조례 등이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가정보육이 지원되고 있다(이옥 외, 2004).

한편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패밀리서포트센터를 통한 파견보육서비스는 회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내 유상 자원봉사자를 아동의 집으로 파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가정내 보육서비스는 보육자 집에서 제공하는 형태와 아동의 집으로 파견하는 형태 두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서비스는 기존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라는 노력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정보육서비스가 정부의 시설보육서비스의 확충노력을 배제시키거나 방기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시설서비스의 보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다.

## VII. 정책 제언

### 1. 정책의 기본방향

육아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시설서비스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과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한다.

첫째, 육아지원정책의 관점을 시설서비스 중심의 보육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 동안 정부의 육아자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국한되어 왔다. 최근에 농림부나 지방정부가 농어민 여성 지원 또는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중앙정부 육아정책의 방향은 시설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다. 먼저 어린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층 어머니의 취업률은 일반가구보다 더 높다. 또한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하는 정형화된 근로 이외에 시간제, 야간근로 등 근로시간대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서 보육서비스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한 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가 달라지고 있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더욱 더 요구된다.

### 2. 주요 정책 방향

#### 가. 보육시설 기능 강화

##### 1) 취약보육의 강화

보육시설에서 취약보육 기능이 약하므로 취약보육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한다. 휴일보육과 시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은 취업모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중 휴일보육과 24시간 보육의 경우 근무가 24시간동안 상시로 진행되는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우선 실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간연장보육은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대도시 주변의 소도시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한다. 시간연장보육과 휴일보육은 일반 아동도 필요하지만, 농번기와 같이 특정 기간 동안 기준보육시간외 보육이 요구되는 지역 또한 우선 강화 대상이다.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및 방과후보육은 지역사회내 이들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을 우선 파악하여,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장애아와 방과후 보육은 보육시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하다.<sup>39)</sup>

한편, 시간제(일시)보육은 주로 취업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특정한 시간대에 요구되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취업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일부 국공립시설을 거점형 보육시설로 지정, 설치하여 취약보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2) 포괄적 서비스 실시

포괄적 보육은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삼성어린이집의 사업과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의 시범사업의 내용과 일관되게, 아동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련사업,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아동지원사업은 경제적인 문제, 사회,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보육시설 부적응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가족지원사업의 경우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역사회 관련 서비스는 지역내 각종 유관 기관과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여 보육시설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체제를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보육시설 내 종사자에게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육교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고, 보육교사 자신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보육시설에서 주로 실시되어왔다. 이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저소득 가정 영유아가 집단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 집단이 사업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지역에도 나름의

39) 장애아보육의 경우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 특수학급, 장애인복지관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또한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의 지역내 활성화 정도가 고려되어야 함.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제공되어왔던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 실시하되 그 외 지역에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지역의 서비스 내용이나 접근은 다소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저소득층 지역의 보육시설에서는 아동이 제한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자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와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아동 및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기타 일반 지역에는 거시적 지역사회의 특성보다는 특별한 욕구를 가진 개별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별도 투입되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위에서 설명된 4개 영역의 서비스, 또는 그 이외에 특화된 사업을 지역특성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지자체가 판단하는 지역의 보육시설에는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를 지원하여야 하고, 그 이외 국공립보육시설에도 포괄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지역에는 한 국공립보육시설에 전담 사회복지사가 상시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일반 지역의 경우는 소수의 특정 아동 및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기본이 되므로, 한명의 사회복지사가 주변에 위치한 3~4개의 보육시설을 순회하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약보육은 국공립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수요의 산재성, 간헐성 등 특성을 감안하여 모든 시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시설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용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내 일정한 수의 시설은 지역사회 거점형 시설로 이러한 기능을 집중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나. 가정내 보육지원 방안 마련

보육서비스의 공급이나 이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시간연장형 보육을 포함하여 시설보육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하여도 다양한 부모의 요구는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

가정내 보육지원은 보육정책의 주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시설보육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 대상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가정내 보육서비스 기회를 확대한다. 보육시설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총량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아의 부모들은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많다.

가정내 보육서비스는 시설보육과는 보완관계이고 또한 대체관계이다. 대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아동,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이 있고 또한 부모의 근로형태가 비정형적이거나 야간 작업이 많을 경우 등으로 시설보육이 취약보육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 중 이러한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아이의 연령이나 기질 특성 상 단체보육보다는 개별서비스를 희망하는 아동이 있다. 다음으로 가정내 보육이 시설보육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예로는 방과후 보육,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휴일보육 등의 사례가 있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만, 기관 이용을 전후하여 성인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 등이다.

## 2) 보육도우미

### 가) 보육도우미 자격

보육도우미는 소정아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관련 사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자격을 인증 받은 자로 한다. 이들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교육을 통하여 인증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도우미는 저소득층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보육도우미의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하되, 준고령 여성도 심신이 건강하면 도우미로 자격 부여가 가능하다.

### 나) 보육도우미 교육

자격 부여를 위한 교육은 단 기간의 교육과 별도의 실습으로 구성한다. 교육내용은 영아발달, 안전관리와 응급처치기술, 위생과 질병관리, 식생활 관리 등,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참조하되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다.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 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보육서비스는 종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수용한다.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아이의 집을 우선으로 한다.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우미의 집도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도우미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수를 최소 2인으로 제한한다.

가정보육도우미 이용시간 및 비용은 시간제, 종일제, 월 단위 등 다양하게 설정한다.

#### 라) 보육도우미와 아동 보호

보육도우미의 근로자로서의 보호는 현재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사업처럼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체에서 보육도우미를 고용하고 근로자로서 보험 등을 보장해 주기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보호단계에 머물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육도우미와 아동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이 비용은 정부가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아동가정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외 도우미를 위한 활동지침을 마련하고 아동을 위한 도우미와 부모의 지침을 마련하여 도우미와 부모가 지키도록 하여 도우미와 아동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한다.

### 3) 보육도우미 사업체

보육도우미 소개업의 주체는 정부 및 정부로부터 사어울 위탁 받은 사업체이다.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 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유사 지역사회 지원기능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구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위탁 사업체로 지정하고, 이 곳에서 ① 보육도우미를 등록하여 교육받도록 하고, ② 가정과 연계하여 보육 기능을 실시하고 ③ 도우미 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하며 도우미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또한 도우미를 지원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보편적인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는 적어도 동 단위로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우선은

도시를 중심으로 시군구에 1개소를 목표로 한다. 보육도우미 사업체에는 상근자 1인 이상이 필요하고, 직무 관련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상담이나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공간, 교재교구 수납공간 등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

#### 4) 사업체 협의체

가정에 보육도우미 소개, 파견 사업을 하는 관계자로 구상된 협의체를 둔다. 이 협의체에서 보육도우미를 공동으로 교육하고, 보육도우미를 인증하는 기능을 한다.

이외에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담당한다. 특히 보육정보센터에서는 구체적 보육내용을 지원한다.

#### 5)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부가 실시하는 보육도우미 위탁 사업체의 최소의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여기에는 보육도우미 상해보험, 아동배상보험 등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자 인건비가 포함된다.

두 번째로는 보육도우미 이용에 소요되는 부모 부담 비용을 차등보육료 형태로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여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 중심으로 부모의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가 인증하는 보육도우미와 같은 개별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영아에 우선 적용하고 차상위 이하 소득계층 아동부터 우선 실시하는 방안 검토한다.

### 다.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 확대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러한 기능은 부분적으로 보육시설이나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부모들의 인지도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현재 서울특별시의 육아 플라자, 여성가족부의 육아 휴게실의 기능을 포함하되 공간을 보다 확보하여 부모 상담은 물론 부모와 아동이 함께 와서 다양한 놀이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등의 오프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하도록 한다. 이는 미취업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최근 중앙정부 예산 당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적 상태를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실제 저소득 가정이 겪고 있는 영유아 보육의 실태, 문제점,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재가 가정 보육 인력 파견사업의 제도화 필요성 및 제도화 방안 모색 등 저소득층 부모들의 보육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된 저소득가정은 한 부모 가정이 많고,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서도 제한을 갖게 된다. 즉, 저소득층 아동은 비용이나 단순 보육 이외에 가정환경에서 오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다.

우선은 기존 보육시설의 기능 확대하여 포괄적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고, 야간 보육, 방과후 보육 등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근로형태를 가진 저소득층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저소득층일수록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다. 초등학생의 경우도 방과후에 그냥 집에서 보낸다는 응답은 22.0%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보육뿐 아니라 정서나 건강은 물론 그 부모와 가정까지도 포괄적인 보육사업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부모들도 개인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러한 수요는 보육시설과의 대체관계 및 보완 기능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보육정책이 기관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부모들의 근로형태가 다양하고 이에 따라 보육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관 서비스만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현재는 베이비시터 등에 의한 가정내 보육이 높은 비용 때문에 중산층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지만 보육서비스의 일종으로서 보편적 요구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개인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보육정책은 시설보육 중심이었으나, 이제 가정내 보육도 정부의 정책 대상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명순·이미화(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아동보육 프로그램. 다음세대.
- 김승권(2001). 출산력과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김지은(2003). 미국의 보육제도 체계와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32집.
- 나정 외(2005). 2004년 전국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 나정 외(2001). 유아교육 투자 우선지역 선정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 나정·김미숙(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영유아교육과 보육실태 및 요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기백·김현숙·김우철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분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호: 459-479.
- 백선희·김교성(2001). 아동보육사업 재정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지원방식 연구. 보육 발전기획단 공청회 자료.
- 변용찬 외(1998).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에 관한 영유아보육제도 평가.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2000). 외국 가정보육제도의 정책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00. 6/7.
- 서문희 외(2002).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2-53.
- 외(2002a). 영리보육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외(2002b).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나정·최혜선(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지원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성지미 외(2006). 여성친화적 사회적 기업 설치를 위한 연구. 노동부.
- 이옥 외(2004). 가정보육교사제도시범실시를 위한 연구. 여성부.

- 장혜경 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정민자 외(2006). 가정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한지혜(2002). 프랑스에서의 가족지원 및 영아보육제도. 교육이론과 실천. 12권 1호.
- 홍승아(2005).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프랑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2005-2.
- (2006). 미국의 보육정책: 시장화 전략과 잔여적 보육정책. 여성연구. 2006-1.
- 여성가족부(2004). 선진국 보육정책 실무연수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자료실.
- (2005). 가족지원 서비스 연수보고서. 여성가족부 자료실.
- (2006). 일본 보육정책 출장보고서. 여성가족부 자료실.
- 이은혜, 이미리, 박소연(2006). 아동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혜영 외(2002).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선정지원을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재택 외(2004).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Bronfenbrenner, U.(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pp. 723-742.
- Bubolz, M., & Sontag, S.(1993). Human ecology theory. In P. Boss, W. Dorherty, R. LaRossa, W. Schumm,, & S. Steinmetz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pp. 419-447). New York: Plenum Press.
-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2006). *What Providers Should Know about Child Care Assistance for Families*.
- Eurostat(2004).
- Fagnani, J.(2003). Supporting Working Parents in France: Is Family Policy at a Turning Point?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Population)*. 1(1).
- Fagnani, J.(2004). France. in M. Fine-Davis etc. (ed.). *Fathers and Mothers:*

- Dilemmas of the work-life balanc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Fagnani, J.(2005). "Child Care and Caring Time Policies in France: Old Challenges, New Tensions". Child Care in a Changing World. Workshop 자료
- Fuller, B. et al.(2004). Child care quality: centers and home settings that serve poor famili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
- ILO(2004). "Government Programmes in France: National Family Allowance Office".  
www.ilo.org
- Letablier, M-T.(2003). *Fertility and Family Policies in Franc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Supplement to Vol.1.
- Lincoln, Y., & Guba, E.(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 Martin, C. A. Math, & E. Renaudat(1998). Caring for very young children and dependent edlderly people in France: Towards a Commodification of social care?. in J. Lewis (ed).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Aldershot. Ashgate. pp.139-174.
- MIT Center for Work, Family & Personal Life
- Morgan(2002). Does anyone have a "Libre Chiox?": Subversive 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French Child Care Policy. in S. Michel and R. Maho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N. Y.:Routledge
- Morgan(2003). The politics of mothers' employment: France in comparative perspective. *World Politics* 55(2): 259-291
- OECD(2001). *Start Strong 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Pruissen(1993).
- Silvera, R. (2004). Gender Impact Assesment & the Employment Strateg-y in France. *EC's Expert Group on Gender and Employment*.  
www.2umist.ac.uk.
- Smith, K. (2006). Rural Families Choose Home-Based Child Care for their Preschool-Aged Children. *Carsey Institute. Policy Brief* no.3.
-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U.S. House of Representative (2004). *Green Book*.

<http://ec.europa.eu>

<http://www.childcaringinachanginaworld>

<http://www.health.nsw.gov.au>

## 부록

1. 부록표
2. 조사표



부산								
전체	23.2	39.0	1.7	0.6	2.3	1.7	31.6	100.0(177)
0세	-	-	-	-	-	-	100.0	100.0( 9)
1세	-	14.3	-	-	-	-	85.7	100.0( 7)
2세	4.5	9.1	-	-	-	-	86.4	100.0( 22)
3세	42.4	6.1	3.0	-	-	9.1	39.4	100.0( 33)
4세	38.5	26.9	-	3.8	7.7	-	23.1	100.0( 26)
5세	26.9	53.8	3.8	-	7.7	-	7.7	100.0( 26)
6세	14.3	85.7	-	-	-	-	-	100.0( 28)
7세	16.0	76.0	4.0	-	-	-	4.0	100.0( 25)
8세	100.0	-	-	-	-	-	-	100.0( 1)
전주								
전체	27.8	46.7	-	-	1.1	1.1	23.3	100.0( 90)
0세	-	-	-	-	-	-	100.0	100.0( 2)
1세	14.3	-	-	-	-	14.3	71.4	100.0( 7)
2세	16.7	16.7	-	-	-	-	66.7	100.0( 6)
3세	25.0	37.5	-	-	-	-	37.5	100.0( 8)
4세	25.0	25.0	-	-	-	-	50.0	100.0( 12)
5세	42.1	52.6	-	-	-	-	5.3	100.0( 19)
6세	26.3	73.7	-	-	-	-	-	100.0( 19)
7세	29.4	64.7	-	-	5.9	-	-	100.0( 17)
광주								
전체	23.9	38.9	1.8	2.7	-	09	31.9	100.0(113)
0세	-	-	-	-	-	-	100.0	100.0( 4)
1세	-	-	-	-	-	-	100.0	100.0( 10)
2세	30.0	-	-	-	-	-	70.0	100.0( 10)
3세	27.8	11.1	5.6	-	-	5.6	50.0	100.0( 18)
4세	33.3	33.3	-	-	-	-	33.3	100.0( 12)
5세	44.4	50.0	-	-	-	-	5.6	100.0( 18)
6세	22.2	61.1	5.6	5.6	-	-	5.6	100.0( 18)
7세	13.0	78.3	-	8.7	-	-	-	100.0(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부표 III-3-2〉 미취학아동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질병·장애	기관이 멈	집에 양육자 있음	비용부담	불신	기타	계(수)
서울							
전체	-	-	72.7	-	9.1	18.2	100.0(11)
2세	-	-	100.0	-	-	-	100.0( 3)
3세	-	-	75.0	-	-	25.0	100.0( 4)
4세	-	-	100.0	-	-	-	100.0( 1)
6세	-	-	33.3	-	33.3	33.3	100.0( 3)
인천							
전체	-	-	-	-	6.3	12.5	100.0(16)
1세	-	-	100.0	-	-	-	100.0( 2)
2세	-	-	25.0	25.0	-	50.0	100.0( 4)
3세	-	-	50.0	25.0	25.0	-	100.0( 4)
4세	50.0	-	-	50.0	-	-	100.0( 2)
5세	50.0	-	-	50.0	-	-	100.0( 2)
6세	-	-	-	100.0	-	-	100.0( 2)
대구							
전체	4.0	-	36.0	36.0	4.0	20.0	100.0(25)
1세	-	-	-	-	-	100.0	100.0( 3)
2세	-	-	66.7	33.3	-	-	100.0( 3)
3세	11.1	-	44.4	33.3	11.1	-	100.0( 9)
4세	-	-	50.0	-	-	50.0	100.0( 2)
5세	-	-	33.3	33.3	-	33.3	100.0( 3)
6세	-	-	25.0	75.0	-	-	100.0( 4)
11세	-	-	-	100.0	-	-	100.0( 1)

부산							
전체	25.0	-	40.8	14.3	6.1	28.6	100.0(49)
0세	-	-	83.3	-	-	16.7	100.0( 6)
1세	-	-	-	-	25.0	75.0	100.0( 4)
2세	8.3	-	50.0	8.3	8.3	25.0	100.0(12)
3세	-	-	50.0	30.0	-	20.0	100.0(10)
4세	16.7	-	50.0	-	-	33.3	100.0( 6)
5세	50.0	-	25.0	25.0	-	-	100.0( 4)
6세	-	-	-	-	33.3	66.7	100.0( 3)
7세	25.0	-	-	50.0	-	25.0	100.0( 4)
전주							
전체	-	-	53.8	15.4	7.7	23.1	100.0(13)
1세	-	-	50.0	-	-	50.0	100.0( 2)
2세	-	-	100.0	-	-	-	100.0( 1)
3세	-	-	50.0	-	-	50.0	100.0( 2)
4세	-	-	100.0	-	-	-	100.0( 4)
5세	-	-	-	50.0	50.0	-	100.0( 2)
6세	-	-	-	-	-	100.0	100.0( 1)
7세	-	-	-	100.0	-	-	100.0( 1)
광주							
전체	-	5.9	20.6	29.4	5.9	38.2	100.0(34)
0세	-	-	-	-	33.3	66.7	100.0( 3)
1세	-	-	-	-	25.0	75.0	100.0( 4)
2세	-	33.3	33.3	33.3	-	-	100.0( 3)
3세	-	-	27.3	45.5	-	27.3	100.0(11)
4세	-	-	-	50.0	-	50.0	100.0( 4)
5세	-	-	66.7	-	-	33.3	100.0( 3)
6세	-	33.3	-	33.3	-	33.3	100.0( 3)
7세	-	-	33.3	33.3	-	33.3	100.0( 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부산									
전체	47.7	10.3	0.6	1.7	12.1	3.4	7.5	16.7	100.0(174)
0세	66.7	-	-	-	33.3	-	-	-	100.0( 9)
1세	55.6	22.2	-	-	22.2	-	-	-	100.0( 9)
2세	61.9	4.8	-	-	28.6	-	-	4.8	100.0( 21)
3세	48.5	15.2	-	-	12.1	6.1	6.1	12.1	100.0( 33)
4세	48.1	11.1	-	-	7.4	7.4	22.2	3.7	100.0( 27)
5세	46.2	11.5	-	-	-	-	-	38.5	100.0( 26)
6세	41.7	16.7	-	4.2	4.2	4.2	12.5	16.7	100.0( 24)
7세	33.3	-	4.2	8.3	8.3	-	8.3	37.5	100.0( 24)
8세	-	-	-	-	100.0	-	-	-	100.0( 1)
전주									
전체	64.5	9.7	-	4.8	4.8	3.2	9.7	3.2	100.0( 62)
0세	100.0	-	-	-	-	-	-	-	100.0( 2)
1세	66.7	-	-	-	33.3	-	-	-	100.0( 6)
2세	40.0	20.0	-	-	20.0	20.0	-	-	100.0( 5)
3세	80.0	-	-	-	-	-	-	20.0	100.0( 5)
4세	50.0	30.0	-	10.0	-	-	10.0	-	100.0( 10)
5세	57.1	14.3	-	7.1	-	7.1	14.3	-	100.0( 14)
6세	88.9	-	-	-	-	-	11.1	-	100.0( 9)
7세	63.6	-	-	9.1	-	-	18.2	9.1	100.0( 11)
광주									
전체	53.0	9.0	1.0	5.0	5.0	2.0	10.0	15.0	100.0(100)
0세	75.0	-	-	-	25.0	-	-	-	100.0( 4)
1세	70.0	20.0	-	-	10.0	-	-	-	100.0( 10)
2세	33.3	33.3	-	-	11.1	11.1	11.1	-	100.0( 9)
3세	68.8	6.3	6.3	6.3	-	-	-	12.5	100.0( 16)
4세	63.6	9.1	-	-	-	9.1	9.1	9.1	100.0( 11)
5세	53.8	7.7	-	7.7	7.7	-	7.7	15.4	100.0( 13)
6세	33.3	-	-	6.7	6.7	-	20.0	33.3	100.0( 15)
7세	45.5	4.5	-	9.1	-	-	18.2	22.7	100.0(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부표 III-4-1〉 보육시설에 예방접종 의뢰 가능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름	계(수)	X <sup>2</sup> (df)
전체	36.3	49.5	14.2	100.0(560)	
가구형태					
확대가족	36.8	52.6	10.5	100.0( 38)	6.0(6)
핵가족	37.0	46.8	16.2	100.0(389)	
한부모가족	32.5	57.5	10.0	100.0(120)	
기타	41.7	50.0	8.3	100.0( 12)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37.3	47.3	15.5	100.0(110)	7.5(6)
150만원 이하	33.2	54.8	12.0	100.0(208)	
151~200만원 이하	41.1	42.3	16.6	100.0(163)	
201만원 이상	31.3	56.7	11.9	100.0( 67)	
모 취업					
취업	33.0	52.9	14.1	100.0(376)	na
미취업	43.9	42.1	14.0	100.0(164)	
모 부재	36.4	54.5	9.1	100.0( 11)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부표 III-4-2〉 보육시설에 병원 데려가기 의뢰 가능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름	계(수)	X <sup>2</sup> (df)
전체	41.5	46.2	12.3	100.0(561)	
가구형태					
확대가족	34.2	52.6	13.2	100.0( 38)	na
핵가족	44.1	44.4	11.5	100.0(390)	
한부모가족	35.0	49.2	15.8	100.0(120)	
기타	41.7	58.3	-	100.0( 12)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39.6	43.2	17.1	100.0(111)	5.9(6)
150만원 이하	40.7	48.8	10.5	100.0(209)	
151~200만원 이하	45.1	42.6	12.3	100.0(162)	
201만원 이상	37.3	53.7	9.0	100.0( 67)	
모 취업					
취업	41.5	45.5	13.0	100.0(376)	na
미취업	42.4	46.7	10.9	100.0(165)	
모 부재	27.3	72.7	-	100.0( 11)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부표 III-4-3〉 보육시설에 투약 등 병간호 의뢰 가능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름	계(수)	X <sup>2</sup> (df)
전체	65.9	23.4	10.7	100.0(559)	
가구형태					
확대가족	55.3	28.9	15.8	100.0( 38)	
핵가족	67.3	22.2	10.6	100.0(388)	na
한부모가족	64.2	25.0	10.8	100.0(120)	
기타	66.7	33.3	-	100.0( 12)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72.1	17.1	10.8	100.0(111)	
150만원 이하	63.3	24.6	12.1	100.0(207)	5.3(6)
151~200만원 이하	64.2	25.3	10.5	100.0(162)	
201만원 이상	67.2	26.9	6.0	100.0( 67)	
모 취업					
취업	70.4	20.3	9.3	100.0(375)	
미취업	57.3	29.3	13.4	100.0(164)	na
모 부재	54.5	36.4	9.1	100.0( 11)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부표 III-4-4〉 보육시설에 야간 연장보육 의뢰 가능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름	계(수)	X <sup>2</sup> (df)
전체	30.6	51.4	18.0	100.0(558)	
가구형태					
확대가족	24.3	56.8	18.9	100.0( 37)	
핵가족	33.5	49.2	17.3	100.0(388)	5.9(6)
한부모가족	24.2	55.8	20.0	100.0(120)	
기타	16.7	66.7	16.7	100.0( 12)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	30.9	50.0	19.1	100.0(110)	
150만원 이하	28.4	52.9	18.8	100.0(208)	10.6(6)
151~200만원 이하	37.3	46.6	16.1	100.0(161)	
201만원 이상	19.4	67.2	13.4	100.0( 67)	
모 취업					
취업	28.8	53.6	17.6	100.0(375)	
미취업	36.2	48.5	15.3	100.0(163)	na
모 부재	9.1	27.3	63.6	100.0( 11)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임.

〈부표 IV-3-1〉 돌보는 아동 수 -영아

단위: %(명)

구분	0명	1명	2명	계(수)
전체	48.5	47.0	4.5	100.0(132)
서울	57.9	42.1	-	100.0( 19)
인천	38.9	55.6	5.6	100.0( 36)
대구	51.7	41.4	6.9	100.0( 29)
부산	40.7	51.9	7.4	100.0( 27)
전주	53.8	46.2	-	100.0( 13)
광주	75.0	25.0	-	100.0( 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3-2〉 돌보는 아동 수 -유아

단위: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계(수)
전체	50.8	33.3	14.4	1.5	100.0(132)
서울	36.8	42.1	15.8	5.3	100.0( 19)
인천	55.6	36.1	8.3	-	100.0( 36)
대구	44.8	44.8	10.3	-	100.0( 29)
부산	63.0	14.8	18.5	3.7	100.0( 27)
전주	38.5	30.8	30.8	-	100.0( 13)
광주	62.5	25.0	12.5	-	100.0( 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3-3〉 돌보는 아동 수 -초등학생

단위: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계(수)
전체	66.7	25.0	7.6	0.8	100.0(132)
서울	78.9	10.5	5.3	5.3	100.0( 19)
인천	61.1	30.6	8.3	-	100.0( 36)
대구	62.1	31.0	6.9	-	100.0( 29)
부산	81.5	14.8	3.7	-	100.0( 27)
전주	46.2	46.2	7.7	-	100.0( 13)
광주	62.5	12.5	25.0	-	100.0( 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1〉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건강해짐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영아도우미					
전체	50.0	46.6	3.4	-	100.0(58)
서울	75.0	25.0	-	-	100.0( 8)
인천	36.8	57.9	5.3	-	100.0(19)
대구	46.2	53.8	-	-	100.0(13)
부산	33.3	58.3	8.3	-	100.0(12)
전주	100.0	-	-	-	100.0( 4)
광주	100.0	-	-	-	100.0( 2)
야간도우미					
전체	53.5	43.7	2.8	-	100.0(71)
서울	72.7	27.3	-	-	100.0(11)
인천	52.9	41.2	5.9	-	100.0(17)
대구	50.0	50.0	-	-	100.0(16)
부산	50.0	41.7	8.3	-	100.0(12)
전주	66.7	33.3	-	-	100.0( 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2〉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잘 먹게 됨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영아도우미					
전체	53.4	41.4	1.7	3.4	100.0(58)
서울	75.0	25.0	-	-	100.0( 8)
인천	36.8	52.6	5.3	5.3	100.0(19)
대구	53.8	46.2	-	-	100.0(13)
부산	41.7	50.0	-	8.3	100.0(12)
전주	100.0	-	-	-	100.0( 4)
광주	100.0	-	-	-	100.0( 2)
야간도우미					
전체	54.9	42.3	-	2.8	100.0(71)
서울	81.8	18.2	-	-	100.0(11)
인천	52.9	41.2	-	5.9	100.0(17)
대구	62.5	37.5	-	-	100.0(16)
부산	41.7	50.0	-	8.3	100.0(12)
전주	55.6	44.4	-	-	100.0( 9)
광주	16.7	83.3	-	-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3〉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성격 밝아짐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63.8	32.8	3.4	-	100.0(129)
서울	100.0	-	-	-	100.0( 19)
인천	57.9	36.8	5.3	-	100.0( 36)
대구	61.5	38.5	-	-	100.0( 29)
부산	33.3	58.3	8.3	-	100.0( 24)
전주	100.0	-	-	-	100.0( 13)
광주	100.0	-	-	-	100.0( 8)
<b>야간도우미</b>					
전체	66.2	31.0	1.4	1.4	100.0(71)
서울	81.8	18.2	-	-	100.0(11)
인천	52.9	41.2	5.9	-	100.0(17)
대구	75.0	25.0	-	-	100.0(16)
부산	66.7	25.0	-	8.3	100.0(12)
전주	66.7	33.3	-	-	100.0( 9)
광주	50.0	50.0	-	-	100.0( 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4〉 (장애)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지속적 치료 가능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75.0	12.5	6.3	6.3	100.0(30)
인천	62.5	31.3	6.3	-	100.0(16)
대구	50.0	16.7	16.7	16.7	100.0( 6)
부산	60.0	20.0	20.0	-	100.0( 5)
전주	100.0	-	-	-	100.0( 2)
광주	-	100.0	-	-	100.0( 1)
<b>야간도우미</b>					
전체	42.9	42.9	14.3	-	100.0(14)
서울	-	-	-	-	-
인천	28.6	57.1	14.3	-	100.0( 7)
대구	100.0	-	-	-	100.0( 1)
부산	33.3	33.3	33.3	-	100.0( 3)
전주	100.0	-	-	-	100.0( 2)
광주	-	100.0	-	-	100.0(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5〉 (초등) 야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변화-성적 향상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전체	28.6	42.9	17.1	11.4	100.0(35)
서울	-	50.0	50.0	-	100.0( 4)
인천	18.2	27.3	36.4	18.2	100.0(11)
대구	42.9	42.9	-	14.3	100.0( 7)
부산	25.0	50.0	-	25.0	100.0( 4)
전주	66.7	33.3	-	-	100.0( 6)
광주	-	100.0	-	-	100.0( 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6〉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모(母)의 취업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영아도우미					
전체	64.2	15.1	18.9	1.9	100.0(53)
서울	50.0	12.5	37.5	-	100.0( 8)
인천	57.9	10.5	31.6	-	100.0(19)
대구	69.2	23.1	-	7.7	100.0(13)
부산	75.0	12.5	12.5	-	100.0( 8)
전주	66.7	33.3	-	-	100.0( 3)
광주	100.0	-	-	-	100.0( 2)
야간도우미					
전체	45.2	14.5	35.5	4.8	100.0(62)
서울	-	9.1	90.9	-	100.0(11)
인천	41.2	17.6	41.2	-	100.0(17)
대구	66.7	6.7	6.7	20.0	100.0(15)
부산	33.3	33.3	33.3	-	100.0( 6)
전주	71.4	28.6	-	-	100.0( 7)
광주	66.7	-	33.3	-	100.0( 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7〉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모(母)의 근무시간증가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50.9	27.3	20.0	1.8	100.0(55)
서울	50.0	50.0	-	-	100.0( 8)
인천	47.4	10.5	42.1	-	100.0(19)
대구	46.2	38.5	7.7	7.7	100.0(13)
부산	44.4	33.3	22.2	-	100.0( 9)
전주	75.0	25.0	-	-	100.0( 4)
광주	100.0	-	-	-	100.0( 2)
<b>야간도우미</b>					
전체	48.5	33.8	17.6	-	100.0(68)
서울	18.2	45.5	36.4	-	100.0(11)
인천	41.2	35.3	23.5	-	100.0(17)
대구	56.3	37.5	6.3	-	100.0(16)
부산	30.0	50.0	20.0	-	100.0(10)
전주	87.5	12.5	-	-	100.0( 8)
광주	83.3	-	16.7	-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8〉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업무능률향상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63.8	25.9	10.3	-	100.0(58)
서울	75.0	25.0	-	-	100.0( 8)
인천	57.9	10.5	31.6	-	100.0(19)
대구	61.5	38.5	-	-	100.0(13)
부산	50.0	50.0	-	-	100.0(12)
전주	100.0	-	-	-	100.0( 4)
광주	100.0	-	-	-	100.0( 2)
<b>야간도우미</b>					
전체	72.5	23.2	4.3	-	100.0(69)
서울	63.6	36.4	-	-	100.0(11)
인천	58.8	29.4	11.8	-	100.0(17)
대구	87.5	12.5	-	-	100.0(16)
부산	63.6	27.3	9.1	-	100.0(11)
전주	87.5	12.5	-	-	100.0( 8)
광주	83.3	16.7	-	-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 〈부표 IV-4-9〉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교육·직업훈련 가능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30.8	17.3	50.0	1.9	100.0(52)
서울	12.5	-	87.5	-	100.0( 8)
인천	36.8	21.1	42.1	-	100.0(19)
대구	15.4	23.1	53.8	7.7	100.0(13)
부산	28.6	14.3	57.1	-	100.0( 7)
전주	100.0	-	-	-	100.0( 3)
광주	50.0	50.0	-	-	100.0( 2)
<b>보육도우미</b>					
전체	30.2	19.0	44.4	6.3	100.0(63)
서울	18.2	-	81.8	-	100.0(11)
인천	29.4	23.5	47.1	-	100.0(17)
대구	12.5	31.3	31.3	25.0	100.0(16)
부산	42.9	28.6	28.6	-	100.0( 7)
전주	83.3	-	16.7	-	100.0( 6)
광주	33.3	16.7	50.0	-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 〈부표 IV-4-10〉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모(母)의 행복감 증진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43.9	49.1	1.8	5.3	100.0(57)
서울	25.0	37.5	12.5	25.0	100.0( 8)
인천	57.9	42.1	-	-	100.0(19)
대구	30.8	61.5	-	7.7	100.0(13)
부산	36.4	63.6	-	-	100.0(11)
전주	75.0	25.0	-	-	100.0( 4)
광주	50.0	50.0	-	-	100.0( 2)
<b>야간도우미</b>					
전체	49.3	39.1	7.2	4.3	100.0(69)
서울	27.3	45.5	27.3	-	100.0(11)
인천	52.9	47.1	-	-	100.0(17)
대구	43.8	37.5	-	18.8	100.0(16)
부산	72.7	18.2	9.1	-	100.0(11)
전주	75.0	25.0	-	-	100.0( 8)
광주	16.7	66.7	16.7	-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11〉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아이와 엄마의 친밀감향상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46.4	39.3	5.4	8.9	100.0(56)
서울	25.0	62.5	-	12.5	100.0( 8)
인천	52.6	36.8	10.5	-	100.0(19)
대구	23.1	46.2	7.7	23.1	100.0(13)
부산	60.0	30.0	-	10.0	100.0(10)
전주	75.0	25.0	-	-	100.0( 4)
광주	100.0	-	-	-	100.0( 2)
<b>야간도우미</b>					
전체	43.9	50.0	3.0	3.0	100.0(66)
서울	27.3	63.6	9.1	-	100.0(11)
인천	52.9	41.2	-	5.9	100.0(17)
대구	37.5	56.3	-	6.3	100.0(16)
부산	50.0	40.0	10.0	-	100.0(10)
전주	66.7	33.3	-	-	100.0( 6)
광주	33.3	66.7	-	-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12〉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부부간 갈등완화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30.4	48.2	10.7	10.7	100.0(56)
서울	25.0	25.0	37.5	12.5	100.0( 8)
인천	26.3	47.4	10.5	15.8	100.0(19)
대구	7.7	76.9	-	15.4	100.0(13)
부산	45.5	45.5	9.0	-	100.0(11)
전주	100.0	-	-	-	100.0( 3)
광주	50.0	50.0	-	-	100.0( 2)
<b>야간도우미</b>					
전체	23.4	35.9	25.0	15.6	100.0(64)
서울	9.1	36.4	27.3	27.3	100.0(11)
인천	29.4	23.5	35.3	11.8	100.0(17)
대구	25.0	37.5	12.5	25.0	100.0(16)
부산	25.0	50.0	25.0	-	100.0( 8)
전주	33.3	50.0	16.7	-	100.0( 6)
광주	16.7	33.3	33.3	16.7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13〉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가구 소득 증가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전체					
지역	36.4	40.0	20.0	3.6	100.0(55)
서울	12.5	62.5	25.0	-	100.0( 8)
인천	26.3	42.1	26.3	5.3	100.0(19)
대구	46.2	46.2	-	7.6	100.0(13)
부산	33.3	33.3	33.3	-	100.0( 9)
전주	100.0	-	-	-	100.0( 4)
광주	50.0	-	50.0	-	100.0( 2)
도우미유형					
영아도우미	35.8	35.8	22.4	6.0	100.0(67)
야간도우미	9.1	45.5	45.5	-	100.0(11)
인천	41.2	29.4	29.4	-	100.0(17)
대구	31.3	37.5	6.3	25.0	100.0(16)
부산	40.0	40.0	20.0	-	100.0(10)
전주	71.4	28.6	-	-	100.0( 7)
광주	33.3	33.3	33.3	-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14〉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모(母)의 취업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영아도우미					
전체	64.2	15.1	18.9	1.9	100.0(53)
서울	50.0	12.5	37.5	-	100.0( 8)
인천	57.9	10.5	31.6	-	100.0(19)
대구	69.2	23.1	-	7.7	100.0(13)
부산	75.0	12.5	12.5	-	100.0( 8)
전주	66.7	33.3	-	-	100.0( 3)
광주	100.0	-	-	-	100.0( 2)
야간도우미					
전체	45.2	14.5	35.5	4.8	100.0(62)
서울	-	9.1	90.9	-	100.0(11)
인천	41.2	17.6	41.2	-	100.0(17)
대구	66.7	6.7	6.7	20.0	100.0(15)
부산	33.3	33.3	33.3	-	100.0( 6)
전주	71.4	28.6	-	-	100.0( 7)
광주	66.7	-	33.3	-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15〉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모(母)의 근무시간증가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50.9	27.3	20.0	1.8	100.0(55)
서울	50.0	50.0	-	-	100.0( 8)
인천	47.4	10.5	42.1	-	100.0(19)
대구	46.2	38.5	7.7	7.7	100.0(13)
부산	44.4	33.3	22.2	-	100.0( 9)
전주	75.0	25.0	-	-	100.0( 4)
광주	100.0	-	-	-	100.0( 2)
<b>야간도우미</b>					
전체	48.5	33.8	17.6	-	100.0(68)
서울	18.2	45.5	36.4	-	100.0(11)
인천	41.2	35.3	23.5	-	100.0(17)
대구	56.3	37.5	6.3	-	100.0(16)
부산	30.0	50.0	20.0	-	100.0(10)
전주	87.5	12.5	-	-	100.0( 8)
광주	83.3	-	16.7	-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16〉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업무능력향상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63.8	25.9	10.3	-	100.0(58)
서울	75.0	25.0	-	-	100.0( 8)
인천	57.9	10.5	31.6	-	100.0(19)
대구	61.5	38.5	-	-	100.0(13)
부산	50.0	50.0	-	-	100.0(12)
전주	100.0	-	-	-	100.0( 4)
광주	100.0	-	-	-	100.0( 2)
<b>야간도우미</b>					
전체	72.5	23.2	4.3	-	100.0(69)
서울	63.6	36.4	-	-	100.0(11)
인천	58.8	29.4	11.8	-	100.0(17)
대구	87.5	12.5	-	-	100.0(16)
부산	63.6	27.3	9.1	-	100.0(11)
전주	87.5	12.5	-	-	100.0( 8)
광주	83.3	16.7	-	-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17〉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교육·직업훈련 가능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30.8	17.3	50.0	1.9	100.0(52)
서울	12.5	-	87.5	-	100.0( 8)
인천	36.8	21.1	42.1	-	100.0(19)
대구	15.4	23.1	53.8	7.7	100.0(13)
부산	28.6	14.3	57.1	-	100.0( 7)
전주	100.0	-	-	-	100.0( 3)
광주	50.0	50.0	-	-	100.0( 2)
<b>보육도우미</b>					
전체	30.2	19.0	44.4	6.3	100.0(63)
서울	18.2	-	81.8	-	100.0(11)
인천	29.4	23.5	47.1	-	100.0(17)
대구	12.5	31.3	31.3	25.0	100.0(16)
부산	42.9	28.6	28.6	-	100.0( 7)
전주	83.3	-	16.7	-	100.0( 6)
광주	33.3	16.7	50.0	-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18〉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모(母)의 행복감 증진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43.9	49.1	1.8	5.3	100.0(57)
서울	25.0	37.5	12.5	25.0	100.0( 8)
인천	57.9	42.1	-	-	100.0(19)
대구	30.8	61.5	-	7.7	100.0(13)
부산	36.4	63.6	-	-	100.0(11)
전주	75.0	25.0	-	-	100.0( 4)
광주	50.0	50.0	-	-	100.0( 2)
<b>야간도우미</b>					
전체	49.3	39.1	7.2	4.3	100.0(69)
서울	27.3	45.5	27.3	-	100.0(11)
인천	52.9	47.1	-	-	100.0(17)
대구	43.8	37.5	-	18.8	100.0(16)
부산	72.7	18.2	9.1	-	100.0(11)
전주	75.0	25.0	-	-	100.0( 8)
광주	16.7	66.7	16.7	-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19〉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아이와 엄마의 친밀감향상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46.4	39.3	5.4	8.9	100.0(56)
서울	25.0	62.5	-	12.5	100.0( 8)
인천	52.6	36.8	10.5	-	100.0(19)
대구	23.1	46.2	7.7	23.1	100.0(13)
부산	60.0	30.0	-	10.0	100.0(10)
전주	75.0	25.0	-	-	100.0( 4)
광주	100.0	-	-	-	100.0( 2)
<b>야간도우미</b>					
전체	43.9	50.0	3.0	3.0	100.0(66)
서울	27.3	63.6	9.1	-	100.0(11)
인천	52.9	41.2	-	5.9	100.0(17)
대구	37.5	56.3	-	6.3	100.0(16)
부산	50.0	40.0	10.0	-	100.0(10)
전주	66.7	33.3	-	-	100.0( 6)
광주	33.3	66.7	-	-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20〉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부부간 갈등완화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b>영아도우미</b>					
전체	30.4	48.2	10.7	10.7	100.0(56)
서울	25.0	25.0	37.5	12.5	100.0( 8)
인천	26.3	47.4	10.5	15.8	100.0(19)
대구	7.7	76.9	-	15.4	100.0(13)
부산	45.5	45.5	9.0	-	100.0(11)
전주	100.0	-	-	-	100.0( 3)
광주	50.0	50.0	-	-	100.0( 2)
<b>야간도우미</b>					
전체	23.4	35.9	25.0	15.6	100.0(64)
서울	9.1	36.4	27.3	27.3	100.0(11)
인천	29.4	23.5	35.3	11.8	100.0(17)
대구	25.0	37.5	12.5	25.0	100.0(16)
부산	25.0	50.0	25.0	-	100.0( 8)
전주	33.3	50.0	16.7	-	100.0( 6)
광주	16.7	33.3	33.3	16.7	100.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부표 IV-4-21〉 영아보육도우미 파견이후 가정·부모변화- 가구 소득 증가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수)
영아도우미					
전체	36.4	40.0	20.0	3.6	100.0(55)
서울	12.5	62.5	25.0	-	100.0( 8)
인천	26.3	42.1	26.3	5.3	100.0(19)
대구	46.2	46.2	-	7.6	100.0(13)
부산	33.3	33.3	33.3	-	100.0( 9)
전주	100.0	-	-	-	100.0( 4)
광주	50.0	-	50.0	-	100.0( 2)
야간도우미					
전체	35.8	35.8	22.4	6.0	100.0(67)
서울	9.1	45.5	45.5	-	100.0(11)
인천	41.2	29.4	29.4	-	100.0(17)
대구	31.3	37.5	6.3	25.0	100.0(16)
부산	40.0	40.0	20.0	-	100.0(10)
전주	71.4	28.6	-	-	100.0( 7)
광주	33.3	33.3	33.3	-	100.0( 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임.

## 부록 2. 조사표

# 자녀 양육 실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 육아정책개발센터와 공동으로 가구의 자녀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귀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보육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5월

한국여성노동자회장·육아정책개발센터소장

주소	(                    )시·도 (                    )군 (                    )읍·면		
가구주명			
전화번호	(DDD:            )            -		
조사담당자	조사표 작성일	2007년 (            )월 (            )일	

한국여성노동자회  
육아정책개발센터

**1. 가구와 부모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를 기입하십시오.  
 가구원수 (            )명  
 (주민등록에 있는 가구원이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출타자는 제외합니다)

2. 이 닥의 보육대상 아동 수를 아동 구분별로 각각 기입하십시오. (\* 보육대상이 없는 경우는 0을 기입하십시오.)

① 영아 (36개월 미만)	② 유아 (만3세 이상 미취학)	③ 초등학생	④ 전체
명	명	명	명

3. 가족유형을 기입하십시오.  
 ① (한)조부모+(한)부모+자녀    ② 부부+자녀    ③ 여성한부모+자녀    ④ 남성한부모+자녀  
 ⑤ (한)조부모+자녀                ⑥ 친인척+자녀    ⑦ 기타

1

2       
 ① ② ③ ④

3

4.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소유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자가                                    ② 전세                                    ③ 전 월세(보증부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무상                                    ⑥ 기타(무엇: \_\_\_\_\_)

4

5. 현재 응답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을 확인하여 표시하십시오.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상가주택                              ⑥ 기타(무엇: \_\_\_\_\_)

5

6. 귀댁의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각종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2007년 예상되는 연 소득을 추정 계산하여 12월로 나누어주십시오.  
 (\* 조사원은 오른쪽 칸에 만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월 \_\_\_\_\_ 원

6  만원

7. 귀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

8. 귀하와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을 기입해 주십시오. (\* 배우자가 없으면 88, 8을 기록)

구분	배우자(남편)	본인(부인)
8-1 연령	세	세
8-2 학력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3년제)대학                        ④ 4년제대학 이상		

8  세

9. 귀댁 부부는 어떤 형태로 일하고 계십니까? 다음 중 고용형태에 해당되는 번호를 써주세요. (\* 배우자가 없으면 8을 기록합니다)

【고용형태 보기】	남편	부인
1) 고용주(회사 운영 등)    2) 자영업자(가게, 포장마차 운영 등)		
3) 상용고(회사원, 사무직 등)    4) 임시근로자(1년 미만 고용계약)		
5)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계약)		
6) 무급 근로자(가족종사자 등)    7) 무직, 사망, 별거 등		

9

10. 취업한 경우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고,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평일 보통 귀가시간은 언제입니까?(예시: 19:30) (\* 배우자가 없거나 미취업 상태이면 88, 888, 88을 기록합니다)

구분	남편	부인
1주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만원	만원
평일 귀가시간	일정함 시 분경 일정하지 않음(7777)	일정함 시 분경 일정하지 않음(7777)

10


시간  
만원

11.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써 주세요. (\* 배우자가 없으면 8을 기록)

구분	남편	부인
① 건강    ② 질병 ③ 장애    ④ 질병과 장애		

11

--	--

**II. 자녀 양육과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귀댁의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나이 어린 순으로 4명까지 각각 이름, 연령, 성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이 중에 학교 이외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어디 다니는 아동이 있습니까? 또한 낮 동안에는 주로 누가 돌보아 줍니까? 각각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이름				
2. 연령		세	세	세
2-1 초등학생인 경우 학년		학년	학년	학년
3. 성별    ① 남    ② 여				
4. 건강상태 ① 건강함    ② 질병있음    ③ 장애있음    ④ 장애와 질병 있음				
5. 낮 동안 다니는 기관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학원 ④ 선교원    ⑤ 복지관    ⑥ 기타    ⑦ 안 다님				
5-1. 취학 아동 중 기관에 안 다니는 경우) 안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② 기관이 너무 멀어서 ③ 집에서 봐 줄 사람이 있어서    ④ 비용이 부담되어서 ⑤ 믿고 맡길 수 없어서    ⑥ 기타 ⑧ 비해당(다님, 또는 초등학생)				
6. 낮 시간에 주로 돌보는 사람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친인척    ④ 형제자매 ⑤ 파견도우미    ⑥ 기타 비혈연    ⑦ 기타    ⑧ 없음				

13.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 자녀 양육 태도는 어떻습니까?

구분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아닌 편이다	4 절대 아니다
1) 자녀를 존중한다				
2) 자녀에게 다정하게 대한다.				
3) 규칙을 지키게 한다				
4) 자녀에게 모든 정성을 다한다				
5)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 준다				
6) 칭찬을 잘 한다				

13

1
2
3
4
5
6

14. 지난 6개월 간 자녀와 극장, 공연관람, 야외, 놀이공원 등에 함께 간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갔습니까?

- ① 없음      ② 1-2번      ③ 3-4번      ④ 5-6번      ⑤ 7번 이상

14

15. 지난 6개월 간 자녀와 서점에 간 적이 있습니까? 갔다면 몇 번이나 갔습니까?

- ① 없음      ② 1-2번      ③ 3-4번      ④ 5-6번      ⑤ 7번 이상

15

16. 지난 6개월 간 자녀를 체벌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몇 번입니까?

- ① 없음      ② 1-2번      ③ 3-4번      ④ 5-6번      ⑤ 7번 이상

16

17. 귀하는 자녀의 친구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1-2번      ③ 3-4번      ④ 5-6번      ⑤ 7번 이상

17

18. 취학전 아이들만 두고 일하러 가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자주 있음      ② 가끔 있음      ③ 없음

18

※ 미취학 자녀 중 낮 동안 육아지원기관에 다니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 조사합니다. 아이가 여러 명일 경우 가장 나이가 어린 아동을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해당아동 이름:                      연령                      세)

세

19. 현재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선교원  
 ④ 반일제 이상 학원          ⑤ 공부방                      ⑥ 복지관  
 ⑦ 기타(                      )

19

20.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이 아이가 매일 갑니까?

-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③ 일주일에 1~2번                      ④ 일주일에 3~4번

20

21. 평상시에 이 아이가 보육 또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예: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인 경우, 07시 30분 ~ 19시 30분)

(                      )시 (                      )분 ~ (                      )시 (                      )분

21   |        
 등원시간      하원시간

22 이 기관의 이용시간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질문 23으로)                      ② 만족한다(질문 23으로)  
 ③ 불만족한다(질문 22-1로)                      ④ 매우 불만족한다(질문 22-1로)

22

22-1. 이용시간에 불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작시간이 너무 늦고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                      ⑧ 비해당  
 ② 시작시간이 너무 늦다                      ③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

22-1

23. 기관을 이용하면서 일정하게 정해진 월 보육료나 교육비로 얼마를 내십니까? 월 (                      )천원

23     천원

24 지난 3-5개월간 특별활동, 견학 등으로 추가로 비용을 냈습니까? 냈다면 월 평균 얼마를 냈습니까?

( )천원을 냈음.

24 

--	--	--

 천원

25. 귀댁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이 아이를 위해서 매월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내는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안 내는 경우 비 해당 처리합니다.)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되는 편이다                      ③ 적당하다  
④ 전혀 부담이 안된다                      ⑤ 비 해당

25

26. 보육료를 지원 받으십니까? 보육료 감면 및 면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모·부자가정자녀                      ④ 기타 저소득층  
⑤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대상자                      ⑥ 장애아동 무상보육  
⑦ 기타( )                      ⑧ 비 해당(감면 면제 대상이 아님)

26

27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등 기관에 다음 사항을 마음 놓고 의뢰할 수 있습니까?

1. 예방접종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름
2.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름
3. 투약 등 아픈 아이 보살피기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름
4. 긴급상황시 야간 연장보육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름

27 


28.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실 경우,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1) 저녁시간, 휴일 등 상황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양해지는 것  
 2) 가족이나 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3)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4) 비용이 저렴해지는 것                       5) 급간식을 잘 챙겨 주는 것  
 6) 병원가기 등 부모대리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                       7) 기타( )

28

**\* 조부모, 비혈연인이 돌봐주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해당아동 이름: , 연령: 세 학년)  
(해당아동 이름: , 연령: 세 학년)


 세

29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친조부모                      ② 외조부모                      ③ 친인척                      ④ 파출부  
⑤ 가정부(동거 비혈연)                      ⑥ 이웃탁아모                      ⑦ 보육도우미 등 파견도우미  
⑧ 기타

29

30 주로 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 ① 아이 집                      ② 돌보는 사람 집                      ③ 비 해당

30

31. 1주일에 보통 몇 일이나 돌보게 하고 있습니까?

1주일 중 ( ) 일

31  일

32. 평일 중 주로 돌보는 시간은 언제 입니까?

- ① 아침부터 밤까지      ② 아침부터 저녁까지      ③ 오전이나 오후 만나질
- ④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방과후시간      ⑤ 기타

32

33. 평일 몇 시간 돌보십니까? (      )시간

33  시간

34 아이를 돌보는 분에게 비용을 주로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지불
- ② 부정기적으로 지불
- ③ 현물로 지불
- ④ 숙식만 제공
- ⑤ 지불 안 함

34-1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모두 얼마나 됩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해 월 평균을 내어 주십시오. (※ 조사원은 천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비례당은 888입니다)

월 (      )천원

34

34-1  천원

35 조부모나 비혈연 보육서비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 부모 대신 보육하기
- ②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이용 전후 보살피기 등 보완으로
- ③ 초등학교 방과후에 보살피기
- ④ 집안 일 돕기      ⑤ 기타(      )

35

35-1.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② 아이가 아파서      ③ 장애가 있어서
- ④ 보육시설이 없어서      ⑤ 보육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⑥ 비용 부담으로
- ⑦ 기타      ⑧ 비례당

35-1 


36. (비혈연이 돌보는 경우) 아이를 돌봐 주는 분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인력전문기관의 소개로      ② 주변의 소개로      ③ 지역신문 등 광고로
- ④ 평소 알던 사람임      ⑤ 기타(      )      ⑧ 비례당(혈연이 돌봄)

36

37 (비혈연이 돌보는 경우) 아이를 돌봐 주는 분은 결혼하셨습니까? 자녀 양육 경험이 있습니까? 또한 자격 여부는 어떠한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기
1. 결혼상태 및 자녀양육경험	① 미혼    ② 기혼, 양육경험 유    ③ 기혼, 양육경험 무 ④ 모름    ⑧ 비례당
2. 자격	① 보육교사      ② 유치원교사      ③ 초등학교 교사 ④ 간호사(간호조무사) ⑤ 없음      ⑥ 모름      ⑧ 비례당

37 

1	
2	

38. (비혈연이 돌보는 경우) 이러한 분들에게 자녀를 돌보게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별로 애로사항 없음      ② 비용 부담
- ③ 돌보는 사람의 잦은 교체      ④ 양육방식의 차이
- ⑤ 갑자기 아이를 못 보게 될 경우가 있음      ⑥ 신뢰감 부족
- ⑦ 기타(      )      ⑧ 비례당

38

**※ 모든 초등학생 부모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초등학생이 여러 명이면 나이 어린 자녀를 중심으로 합니다.**  
**(해당아동 이름: \_\_\_\_\_, 연령: 세 \_\_\_\_\_ 학년)**

		학년
--	--	----

39. 이 초등학생 자녀는 학교가 끝나고 귀가한 후 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① (사설)학원에 다님                      ② 기관의 공부방 또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③ 과외를 받음                              ④ 그냥 집에서 보냄  
 ⑤ 기타( \_\_\_\_\_ )

39

40.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나 학원이 끝난 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질문 40-1번으로)                      ② 없다(질문 41번으로)

40

40-1.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혼자 보냅니까?  
 (\* 비해당은 8을 기록합니다)  
 ( \_\_\_\_\_ )시간 정도

40-1

**※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41. 지난 4월에 자녀 보육으로 들어간 돈은 모두 얼마입니까?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 비용 ( \_\_\_\_\_ )천원  
 혈연 및 비혈연 보육비용 ( \_\_\_\_\_ )천원  
 계 ( \_\_\_\_\_ )천원

41				천원
				천원
				천원

42. 자녀 보육에 들어간 총 비용은 귀댁 월 소득의 몇 %에 해당됩니까?  
 ( \_\_\_\_\_ )%

42  %

43. 지난 4월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보육비용은 모두 얼마입니까?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 비용 ( \_\_\_\_\_ )천원  
 도우미 지원 비용 등 ( \_\_\_\_\_ )천원  
 계 ( \_\_\_\_\_ )천원

43				천원
				천원
				천원

**IV. 일과 가정 양립, 양육지원 요구 등 질문입니다.**  
**(모든 가정에 질문합니다)**

44. 막내 자녀 출산 당시 취업 중이었습니까? 출산 후 원직으로 복직되었습니까?  
 ① 막내 자녀 출산시 미취업 중                      ② 원직으로 복직  
 ③ 출산전 직장을 그만 둠(질문 44-1로)                      ④ 출산후 직장을 그만 둠(질문 44-1로)  
 ⑤ 휴직함    ⑥ 기타

44

44-1 (일을 그만 둔 경우) 당시 일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② 일을 하고 싶으나 회사 사정으로  
 ③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④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⑤ 건강상 이유로                                      ⑥ 일을 하고 싶으나 주위의 반대로  
 ⑦ 기타( \_\_\_\_\_ )                      ⑧ 비해당(취업 중)

44-1

45 (막내 자녀 출산시 취업중이었던 경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육아휴직이 해당되지 않음                      ② 회사 분위기가 허용하지 않음
- ③ 수당이 너무 적어서                              ④ 직장에 나가는 것이 더 좋아서
- ⑤ 기타(    )                      ⑧ 비해당(미취업 중)

45

46. (모가 취업중인 경우) 현재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② 과중한 육체적·심리적 부담
- ③ 안심하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④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
- ⑤ 기타(    )                      ⑥ 없음
- ⑧ 비해당(현재 비취업, 영아 없음)

46

47. (모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② 일을 하고 싶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 ③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 ④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 ⑤ 일을 하고 싶으나 주위의 반대로              ⑥ 건강상 이유로
- ⑦ 기타(    )                      ⑧ 비해당(취업 중)

47

48. 다음과 같은 보육서비스의 필요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이러한 경우에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구분	필요성	대처 방안
	① 상시 ② 1주일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년에 1~2번    ⑤ 없음	① 보육시설 이용 ② 조부모, 친인척에 부탁 ③ 비혈연 이용 ④ 부모가 해결    ⑤ 다른 자녀가 돌봄 ⑧ 비해당
1) 일시 시간제보육		
2) 야간보육		
3) 아픈 자녀 보육		
4) 24시간 보육		
5) 휴일보육		

48

1		
2		
3		
4		
5		

49 귀댁의 경우로 보아 어머니 취업 등으로 부모가 0-2세 영아 자녀를 보살필 수 없을 때 가장 좋은 대리양육 방법은 무엇(누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만1세 미만아	② 만1세아	③ 만2세아

49


**【보기】**

- 01) 조부모
- 02) 친인척
- 03) 탁아모 등 비혈연인
- 04) 어린이집
- 05) 놀이방
- 06) 유치원
- 07) 선교원
- 08) 학원
- 09) 방과후프로그램기관
- 10) 기타(    )
- 11) 잘 모름

50. 귀댁의 경우로 보아 어머니 취업 등으로 부모가 만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직접 보살필 수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누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서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보육시설 등 기관을 종일 이용함.
- ② 오후 2-3시까지 기관 이용 후 부모 퇴근시까지 집에서 다른 성인이 보살핌.
- ③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다른 성인이 보살핌.
- ④ 기타( )
- ⑤ 잘 모르겠음

50

51. 귀하께서는 각 가정에서 자녀를 잘 기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매우 필요	2. 필요한 편	3. 불필요한 편	4. 전혀 불필요
1) 보육시설 시간제보육 확대 실시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2) 보육도우미와 같은 파견보육 확대 및 제도화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3) 정부 육아 정보와 상담 제공 기능 확대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4) 직장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5) 직장 탄력근무제도 정착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6)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용 지원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51

1)	
2)	
3)	
4)	
5)	
8)	

52. 귀하께서는 51번 문항 보기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번

52

53. 귀댁에 가서 아동을 돌보아 주는 보육도우미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무조건 이용(질문 53-1번으로)
- ② 비용이 적절하면 이용(질문 53-1번으로)
- ③ 이용하지 않겠음
- ④ 잘 모르겠음
- ⑧ 비해당(이용 중)(질문 53-1번으로)

53

53-1 (보육도우미를 이용하겠다는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설에 보내기 싫어서 부모대신 보육
- ② 아이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시설에 보내기 부적절하여
- ③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 후에 늦게까지 보살피기 위하여
- ④ 기타( )
- ⑧ 비해당(미이용)

53-1

54.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역번호		가구일련번호		

## 보육도우미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 육아정책개발센터와 공동으로 가구의 자녀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귀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보육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5월  
한국여성노동자회장·육아정책개발센터소장

<b>가구주명</b>	
-------------	--

- |  |   |
|--|---|
| <p>1. 보육도우미가 파견된 기간은 언제부터 입니까?. (* 오른쪽 칸에는 개월만 기록합니다)</p> <p>(                    )부터 (                    )개월</p> | <p>1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개월</p> |
|--|---|
- |  |  |
|--|--|
| <p>2. 보육도우미 유형을 기록하여 주십시오.</p> <p>① 영아보육도우미    ② 야간보육도우미</p> | <p>2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p> |
|--|--|
- |   |  |
|---|--|
| <p>3. 보육도우미가 주로 돌보는 아동은 모두 몇 명입니까? .</p> <p>① 영아(            )명    ② 유아(            )명    ③ 초등학생(            )명</p> | <p>3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p> |
|---|--|
- |   |  |
|---|--|
| <p>4. 돌보는 아동 중 장애아가 있습니까? 없으면 0, 있으면 몇 명인지 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p> <p>(            )명</p> | <p>4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p> |
|---|--|
- |  |  |
|--|--|
| <p>5. 여성노동자회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p> <p>① 지역신문 등 광고로    ② 주변의 소개로    ③ 인력전문기관의 소개로</p> <p>④ 기타(                    )</p> | <p>5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p> |
|--|--|
- |  |                  |  |                   |  |  |                             |                  |  |  |  |
|--|------------------|--|-------------------|--|--|-----------------------------|------------------|--|--|--|
| <p>6. 보육도우미 파견 이전에는 주로 누가 아이들을 보살폈습니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30%;">1) 영아보육도우미 파견 가정</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60%;"><b>&lt;보기&gt;</b></td> </tr> <tr> <td></td> <td></td> <td>① 본인    ② 가족, 친인척    ③ 보육시설</td> </tr> <tr> <td>2) 야간보육도우미 파견 가정</td> <td></td> <td>④ 이이들 끼리    ⑤ 기타(                    )</td> </tr> </table> | 1) 영아보육도우미 파견 가정 |  | <b>&lt;보기&gt;</b> |  |  | ① 본인    ② 가족, 친인척    ③ 보육시설 | 2) 야간보육도우미 파견 가정 |  | ④ 이이들 끼리    ⑤ 기타(                    ) | <p>6</p> <p>1)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p> <p>2)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p> |
| 1) 영아보육도우미 파견 가정   |                  | <b>&lt;보기&gt;</b>                      |                   |  |  |                             |                  |  |  |  |
|  |                  | ① 본인    ② 가족, 친인척    ③ 보육시설            |                   |  |  |                             |                  |  |  |  |
| 2) 야간보육도우미 파견 가정   |                  | ④ 이이들 끼리    ⑤ 기타(                    ) |                   |  |  |                             |                  |  |  |  |
- |   |   |
|---|---|
| <p>7. (영아 보육도우미 파견의 경우) 보육시설에 안 보내고 보육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아동에 기록하여 주십시오,</p> <p>① 인근에 마땅한 영아보육시설이 없어서</p> <p>②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주변에 장애아보육시설이 없음</p> <p>③ 보육시설이 있으나 퇴근이 늦을 때가 많아서 시설 이용이 부적절해서</p> <p>④ 시설에 보내면 마음이 안 놓여서    ⑤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p> <p>⑥ 비용부담 때문에</p> <p>⑦ 기타(                    )    ⑧ 비해당(영아 보육도우미가 아님)</p> | <p>7</p> <p><input style="width: 30px; height: 30px;" type="text"/></p> |
|---|---|



# 보육도우미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보육도우미로 활동하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단한 질문을 마련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보육도우미 활동을 위한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5월  
한국여성노동자회장·육아정책개발센터소장

<b>도우미 성명</b>		<b>파견가구 가구주명</b>	
---------------	--	------------------	--

1. 보육도우미로 활동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도 (        )시
 

1
  
2. 200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육도우미로 활동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개월
 

2   개월
  
3. 귀하가 파견되어 돌보는 아동은 몇 명입니까? (        )명
 

3
  
4. 이들 아동을 나이가 어린 아동부터 연령, 질병장애여부, 돌보는 시간 등을 각각 기록하여 주십시오
 

구분	1) 아동구분 ① 미취학 ② 취학	2) 미취학아동연령을, 취학아동은 학년을 기록	3) 질병장애여부 ① 건강 ② 질병 ③ 장애 ④ 질병과 장애	4) 돌보는 시간 ① 종일 ② 종일+야간 ③ 방과후 ④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 전후
1		세    학년		
2		세    학년		
3		세    학년		

4  
  
1      
2      
3
  
5. 보육도우미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하는 편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5
  
6. 보육도우미로 활동한 이후 귀하나 귀댁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구분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아니다	4 모르겠다
전문 가정보육사로 자부심이 생겼음				
일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음				
사는 것이 즐거워졌고 행복감이 증가되었음				
가족이 화목하게 되었음				

6  
1)   
2)   
3)   
4)

7. 보육도우미로 파견된 이후 돌보는 아이에게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구분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아니다	4 잘 모르겠다	8 비해당
(모든 아동) 잘 먹게 되었음					
(모든 아동) 건강해졌음					
(모든 아동) 잘 웃고 밝아졌음					
(장애아동을 돌보는 경우) 치료를 꾸준히 받게 되었음					
(초등학생을 돌보는 경우) 학습능력이 향상되었음					

7

1)

2)

3)

4)

5)

8. 보육도우미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양육방식에 대한 아이 부모와의 갈등      ② 가사 일을 기대하는 것
- ③ 불규칙한 근무 시간                              ④ 아이 다루기 미숙
- ⑤ 식사문제    ⑥ 기타

8

9. 보육도우미 자격을 받기 위한 144시간 교육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너무 길다                      ② 긴 편이다                      ③ 적절하다
-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9

10. 기존에 활동하시는 보육도우미를 위한 재교육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너무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절하다
-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10

11. 보육도우미 활동에 따른 보수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함                              ② 적절하지 않음

11

11-1 보육도우미 활동에 따른 보수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경우 적절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당 (                      )원

11-1 

--	--	--	--	--	--	--	--

 원

12. 귀하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                      )세
2) 최종학력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중퇴)졸 ④ 4년제 대학 이상
3) 결혼상태 및 자녀양육경험	① 미혼    ② 기혼, 양육경험 유 ③ 기혼, 양육경험 무    ④ 모름    ⑧ 비해당
4) 자격	① 없음    ② 보육교사    ③ 유치원교사 ④ 초등학교 교사    ⑤ 간호사(간호조무사)    ⑧ 비해당
5) 월 평균 가구소득	월 (                      )만원

12

1) 

--	--

2) 

--	--

3) 

--	--	--

4) 

--	--	--

5) 

--	--	--	--

13. 한국여성노동자회나 아이 가정에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_\_\_\_\_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